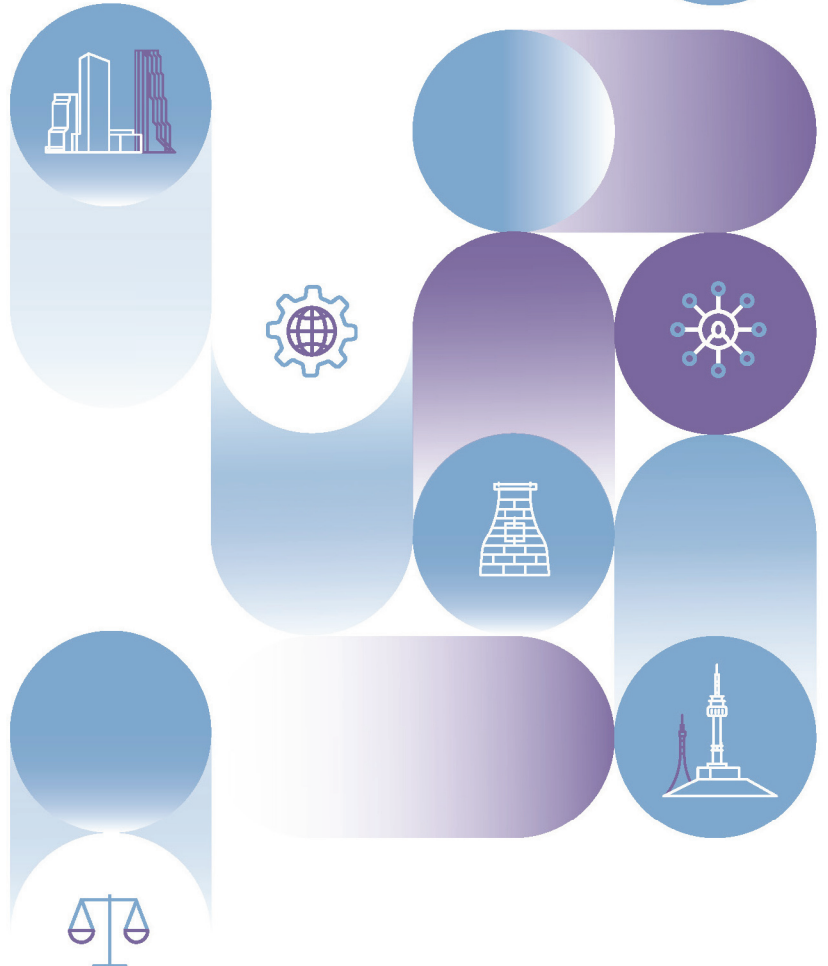


지방규제혁신 및 중앙규제 권한 이양 방안



연구책임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고승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광석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명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민현정	광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근우	경북연구원 연구원
박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충훈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변성수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현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규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용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지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익창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지방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 현황

1. 지방규제혁신 개념과 추진 현황	7
1) 지방규제와 지방규제혁신 개념	7
2) 지방규제혁신 추진 현황	9
2. 중앙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경과	11
1)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11
2) 권한이양의 개념	14
3) 역대정부의 권한이양 추진 경과	15

제3장 지역의 규제현안 분석

1. 규제현안 발굴 개요	29
2. 지역별 규제현안 분석	33
1) 서울특별시	33
2) 부산광역시	61
3) 대구광역시	80
4) 인천광역시	89
5) 광주광역시	131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146
7) 울산광역시	163
8) 강원특별자치도	181
9) 충청북도	214

10) 충청남도	234
11) 전북특별자치도	249
12) 전라남도	268
13) 경상북도	297
14) 경상남도	316
15) 제주특별자치도	343

제4장 공동 규제현안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1. 공동 규제현안 발굴	361
1) 공동 규제현안 발굴 개요	361
2. 공동 규제현안의 내용	361
1) BF 인증제도 개요	361
2) BF 인증 현황 및 문제점	363
3. 규제 개선방안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380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387
1) 연구의 의의	387
2) 향후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388
2. 중앙규제 개선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391
1) 중앙규제 개선 추진체계 및 과제 처리 현황	391
2) 중앙규제 개선건의 체계 문제점	393
3) 제도 개선방안	397
3. 지방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402
1) 지방협의체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 개선	402
2)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	414
3)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개선	443
참고문헌	449

표목차

〈표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4
〈표 2-1〉 지방규제 개념 정의	7
〈표 2-2〉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건의 관련 지표 및 실적 추이	9
〈표 2-3〉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추진 실적	10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12
〈표 2-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5
〈표 2-6〉 지방이양일괄법(2020년 2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18
〈표 2-7〉 윤석열 정부 6대 분야 57개 지방이양 과제	20
〈표 2-8〉 지방이양일괄법(2023년 10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25
〈표 2-9〉 지방이양일괄법(2024년 1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26
〈표 2-10〉 지방이양일괄법(2025년 3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26
〈표 3-1〉 발굴 규제현안의 관련 법령 현황 (내림차순)	30
〈표 3-2〉 지역별 발굴 규제현안 목록	31
〈표 3-3〉 서울시 돌봄시설 수급 현황 (2024년 12월 기준)	34
〈표 3-4〉 지역특성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비교(정소양 외, 2024a)	35
〈표 3-5〉 지정문화유산 유형	40
〈표 3-6〉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면적 현황	42
〈표 3-7〉 국가지정유산 중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용도지역 현황	43
〈표 3-8〉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현황	46
〈표 3-9〉 지방교육재정 재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및 추이	47
〈표 3-10〉 서울시 학생 수 및 법정전출금 변화	48
〈표 3-11〉 서울시 재정 여건 변화(2015~2023년)	48
〈표 3-12〉 국내 화장품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50
〈표 3-13〉 화장품 영업자 현황	51
〈표 3-14〉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과 실질재활용률 비교	58
〈표 3-15〉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 관련)	66
〈표 3-16〉 경제자유구역 현황	70
〈표 3-17〉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현황	90
〈표 3-18〉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지자체 일부위임에 의한 기대효과	91

〈표 3-19〉 용도지역 지정 현황 (인천광역시 강화군)	92
〈표 3-20〉 용도지역 지정 현황 (인천광역시 옹진군)	92
〈표 3-21〉 용도지역 지정 현황 (경기도 김포시)	92
〈표 3-22〉 용도지역 지정 현황 (경기도 파주시)	93
〈표 3-23〉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완화에 의한 기대효과	95
〈표 3-24〉 개별법규의 접경지역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05
〈표 3-25〉 재정자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108
〈표 3-26〉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11
〈표 3-27〉 2019년 AHP 가중치 개편 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 비교	112
〈표 3-2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113
〈표 3-29〉 전문가 검토의견	115
〈표 3-30〉 내국인과 외국인의 취학대상 아동 현황비교(2025.2 기준)	116
〈표 3-31〉 전문가 검토의견	118
〈표 3-32〉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120
〈표 3-33〉 전문가 검토의견	122
〈표 3-34〉 전문가 검토의견	124
〈표 3-35〉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	125
〈표 3-36〉 해당 부처 및 전문가 검토의견	128
〈표 3-37〉 법령 간의 시설물 높이 기준 상충	129
〈표 3-38〉 전문가 검토의견	131
〈표 3-39〉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132
〈표 3-40〉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34
〈표 3-41〉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37
〈표 3-42〉 성인 실종 및 DNA 등록 현황	139
〈표 3-43〉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40
〈표 3-44〉 야영장 시설 이용 및 관련 민원 현황	141
〈표 3-45〉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43
〈표 3-46〉 민원발급 현황	144
〈표 3-47〉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146
〈표 3-48〉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현황	147
〈표 3-49〉 대덕연구개발특구 인력 현황	148
〈표 3-50〉 광역연구개발특구 현황	149

〈표 3-51〉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비율	151
〈표 3-52〉 대전광역시 공영충전소 연도별 경영적자 현황	152
〈표 3-53〉 수소연료공급시설 부지면적 현황	152
〈표 3-54〉 주차전용 건축물 입점가능 업종 변화 내용	161
〈표 3-55〉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164
〈표 3-56〉 국내 수소차 등록 및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174
〈표 3-57〉 법제처 유권해석	183
〈표 3-58〉 홍천군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기물 중금속 기준 및 처리 현황	191
〈표 3-59〉 강원도의 산림면적 대비 임가수 비율	205
〈표 3-60〉 수자원공사 지원금 현황	219
〈표 3-61〉 댐 주변지역 피해추정액	220
〈표 3-6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20
〈표 3-63〉 댐 주변지역 출연금 및 지원금 현황	221
〈표 3-64〉 지역별 위생감시 업무 담당자 및 생산단계 작업장 현황	231
〈표 3-65〉 지역별 농업시설 등기 관련 처리 현황	246
〈표 3-66〉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	250
〈표 3-67〉 공사 완도장보고 해상풍력사업(예시)	270
〈표 3-68〉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해외 국가 사례	283
〈표 3-69〉 천일염 생산 현황(2011~2024년)	293
〈표 3-70〉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요청 현황	300
〈표 3-71〉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완료 건수(재협의 이후 협의완료 포함)	300
〈표 3-72〉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18개 분야)	304
〈표 3-73〉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320
〈표 3-74〉 사업장 유형별·규모별 구인인원	321
〈표 3-75〉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관련 법령	325
〈표 3-76〉 평균 갈치 어획량(2019년 ~ 2023년)	343
〈표 3-77〉 법령상 신고어업의 유형 및 개념	348
〈표 3-78〉 해녀 원정물질 현황(2023년 5월 기준)	349
〈표 3-79〉 지정면세점 시설현황	352
〈표 3-80〉 지정면세점 영업현황	352
〈표 3-81〉 연도별 제주 크루즈 관광 현황 (2023-2025)	353
〈표 3-82〉 개선 후 관광 시간 변화	355

〈표 3-83〉 크루즈 보안검색 제도 비교	357
〈표 4-1〉 인증 대상 및 인증 신청자	362
〈표 4-2〉 BF 인증 제도 관련 법·제도 제·개정 사항	363
〈표 4-3〉 BF인증 지연 관련 언론보도 주요 사례(2024~2025년)	365
〈표 4-4〉 BF인증 개선 건의	367
〈표 4-5〉 건물 전체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추진 과제	370
〈표 4-6〉 인증 절차 관련 만족도 (5점 평균)	371
〈표 4-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현황(2025. 11월)	371
〈표 4-8〉 BF 인증기관 지정 추이	372
〈표 4-9〉 BF 인증기관 인력 현황(2025년 12월 기준)	373
〈표 4-10〉 공원·여객시설·건축물 BF 인증기준 지표 분석(정량●/정성○) (배선헌 외, 2024) ...	373
〈표 4-11〉 BF인증 수수료_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378
〈표 4-12〉 BF인증 수수료_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	379
〈표 5-1〉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처리 현황	393
〈표 5-2〉 중앙규제 개선건의 체계 문제점	397
〈표 5-3〉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양식 개선방안	401
〈표 5-4〉 중앙규제 개선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요약	402
〈표 5-5〉 지방협의체 설립 및 대정부 정책건의 관련 규정	403
〈표 5-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 : 2023년~2025년	405
〈표 5-7〉 ‘수용(일부수용 포함)’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현황 : 2023년~2025년	405
〈표 5-8〉 ‘수용곤란’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현황 : 2023년~2025년	406
〈표 5-9〉 ‘장기검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현황 : 2023년~2025년	409
〈표 5-10〉 ‘미회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현황 : 2025년	409
〈표 5-11〉 중앙부처별 대정부 정책건의 회신 현황 : 2023년~2025년	410
〈표 5-12〉 대정부 정책건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	412
〈표 5-13〉 대정부 정책건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지방자치법」 개정안	412
〈표 5-14〉 대정부 정책건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413
〈표 5-15〉 지방협의체 참여 또는 추천 정부위원회(14개) 현황	415
〈표 5-16〉 개별 지방자치단체 참여 정부위원회(50개) 현황	418
〈표 5-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13②)	422
〈표 5-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발굴 결과	423
〈표 5-19〉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별 ‘지방참여 필요성’ 판단 결과	426

〈표 5-20〉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발굴 결과(최종)	440
〈표 5-21〉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444

그림목차

[그림 2-1] 지자체 중층적 규제의 구조	8
[그림 3-1] 시·도별 발굴 현황	29
[그림 3-2] 발굴 규제현안의 소관 부처별 현황	30
[그림 3-3] 노인요양시설 수급 전망	34
[그림 3-4] 데이케어센터 수급 전망	34
[그림 3-5] 2010년 및 2016년 시군구 단위 과밀 분포도	37
[그림 3-6] 유형비교-부문간 비교	38
[그림 3-7]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에 대한 공간적 개념 구분	40
[그림 3-8] 지역별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현황 (2023. 12. 31. 기준)	41
[그림 3-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44
[그림 3-10] 양각 규제 적용	44
[그림 3-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인당 교부금 전망: 2020-2060년	47
[그림 3-12]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3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	50
[그림 3-13]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 추이	50
[그림 3-14]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추진방향 및 제조자 표기 의무 삭제 관련 내용	53
[그림 3-15] 밸류체인별 한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	54
[그림 3-16] OECD 국가별 폐기물 재활용률	57
[그림 3-1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현황과 2030년 목표	57
[그림 3-18] 재활용 자원 활용을 위한 AI 기반 수거 로봇 서비스 사례	58
[그림 3-19] 2009~24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62
[그림 3-20]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	62
[그림 3-21]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손실현황	67
[그림 3-22]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67
[그림 3-23] 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 개선안	112
[그림 3-24] 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과	146
[그림 3-25]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요 기업 현황	147
[그림 3-26] 주요 도시 연구개발특구 및 개발제한구역	149
[그림 3-27] 국유임산물의 매각(국유림법 제27조)	211
[그림 3-28] 대청호 주변 규제현황도	216

[그림 3-29] 펌프카 폐콘크리트 처리 개선 방향	227
[그림 3-30] 전력 계통연계점 기준 해석	269
[그림 3-31] ‘계통연계점’ 해석 차이에 따른 연계거리 비교 예시	270
[그림 3-32] 전남 집적화단지 연계거리 검토 사례	272
[그림 4-1] BF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절차	362
[그림 4-2] 본인증과 예비인증 인증건수 추이	365
[그림 4-3] 제6차 계획 체계도	369
[그림 5-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절차	404
[그림 5-2]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체계도	445

제1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민선 지방자치 30년에 걸맞은 자치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규제의 효과적 해소방안 도출 및 규제권한의 지방이양 모색 필요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제 권한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현장주민 맞춤형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함
 - 기존에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전담기구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균등 이양, 특별광역시·자치단체·특례제도를 통한 차등이양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에 이양해왔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더 고도화된 자치분권과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권한을 지방의 관점에서 발굴하고 이의 효과적 이양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적극 경주되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는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로서, 지방규제현안을 공동 발굴하여 공동 규제현안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향후 규제권한의 효과적 지방이양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는 첫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현장·주민 맞춤형 행정을 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발굴·공유함
 - 둘째, 공동 규제현안을 심층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 및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 연구는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회원기관 간 공동연구인만큼,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전략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공동 규제현안 관련 이양방안뿐만 아니라 회원기관 및 관련 기관 간 연구협력 방안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이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해 지방규제혁신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방규제혁신 주요 추진 현황과 중앙규제권한의 지방이양 경과를 분석함
- 제3장에서는 각 시도 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핵심적인 규제 현안을 분석함
 - 해당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문헌연구,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지방의원 간담회, 워킹그룹 운영, TF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함
- 제4장에서는 발굴된 지역별 규제현안 가운데 공동 현안을 발굴하고 시범적으로 해당 규제의 개선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연구진 토론을 통해 공동 규제현안 발굴의 기준을 수립함
 - 문헌연구, 자료분석, 법령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된 공동 규제현안의 내용과 개선 필요성을 정리하고, 규제 개선방안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도출함
-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지방규제혁신과 중앙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협력방안을 도출함
 - 이를 위해 문헌연구, 자료분석, 전문가 원고 의뢰 등의 방법을 활용함

〈표 1-1〉 연구의 내용과 방법

구분	내용	방법
제2장 지방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 현황	- 지방규제혁신 개념과 추진 현황 분석 - 중앙규제 권한 지방이양 경과 분석	문헌연구, 자료분석
제3장 지역의 규제현안 분석	지역별 규제현안 분석	문헌연구,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지방의원 간담회, 워킹그룹TF 운영 등
제4장 공동 규제현안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 공동 규제현안 발굴 기준 수립 및 선정 - 공동 규제현안의 내용 분석 - 규제 개선방안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도출	문헌연구, 자료분석, 법령분석, 전문가 자문, 연구진 토론
제5장 결론	-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정리 - 중앙규제 개선 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 지방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도출 -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연구협력방안 도출	문헌연구, 자료분석, 전문가 원고

자료: 연구진이 정리

제2장 | 지방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 현황



1. 지방규제혁신 개념과 추진 현황
2. 중앙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경과

제2장 지방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 현황

1. 지방규제혁신 개념과 추진 현황

1) 지방규제와 지방규제혁신 개념

-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행정규제기본법」¹⁾ 제2조 제1호)
- 지방규제는 법령 등에 명시적으로 개념 정의된 바는 없으며, 학술적으로도 명확히 합의된 개념은 부재한 상황
 - 지방규제를 협의의 개념으로, 지방정부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는 연구(예: 하선권·김성준, 2020; 엄영호·손선화, 2018)가 있는 한편, 박순애·손지은(2015) 및 전대욱 외(2024b)의 연구처럼 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는 연구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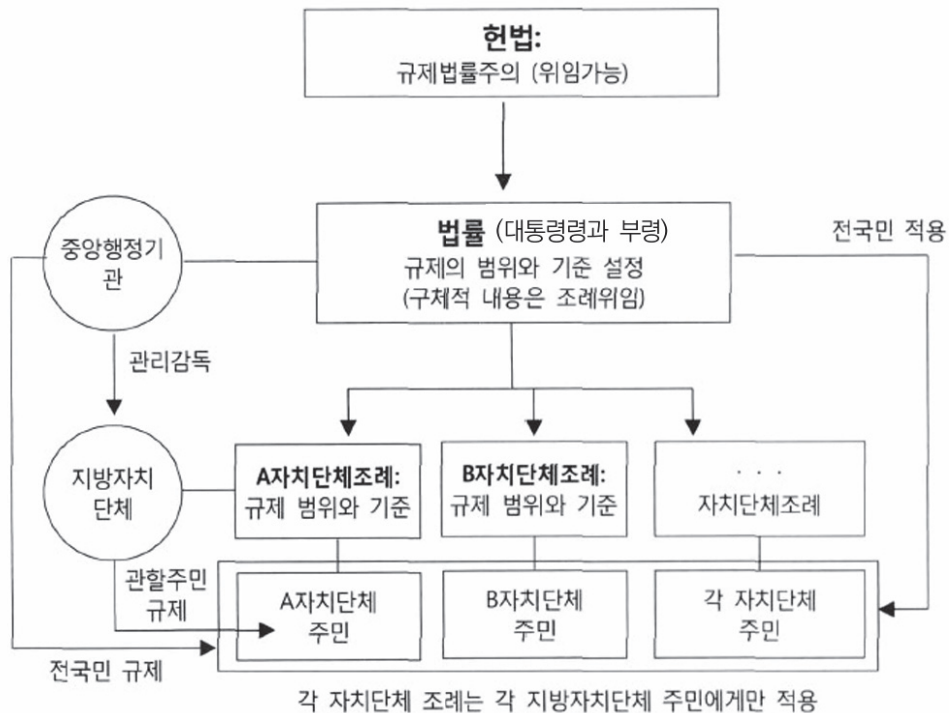
〈표 2-1〉 지방규제 개념 정의

연구자(연도)	내용
전대욱 외 (2024a: 6)	지방규제는 전 국민에게 바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를 제외한 중앙의 위임규제 및 독자적인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규제를 포괄하며, 그 정책 범위는 다음과 같음 ①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위임규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중 규제가 시행되는 지역 현장에서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규제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 • ③ 지방자치단체의 그림자·행태 규제
박순애·손지은 (2015: 188)	지역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 및 중앙정부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민간의 자유로운 행위를 제약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 행위
하선권·김성준 (2020: 65)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료: 연구진이 정리

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2024)는 지방규제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으로 규정하는 사항”²⁾으로 정의한 바 있으나, 실제 지방규제혁신의 대상은 더 넓게 보고 있음
- 다만,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³⁾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의 대상이 되는 규제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지침 제2조 제2호 및 제3호)도 포함
- 김건위·이병기(2019)는 지방규제의 중층적 구조로 인해 지방규제혁신 대상을 상위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체적인 혁신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구분할 필요성 제시 (김건위·이병기, 2019: 39-40)



[그림 2-1] 지자체 중층적 규제의 구조

자료: 김건위·이병기(2019: 40)

- 지방규제혁신을 ①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혁신과 ②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의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때 ‘②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념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소관 규제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①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의 범주를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넓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2024. 5. 12.

3)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6. 1. 6.] [행정안전부훈령 제419호, 2026. 1. 6., 일부개정]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②'에 해당하는 규제를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소관 규제(이하 '중앙규제'라고 함)'로 이해하고자 함

2) 지방규제혁신 추진 현황

- 이 연구는 지방규제혁신의 내용적 범위 중 지역에서 개선을 건의하는 중앙규제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개선이 필요한 건의과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받고 있음
- 최근 4년간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의 규제개선 건의 관련 지표 실적을 보면 지방정부는 매년 목표치를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음

〈표 2-2〉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건의 관련 지표 및 실적 추이

연도	평가지표명	지표 성격	소관 부처	목표(건)	실적(건)	달성률(%)
2025년 (2024년 실적)	14.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ombudsman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정량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1,510건	6,620건	438.4%
	15.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정량	행정안전부	449건	1,883건	419.4%
2024년 (2023년 실적)	14.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ombudsman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정량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1,510건	4,561건	302.1%
	15.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정량	행정안전부	432건	1,217건	281.7%
2023년 (2022년 실적)	11. 규제개혁신문고·중소기업 ombudsman 규제애로 건의/개선 실적	정량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1,510건	3,184건	210.9%
	12.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정량	행정안전부	415건	1,251건	301.4%
2022년 (2021년 실적)	18. 중기부(ombudsman) 지방 규제애로 발 굴·개선 실적(지방규제 신고센터)	정량	중소벤처기업부	1,540건	4,999건	324.6%
	17.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정량	행정안전부	398건	2,539건	637.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서 각 연도(2022~2025년)의 내용을 연구진이 정리

- 그러나 건의된 중앙규제 개선 과제가 실제로 협의를 거쳐 수용되는 비율은 30% 내외에 그침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9,144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되었으나 이 중 협의를 거친 경우는 48.7%(4,455건), 수용된 경우는 31.7%(1,414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전대욱 외, 2024b: 39 재인용)

〈표 2-3〉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 추진 실적

연도	발굴 건수	협의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2019	1,981	1,127	435	38.6%	692	61.4%
2020	2,309	1,270	386	30.4%	884	69.6%
2021	2,445	1,170	317	27.1%	853	72.9%
2022	2,409	888	276	31.1%	612	68.9%
합계	9,144	4,455	1,414	31.7%	3,041	68.3%

자료: 행정안전부(2023) 내부자료; 전대욱 외(2024b: 39 재인용)

- 낮은 수용률의 원인으로 건의 품질 문제가 제기되나, 종합적인 원인 진단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 연구 필요한 상황
 - 전대욱 외(2024b: 39; 69)는 수용률 제고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한 발굴된 과제 of 심층 검토 및 분석 등을 통한 개선 건의 분석 품질 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안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낮은 데에는 규제 개선 건의서의 품질 문제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어 지속적인 낮은 수용률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협의 및 수용에 유리한 건의 과제의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공유 미흡, 유사·중복 규제 개선방안 관련 지방정부별 의견 차이, 정량 지표 중심 평가로 인해 발굴 과제의 질적 수월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도 수용률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체계적인 원인 진단을 위해 필요한 건의 및 협의, 수용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는, 낮은 수용률과 낮은 예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앙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도록 요구받는 현재의 지방규제혁신 체계가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갖춘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에 부합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용해야 할 규제 권한에 관한 근본적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지방 사무권한 배분과 이양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2. 중앙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경과

1) 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 중앙규제 권한의 지방이양 경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방정부 권한과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헌법」 4)에 따라 지방정부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자치행정권), 재산을 관리하며(자치재정권),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자치입법권)
 -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와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타법개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 25.]

-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사무배분 원칙에 따르면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하위정부가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와 지방정부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① 전권한성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③ 포괄성의 원칙임(「지방자치법」 제11조)⁵⁾
 - (전권한성의 원칙)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해야 함(같은법 제11조 제1항)
 - (보충성의 원칙) 국가는 사무를 배부하는 경우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

4)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5)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함(같은법 제11조 제2항)

- **(포괄성의 원칙)**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할 때에는 사무를 배분받거나 재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함(같은법 제11조 제3항)

○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음(같은법 제12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그 예는 다음 <표 2-4>와 같음(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⁶⁾

<표 2-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구분	내용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 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浚)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6) 다만 같은법 제13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사무 범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구분	내용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다.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 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s://www.law.go.kr/>)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국가사무⁷⁾는 처리할 수 없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

-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⁸⁾ 제33조 제1항에 따라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기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함

- 또한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같은법 제3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할 의무를 짐(같은법 제33조 제3항)

7)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정]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이양받은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기구·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및 예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짐(같은법 제33조 제4항)

2) 권한이양의 개념

□ 권한이양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1999년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⁹⁾ 제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지방자치단체인 구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함
- 연구자에 따라 권한이양, 사무배분, 기능배분, 기능이양 등 여러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일부 연구는 국가와 지방간 권한 이관은 기능이양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기도 함(주희진 외: 2024: 13~15)
- 이 연구는 기존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앙과 지방 간에는 ‘권한이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방 간에는 ‘사무배분’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한 점을 고려하여 ‘권한이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함

□ 이양정책은 크게 균등이양과 차등이양으로 구분 가능(주희진 외, 2024)

- 균등이양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전국 공통사무의 이양 방식을, 차등이양은 특정 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사무로서 개별적용되는 사무의 이양방식을 의미함(주희진 외, 2024: 16)
- 균등이양 방식의 대표적인 예는 지방이양 전담기구를 통한 균등 이양,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한 균등 이양을 들 수 있으며, 차등이양 방식에는 특별시·도 또는 시·군·구·대도시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제도가 포함됨(주희진 외, 2024: 16~27)

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시행 1999. 7. 30.] [법률 제5710호, 1999. 1. 29., 제정]. 이 법은 2008년 2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됨

3) 역대정부의 권한이양 추진 경과

- 정부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운영하여 1,174건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¹⁰⁾
 -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총리훈령(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1991년, 중앙부처 과장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합동 비상설 회의체로 설치됨
 - 심의회는 연 1회(11~12월 중 3~4일간 운영) 개최되었으며, 1991년부터 1997년까지 7년간 총 2,779건을 심의하여 이 중 1,174건(42%)을 지방이양대상으로 확정
 - 2000년 1월 기준 1,027건(87.4%)는 이양을 완료하였으며 147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됨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부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100대 국정개혁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등 기본적 이양 여건 마련¹¹⁾
 - 1998년 1,401건을 발굴하여 834건(71%)을 지방이양하기로 확정
 - 1999. 7. 29.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시행
 - 총 5장 22개 조항으로 구성

〈표 2-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장	주요 내용(조)
제1장 총칙	목적(1조), 정의(2조)
제2장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지방이양 등의 기본원칙(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등의 기준(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병행(5조)
제3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6조), 기능(7조), 구성 등(8조), 의결정족수(9조), 실무위원회 등(10조), 의견청취 등(11조), 조직 및 운영(12조)
제4장 지방이양대상사무 등의 조사·확정	기본계획의 수립(13조), 대상사무의 조사(14조), 의견조사(15조), 심의대상의 선정(16조), 대상사무의 확정 및 공표 등(17조), 이양의 특례 등(18조)
제5장 지방이양 등의 사후관리	이행조치(19조), 건의(20조), 재심사(21조), 추진실태의 점검 등(22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999. 8. 30.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설치
 - 검토할 이양대상사무 1,400여 건을 발굴, 이양여부 심의 (2000년 1월 기준)
- 2000년 1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수립
 - **(기본목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분담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10)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0),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p.7

11)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0),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p.8

통합성이 조화된 선진지방자치 구현,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 **(기본방향)** ① 중앙은 정책기획기능, 지방은 집행기능에 충실토록 역할을 재배분, ② 관련 기능을 총체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의 일치 도모, ③ 중앙의 논리 중심에서 지방의 논리 중심으로 과감한 권한이양 추진, ④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지방에 우선하여 배분, ⑤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권한이양 확대, ⑥ 기능이양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병행 등 사후관리 철저
- **(중점추진 전략과제)** ①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체계 확립, ② 국가사무 조사를 통한 정부기능 진단, ③ 지방이양 기준 확립, ④ 지방에 위임한 국가사무의 운영 개선, ⑤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적극적 발굴·이양, ⑥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 합리적 조정, ⑦ 사무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

□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삼고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정비

○ 2003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출범 이후 ‘지방분권 로드맵 과제’ 도출¹²⁾

- 지방분권 및 재정 분야는 7대 분야 총 47개 과제로 결정
- 7대 분야 중 하나로 ‘중앙-지방 간 권한 재배분’을 설정하고, 10개 과제* 도출

* ① 사무구분체계 개선 ②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③ 대도시특례제도 강화 ④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⑤ 교육자치제도 개선 ⑥ 자치경찰제도 도입 ⑦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기능조정) ⑧ 지방분권화 지표개발 및 분권수준 측정 ⑨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조정 ⑩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007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 기본계획’ 수립¹³⁾

- **(기본 목표)**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기능분담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②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통합성이 조화된 선진지방자치 구현, ③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 **(추진 방향)** ① 중앙 위주의 논리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포괄적으로 이양하여 권한과 책임 일치 도모, ②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지방에 우선하여 배분, ③ 주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권한이양 확대, ④ 자치단체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등이양 활성화, ⑤ 기능 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병행 등 사후관리 강화

1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행정자치부(2007),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 성과정리 보고

13) 지방이양추진위원회(행정자치부)(2007), 지방이양 기본계획

□ 이명박 정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지방이양 전담 추진기구인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신설

○ 2008년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수립¹⁴⁾

- **(기본목표)**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합리적 분담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 ② 자율과 책임,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선진 지방자치 실현, ③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
- **(추진방향)** ①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② 지방행정이 종합적·자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③ 주민편익·집행효과 등을 고려한 사무 배분, ④ 이양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 ⑤ 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⑥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양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 **(세부 추진과제)** ① 지방이양 전담 추진기구(체계) 구축: 지방분권촉진 실무위원회(2개) 구성·운영, 분권1과 신설 등, ②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체계 다양화, ③ 기능 중심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④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⑤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양) 등 사후관리 강화, ⑥ 지방이양절차(제도) 효율화 및 심의기준 마련 등

□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신설

○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 5. 28.) 및 지방분권의 총괄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신설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¹⁵⁾

- **(비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 **(정책목표)** ① 주민편익 증진, ② 행정효율 제고, ③ 지방경쟁력 강화
- **(핵심과제)** 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②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③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④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⑤ 자치경찰제도 도입, ⑥ 대도시 특례 제도 개선, ⑦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⑧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 **(일반과제)** ①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② 지방선거제도 개선, ③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⑥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⑦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⑧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⑨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⑩ 시·군·구 통합 및 통합자치단체 특례 발굴

14) 지방분권지원단(분권1과)(2008),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15) 이하의 과제 내용은 하혜영(2015)을 참고하여 작성

-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100대 국정과제 핵심과제로 삼고, 자치분권위원회 운영 및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¹⁶⁾
-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개편
- 자치분권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 5개 특별·전문위원회(자치경찰, 세종·제주, 주민자치, 재정분권, 중앙권한이양)
-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 수립하고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 추진
- **(비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추진전략)**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 두 번째 추진전략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① 중앙-자치단체 간 사무 재배분, ②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③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④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⑤ 대도시 특례 확대, ⑥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⑦ 교육자치 강화 및 지방자치와의 연계·협력 활성화 7개 과제가 추진됨
-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을 일괄개정(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하여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함(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합동 보도 자료, 2020. 1. 9.)
- 이양된 400개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는 253개(63.2%)는, 국가가 직접 수행하던 사무는 96개(24.0%), 시도에서 수행하던 사무는 51개(12.8%)임
 - 사무 이양방향을 보면 국가 사무가 지방(시·도, 시·도·시·군·구, 시·군·구)으로 이양된 경우가 349개(87.2%)이며, 시·도 사무가 시·군·구 또는 시·도·대도시로 이양된 경우가 51개(12.8%)임

〈표 2-6〉 지방이양일괄법(2020년 2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부처	법률 수	사무 수	주요 사무 내용
기재부	1	4	• 가격표시 명령(→국가 또는 시·도 공동)
교육부	2	15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 시정 혹은 변경명령 등(→시·도)
과기부	1	2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국방부	1	1	•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행안부	6	20	• 급경사지 등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등록취소 등(→시·도) • 새마을금고 설립·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시·군·구)

16) 이하의 내용은 자치분권위원회(2018)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부처	법률 수	사무 수	주요 사무 내용
			•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시·군·구)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시·군·구) • 반한공여구역이나 반한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시·도) •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도)
문화부	3	26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폐업 신고 등(→시·군·구) •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시·도 조례)
농림부	2	2	•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 검사(→시·도) • 지자체 보조 사업 관련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시·도)
산업부	4	2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 권한(→시·도) • 경제자유구역 내의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시·도)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지방상공회의소 설립·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시·도) •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변경공사 계획 신고 등(→국가와 시·도)
복지부	3	12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시·도) •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시·군·구) • 의료기관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수리/ 실태조사 등(→시·도)
환경부	2	5	•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 조사(→국가와 시·도)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국가와 지자체) •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시설 개선 명령(→시·군·구와 교육청)
여가부	1	51	•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점검·확인(→지자체)
국토부	9	70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관련 자료 제출·보고/ 명령등에 대한 취소·변경 등 조치(→국가와 시장·도지사) •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 변경, 휴업, 폐업 등(→시·도) • 측량업 등록(→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일반물류단지 지정권한(→국가와 시·도) • 부동산개발업 등록·양도, 폐업신고, 실태조사, 영업정지 등(→시·도) • 새만금사업지역 안에 유치원,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국가와 시·도) •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시·군·구)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 권한 위탁(→시·군·구)
해수부	7	135	• 배타적 경제수역 등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 사무(→시·도) •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입·출항 관리(→시·도) •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업무 감독(→지자체) • 지방어항 지정(→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개발·관리(→시·도) •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취소·운임·요금 인가 등(→시·도)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국가관리연안항 외 해역의 해양시설 신고, 변경신고, 출입검사·보고 등(→시·도)
식약처	1	3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기기 수리업자 검사명령 등(→국가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청	1	1	• 형식승인 받지 못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시공자 수리·폐기·교체 등 명령(→국가와 시·도)
산림청	2	31	• 산림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시·도) •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시·도)
합계	46	400	-

자료: 하혜영(2020)의 [표 2]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함

○ 2023년 11월에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여 지방시대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를 추진함¹⁷⁾

- **(5대 전략)** ①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10대 중점 추진과제)**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의 중점 추진과제 10개 중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가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① 자치조직권 확대, ② 과감한 권한 이양, ③ 맞춤형 자치모델 마련을 추진함

※ 특히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보고된 중앙권한 지방이양추진계획과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 발굴한 6개 분야 5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

○ 2023년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된 6대 분야 57개 지방이양 과제는 다음과 같음¹⁸⁾

- 분야별로 보면 산업 분야(22개)가 가장 많고, 국토·환경·해수(12개), 고용(8개), 복지(7개), 교육(4개), 제도(4개) 분야 순임
- 2023년 7월 행정안전부가 기존에 보고된 57개 과제와 국무조정실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 등 총 67개 지방이양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6개 과제는 이양 완료, 3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남

〈표 2-7〉 윤석열 정부 6대 분야 57개 지방이양 과제

구분	분야	제목	내용	부처 (진행상황)*
1	국토· 환경· 해수 (12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 (현황) ①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② 권역별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해제 가능 • (개선) 비수도권 지자체의 ①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② 반도체·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하는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	국토부 (완료)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3. 6.)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23. 4.) 개정 완료

17) 이하의 내용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2023. 11. 1.)를 참고하여 작성함

18) 2022년 12월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권한 지방이양 TF에서 확정된 10개 과제가 추가되어 총 67개 과제의 지방이양이 추진됨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2023. 7. 13.). 규제권한 지방이양 TF 확정 과제 자료가 부재하여 여기에서는 57개 과제 중심으로 정리함

구분	분야	제목	내용	부처 (진행상황)*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 (현행) 토지수용 재결 사전절차인 사업인정을 위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와 공익성 협의 필요 · (개선) 시군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성 협의	국토부
3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 (현행) 지자체에 12개 지역·지구 농지 전용 권한 위임 · (개선) 2개 지역·지구 추가 위임 *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농식품부
4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확대	· (현행) 국가산단 조성 후 지자체 요청 시에만 개발계획 변경 권한 위임 · (개선) 일정 요건* 충족 시 권한 위임 * 예시: 지정 후 일정 기간 도과 등	국토부
5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업무	· (현행) 국토부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조사 및 설계 수행 · (개선) 국토부, 광역지자체 모두 조사·설계가 가능하도록 대안 마련	국토부
6		표준지 등 공시가격 조사·평가 지자체 참여 확대	· (현행)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개별공시가격 산정 기초) 공시 · (개선)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마련	국토부
7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	· (현행) 해수부가 일정 기준(3천㎡ 이상 사업규모 등) 이상 무인도서 개발계획 승인 · (개선) 시도로 이양 (해수부 협의)	해수부
8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 권한	· (현행) 해수부가 지방관리항만의 항만 배후부지 개발 승인·관리기관 지정 · (개선) 시도로 이양	해수부
9		마리나항만 관리 권한	· (현행) 해수부가 조성한 마리나항만 관리 · (개선) 시도로 이양	해수부
10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 (현행) 1km² 미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시도지사에 위임(토지부·수면부 구분 없이 면적기준으로 위임) · (개선) 토지부 전체 시·도지사 이양, 수면부 1km² 미만 시·도지사 이양	해수부
11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우선 실시	· (현행)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복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 (개선) 시도 조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간 일부 중복 사업에 대해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조정	환경부
12		기타수질 오염원 관리	· (현행) 환경부 장관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수리, 개선·폐쇄명령 등 권한 보유 · (개선)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환경부
13	경제 산업 (22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 (현행) 지자체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만 가능(Positive) · (개선) 중대사안 외 변경 가능(Negative)	산업부
14		국가산단 유치업종 등 변경권한 강화	· (현행) 지자체의 유치업종 등 변경 요구 시 산업부가 관리기본계획 변경 여부 결정 · (개선) 지자체 변경 요구 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 의무화	산업부
15		일반산단 대상 스마트그린산단 관리 권한	· (현행) 산업부가 모든 스마트그린산단(국가 및 일반산단)에 대해 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리 · (개선) 일반산단의 경우, 지자체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관리토록 이양	산업부

구분	분야	제목	내용	부처 (진행상황)*
16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 지역참여 확대	• (현행) 중기부가 사업전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 (개선) 지자체 추천시 심사과정에 Fast-Track 적용, 신속 자금지원	중기부 (완료) ※ 구조혁신 지원사업 공고 반영 ('23.2)
17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 권한	• (현행) 산업부가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등 기획·운영 • (개선) 시도로 이양	산업부 (완료) ※ 경쟁력강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23.3)
18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지정 권한	• (현행) 산업부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정 • (개선) 시도로 이양	산업부
19		국가혁신융복합 단지 육성 권한	• (현행) 산업부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원 • (개선) 시도에서 발전단계* 결정 * ▲(1단계) 국가 주도 육성 ▲(2단계) 지자체 자율 육성	산업부 (완료) ※ 고시 개정 완료 ('23. 2)
20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	• (현행) 산업부가 산학융합지구 지정 • (개선) 시도로 이양	산업부
21		도시교통정비지 역 지정 권한	• (현행) 국토부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 (개선) 10만 명 미만 지역은 도(道)에서도 지정	국토부
2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권한	• (현행) 국토부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 (개선) 시도에서도 지정	국토부
23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권한	• (현행) 국토부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 (개선) 도로 이양	국토부
24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시설 지정 권한	• (현행) 국토부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 지정 • (개선) 시도로 이양	국토부
25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권한	• (현행) 국토부가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 (개선) 시도에서도 지정	국토부
26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 지정 권한	• (현행) 국토부가 조경진흥 시설 및 단지 지정 • (개선) 시도에서도 지정	국토부
27		신재생에너지 위원회 지자체 참여	• (현행) 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원회는 중앙 공무원 및 위촉전문가로 구성 (지자체 참여 없음) • (개선) 지자체 추천 전문가 참여	산업부
28		LH 시행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 (현행) 국토부 장관이 LH 시행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 (개선) 국토부 승인 전 해당 지자체에 의견조회 절차 강화	국토부

구분	분야	제목	내용	부처 (진행상황)*
29		건설기계 전산 관리정보의 이용 승인	• (현행) 관할구역 내 건설기계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개선) 위임된 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에 이양	국토부
30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조사	• (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개선) 위임된 권한을 시도에 이양	국토부
31		렌터카 관련 등록 등 권한	• (현행) 시·도가 렌터카 등록 등 인허가 • (개선) 시군으로 이양	국토부
32		택시 등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특례 (실증사업) 허가	• (현행) 국토부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택시 등 구역형 유상운송 허가 * 버스 등 노선형은 시도 허가 가능 • (개선) 시도로 이양	국토부
33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사무	• (현행)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개선) 위임된 권한을 시도에 이양	국토부
34		광역지자체 소관 도시철도 운행 관련 사무	• (현행)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관계 관련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개선) 위임된 권한을 시도에 이양	국토부
35	고용 노동 (8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배분 시 참여 강화	• (현행) 외국인력(E-7-4/E-9) 도입규모 결정 시 지자체 결정 권한 및 의견 수렴 절차* 미흡 * (E-7-4) 법무부 기준에 따라 쿼터 등 연간계획 수립, (E-9)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 의견 간접 수렴 • (개선) ▲ 지자체 의견수렴 통로* 강화 ▲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확대 * (E-7-4) 연간계획 수립 시 광역지자체 의견수렴절차 마련, (E-9) 지방(광역)-중앙 간 협의회 정례화, 도입 규모 결정 시 지역 수요 반영	법무부, 고용부
36		일자리 사업 수립·집행 권한	• (현행)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발표 • (개선) 동 계획에 따라 법령제정, 신규사업 신설 및 인프라 등 구축(지역고용 거버넌스 역할·위상 강화, 플러스사업 신설, 지역고용 활성화법 제정, 지역 단위 일자리정보 시스템 구축)	고용부
37		고용 관련 인·허가 등 권한	• (현행) 고용부장관이 고용 관련 인·허가 권한 보유 • (개선) 직업소개 및 훈련 관련 권한 시도지사 이양 *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및 취소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취소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고용부
38		유해·위험 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 (현행) 고용부 장관이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사업 등록 권한 보유 • (개선)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	고용부
39		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인가 및 관리, 지도·감독	• (현행) 고용부 장관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및 관리권한 보유 • (개선) 시도지사에게 권한 이양	고용부
40		근로자	• (현행) 고용부 장관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권한 보유	고용부

구분	분야	제목	내용	부처 (진행상황)*
		파견사업 허가 권한	• (개선) 파견제도 전반 개선과 함께 지자체장에게 권한 이양(구체적 방안은 추후 발표)	
41		기능대학 설립·경영 권한	• (현행) 기능대학(폴리텍) 경영에 지자체 참여 無, 설립 추천 권한은 고용부 장관이 보유 • (개선) 경영과정에 지자체 참여 + 설립 추천 권한도 지자체장이 보유	고용부
4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지도·감독 권한	• (현행) 고용부·중기부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 (개선) 시도로 이양(관할구역 내)	고용부, 중기부
43		지역대학 재정지원·관리 권한 위임	• (현행) 교육부가 지역협력 위한 대학재정지원 사업 내용·참여대학 직접 결정,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 간접적 참여 • (개선) 지역혁신과 연계한 대학 재정지원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단계적 이양	교육부
44	교육 (4개)	비수도권 공립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 (현행) 공립대학 정원 및 학과 조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 (개선) 공립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정원 조정 및 학과 신설·폐지를 자율 조정 후 교육부에 사후 보고	교육부 (완료) ※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23. 1.)
45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	• (현행) 교육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 (개선) 시·도지사가 설립 승인	교육부
46		지자체 주도 지역인재 육성	• (현행) 교육부장관이 지역인재 육성 관련 기본계획 수립 • (개선) 시·도지사가 계획수립·추진	교육부
47		농어촌 보건진료소 설치 승인	• (현행) 인구 500명 미만 지역 보건진료소 설치시 복지부 장관 승인 • (개선) 복지부장관 승인 권한 폐지	복지부 (완료) ※ 시행규칙 개정(23. 6.)
48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 결정	• (현행) 농어촌도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규정 • (개선) 농어촌도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행안부
49	복지·문화 (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 (현행) 시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 (개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권한을 특례시부터 시범적으로 이양	복지부
50		문화산업진흥 시설 지정	• (현행) 문체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산업 진흥시설 지정 • (개선) 시·도지사가 지정	문체부
51		관광특구 지정요건 세부기준 규정	• (현행)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인프라 관련 세부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규정 • (개선) 조례로 위임	문체부
52		대중형골프장 지정 권한	• (현행) 이용료 등 법정요건 충족시 문체부장관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 (개선) 시·도지사가 지정	문체부
53		골프장업 등 체육시설업 등록	• (현행)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 • (개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문체부
54	제도	국가균형발전	• (현행) 낙후지역 지원 수요는 증가하나, 투자규모는 다소 정체('18년 9.9	기재부

구분	분야	제목	내용	부처 (진행상황)*
		특별회계 개선	조원 → '22년 10.9조원) • (개선) ▲지역자율계정 규모 유형 확대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확충 ▲낙후지역 위주로의 균특회계 편성	
55	일반 (4개)	지방이양 평가체계 강화	• (현행) 평가체계 미비(이행상황만 평가) • (개선) 지방이양 효과 검증 및 평가체계 마련	행안부
56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 (현행)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시도로 한정 • (개선) 특례시까지 출국금지 요청기관 확대 및 신속한 출국금지 요청·해제를 위해 법무부-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추진	법무부
57		국유재산 개발·활용 시 지자체 참여 확대	• (현행) 정부가 국유재산 개발·관리 • (개선) 지자체가 필요한 국유재산 매입 희망시 신속 매각 및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 지자체 공유재산과의 교환, 분납 확대 등	기재부

*주: 2023년 7월 행안부 점검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시점에 완료된 것만 푸른색 음영 표기(참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2023. 7. 13.)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3. 2. 10.),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 2023년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린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일괄개정 2023. 10. 31. 시행 2025. 5. 1.) 일괄개정을 통해 4개 법률상의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함

〈표 2-8〉 지방이양일괄법(2023년 10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부처	법률명	주요 사무 내용
해수부	마린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마린사업의 등록 등(→ 시·도) • 마린사업 승계 신고(→ 시·도) • 마린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도) • 마린사업 등록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시·도) • 마린사업 등록사업자 의무 위반 시정 조치 권한(→ 시·도) • 마린사업 등록취소 등(→ 시·도) • 등록기준 적합성 검사·확인(→ 시·도) • 과태료 부과·징수(→국가 또는 시·도)
해수부	무인도서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명예관리원 위촉(→국가, 시·도, 또는 시·군·구)
해수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국가 또는 시·도)
해수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관리청을 시도지사로 지정하고 지방 항만 관련 사업계획 수립, 복합시설용지 특례, 사업구역 지정, 사업구역 지정 해제 등의 권한 이양(→ 시·도)

자료: 연구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여 작성

- 2024년 1월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¹⁹⁾이 일괄개정되어 관련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

〈표 2-9〉 지방이양일괄법(2024년 1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부처	법률명	주요 사무 내용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 영업의 제한(사도→사도 또는 사군구)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 광고의 금지 등(국가→국가 또는 사도)
복지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사도→사도 또는 사군구) • 세부집행계획 수립 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요청 권한(국가 및 사도→국가, 사도, 사군구)
질병 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실태조사(국가 및 사도→국가, 사도, 사군구) • 역학조사의 요청 등(국가 및 사도→국가, 사도, 사군구) •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사도→사도 또는 사군구) • 한시적 종사명령(국가 및 사도→국가, 사도, 사군구)

자료: 연구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여 작성

○ 2025년 3월에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²⁰⁾이 일괄 개정되어 관련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

〈표 2-10〉 지방이양일괄법(2025년 3월 개정) 대상 법률 개요

부처	법률명	주요 사무 내용
환경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사도→사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사도→사도 또는 사군구)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사도→사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사도→사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 사후관리(사도→사도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환경부	지하수법	• 사군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국가→사도)
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명예감시원 위촉(국가→국가 또는 특별도지사사군구)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환경학습원 설치운영(사도→사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료: 연구진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참고하여 작성

□ 이재명 정부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각각 국정과제로 설정²¹⁾

○ (균형성장)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부권·호남권), 3개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를 국정과제의 목표로 설정

○ (자치분권 역량 제고)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계획

19) [시행 2025. 7. 31.]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일괄개정]

20) [시행 2026. 9. 26.] [법률 제20857호, 2025. 3. 25., 일괄개정]

21) 자료: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제3장 | 지역의 규제현안 분석



1. 규제현안 발굴 개요
2. 지역별 규제현안 분석

제3장 | 지역의 규제현안 분석

1. 규제현안 발굴 개요

□ 발굴 방법

○ 15개 시·도연구원 소속 연구진 대상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규제현안을 5개 내외 발굴 요청하여 취합

발굴 시 되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해당 지방정부에서 인식되는 핵심 규제현안을 발굴할 것을 요청

□ 주요 발굴 결과

○ 총 100건의 규제현안이 발굴되어 시·도별 평균 6.7개 발굴

인천이 가장 많은 14건을 발굴하였으며, 충북(9건), 충남(8건)·전남(8건), 경북(8건)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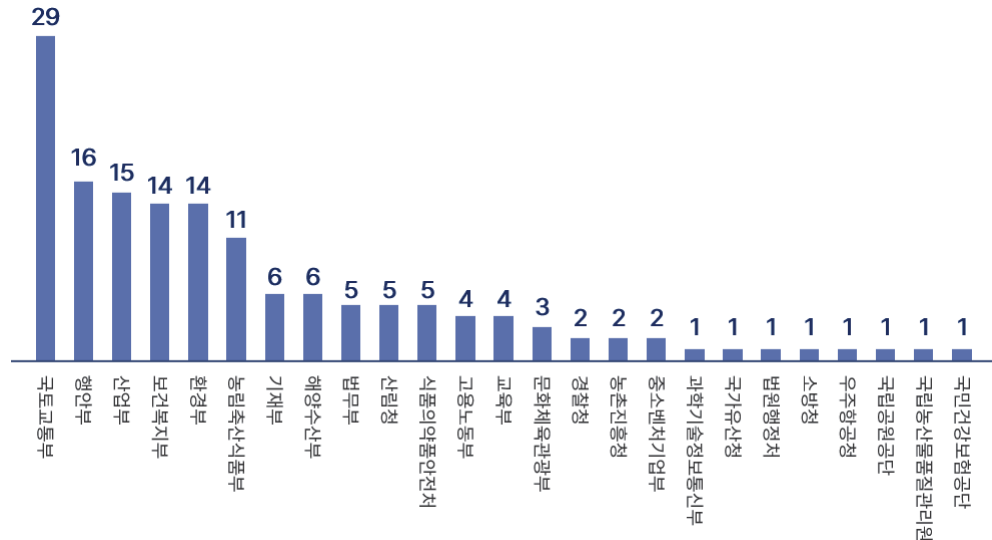
[그림 3-1] 시·도별 발굴 현황

○ 발굴된 규제현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을 살펴본 결과, 국토교통부 비중이 가장 큼

- 100건의 규제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151건으로 집계됨

- 가장 빈도가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29건)였으며, 행안부(16건), 산업부(15건)가

그 뒤를 이음



[그림 3-2] 발굴 규제현안의 소관 부처별 현황

자료: 연구진이 정리

○ 규제현안 관련 법령은 총 197건인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나타남

<표 3-1> 발굴 규제현안의 관련 법령 현황 (내림차순)

관련 법령명	건수	해당 조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	제6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40조(권한의 위임),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제4조(대상 사업), 제7조(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 [별표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농지법	4	제8조, 제31조, 제37조(전용허가 제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	3-5-2
근로기준법	3	제50조(근로시간),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63조(적용의 제외)
농지법 시행령	3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자료: 연구진이 정리

○ 전체 지역별 규제현안 목록은 다음과 같음

〈표 3-2〉 지역별 발굴 규제현안 목록

구분	지역	규제현안명
1	서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2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확대
3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합리화
4		화장품 제조업자 정보 표기 의무 규제 완화
5		재활용 자원 활용을 위한 폐기물 신고 의무 완화
6	부산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7		도시철도 경로우대 사항의 지자체 결정권한 보장
8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의 자율성 강화
9		지방채 발행 자율성 강화
10		탄력세율 범위 확대
11	대구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지정 권한 이양
12		군사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 총량 예외 인정
13		스마트역세권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
14		국방·군사시설의 기부대양여 방식 관련 양여재산 처리 개선
15		개발제한구역(GB) 조정가능지 해제 결정권한 이양
16	인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전
17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18		접경지역에 대한 중첩규제 완화
19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개선
20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
2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
22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23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률 개정
24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개선
25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력거래기준 완화
26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2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계 전면 개편 건의
28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입지허용
29		근로자의 안전과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용 편의성 간 기준 충돌 해소
30	광주	수소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 규제 완화
31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활용 규제
32		성인 실종자 DNA 등록 제한 완화
33		공공 야영장 및 전기 사용 규제 합리화
34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화신 등 민원서류 처리방식 개선
35	대전·세종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개선

구분	지역	규제현안명
36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37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현금납부 가능 대상 확대
38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간소화
39		주차전용건축물내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추가
40	울산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41		노면전차(트램) 혼용차로 관련규정 개정
42		자동차 폐차 시 제출서류 간소화
43		수소충전소관련 규제 완화
4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대상 확대
45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개선
46	강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확대 (해제 기준 완화)
47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 규제 완화
48		공공처리 유기성 슬러지의 '비료 원료 지정' 합리화
49		곤충산업-바이오·푸드테크 융합 거점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50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합리화
51		공유림의 유연한 활용·거래를 위한 규제 완화
52		국유임산물 매각·공급의 '지역 연계' 제도화
53	충북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시범지구 지정
54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및 지원금 확대
55		특수의료장비(MRI) 설치인정기준 완화
56		유기농·무농약 인증결과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중복검사 절차 개선
57		펄프카 '잔류콘크리트' 처리 체계 개선
58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유지 위한 지분율 변경
59		도축·집유장 연 1회 이상 별도 검사 의무 조항 삭제
60		식품첨가제(식물세포 배양용배지) 관련 규제완화
61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제도 개선
62	충남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기준 개선
63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공공 스마트팜 부지확보 근거 마련
64		신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한 RE100 달성
65		건축물정기점검기관의 일방향적 지정·통보 절차 개선
66		지방이양(전환사업)된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
67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변경
68		농업용 간이시설의 등기 불가 문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대장 기재 요건 개선
69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유치업종 완화
70	전북	특례시 지정요건 완화 및 재정여건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일부개정안
71		의료취약지역 시니어 닥터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안
72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3		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74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구분	지역	규제현안명
75	전남	해상풍력 외부망 REC 가중치 산정 기준 개선
76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
77		소규모 섬 지역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기준 완화
78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의 육지 반출 허가
79		푸드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법 개정
80		수산부산물 활용 규제 개선
81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E-8) 제도에 천일염 분야 추가
82		민간 우주시험발사체 발사 허가제도 및 보상기준 신설
83	경북	산불피해지역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 신설
8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처리기간 단축
85		기획발전특구 세제 지원 업종확대 및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근거 마련
86		BF 인증절차 개선
87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제한 완화
88		임업후계자 요건(연령) 완화
89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대상 확대
90		자연공원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 개선
91	경남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92		외국인 산업인력 쿼터 제한
93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규제
94		통영시 기획발전특구 지정 관련 규제
95		농지 소유·거래 규제
96		낙동강 권역 관광개발 관련 규제
97	제주	근해연승어업 갈치 포획 금지기간 해제
98		제주해녀 원정물질 주조지 기준 완화
99		지정면세점 크루즈 방문객 등 대상 면세품 판매 허용
100		크루즈 출국 보안검색 제도개선

2. 지역별 규제현안 분석

1) 서울특별시

(1)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확충이 저조한 바, 규제개선을 통해 거주지 내 노인복지시설 공급 활성화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발굴 방식: 서울시 본청 담당 부서 발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초고령사회 도래로 공적 돌봄 수요 증가

-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화 비율은 증가 추세로,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특히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및 요양등급 인정자 증가 추세
- 서울시민의 부모 부양에 관한 인식 추이를 보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감소하는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은 대체로 증가

○ 서울시 어르신 돌봄시설 부족

- 서울시 급여 이용자 대비 시설 정원을 나타내는 노인요양시설(시설·공생) 충족률은 2024년 기준 65.1%, 데이케어센터 공급률은 76.7%에 그침
-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인구 대비 시설 정원은 2%에 그침²²⁾

〈표 3-3〉 서울시 돌봄시설 수급 현황 (2024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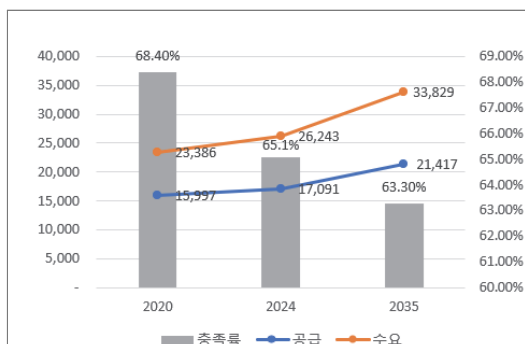
구분	돌봄시설 수요(a) (급여 이용자)	돌봄시설 공급		충족률*(b/a)
		시설 정원(b)	시설 수	
노인요양(시설·공생)	26,243명	17,091명	482개소	65.1%
데이케어	20,323명	15,586명	477개소	76.7%

*주: 충족률은 (시설 정원 / 급여 이용자) *100(%)을 의미함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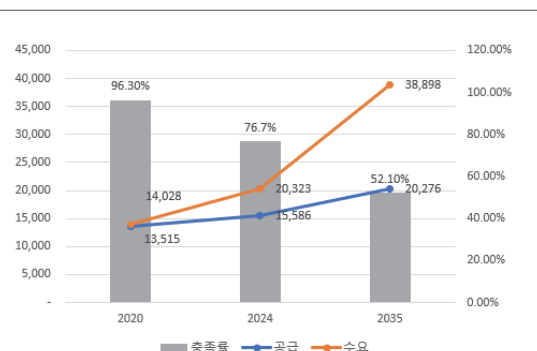
○ 2035년에는 서울시 노인요양 돌봄 수요 29%, 데이케어센터 수요 91% 급증 전망

- 계획 중인 공공부지에 모두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저조한 상황
- 2035년 기준 돌봄시설 충족률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63.3%, 데이케어센터는 52.1% 저조 예측



[그림 3-3] 노인요양시설 수급 전망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3-4] 데이케어센터 수급 전망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2) 디지털타임스, “초고령화 ‘노품아’ 아파트가 뜬다”, 2025. 4. 13.

○ 지방정부 주도 공공 노인복지시설 확보 시급

- 시민들은 규모·서비스 수준 높은 공공요양시설 선호하나, 공급 부족(38개소 3,307명)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희망하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로 ‘공공’(87.9%)이 가장 많이 꼽히며, ‘민간’(12.1%)은 그 뒤를 이음
- 정소양 외(2024a)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85.5%는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동네에 가능한 오랫동안 머물기를 희망’²³⁾
 - ※ 이른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에서 공간적 범위는 ‘동네(지역사회)’임
 - ※ 특히 대도시의 경우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4〉 지역특성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비교(정소양 외, 2024a)

(단위: %, 점, 5점 기준)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건강)주택거주 의향	64.9%	67.3%	78.6%
(건강)동네거주 의향	84.8%	84.6%	88.1%
(악화)계속거주 의향	45.3%	42.0%	34.3%
지역사회 만족도	만족도(3.56점)	만족도(3.58점)	만족도(3.48점)
	(만족) 전반적인 편의시설 (불만) 녹지·공원, 이웃 간 교류, 활동 기회	(만족) 녹지·공원, 안전 (불만) 이웃 간 교류 및 대중교통	(만족) 녹지·공원, 이웃 간 교류 (불만) 생활편의 및 대중교통
필요한 지원	신체적 건강 지원(40.4%) 물리적 환경(20.8%)	신체적 건강 지원(43.8%) 물리적 환경(21.3%)	물리적 환경(29.4%) 사회적 유대(26.4%)
근거리 필요시설	보건의료기관(46.9%) 일상용품 구매장소(24.8%)	보건의료기관(37.0%) 일상용품 구매장소(33.0%)	일상용품 구매장소(52.7%) 보건의료기관(33.3%)

자료: 정소양 외, 2024a,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정책Brief, 965, 국토연구원, p.6

- 정소양 외(2024a: 8)은 지자체 주도의 AIP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강조
 - ※ 단·중기적으로는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고 기존 제도 연계 및 사각지대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장기적으로는 지원대상 확대,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원 모델 발굴, 다양한 지역자원 발굴·연계 지속 등 적극적 역할 강조

○ 그러나 현 법제도 하에서는 지방정부가 AIP의 필수 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을 효과적으로 확충하기 어려움

- (부지 부족 및 재정 부담 과다) 서울시는 유희부지가 부족하고 재정 소요도 과다하여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렵고,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공사 단가가 낮아

23) 정소양·이진희·유희연·김유란·정유선, 2024a,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정책Brief, 965, 국토연구원, p.5

시 재정 부담 과다

※ 토지 3,000㎡ 확보 시 약 369억 원 소요 예상(서울시 내부자료, 2025)

※ 서울시 공사비 단가(3,668천 원/㎡) 대비 낮은 국비 지원단가('22년 1,980천 원/㎡)

- (주민 반대)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등 주민 반대로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난항을 겪기도 함²⁴⁾
- (관련 규정 부재) 경로당, 어린이집 등은 주택단지 조성 시 설치 의무가 규정되어있으나 노인요양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 우선 입소를 명문화하는 것과 달리 노인요양시설은 거주자 우선 입소 근거 조항 부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경로당
- 나. 어린이놀이터
- 다. 어린이집
- 라. 주민운동시설
- 마. 도서관(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사. 청소년 수련시설
- 아. 주민휴게시설
- 자. 독서실
- 차. 입주자집회소
- 카. 공용취사장
- 타. 공용세탁실
- 파. 「공동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24) MBN, “요양시설 혐오에 떠나는 노인들…서울 노인 10명 중 4명은 강제 지방행”, 2025. 9. 20.; 한국아파트신문, “‘노품아 정책’ 입주민 반대 난항…‘지역연계 단지 밖 시설’ 제안”, 2025. 8. 20.

참고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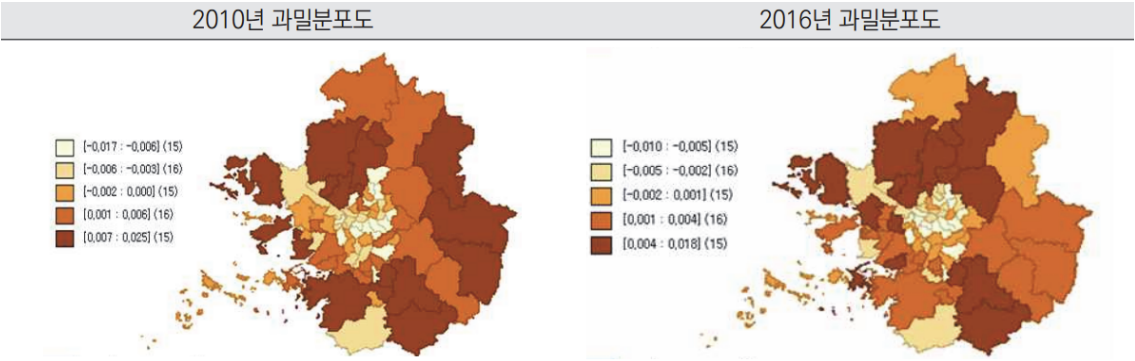
- 1.~7. (생략)
-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15.] [교육부령 제362호, 2025. 7. 15., 일부개정]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② (생략)

- ③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 1.~7. (생략)
 - 8.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서울시처럼 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부족이 지속되고, 해당 지역 어르신은 지가가 낮아 노인요양시설이 과밀 분포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공산이 큼 -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요양시설 저밀지역이나, 서울에서 접근하기 좋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이 과밀해지는 양상을 보임(박현봉·박환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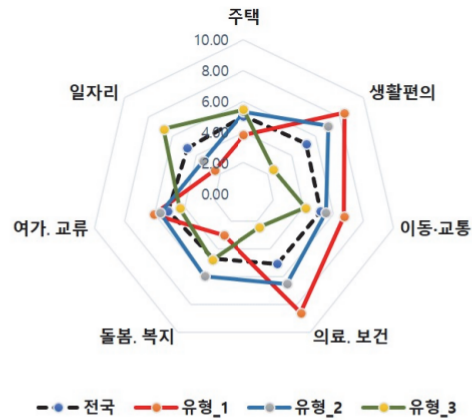


[그림 3-5] 2010년 및 2016년 시군구 단위 과밀 분포도

자료: 박현봉·박환용, 2019,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2(3) p.35

- 정소양 외(2024b)의 연구에서도 서울이 속한 유형1 지역의 돌봄·복지가 다른 유형의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²⁵⁾

25) 정소양·성혜정·윤정재·김태영·박성경, 2024b,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정주환경의 지역 격차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단위 : 점)

구분	부문 점수(평균)						
	주택	생활편의	이동·교통	의료·보건	돌봄·복지	여가·교류	일자리
전국	5.03	5.21	5.14	5.07	4.70	5.09	4.75
유형 1	3.81	8.39	6.71	8.60	3.01	6.05	2.46
유형 2	5.32	7.04	5.50	6.51	5.96	5.61	3.40
유형 3	5.48	2.51	4.13	2.42	4.80	4.29	6.70

[그림 3-6] 유형비교-부문간 비교

주1: 굵은 숫자는 해당 부문내 평가치가 가장 높은 유형이며, 밑줄친 숫자는 평가치가 가장 낮은 유형. 빨간색 숫자는 전국 평균보다 양호함을 의미

주2: 유형1은 대도시밀집편리형(서울 포함), 유형2는 도농특성병존형(광역시 일부), 유형3은 친환경소도시형(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등)으로 구분

자료: 정소양 외, 2024b,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정주환경의 지역 격차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p.131

□ 개선방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구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용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내용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거. 생략 너. 그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이하생략-		가.~거. 생략 너.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요양시설, 같은 법 제38조의 주·야간보호서비스 더. 그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이하생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거주자 우선 입소 근거 마련

현행		개정	
구분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	구분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
내용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좌동〉
	〈신설〉	구분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의6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요양시설, 제38조 주·야간보호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 제공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토지와 건물의 장기 임대를 통해서도 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특정 지역, 일정 시설규모, 법인 재산규모, 장기임대기간, 보증보험 등을 조건으로 민간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기대효과

- 도심 내 노인복지시설 공급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어르신도 자신이 살아온 집이나 동네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 안착에 기여
-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도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사회적 돌봄 비용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지방정부의 문화유산 주변부 관리 권한 확대

- 도심 슬럼화와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화유산 주변부 관련 규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합리적인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제도 확립
- 관련 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 발굴 방식: 서울시 본청 담당 부서 발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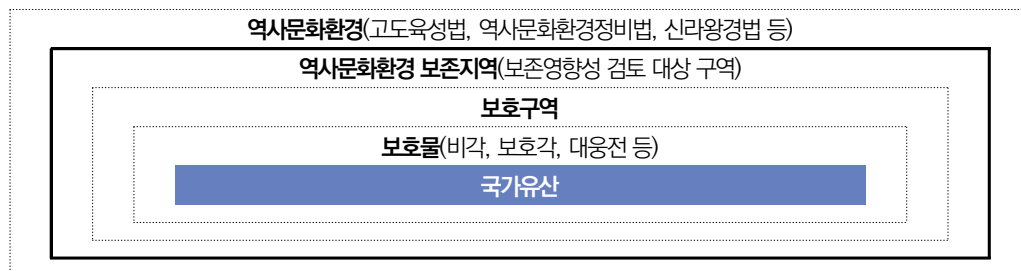
- 국가유산청은 2010년 지정문화유산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를 시행
 - 지정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구분

〈표 3-5〉 지정문화유산 유형

구분		정의	지정의 법적 근거	유형
지정 문화유산	국가지정 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23조~제26조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 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제70조 제1항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료: 국가법령정보포털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으로 국가유산의 가치 및 주변 환경, 그밖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3-7]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에 대한 공간적 개념 구분

자료: 국가유산청, 202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4차)」, p.2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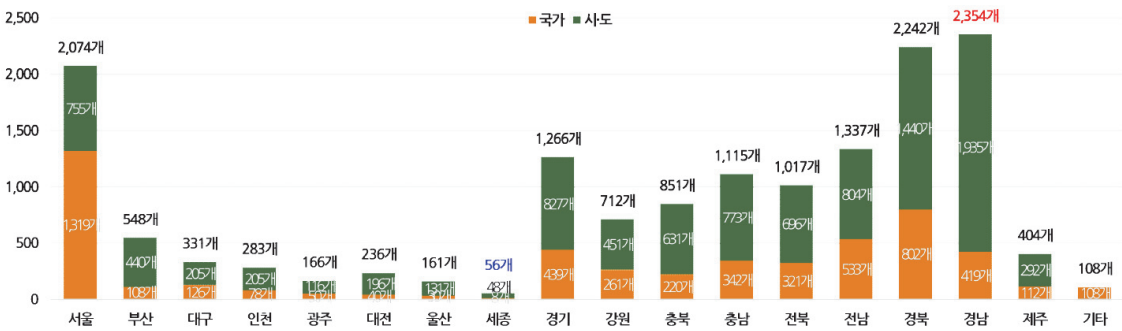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④ (생략)
-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261개의 국가유산(국가 지정+시·도 지정)이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총 1,319개(전체 국가지정유산의 24.8%)의 국가지정유산과 755개의 시 지정 유산(전체 시·도 지정 유산의 7.6%)이 있어 국가지정유산의 경우 전국에서 서울시 비율이 가장 큼(국가유산청, 2024: 135~136)

- 2009년 이후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 추이를 보면 연 평균 2.6%씩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지정유산의 증가율이 1.2%로 시·도지정유산(1.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국가유산청, 2024: 137)



[그림 3-8] 지역별 국가유산 지정 및 등록현황 (2023. 12. 31.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202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4차)」, p.136

- 서울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20.8㎢로 서울 면적의 3.4% 차지
 - 서울시 유산구역(14.9㎢)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20.8㎢)을 더하면 총 35.7㎢로 서울 면적의 5.9% 차지

〈표 3-6〉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면적 현황

(단위: km², %)

구분	합계	국가유산 주요 면적												국토면적	
		유산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행정 구역 면적(B)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율 (A/B)
		소계		국가		시·도		소계		국가		시·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6,770.0	2,238.6	100.0	2,078.5	100.0	160.1	100.0	4,531.3	100.0	2,552.7	100.0	1,978.6	100.0	100,449.4	4.5
서울	35.7	14.9	0.7	13.3	0.6	1.6	1.0	20.8	0.5	17.9	0.7	2.8	0.1	605.2	3.4
부산	207.0	92.1	4.1	90.1	4.3	2.1	1.3	114.9	2.5	102.1	4.0	12.7	0.6	771.3	14.9
대구	77.4	5.8	0.3	2.1	0.1	3.7	2.3	71.5	1.6	19.2	0.8	52.3	2.6	1499.5	4.8
인천	618.6	443.4	19.8	441.5	21.2	2.0	1.2	175.2	3.9	96.7	3.8	78.5	4.0	1,067.1	16.4
광주	49.9	0.9	0.0	0.5	0.0	0.4	0.3	49.0	1.1	9.6	0.4	39.4	2.0	501.0	9.8
대전	37.1	0.6	0.0	0.1	0.0	0.5	0.3	36.4	0.8	3.4	0.1	33.1	1.7	539.8	6.8
울산	92.1	3.6	0.2	2.4	0.1	1.1	0.7	88.5	2.0	19.1	0.7	69.4	3.5	1,062.8	8.3
세종	13.0	0.2	0.0	0.0	0.0	0.2	0.1	12.8	0.3	3.7	0.1	9.1	0.5	465.0	2.7
경기	571.0	108.0	4.8	99.1	4.8	8.9	5.6	463.1	10.2	302.2	11.8	160.8	8.1	10,199.7	4.5
강원	767.9	392.7	17.5	376.8	18.1	15.9	9.9	375.2	8.3	242.0	9.5	133.2	6.7	16,830.8	2.2
충북	278.1	30.1	1.3	27.3	1.3	2.8	1.7	248.0	5.5	119.3	4.7	128.7	6.5	7,407.0	3.3
충남	392.7	32.8	1.5	28.3	1.4	4.5	2.8	360.0	7.9	156.8	6.1	203.2	10.3	8,247.5	4.4
전북	357.6	43.8	2.0	31.5	1.5	12.3	7.7	313.7	6.9	167.7	6.6	146.1	7.4	8,073.3	3.9
전남	712.3	155.0	6.9	111.7	5.4	43.3	27.0	557.3	12.3	327.0	12.8	230.3	11.6	12,362.3	4.5
경북	899.0	137.8	6.2	123.5	5.9	14.4	9.0	761.2	16.8	450.1	17.6	311.1	15.7	18,424.1	4.1
경남	1,177.5	548.2	24.5	504.7	24.3	43.5	27.2	629.4	13.9	291.2	11.4	338.1	17.1	10,542.5	6.0
제주	470.3	228.6	10.2	225.6	10.9	3.0	1.8	241.7	5.3	212.0	8.3	29.8	1.5	1,850.3	13.1
기타	12.8	0.2	-	0.2	-	-	-	12.6	0.3	12.6	0.5	-	-	-	-

자료: 국가유산청, 202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4차)」, p.146

○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용도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도시 지역이 92.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2,330.5km²)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전국에서 3순위로 도시 지역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용도지역 비율이 28.8%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3-7〉 국가지정유산 중 지역별 역사문화환경 용도지역 현황

(단위: k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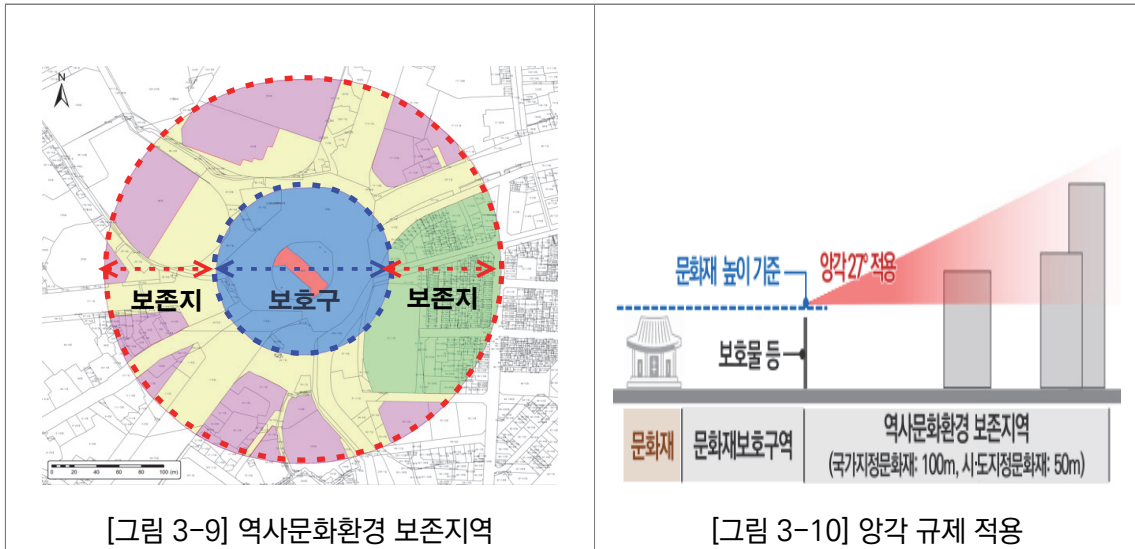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소계		관리		농림		자연환경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2,330.5	100.0	650.8	27.9	113.6	4.9	23.4	1.0	22.6	1.0	491.3	21.1	679.7	29.1	548.5	23.5	671.9	28.8	459.3	19.7		
서울	17.9	0.8	16.6	92.7	5.1	28.8	1.4	7.8	0.0	0.0	10.0	56.0	1.3	7.3	0.8	4.2	0.6	3.1	-	-		
부산	90.2	3.9	89.8	99.6	16.9	18.7	2.5	2.7	9.4	10.4	61.1	67.7	0.4	0.4	-	-	-	-	0.4	0.4		
대구	18.5	0.8	10.3	55.7	1.6	8.7	0.5	2.7	0.1	0.7	8.1	43.6	8.2	44.3	0.5	2.5	3.0	16.3	4.7	25.5		
인천	76.9	3.3	10.7	13.9	2.1	2.7	0.2	0.3	0.1	0.1	8.3	10.8	66.2	86.1	32.7	42.5	33.5	43.6	-	-		
광주	9.6	0.4	9.6	100.0	0.6	6.3	0.0	0.3	-	-	9.0	93.4	-	-	-	-	-	-	-	-		
대전	3.4	0.1	3.4	100.0	0.7	20.2	0.1	2.0	-	-	2.6	77.8	-	-	-	-	-	-	-	-		
울산	18.7	0.8	5.2	27.9	0.5	2.6	0.1	0.5	0.7	3.8	3.9	21.0	13.5	72.1	0.8	4.3	5.8	31.1	6.9	36.7		
세종	3.7	0.2	2.4	66.4	0.9	23.9	0.1	1.6	-	-	1.5	41.0	1.2	33.6	0.7	18.5	0.6	15.0	-	-		
경기	263.2	11.3	124.0	47.1	14.2	5.4	1.6	0.6	3.8	1.5	104.3	39.6	139.1	52.9	61.1	23.2	54.5	20.7	23.6	9.0		
강원	234.1	10.0	23.4	10.0	5.7	2.4	2.0	0.8	0.3	0.1	15.4	6.6	210.7	90.0	40.5	17.3	109.7	46.9	60.5	25.8		
충북	119.0	5.1	22.2	18.7	2.8	2.3	0.5	0.4	1.1	0.9	17.9	15.0	96.8	81.3	32.8	27.6	31.2	26.2	32.8	27.6		
충남	144.5	6.2	36.3	25.1	7.1	4.9	1.4	0.9	0.4	0.3	27.4	19.0	108.3	74.9	46.5	32.2	53.0	36.7	8.7	6.1		
전북	164.2	7.0	31.4	19.1	11.0	6.7	3.0	1.8	0.5	0.3	16.9	10.3	132.8	80.9	41.9	25.5	47.0	28.6	44.0	26.8		
전남	282.0	12.1	40.5	14.4	9.6	3.4	1.6	0.6	0.4	0.2	28.8	10.2	241.4	85.6	59.2	21.0	116.5	41.3	65.7	23.3		
경북	438.8	18.8	111.5	25.4	14.3	3.3	3.3	0.8	3.2	0.7	90.7	20.7	327.3	74.6	111.3	25.4	149.5	34.1	66.5	15.2		
경남	238.4	10.2	62.8	26.3	13.8	5.8	2.8	1.2	1.9	0.8	44.4	18.6	175.6	73.7	57.9	24.3	50.3	21.1	67.4	28.3		
제주	194.8	8.4	45.3	23.2	6.7	3.5	2.3	1.2	0.6	0.3	35.6	18.2	149.6	76.8	60.4	31.0	11.3	5.8	77.9	40.0		
기타	12.6	0.5	5.5	43.3	0.0	0.0	-	-	0.0	0.0	5.5	43.3	7.2	56.7	1.5	11.9	5.5	43.3	0.2	1.5		

주: ※용도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미분류·미지정·해상) 제외(222.2km²)

자료: 국가유산청, 202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4차)」, p.158

○ 서울시는 국가유산 경계 밖 반경 100m, 서울시 유산 경계 밖 50m 내 양각 27° 규제가 적용되어 높이가 제한되는 바, 인구가 밀집된 도심 내 문화유산 규제로 도심 노후화 및 주민 재산권 피해 심각

- 보존지역 내 인구밀도는 국가 지정 4,875인/km², 시 지정 9,830인/km²으로 전국 평균(국가지정 4,875인/km², 시 지정 9,830인/km²)에 비해 매우 높음
- [그림 3-9]와 같이 문화유산 바깥 지역까지 일률적으로 동심원 구조의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어 문화유산 보호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개선방안

○ 문화유산 주변부가 지방정부 도시계획을 통해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관련 법령 개정

- 현재는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청장 검토 의견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지정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기준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고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멸실·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여건과 지역 특색에 맞는 합리적 조치를 신속하게 하려면 시·도지사도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비용을 현재는 일방적으로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한 주체인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가 경비를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 행		개 정	
구분	「문화유산법」 제12조	구분	「문화유산법」 제12조
내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洩)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내용	____국가유산청장과 _____ 시도지사 _____.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시도지사는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분	「문화유산법」 제13조	구분	「문화유산법」 제13조
내용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내용	① _____ _____ 국가유산청장 검토 의견을 참조하여 _____.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여부를 조례로(추가) 검토하여야 한다. _____ 사도지사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시·도지사(추가) _____. 이 경우 국토계획과 적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추가)

(3) 지방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합리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비율 합리화로 학령인구 감소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및 지방정부의 재정난 완화
- 관련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소관 부처: 교육부
- 발굴 방식: 서울시 보천 담당 부서 발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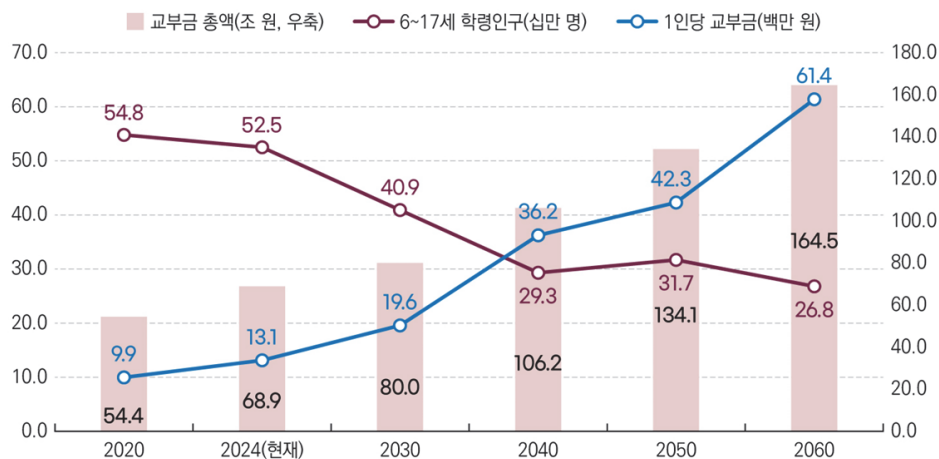
- 지방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
-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정리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특별회계임
 - 교육비특별회계는 자원 대부분(95.7%)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이전수입으로 충당함

〈표 3-8〉 교육비특별회계 자원 현황

구분	내용
중앙정부 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자원: 내국세의 20.79%, 교육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 이전수입	• 법정전출금(지방세 10%,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등 ※ 이때 지방세는 지방정부마다 차등 비율을 적용 - 서울시: 특별시세의 10% - 광역시 및 경기도: 도세 총액의 5% - 그 외: 3.6%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은 세수(국세,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되어 지속 증가
-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림 3-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32.3조 원에서 2024년 예산 기준 68.9조 원으로 14년간 36.6조 원 증가하였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4년 1,310만 원에서 2060년에는 6,140만 원 수준으로 증가 예상(안수지 외, 2025: 20)
 - 지방정부 이전수입도 〈표 3-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5년 10,989,507백만 원에서 2023년 15,839,975백만 원으로 8년간 4.9조원(약 44%) 증가



[그림 3-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인당 교부금 전망: 2020-2060년

원저자 주1: 2024년 교부금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공한 예산 기준임
원저자 주2: 2030-2060년 교부금 총액은 김학수 외 (2021)의 장기전망(유희회계교육세분 제외)를 참고하였으며, 1인당 교부금은 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추계(2025) 6-17세 인구 전망을 반영하여 저자(안수진 외(2025)) 산출
자료: 안수진 외, 202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 인구통계 Brief, p.20

<표 3-9> 지방교육재정 자원별 세입결산액 현황 및 추이

(단위: 백만 원, %)

구분	세입결산액	이전수입	중앙정부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중양정부	지방정부	기타		
2015	62,360,538	51,171,222	40,088,837	10,989,507	92,878	1,404,551	9,784,765
	100.0	82.1	64.3	17.6	0.1	2.3	15.7
2016	66,097,940	55,885,520	43,834,458	11,903,546	147,516	1,465,925	8,746,495
	100.0	84.5	66.3	18.0	0.2	2.2	13.2
2017	72,443,464	63,702,914	50,677,395	12,916,184	109,335	1,700,098	7,040,453
	100.0	87.9	70.0	17.8	0.2	2.3	9.7
2018	78,836,465	70,139,042	56,563,253	13,443,914	131,875	1,700,439	6,996,983
	100.0	89.0	71.7	17.1	0.2	2.2	8.9
2019	87,387,293	78,647,591	64,571,638	13,924,743	151,209	1,604,342	7,135,360
	100.0	90.0	73.9	15.9	0.2	1.8	8.2
2020	82,226,557	74,032,796	59,442,081	14,152,663	438,052	1,212,034	6,963,862
	100.0	90.0	72.3	17.2	0.5	1.5	8.5
2021	88,075,984	81,388,518	65,568,770	15,541,354	278,394	1,537,898	4,470,897
	100.0	92.5	74.5	17.7	0.3	1.8	5.1
2022	109,863,208	103,748,449	86,646,103	16,934,104	168,242	1,158,705	4,345,243
	100.0	94.5	78.9	15.4	0.2	1.1	4.0
2023	98,977,317	86,448,353	70,320,535	15,839,975	287,843	1,098,108	7,752,947
	100.0	87.3	71.1	16.0	0.3	1.1	7.8

원저자 주: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 및 한국교육개발원(2024)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3 회계연도)
자료: 구균철, 2025,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지방행정연구」, 39(3), p.48의 내용을 재정리

-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도 감소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세 지속될 전망이다
시 법정전출금은 중앙정부 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보다 높음

〈표 3-10〉 서울시 학생 수 및 법정전출금 변화

구분	2013년	2023년	증감률
市 학생 수 변화	1,208천 명	847천 명	△29.0%
市 법정전출금(지방)	23,209억 원	42,926억 원	86.4%
교육재정교부금(중앙)	48,216억 원	71,842억 원	49.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 세수 확대에 의한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 전출금 증가로 서울교육청 재정 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건전성은 지속 악화
- (서울교육청)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으로 관리채무 비율 감소('17년 22.8% → '20년 8.8%)
 - (서울시) 코로나 대응, 복지재정 증가 등으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하락 및 부채·채무 증가하는 상황

〈표 3-11〉 서울시 재정 여건 변화(2015~2023년)

(단위: 억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재정자립도	82	85	85	73	73	66	68	66	69
재정자주도	82	85	86	74	74	67	68	67	69
지자체 부채	66,242	77,005	78,955	79,074	104,559	145,628	187,935	193,602	180,892
지방공기업 부채	218,748	212,018	201,501	206,710	216,078	243,411	248,733	255,474	254,940
지자체 채무	34,230	34,770	37,452	38,356	55,713	81,422	107,749	118,980	114,425
민자사업 재정부담	579	549	475	457	503	715	706	908	618

자료: 서울재정포털 누리집, 연도별 결산현황

- 교육 투자수요 감소, 고령화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재정투자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일반재정-교육재정 간 재원 배분 재설계 필요
- (서울시) 예산 대비 경직성경비 및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22년 기준 77.9%, '13년 대비 8.6%p 증가)이며 가용 재원 부족 현상 심화

□ 개선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서울시 법정전출금 전출비율 하향
- 1996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와 교육청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시·도세 전출금 비율 하향, 전출금 감소에 따라 확보되는 가용 재원은 보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활용

현행		개정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내용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내용	② _____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중략)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중략)의 1천분의 36		3. _____ _____ 100분의 5 _____

□ 개선 효과

- 교육에 대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적절한 투자 규모 유지 및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재정 규모 자율적 확대 가능
- 재정투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일반재정-교육재정 간 재원 재분배를 통해 지방재정의 배분적 효율성 확보

(4) 화장품 제조업자 정보 표기 의무 규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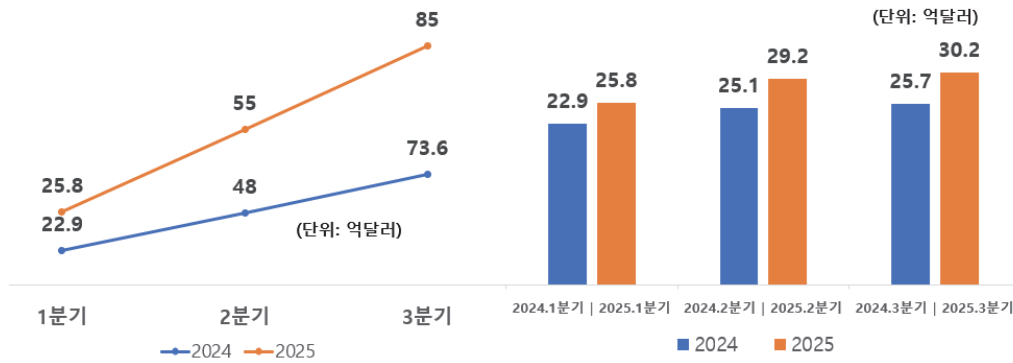
-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부정 경쟁을 예방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10조
-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굴 방식: 서울 소재 기업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국내 화장품 산업 성장세 뚜렷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수출 규모는 85억 달러(잠정)를 기록해 3분기 누계 수출 최대치 경신(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 10. 2. 재인용)

■ 2024년 3분기 누계 대비 14.9% 증가

■ 2024년 3분기 대비 17.5% 증가



[그림 3-12]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3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2025. 10. 2.

- 2012년 화장품 수출액은 10.7억 달러였으나, 2024년에는 102억 달러로 12년간 약 8.5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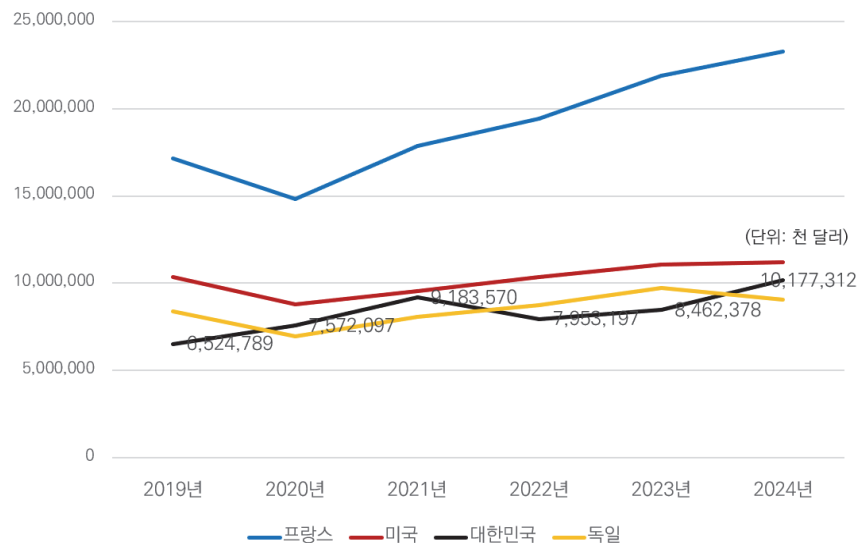
〈표 3-12〉 국내 화장품 연도별 화장품 수출액

(단위: 억 달러)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수출액	10.7	12.8	18.0	25.9	41.8	49.4	62.6	65.2	75.7	91.8	79.5	84.6	10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2025. 10. 2.

-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프랑스, 미국에 이어 화장품 수출 실적 세계 3위 달성



[그림 3-13]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 추이

주: 한국무역협회(K-STAT, '24. 12월 기준), 국가별 순위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수출실적은 관세청 자료 취합, 증감률은 2023년 대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산업 현황 분석” 의 내용을 편집

-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를 통칭하는 화장품 영업자 수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종사자 규모 상당
 - 2024년 기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27,932개소로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고, 제조업체 수도 4,439개소로 5년 전에 비해 약 1.5배 증가
 - 생산실적을 보고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13,976개소에 종사하는 인원은 모두 11만 4천 237명

〈표 3-13〉 화장품 영업자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책임판매업체	15,707	19,769	22,716	28,015	31,524	27,932
제조업체	2,911	4,071	4,428	4,548	4,567	4,439
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	-	112	185	217	231	221

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는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 2. 제조업체 · 책임판매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의 업체정보 2024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화장품 산업 현황 분석”의 내용을 재정리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 정보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화장품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이때 영업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2조의2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의미함

「화장품법」 [시행 2025.8.1.] [법률 제20767호, 2025.1.31., 일부개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2024.2.6.>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10. (생략)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2024. 2. 6.>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4. (생략)

③.~④. (이하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화장품제조업"이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의2(영업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장품에 제조업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 정보를 역이용한 부정 경쟁 등 기업 애로 및 소비자 혼동 발생

- 해외 바이어나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정보를 역이용해 유사품을 생산하거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부정 경쟁 발생

※ 2015년 외국에서 '립 틴트팩'이 인기를 끌자 해당 국가 화장품업체가 국내 제조사에 연락해 유사 제품을 만든 사례 발생²⁶⁾

※ 세계 1위 화장품 편집숍 세포라 유럽 매장에서 한국 브랜드 마스크팩이 인기를 끌자 국내 제조사에 연락해 자체 브랜드(PB) 제조를 의뢰한 사례 발생²⁷⁾

- 품질에 대한 실제 책임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있음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 정보로 인해 책임 주체에 대한 혼동 발생

○ 외국에서는 판매업자의 정보만 기재할 수 있게 하거나, 여러 영업자 중 하나의 명칭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만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비판 대두

- (미국)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중 하나의 명칭만 표시

- (일본)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정보 기재

○ 실제로 2020년 9월에 제조원 의무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이 의원 대표발의)되었으나 화장품 제조사들과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로 개정에 이르지 못함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당시 제안 이유로는 ①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 발생 ② 해외 업체들의 유사품 제조 의뢰 ③ 국내 수출기업 타격 발생 문제 등이 제시됨

- 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① 선진국에서는 제조원 표기 의무 규제는 없지만 제품 이력 관리시스템이 있는 점 ②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③ 제조업자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저하 우려 등이 제시됨²⁸⁾

○ 2021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따르면 <그림 3-14>에서

26) 경향신문, "시민들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반대' SNS캠페인을 하는 이유", 2021. 7. 14.

27) 한국경제, "제조원 표기' 놓고 갈라선 화장품업계 '제조원 공개 불가' vs '소비자 알권리 침해'", 2020. 11. 1.

28) 한국경제,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 규정 놓고 '갑론을박'", 2019. 4. 17.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략 3.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의 중점 추진과제로 ‘K-뷰티 브랜드 보호’가 설정되었으며, 2021년까지 혁신기술 보호 및 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 의무를 삭제하겠다는 내용 포함

- 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조업자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

비전	K-뷰티 혁신 가속화로 新성장동력 창출					
목표	▶ 수출확대 및 수출국가 다변화 * 수출액 : ('20) 4위 (75억 달러) → ('24) 3위 (100억 달러) * 신흥시장 수출비율 : ('19) 11.4% → ('24) 20% ▶ 글로벌 리딩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 글로벌 100위 기업 : ('20) 4개사 → ('24) 7개사 *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 ('19) 200개사 → ('24) 391개사 ▶ 신규 일자리 9.3만개 창출 * 일자리 : ('19) 30.6만명 → ('24) 39.9만명					
주요 과제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데이터 · 디지털 중심의 기술융합 실현					
	주요 수출 국가별 피부·유전체 데이터 기반 마련	(디지털뉴딜) 뷰티 산업 기반기술 개발	(그린뉴딜) 클린뷰티 친환경 화장품 개발	(소부장)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K-뷰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전후방 산업 확장 및 밸류체인 강화					
	화장품산업 지원인프라 구축	뷰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K-뷰티 클러스터 조성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추진		
	규제 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스마트 규제를 통한 산업 활성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	표시·광고 등 규제의 합리적 개선	K-뷰티 브랜드 보호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수출유망국가 입지 강화 및 고도화	신흥 경제권역 진출 지원	글로벌 규제협력 강화	K-뷰티 홍보 기반 수출 경쟁력 제고		
③ K-뷰티 브랜드 보호						

❶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혁신기술 보호·브랜드 중심 성장*을 위해 제조업자 표기의무를 삭제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21~ 식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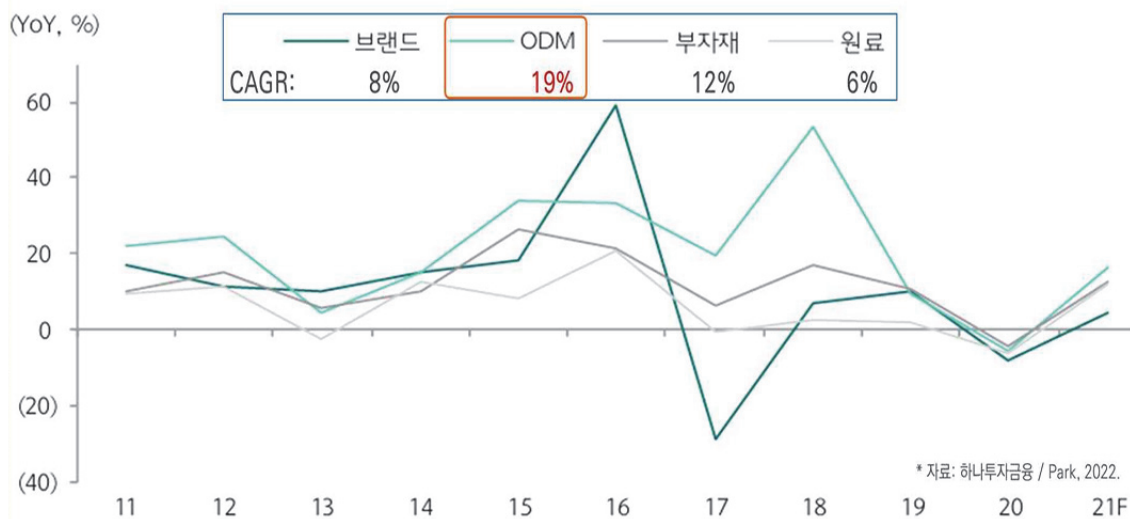
* (필요성)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 공개로 유사제품이 증가하여 중소 브랜드 경쟁력 약화 및 수출 감소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20.9)

** 제조업자 표시 의무는 삭제하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표시는 가능

[그림 3-14]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추진방향 및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관련 내용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K-뷰티 혁신 종합전략.

-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 현황을 고려할 때 제조업체(ODM)의 성장세가 뚜렷함
- 밸류체인별 화장품 시장 성장률을 보면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의 성장세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분석(박중대, 2022; 피부기반기술 개발 사업단, 2024: 10 재인용)



[그림 3-15] 밸류체인별 한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

자료: 피부 기반기술 개발사업단, 2024, 2023년 한국 화장품 기업현황 및 생산실적 분석, Trend Report 24-1호, p.10

- 국내 4대 화장품 ODM 기업의 고객사 수가 1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고객사도 글로벌 뷰티 기업, 동남아시아 · 중동 · 아프리카 · 남미의 소형 인디브랜드까지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남²⁹⁾
 - ※ 한국콜마 4,300개, 코스맥스 4,500개, 코스메카코리아 1,200개, 씨앤씨인터내셔널 400개
- 2024년 주요 화장품 기업 연간 매출 순위를 보면 상위 4위 내에 ODM 기업 2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이 각각 13.7%, 21.9%로 상위 1 · 2위 브랜드 기업을 상회
 - ※ 1위 LG생활건강(매출 68,119억 원, 전년 대비 성장률 0.1%) > 2위 아모레퍼시픽그룹(매출 42,599억 원, 전년 대비 성장률 5.9%) > 3위 한국콜마(매출 24,521억 원, 전년 대비 성장률 13.7%) > 4위 코스맥스(매출 21,661억 원, 전년 대비 성장률 21.9%)

□ 개선방안

-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라 화장품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제조업자 제외하도록 개정
-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영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로 개정
 -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영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개정

29) 서울경제, “고객사 1만 돌파…K뷰티 ODM '전성시대'”, 2025. 4. 23.

현 행		개 정	
구분	「화장품법」 제10조	구분	「화장품법」 제10조
내용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3.13., 2024.2.6.>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 10. (생략)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2024. 2. 6.>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 4. (생략) ③. ~ ④. (생략)	내용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_____ _____ 3. ~ 10. (생략) 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2. 화장품책임판매업자 _____ 3. ~ 4. (생략) ③.~ ④. (생략)

(5) 재활용 자원 활용을 위한 폐기물 신고 의무 완화

서울시에서 재활용 자원 활용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폐재활용자원 수거로봇의 설치와 신고 기준 완화 요청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굴 방식: 서울 소재 기업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특·광역시 신고 의무 기준은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로, 시·군 지역의 '2,000㎡' 이상인 자'에 비해 엄격

「폐기물관리법」 [시행 2025.8.7.] [법률 제20231호, 2024.2.6., 타법개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1.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5.] [환경부령 제1168호, 2025.4.4., 일부개정]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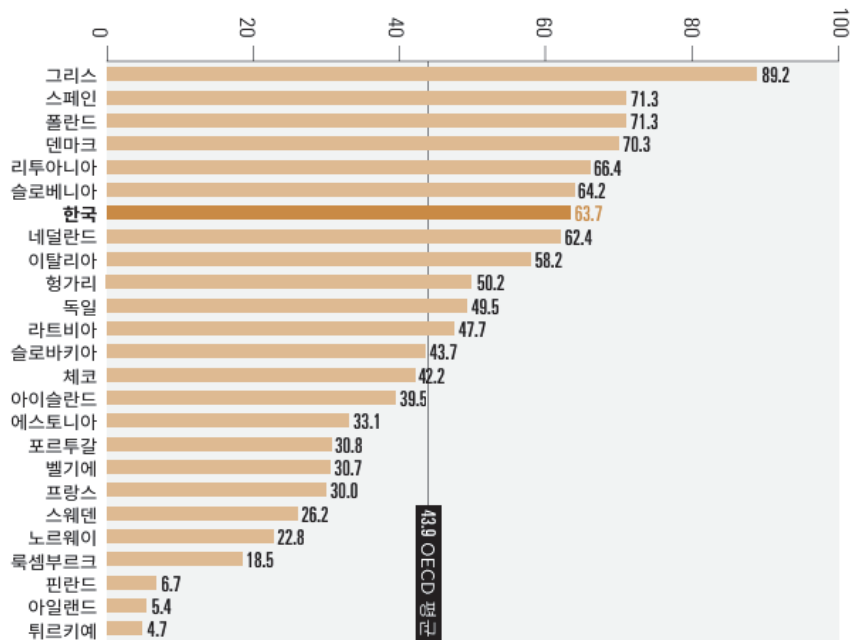
- ① ~ ② (생략)
- ③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3.7.19., 2018.5.17., 2023.12.28., 2024.6.28.>
 1. 폐지
 2. 고철
 3. 폐포장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부터 제3호의2까지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류만 해당한다]
 4. 폐전선(폐유를 함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1회용 컵(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④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선별·압축(減容)·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7.19., 2018.5.17.>
-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 재활용 자원 활용 산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상황³⁰⁾을 고려할 때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특히 시급한 상황

- 2023년 기준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1일 7,930톤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최근 5년간 평균 직매립량은 1일 878톤에 달함
- 한국 폐기물 재활용률은 63.7%로 OECD 평균(43.9%)보다 높지만, 소각 후 에너지화한 것을 제외한 순수한 재활용률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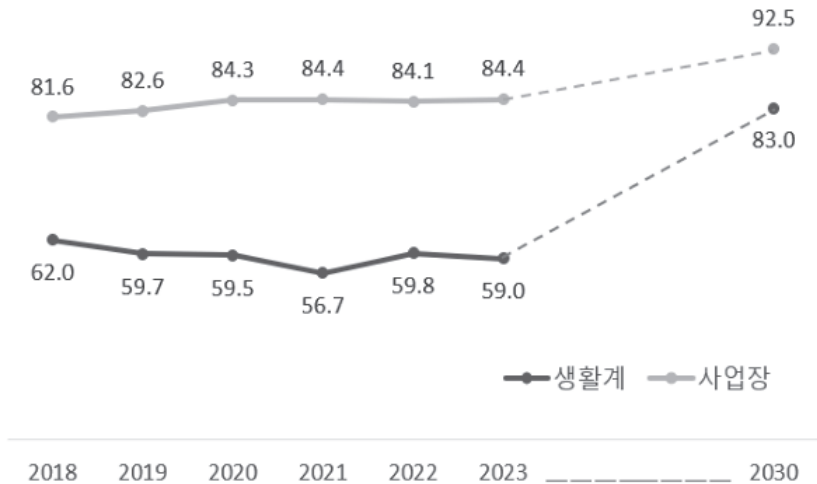
30) 한국일보, "'하루 727톤 묻는다'…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 2025. 4. 15.

31) 산업경제뉴스, "세계 최고 분리수거 명성 비웃는 낮은 재활용률, 뭐가 문제?", 2025. 8. 26. (원자료: 통계청, 환경부)



[그림 3-16] OECD 국가별 폐기물 재활용률

자료: 산업경제뉴스, “세계 최고 분리수거 명성 비웃는 낮은 재활용률, 뭐가 문제?”, 2025. 8. 26. (원자료: 통계청, 환경부)
특히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2023년 59.0%로 2018년(62.0%)보다 감소했으며, <표 3-1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활폐기물의 실질재활용률³²⁾은 2016년 기준 35.8에 그쳐 당시 재활용률(60.0%)에 비해 24.2%p 낮아, 재활용률과 실질 재활용율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3-17]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 현황과 2030년 목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평가, p.37(원자료: 환경·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32) 재활용율은 재활용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질재활용율은 잔재물을 제외하고 산정됨. 실질재활용율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자료원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임

〈표 3-14〉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률과 실질재활용률 비교

(단위: %, %p)

구분	재활용률(A)	실질재활용률(B)	차이(A-B)	실질재활용률 목표(2027년)
생활폐기물	60.0	35.8	24.2	61.1
사업장폐기물	79.1	69.1	10.0	83.1
건설폐기물	98.1	79.5	18.6	88.9
지정폐기물	56.0	51.6	4.4	51.6
총계	84.8	70.3	14.5	82.0

원저자 주: 1. 재활용률과 실질재활용률은 2016년 기준임. 2. 자료: (재활용률)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2020; (실질재활용률)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20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평가, p.71

○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을 통해 재활용 자원 활용을 위한 AI 기반 수거 로봇 서비스 출시 가능해짐³³⁾

- 폐기물을 관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밀폐형 압착차량, 덮개 설치차량 등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서비스의 경우 상기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 폐기물 수집 ‘허가’ 대상인지, 완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되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음.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밀폐형 압착차량이나 덮개 설치차량 등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10억 원 가량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2023년 9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출시 가능하다’는 적극적 유권해석³⁴⁾을 받음
-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AI 기반 재활용 자원 로봇 페트병 수거기를 운영하기 시작



자료: 한국경제, “AI로봇 재활용자원 처리·버스유리창 디지털광고, 규제특례 지정”, 2023. 10. 15.



자료: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버리면 쓰레기, 넣으면 용돈! AI 페트병 수거기 체험기”, 2025. 10. 13.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762>)

[그림 3-18] 재활용 자원 활용을 위한 AI 기반 수거 로봇 서비스 사례

33) 더나은미래, “국내 최초 ‘다중투입방식’ 수거로봇 출시…“올바른 재활용 문화 확산 기대”, 2024. 6. 7.

○ 그러나 허가대상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라고 해도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부담(동규칙 별표 17)과, 신고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동규칙 별표 17의2) 크게 증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17. 10. 19.>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기준
 - 가. 장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 나.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압축·감용·절단·사료화·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교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의2] <개정 2022. 1.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1.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 나. 위탁계약기간
 -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
 - 사. 삭제 <2011.9.27>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 나.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 다.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소음·먼지·침출수 등 환경오염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처리금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일정한 장소에 보관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생활폐기물이나 직접 배출자로부터 수거한 생활폐기물만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3. 삭제 <2011.9.27>

○ 생활폐기물의 낮은 재활용률 및 실질재활용률, 2030년 목표 수준,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임박한 상황, 글로벌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잠재력과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 필요성(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재활용 자원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전향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점

*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7,981천 톤('17년) → 14,629천 톤('23년)

*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 1.67조 원('19년) → 2.85조 원('27년) (전망치)

*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별 이슈로 '수거·선별' 과정에서의 '인프라 미흡으로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 난제'가 꼽힘

○ 일정 사업장 규모 미달 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는 영세한 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특·광역시 지역에서도 신고 의무 면제 기준을 현재의 1,000㎡'보다 늘릴 필요

-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신고제를 도입할 당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구분을 한 취지를 제·개정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은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기 위함임

- 즉 국민의 신체·재산·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신고 의무 면제가 이뤄졌던 만큼, 1,000㎡라는 사업장 규모라는 기준은 경제적 상황이나 재활용산업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특히 실질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폐플라스틱의 효과적인 수집이 유리할 수 있는 특·광역시에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이 보다 적극 추진되어야 할 필요도 있는 바, 특·광역시의 신고 의무 면제 기준을 시·군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할 필요

□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5항 각호에 제시된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 면제가 되는 지역별 사업장 규모 기준 구분을 삭제하고, 제66조 제5항에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로 일원화

현 행		개 정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내용	① ~ ④ (생략) ⑤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제4항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지역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인 자 2. 시·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	내용	① ~ ④ (생략) ⑤ _____ _____ _____ _____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 2. <삭제>

2) 부산광역시

(1)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 주요 내용 : 한국에서 진료받고 귀국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의료의 지속성 유지에 큰 제약, 의료관광정책의 효과성 등을 제한하고 있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 '한국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귀국한 외국인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
- 관련 법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 현재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의료 지식·기술 지원, 상담·교육 등)만을 허용하고 있고 국내 의사가 외국에 있는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진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발굴 방식: 언론보도, 연구자료 탐색 이후 전문가 자문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K-컬처의 확산 등에 힘입어 아시아 의료관광 강국으로 부상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117만 467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93.2% 급증한 수치(보건복지부, 2024. 4.3.)
 - 누적 외국인 환자 수는 505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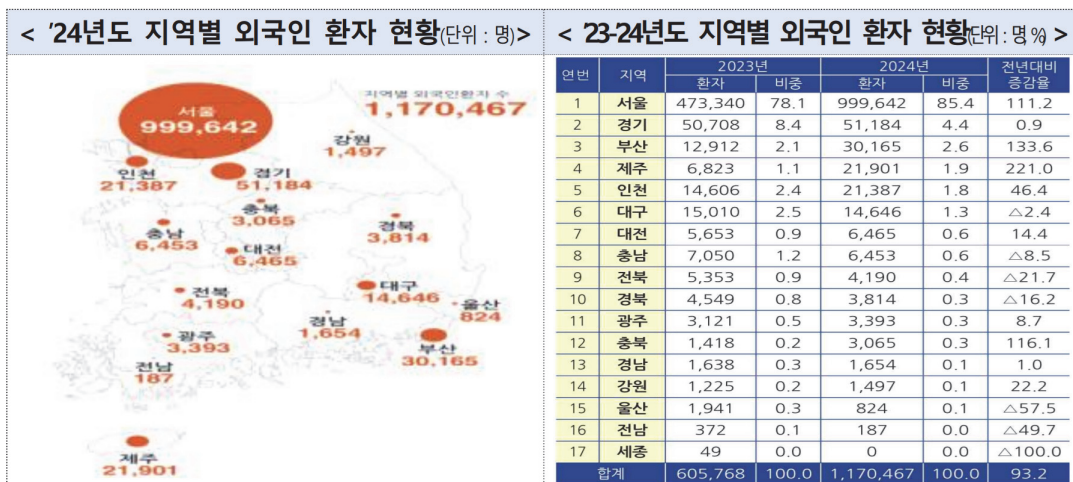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3-19] 2009~24년도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4. 4. 3.).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데, 2024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총 3만 165명으로, 전년 대비 133.6%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비수도권 1위 자리를 굳건히 함(보건복지부, 2024. 4. 3.)
- 부산의 의료관광 성장 동력은 전국적인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하는데, 피부과(+674.0%), 한방통합(+170.9%), 치과(+156.5%), 성형외과(+127.8%)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인 진료과목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보건복지부, 2024. 4. 3.)
- 부산의 의료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후관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잠재 수요가 부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



[그림 3-20]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 (2024. 4. 3.)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 부산시는 '2025 부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수목적 관광도시(SIT, Special Interest Tourism)' 조성을 강조한 3대 전략으로 의료관광 유치기반강화, 융복합 차별화, 타깃 브랜딩을 추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부산광역시, 2025. 4. 7.),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고 있음
- 그런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비대면 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재의 규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의료관광 중심도시로의 부상동력을 제약하고 있음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국내 의료인과 '국외 의료인' 간의 원격 협진(의료 지식·기술 지원, 상담·교육 등)만을 허용
 - 국내 의사가 외국에 있는 환자와 직접 소통하며 진료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①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2.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

- 부산시 서구의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의료관광특구)의 특화사업자인 부산대병원이 예외적으로 허용
-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의 진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
-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제약함으로써 환자 한 명당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하며, 긍정적인 구전 효과를 통해 새로운 환자를 유치하는 정상급 의료관광 체계 실현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이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는데, 의료관광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인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통적 접근을 중요시하는 복지국가에서조차 비대면진료와 같은 원격진료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김수정(2020)에 따르면, 독일은 전통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대면 진료를 신성시하여 '원격의료 금지 원칙(Fernbehandlungsverbot)'을 표준의사직업규정을 통해 엄격히 유지해 왔었음
 -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요구에 부응하여, 2018년을 기점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을 단행, 단순히 금지를 푸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처방전(e-prescription), 전산화된 환자기록부(electronic patient record) 등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원격의료의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김수정, 2020)

□ 개선방안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외 거주 외국인 환자에게 직접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비대면 진료의 전면 허용과 같은 광범위하고 논쟁적인 사안을 우회
 - '한국에서 대면 진료를 받고 귀국한 외국인 환자'라는 특정되고 위험도가 낮은 집단에 한정하여 사후관리 목적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현실적 접근
 - 제16조의2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후관리) 조항 신설

(신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6조의2(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후관리)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환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처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 의료행위(이하 "비대면 사후관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에 대하여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일 것
2. 비대면 사후관리에 대하여 환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었을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후관리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비대면 사후관리에 따른 의료인의 책임, 관할 법원 및 준거법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사후관리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후관리의 실시기준을 행정입법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내용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참조)

〈외국인환자 비대면 사후관리의 실시 기준(안)〉**1. 대상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대면 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2. 기술 표준

화상통신을 이용한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의 장비 미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금지한다.

3. 본인 확인 및 동의

의료기관은 비대면 사후관리 실시 전,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로부터 비대면 진료의 방식, 한계, 비용,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처방 제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 처방전은 환자와 협의한 방식(이메일, 보안 팩스 등)으로 환자 본인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전송한다.

5. 의료인의 판단권

의료인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거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비대

면 사후관리를 중단하고 대면 진료를 권고할 수 있다.

6. 기록 및 보관

비대면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대면 진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7. 책임보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비대면 사후관리 실시에 따른 의료사고 배상책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그에 준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규제 완화의 직접적 효과

- 비대면 사후관리 서비스 자체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유료 상담료 등)이 발생
- 치료의 전 과정에 걸친 포괄적 케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극대화하여 기존 환자의 재방문율을 높임
- 의료의 지속성 보장을 통한 이미지 제고로 잠재적인 신규 환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

○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은 높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외국인 환자 유치 경험을 보유한 부산의 의료기관에 사후관리라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획득할 기회를 제공

○ 부산시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더하고, 더 많은 고부가가치 환자들을 부산으로 유인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

○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이들이 소비하는 숙박, 관광, 쇼핑 등 지역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데 기여

○ 대구 등 타도시의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 도시철도 경로우대 사항의 지자체 결정권한 보장

- 주요 내용: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 여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결정에서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
-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6조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 발굴 방식: 언론보도, 연구자료 탐색 이후 전문가 자문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여러 논란의 근원이 되는 법조항은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임

「노인복지법」 제2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제26조 제1항만을 보면, 경로우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런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별표 1]은 '도시철도' 항목의 할인율을 '100분의 100', 즉 100%로 정함

〈표 3-15〉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100
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100분의 100
3. 고궁	100분의 100
4. 능원	100분의 100
5. 국·공립박물관	100분의 100
6. 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7. 국·공립미술관	100분의 100
8. 국·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 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100분의 50

○ 상위법 조항이 대통령령에 의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100% 운임 할인에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국비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한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을 법률자문한 결과 일의적(一義的) 규정이어서 지자체가 적용 여부와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위법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등(한국경제, 2024. 2. 5.), 국가와 지자체간 입장이 대립

○ 이러한 논란 속에서 그 재정적 책임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되는 구조가 지속되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로 역할

○ 무임으로 인한 소실 규모는 해마다 증가, 전국의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무임수송으로 인해 입은 손실액은 2021년 기준 4,717억 원에 달했으며(손종필, 2022), 최근에는 연간 7,228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철도경제, 2025. 5. 8.)

◆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액 (단위: 억원)

구 분	연평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588	4,455	4,717	5,367	6,174	7,228
서울교통공사	3,275	2,643	2,784	3,152	3,663	4,135
부산교통공사	1,303	1,045	1,090	1,234	1,406	1,738
대구교통공사	526	416	459	512	561	681
인천교통공사	319	212	240	307	366	470
광주교통공사	70	63	64	70	76	79
대전교통공사	95	76	80	92	102	125

◆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승차 손실비율 (단위: 억원)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당기순손실(a)	12,319	7,241	1,074	1,750	1,497	403	354
무임손실(b)	7,228	4,135	1,738	681	470	79	125
무임손실 비율(b/a)	58.7%	57.1%	161.8%	38.9%	31.4%	19.6%	35.3%

[그림 3-21]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손실현황

자료: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안전확보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익서비스비용 국비지원관련 국회 건의사항', 철도경제(2025. 5. 8.)에서 재인용.

- 이 문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부산광역시에서 더욱 심각
 - 부산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최초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23.9%(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그림 3-22] 전국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themaJipyo/eRegionJipyoThemaJipyoView.do>)

- 통계청은 2035년이 되면 부산의 고령인구 비중이 34%에 달해, 시민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국제신문, 2024. 9. 26.)
- 부산교통공사의 재무제표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명확히 보여줌
 - 2021년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948억 원이었는데, 이 중 노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이 1,09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56%를 차지(부산일보, 2022. 9. 7.)

□ 개선방안

- 본 문제의 대응은 '지방분권'과 '재정 책임성'이라는 핵심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함
 -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의 권한을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 재정적 책임을 지는 주체에게 이양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정책으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자기결정-자기책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법령 개정의 기본 방향은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운임 할인을 결정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임
-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 결정에서 국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
 - 대통령령의 할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등 수송시설의 무료 및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제26조를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구분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내용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내용	제26조(경로우대) ①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우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재정관련 의사결정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

-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황에 맞춰 운임 할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할인율을 50%로 조정하거나 일본 오사카시처럼 회당 소액의 요금(예: 500원)을 부과 가능
-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무임손실 비용의 25~34%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신성일·이진학, 2021)
-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기대
- 경직적인 무임승차 부담에서 벗어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절감된 비용을 시민을 위한 안전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할 재원 확보 가능
 - 노후 전동차 교체, 낡은 시설 현대화, 안전 설비 확충, 배차 간격 단축, 역사 내 공기질 개선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익 향상을 위한 투자 가능
- 평등하고 효율적인 교통복지 체계 설계 기여
- 현행 100% 무임 제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며, 도시철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대도시내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을 가능성이 높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지리적 불평등'을 야기
- 획일적인 무임 제도 대신,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복지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효율적이면서도 실질적 형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교통복지설계 가능
 - 예) 소득 연계 차등 지원: 프랑스 모델처럼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무임 또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에게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뉴스1, 2022. 12. 29.), 복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
 - 예) 교통수단 통합 바우처 제공: 도시철도에만 국한된 혜택을 버스, 마을버스, 택시까지 포함하는 연간 일정액의 '교통복지카드'나 바우처 형태로 전환

(3)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의 자율성 강화

-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의 청장 임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2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발굴 방식: 언론보도, 연구자료 탐색 이후 전문가 자문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의 정의
 -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 (Korean Free Economic Zones 웹사이트)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총 9개가 조성, 운영 중(Korean Free Economic Zones 웹사이트, 상동)

○ 2022년 구역내 총매출 122조 원, 누적투자총액 55조 원(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 체실태조사)

〈표 3-16〉 경제자유구역 현황

구역	지정 년도	전체사업체 매출(2022년)		투자금액			
				누계		2022년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계		1,722,895	100.0	551,293	100.0	35,106	100.0
인천	2003	1,059,361	61.5	413,750	75.1	24,079	68.6
부산진해	2003	372,442	21.6	62,398	11.3	3,931	11.2
광양만권	2003	145,086	8.4	41,153	7.5	1,964	5.6
대구경북	2008	123,407	7.2	18,885	3.4	1,397	4.0
충북	2013	11,663	0.7	2,870	0.5	536	1.5
동해안권	2013	64	0.0	157	0.0	45	0.1
경기	2008	501	0.0	4,752	0.9	58	0.2
울산	2019	8,568	0.5	6,417	1.2	2,622	7.5
광주	2020	1,804	0.1	911	0.2	473	1.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 부산시 관할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 지정되었으며, 부산시 강서구·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 면적 49.9km²(부산 30.2km², 경남 19.7km²)으로 조성(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웹사이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운영사무 처리를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시·도지사는 제3조의4·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4., 2021. 6. 1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 제27조의2에 따라 설치된 기구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임

-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의 임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 협의가 사실상 장관의 동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시도지사의 임명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 재정지원 등의 불이익을 우려, 임명권 행사에서 중앙정부의 의향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임명권 행사가 좌초된 사례가 확인

- 2017년 12월 전라남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정광영 당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지역본부장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
- 2018년 2월 7일 산자부에서 부적합 통보를 하자 전라남도는 재공모 절차에 돌입
- 남도일보(2018. 2. 8.)는 협의기관인 산자부가 전남도에 ‘부적합’이라는 쪽지 한 장으로 통보해와 임용을 둘러싼 의문만 증폭됐다고 보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제3항은 청장 임기 3년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적정 임기가 3년이어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임기의 법제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 확보의 어려움, 중도 사퇴 등에 따른 보장 취지의 훼손 등 문제가 확인

- 시도지사 관할 사무의 기구의 장에 관한 임기 등 임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 등을 감안해 스스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임명해서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의 인사권 제한 요인을 제거

현 행		개 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 임기, 임용기준 등 설정에서 지방 자율성 보장

- 임기,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혹은 규약(복수의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형태로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으로 정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3
내용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의 임기, 임용 기준 등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모두가 동의한 내용을 따른다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은 삭제

현 행		개 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내용	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이하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의 발굴 등에 경험이 있는 사람	내용	삭제

□ 기대효과

-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로 보다 능동적인 지역중심 발전전략을 추진
- 중앙정부의 수직적 간섭에 따른 불필요한 의사결정의 지연, 왜곡을 최소화
-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적 역할, 효과가 큰 부산 지역 입장에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의 의의는 중요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매출액,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어 2번째로 많음
 - 2022년 매출액 37조 2,442억 원(21.6%), 2022년 기준 누적투자금액 6조 2,398억 원(11.6%)
 - 인천에 비하면 양적으로 많이 뒤처지나, 인천과 함께 일정 수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지방채 발행 자율성 강화

- 주요 내용: 「지방재정법」 제11조은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발행이 가능하며, 한도 범위를 초과해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혹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함. 이러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해소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내부통제, 시장에 의한 통제를 통해 지방채 발행을 규율하자는 취지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언론보도, 연구자료 탐색 이후 전문가 자문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지자체 주도 지역발전 전략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가 적지 않은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세와 보조금 수입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움
-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발전 전략의 추진에서는 도시의 먼 미래에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의 투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방채를 동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투자는 ‘세대간 자원 분담’의 정당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이재원, 2019: 239)
- 특히 광역지자체인 시, 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발행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부산의 경우, 해양수도권 실현, 도시의 글로벌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지자체 또한 적지 않은 재원을 자체조달해야 할 필요
- 우리나라는 지방채 발행이 국가의 엄격한 규제하에 제한

규제 관련 법령 주요 조항 「지방재정법」 제11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예산대비채무비율은 지자체 전체 기준 7.57%(2023년 최종예산 기준, 지방재정365)
 - 특·광역시 평균 14.56%, 시 평균 2.08%, 군 평균 0.35%, 구 평균 0.12%
- 부산은 채무비율이 17.79%(2023년 최종예산 기준)인데, 주요 선진외국의 100만 이상 도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뉴욕 89.1%, 로스앤젤레스 198.0%, 베를린 178.2%, 도쿄도 41.6%, 오사카부 118.2% 등(미국 2023년, 독일, 일본 2022년 결산 기준)
- 우리나라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낮은 것은 높은 제도적 제약, 지방투자에 대한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의존적 관성과 지방에 대한 국가의 불신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
 -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관심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한도제한 없는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보장
- 중앙정부의 통제 대신 지방의회의 특별의결정족수 의결이라는 지자체 내부적 통제장치를 활용
 - 지방채 발행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려면, 지방의회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2/3의 찬성임
 - 근거 법조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규제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

□ 개선방안

-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국가의 외부규제를 지자체 내부의 자체통제로 변환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개정
 - 장기적으로는 시장통제 기제 마련 노력 필요
-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의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 승인 조항을 삭제
 - 외채 발행의 경우는 제외
- 대통령이 정한 한도액 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에서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도록 함

현행		개정	
구분	「지방재정법」제11조	구분	「지방재정법」제11조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삭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중앙정부 협의, 승인 절차가 제외되는 만큼, 관련 대통령령의 전면적 정비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정이 필수적인 부분 중심으로 제안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구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조
내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내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에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다음 연도의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내용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내용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 결과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내용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8.>	내용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8.>

□ 기대효과

-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전략 추진에서 충분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지역 특성에 합당한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책임성 확보가 중요
 - 형식적으로 발행한도는 두되, 실질적으로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적 환경이 실현

- 사실상 지방채 발행에 대한 국가규제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의 중요한 전진
- 지방의회를 통한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위상 강화와 지방민주주의의 성숙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 개편, 시장통제에 기반을 둔 지방채시장의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역할 할 수 있음

(5) 탄력세율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pm 100\%$ 로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 세입자율성을 확대하고 탄력세율 활용의 실효성을 향상
- 관련 법령: 「지방세법」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언론보도, 연구자료 탐색 이후 전문가 자문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탄력세율제도는 지방세목별로 표준세율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재원, 2019: 120)
 - 지방세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과세자주권에 해당(이재원, 2019: 120)
-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탄력세율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
-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은 크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
- 지방교부세를 통한 중앙정부의 재정 페널티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 세율을 높일 때,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이 발생
 - 탄력세율을 적용해 지방세를 늘리면 보통교부세 배분 산식에서 기준재정수입이 증가해 교부액이 축소
 - 안종석(2015: 8)에 따르면 지방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우 증가된 세수입의 30% 정도만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70%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상쇄되는 결과가 나타남
- 일부 지자체에서 탄력세율을 통한 과세자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중앙정부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탄력세율 활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
 - 2005~2006년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주택납세자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자, 서울의 강남과 송파 등 20개 자치구와 경기도의 성남과 고양 및 과천 등 17개 시가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10% ~ 50% 인하(정지선, 2021: 21)

- 정부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면서, 이를 봉쇄
 - 2006년 9월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부가(정지선, 2021: 21)
- 일시적인 부작용은 다소 추가적인 시간, 비용이 소요될 수는 있으나 경험과 학습을 통한 지자체 스스로의 자율적 교정 노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의 통제 강화에 이러한 기회가 막히고 세입 측면의 자율성이 약화
-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탄력세율 활용의 자율성이 높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표준세율의 $\pm 50\%$ 인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3조에 따라 10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대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 활용에서 불이익 없이 충분히 과세자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규제적 접근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선과제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이 강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수준과 동등한 탄력세율 활용의 자율성을 부여
- 대상 지자체 유형: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광역시의 자치구, 광역시의 군, 인구 50만 이상 시
 - 지역적 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이들 유형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하되, 점차적으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들 지자체 유형에 대한 예외적이고 영구적인 특례를 보장하자는 의미는 아님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탄력세율 적용범위를 $\pm 100\%$ 로 확대하고 레저세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허용
- 재산세 탄력세율 조항(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요건(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과 기한(해당 연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지방세법」 제00조/제42조

제00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구, 광역시의 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목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 조정하였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세율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
5.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세의 세율
6.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② 제111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세율 조정에는 요건 및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세율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레저세 세율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탄력세율 활용과 기존재정수입액 산정의 인과관계를 단절하여 보통교부세 제도의 불이익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

- 「지방교부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과 별개로 탄력세율에 따른 세수변화분이 각 자치단체의 실제 징수 실적과 징수 전망치를 통해 기존재정수입액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여지를 봉쇄

「지방교부세법」 제8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경우의 세수변화분은 기존재정수입액 산정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포함할 수 없다.

□ 기대효과

○ 보통교부세 제도의 불이익 발생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과제자주권 실현의 중요 장애물 제거

-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탄력세율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지방교부세법」 보완

○ 세입측면에서 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율에 대해 보다 확대된 자율적 결정권을 갖게 됨으로써 세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간의 관계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

○ 외부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 향상

- 외부의 각종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해 확대된 탄력세율 적용범위 내의 세율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함

3) 대구광역시

(1)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지정 권한 이양

- 주요 내용: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광역지자체장에게로 권한을 이양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실증 및 상용화 촉진
- 관련 법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지정('20.12월)으로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적용 등 서비스 실증을 통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추진 등 지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시범운영지구 지정 등을 통해 노선별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시험 중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지정('20. 12. 8.): 전국 6개 지구 지정(대구, 서울, 세종, 충북, 광주, 제주)
-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서비스 실시('22. 1. 5.) 운영지역: 테크로폴리스 / 운행차량: 소네트 2대, SWM 1대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추가 지정('22. 6. 24.) 시범운영지구: 설화명곡역~테크노폴리스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 시작('23. 2. 1.): 대공원역~수성알파시티 일원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추가 지정('23. 6. 27.): 서대구 KTX 역~수목원
- 자율주행시범운영지구 서비스지원사업 선정 국비('24. 5. 27.):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서비스지원사업 8억원 (국비 4억원, 시비4억원)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 시작('24. 9. ~): 테크노폴리스 일원/a2z 3대
- 자율주행자동차 무상운송 서비스 시작('24. 10. ~): 서대구역~서부정류장역/a2z 2대(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 연계)

○ 대구시 시범운영지구 현황

구분	위치	면적/연장	지정일자	'24년 계획	비고
	계	19.3km ² 45.35km		11대	
1	수성구 일원(수성알파시티)	2.2km ²	2020.12.08.	1대(소네트)	시범운영지구, 국+시
2	테크노폴리스 일원	7.7km ²	2020.12.08.	5대 (a2z, SWM)	시범운영지구, 국+시
3	국가산업단지 일원	9.4km ²	2020.12.08.		시범운영지구, 국+시
4	테크노폴리스~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2.6km	2020.12.08.		시범운영지구, 국+시
5	설화명곡역 ~ 테크노폴리스로	20km	2022.06.24.	1대(소네트)	시범운영지구, 국+시
6	서대구ktx ~ 수목원	18.2km	2023.06.27.	2대(a2z)	모빌리티 특화도시, 국+시
7	중구 일원(동성로)	4.55km	2023.12.05.	2대(소네트)	스마트도시규제샌드박스, 중구청, 교통공사

- 자율주행 시험운영지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정 및 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 개선방안

- 시·도지사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시킴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운영과 지정 권한을 일치시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내용	제7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지역 관련 정책과의 자유로운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지역의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기회 확대

(2) 군사 시설의 이전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제 총량 예외 인정

- 주요 내용: 국가 시설인 군사 시설 이전으로 인한 GB 해제를 해제총량 예외 대상으로 명문화
- 관련 법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군사시설(군 공항, 군부대 등)은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
 - 군사시설이 이전·폐지되는 경우, 해당 부지는 이미 장기간 인공적으로 훼손된 브라운필드(Brown Field)로서 보전가치가 낮으며, 보안 목적이 소멸되어 개발 제한 사유가 사라짐

- 현행 제도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총량 관리, 훼손지 복구, 부담금 부과 등 일반 해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국가시설 해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현재 해제총량 예외는 국가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에 한정되나, 군사시설 이전은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 차원의 국가사업에 준하는 성격이므로 동일하게 예외 인정 필요
- 대구(K-2),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자체는 공동 대응 필요하며, 주변지역 GB 해제 시 예외 적용 범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 국가시설인 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한 GB 해제를 해제총량 예외 대상으로 명문화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GB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도 동일 예외 규정 반영

현 행		개 정	
구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구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내용	3-5-3.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⑤ (신설)	내용	3-5-3.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⑤ 국가시설(군사시설 포함)의 이전·폐지로 인하여 보안상 개발제한 사유가 소멸된 부지의 해제

□ 기대효과

- 군사시설 이전 부지의 신속한 개발을 통해 국가·지역 차원의 전략적 토지 활용 촉진
- 장기간 훼손된 브라운필드의 재활용으로 도시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한 광역·국가 차원의 개발사업 추진 용이성 제고

(3) 스마트역세권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

- 주요 내용: 스마트 도시계획 적용이 필요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권한 개발 자율권 확보로 미래형 도시공간 개발 추진
- 관련 법령: 역세권법 제8조, 국토계획법 제36조, 제77조, 제78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도시정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스마트 도시계획 적용이 필요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개발에 대한 권한 자율권 확보를 통해 미래형 도시 개발이 필요
- 역세권 내 개발구역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유연하게 운용 필요

□ 개선방안

- 역세권 내 개발구역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 역세권법 제8조, 국토계획법 제36조, 제77조, 제78조

현 행		개 정	
구분	역세권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구분	역세권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내용	역세권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내용	<u>광역시·도·시·군·구</u> 는 「 <u>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u> 」 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의 <u>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u>

□ 기대효과

- 역 중심의 스마트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형 도시환경으로 개선

(4) 국방·군사시설의 기부대양여 방식 관련 양여재산 처리 개선

- 주요 내용: 기부대양여 방식의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시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로 반납하고 있으나, 이전지 주변지역의 주민지원 시설 건립 및 민원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
-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55조, 국방시설사업법 제12조
-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군부대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 해소를 위해 이전지 주변지역의 지원시설 건설 재원 확보 필요
 - 군부대 이전지 주변의 개발을 통해 민원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나 양여재산이 기부재산 초과 시 국고로 반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이 대체시설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해당 광역자치단체 특별 예산으로 활용토록 허가하여, 국방·군사시설 후적지의 지역개발 및 민원 해소 촉진
 -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초과 양여 재산을 광역지자체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요청
- 국유재산법 제55조, 국방시설사업법 제12조

현 행		개 정	
구분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구분	(신설)
내용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내용	국방·군사시설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유재산법」 제13조, 제55조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해당 광역지자체의 국방·군사 관련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 할 수 있다. ② 해당 광역지자체장은 양여될 일반재산의 가액이 대체시설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해당 광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군부대 이전지 주변지역의 지원 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민원 해소 기여

(5) 개발제한구역(GB) 조정가능지 해제 결정권한 이양

-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오차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
-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문제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과 같이 사업 시행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이는 타 개발법(도시개발법, 산업입지법 등)에서 지적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등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임

□ 개선방안

-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에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부지면적 등의 변경 결정'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추가

현 행		개 정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내용	제6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내용	제6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 2. <u>개별법령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써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부지면적 등의 변경 결정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u>

□ 기대효과

- 과도한 행정절차 이행 의무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관련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약 1~2개월 단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음

(6) 비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관련 지방세 감면 기간 연장

- 주요 내용: 우수기업 유치 등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의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 혜택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행법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를 3년 이내에 분양 또는 임대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
-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우수기업 투자유치나 지역 산업거점 구축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해 지자체가 공급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3년 내 분양 완료가 어려운 실정
- 이로 인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개발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 발생

□ 개선방안

- (법령 개정)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한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면세액 추징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용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② 2.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내용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② 2.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년) 재산세의 ...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5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 기대효과

- 지방산업단지 내 전략 업종 우수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 지방개발공사 재정 건전화 도모

(7)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차등 적용

- 주요 내용: 노동강도가 높고 재해 위험이 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산업에 획일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고용률을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
-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부과하고, 미달 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함

- 건설업은 옥외 작업이 많고 작업 위험도가 높아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우며, 장애인 근로자 스스로도 건설현장 취업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취업희망 3.3%)이 있음
- 이러한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업계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

□ 개선방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대통령령으로 '산업별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무고용률을 차등 적용

현 행		개 정	
구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구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내용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내용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별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건설산업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

(8) 과도한 공인중개사 과태료 규정 합리화

- 주요 내용: 계약 체결 후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를 지체한 경우에도 500만 원의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위반 횟수·고의성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지체 없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48시간 이내' 등으로 명확화
-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소상공인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행 규정은 거래가 완료된 매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 위반 행위의 경중,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세 공인중개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또한 '지체 없이'라는 용어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함

□ 개선방안

- (시행령 개정) 위반행위 발생 횟수(1차, 2차, 3차 이상)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
 - 법 제51조 제2항 제1호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시 개정) '지체 없이'를 '48시간 이내'와 같이 명확한 시간적 기준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구분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내용	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반행위 의 발생 횟수와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구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2023. 9. 21., 일부개정]
내용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③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내용	제5조(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③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시간 이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기대효과

-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우수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공공 사업시행자는 재정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추구하며 산업단지 분양에 집중할 수 있음

(9)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 주요 내용: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이라는 획일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기업인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요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 함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
-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련된 주요 법률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임. 특히, 특별법 제2조의2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천 제곱미터 내 30개 이상 점포'라는 전국 획일적인 지정 기준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 대구의 경우 지정된 곳이 2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시행령에 "지자체가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중앙부처 협의 과정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개정)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면적 및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 중앙부처와의 '협의' 규정을 '보고' 또는 완화된 형태로 변경하는 등 지자체 권한 강화 필요

현 행		개 정	
구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내용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구역을 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지역 실정에 맞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늘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및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

4) 인천광역시

(1)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지자체 이전

- 주요 내용: 최근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2023.3)은, 해제총량 여유가 있는 서울, 경기도는 달리 해제총량이 소진된 인천에는 편셋규제로 작동함에 따라,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예외적용 및 대체지정하용 면적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관련 법령: 「광역시계획수립지침」 3-5-2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국회토론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2023.9.19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최근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2023.3)은 인천에 혜택보다는 규제로 작용됨. 비수도권은 국가전략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제외, 해제권한 확대, 해제기준 합리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으나, 수도권은 해제총량의 여유가 있는 서울, 경기와 달리 인천만 해제총량이 소진되어 핀셋규제로 작동

〈표 3-17〉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현황

구 분	2006년 해제가능 총량	2009년 해제가능 총량	총해제가능면적	사용물량	잔여물량
수도권	124.507	114.496	239.003	150.998	88.005
서울	13.280	1.328	14.608	12.608	2.000
인천	6.997	2.099	9.096	7.966	1.130
경기	104.230	31.269	135.499	95.499	40.000
국가	46.8	79.8	126.600	35.164	44.636

자료: 인천광역시(2023),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p.23

-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예외적용이 필요하며,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의 경우에는 허용 면적 기준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0만㎡미만 →100만㎡ 미만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
- ③ 국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④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큰 사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개선방안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현행		개정	
구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	구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
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하 생략)	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 (삭제) 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하 생략)

○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향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2 개정)

현행		개정	
구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구분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3-5-3
내용	3-5-3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내용	3-5-3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을 해제가능총량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심지에서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
	⑤ 신설		

□ 기대효과

〈표 3-18〉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의 지자체 일부위임에 의한 기대효과

구 분	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공항철도 역세권중심의 공항경제권 활성화 유도
경제적 효과	공항철도 및 공항고속도로, 아라뱃길 등에 이미 갖추어진 광역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공항경제권 활성화에 필요한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개발을 지원하고, 공항철도 역세권의 일자리공급으로 산업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자료: 인천광역시(2023),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2)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 주요 내용 : 인천시 강화군은 타 사군과 달리 농업진흥구역 비율이 높음에 따라 농림지역 비율도 높아서 접경지역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사업 등의 시행이 어려워 지역활성화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의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지자체의 해제권한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발굴 방식: 연구자료(‘농림지역 지정해제권한 확대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17)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의 농림지역 비율은 약 59%로 김포시, 파주시 등 타 시·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림지역에는 각종 접경지역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광 등 개발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인구소멸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 제약이 되고 있음
- 강화군은 주로 오래 전부터 매립되어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화군의 농림지역 비율이 높은 것은 타시군보다 농업진흥구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직적인 농업진흥구역 해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강화군은 자투리땅 등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주기적으로 시행하였으나, 개발행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자체 해제면적 제한으로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왔음. 그러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의 현실화와 용도지역변경 권한의 조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즉,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승인 없는 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능면적을 1만㎡→3만㎡으로 확대하여 성장관리 차원의 농림지역 관리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표 3-19〉 용도지역 지정 현황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미지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411	17.4 (4.2%)	150 (36.5%)	243 (59.2%)	0.6 (0.1%)
농림지역 (계)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기타(㎢)
243	95 (39.1%)	128 (52.7%)	9 (3.6%)	11 (4.6%)

〈표 3-20〉 용도지역 지정 현황 (인천광역시 옹진군)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기타(㎢)
		관리지역	농림지역	
166	3.3 (19.9%)	148.9 (89.7%)	13.7 (8.3%)	0.1 (0.1%)
농림지역 (계)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기타(㎢)
13.7	3.1 (22.6%)	7.4 (54.0%)	-	3.2 (23.4%)

〈표 3-21〉 용도지역 지정 현황 (경기도 김포시)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기타(㎢)
		관리지역	농림지역	
277	102.3 (36.9%)	89.9 (32.5%)	83.0 (30.0%)	1.8 (0.6%)
농림지역 (계)	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기타(㎢)
83.0	27.7 (33.4%)	6.8 (8.2%)	0.1 (0.1%)	47.4 (58.3%)

〈표 3-22〉 용도지역 지정 현황 (경기도 파주시)

계(km ²)	도시지역(km ²)	비도시지역(km ²)		기타(km ²)
		관리지역	농림지역	
672	80.2 (11.9%)	297.7 (44.3%)	231.5 (34.4%)	143.1 (9.4%)
농림지역(계)	보전산지(km ²)	농업진흥구역(km ²)	농업보호구역(km ²)	기타(km ²)
231.5	137.8 (59.5%)	10.7 (4.6%)	0.1 (0.1%)	82.9 (35.8%)

- 농지법 제3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3만제곱미터 이하 토지에 대하여 해제가 가능하며, 1만m² 이하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시장에게 해제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지속되고 있음.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구역의 변경과 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개선방안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내용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내용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향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농업진흥지역 정비기준 (2017)」	구분	「농업진흥지역 정비기준」 변경(안)
내용	① 도로·하천·주변개발 등 여건변화로 잔여면적이 3ha 이하인 지역 ② 경지정리지역과 연결하고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중 그 규모가 1ha 이하인 지역 ③ 농업진흥지역 중 국토계획법 상 자연취락지구와 중복된 지역 ④ '92년 지정 당시 지목이 대자공장용지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잡종지로서 구획선에 위치한 토지 ⑤ 농업진흥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잡종·자염전·학교·주차장·주유소·창고·묘지인 토지 중 농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비농지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증설한 중소기업자 소유의 공장 부지	내용	1) 저수지 및 해안 제방과 단절된 3ha 미만의 미경지정리지역 2) 경지정리가 안된 5ha 미만의 단독 진흥지역 3) 경지정리가 안되고 경지정리지역과 연결된 5ha 미만의 진흥지역 4) 주택 등 건축물(3동이상)과 연결된 5ha 미만의 미경지정리지역 5) 성토 등으로 인삼재배, 하우스 등 비외발작물 식재된 5ha 미만 미경지정리지역 6) 군도이상의 도로공사지(미준공지) 5ha 이내 7) 도로(군도이상)과 경지정리지역사이의 5ha 미만의 미경지정리지역 8) 보호구역 중 농지이외의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 9) 경지정리지역내 10호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10) 군도이상의 도로와 단절된 10ha 이내의 지역

□ 기대효과

〈표 3-23〉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 완화에 의한 기대효과

구 분	지자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면적의 현실화로 성장관리 차원의 농림지역 관리 유도
사회적 효과	• 1만㎡~3만㎡범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결정권한을 시장이 보유함에 따라,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차원에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1만㎡이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은 군수가 용도지역 입안·결정권을 가짐으로서 지역차원의 용도지역 관리가 가능할 것임 • 농업진흥구역 해제기준을 여건에 맞추어 5ha로 현실화함으로써, 이전의 1ha보다 넓은 면적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성장관리 차원의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자료: 이종현(2017), 농림지역 지정해제권한 확대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3) 접경지역에 대한 중첩규제 완화

- 주요 내용 :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국가안보상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와 중첩되어 낙후도가 전국 최하수준으로 심화되었으나,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정책구분에 의하여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접경·도서지역의 낙후 여건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법령에서의 ‘수도권 제외’ 항목은,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제외’ 등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9조의8, 제104조의35, 제106조, 제121조의34 등
-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 발굴 방식: 연구자료(‘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2)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196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정책은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어, 수도권에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촉진시켜, 정부는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옹진군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와 중첩되어 낙후도가 전국 최하 수준으로 심화됨
 -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정책구분에 의하여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따라서 접경·도서지역의 낙후 여건을 감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원법령에서의 ‘수도권 제외’ 항목은,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은 제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감면)’ 등으로 제외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개선방안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내용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 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내용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 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접경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29조의8, 제104조의35, 제106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내용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접경지역 자원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접경지역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접경지역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접경지역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현 행	개 정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u>수도권</u>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u>수도권</u>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u>수도권</u>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u>접경지역 또는 수도권</u>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현행		개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u>수도권</u>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u>수도권</u>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u>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u>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u>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u>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 개정)

현행		개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내용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 200만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1.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개정)

현행		개정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내용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개정)

현행		개정	
구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구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내용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개정)

현행		개정	
구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구분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다) 지역: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내용	제27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할 수 있는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 가.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총사업비의 25퍼센트 나. 수도권 외의 지역: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주택법」 제57조의2 개정)

현행		개정	
구분	「주택법」	구분	「주택법」
내용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 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 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 용주택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 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 리 정할 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 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 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 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 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건설·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공 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 리 정할 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접경지역이거나 수도 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 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 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접경지역이거나 수도 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 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4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구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내용	제15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방대학(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건축법」 제80조의2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건축법」	구분	「건축법」
내용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내용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구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내용	제2조(정의)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 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제2조(정의)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 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서 접경지역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접경지역이거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구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내용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제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제외)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제외)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접경지역 제외)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 개정)

현행		개정	
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별표1 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 (제4조 관련)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별표1 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 (제4조 관련)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접경지역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35조 개정)

현행		개정	
구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 제35조(전문인력양성) ① 정부는 전략산업등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에 대한 거점구축형 인력양성사업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제44조의2)

현행		개정	
구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구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내용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은 제외)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기대효과

〈표 3-24〉 개별법규의 접경지역규제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구 분	각종 개별법규의 접경지역 규제개선으로 정주여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사회적 효과	수도권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인천시 강화, 옹진 등의 수도권 접경지역의 공동이슈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장래 통일에 대비한 기반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자료: 이종현(2022),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4) 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경제자유구역은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추가 지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관련제도는 일반법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개별법 우선 권한에 의한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 약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추진동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의 경우 각종 지원 조항의 수도권 제외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9조의7, 제16조, 제27조의8
-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 발굴 방식: 연구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인천연구원, 2023)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은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총량관리제, 핵심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수시지정 방식 도입 등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지역산업 연계 및 여건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및 추가 지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제도는 최상위 계획법에서 일반법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개별법 우선 권한에 의한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 약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추진동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서는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정하여 공장, 대학, 대기업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개별법에서는 해당 지역의 각종 인센티브 및 조세 혜택을 제한하고 있음
- 이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개별법의 각종 지원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투자 유도 등 경제특구의 본래 기능을 확보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지역, 고용 위기지역 등에 해당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 보조금 및 현금 등의 자금 지원에 관한 수도권 차별화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 수도권 재정분담 비율 조정 등의 법 개정 추진이 필요함
- 그리고 인천시의 투자유치 관련 조례에서 현금지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준, 대상, 범위 등에 대한 명확화, 인천시의 전략산업 명시, 전략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기준과 대상을 명확화 등의 개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대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9조의7, 제16조, 제27조의8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3.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구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제3호·제4호의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주요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향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제4조 개정)

현행		개정	
구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구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내용	제4조(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 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 30, 기화발전특구는 80:20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30, 기화발전특구는 80:2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70: 30, 기화발전특구는 80:20 5.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국가 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6.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의 최대 한도는 80%까지로 한다.	내용	제4조(재정자금 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 지원에 대한 재정자금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50:50, 비수도권은 70: 30, 기화발전특구는 80:20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50:50, 비수도권은 70:30, 기화발전특구는 80:2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50:50, 비수도권은 70: 30, 기화발전특구는 80:20 5.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국가 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6.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기술 분야 사업의 경우,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을 10%P 상향할 수 있다.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국가분담비율의 최대 한도는 80%까지로 한다.

□ 기대효과

〈표 3-25〉 재정자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기대효과

구 분	국가와 지자체간 현금지원비율 조정에 의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증대 유도
경제적 효과	- 경제자유구역은 2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제도는 최상위 계획법에서 일반법 수준으로 후퇴하였고, 개별법 우선 권한에 의한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 약화,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추진동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경제자유구역법의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방안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개별법 각종 지원 조항의 수도권 배제항목은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자료: 기윤환(202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인천연구원

(5)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 개선

- 주요 내용: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에 인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한 소비지수 기준에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출연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 배분에 대한 규정은 인천시에 우호적인 조항이 없이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연구자료(「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2)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은 비수도권인 부산시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광역시의 전체 세입규모는 비수도권인 부산시보다 작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인천시 본청 역시 세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부산시 본청과 울산시 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세입규모는 부산시 본청보다 열악함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확대에 인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지방소비세 배분을 위한 소비지수 기준에 불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출연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 배분에 대한 규정은 인천시에 우호적인 조항이 없이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2, 제17조의2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 즉 인천시는 서울시 및 경기도와 같은 재정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인천시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대상 단체에서 제외시키고, 재정지원계정 배분과 관련해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규정 제4조1항1호와 2호에 따라 배분할 필요가 있음³⁴⁾

□ 개선방안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내용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내용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서울특별시·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개정)

34) 임상수·채은경·안지선,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2022, p.79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구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2021. 12. 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내용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7. 24., 2019. 12. 31., 2021. 12. 7.>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 관련 하위법령 개정방향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제정 운용규정」 제4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구분	
내용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제3조제1호에 따라 자치단체에 재정 지원하는 금액은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제정의 재원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배분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출한다. <일부개정 2020.5.18.> 1. 광역자치단체 전년도 재정력 지수가 1 이상인 자치단체(이하 “불교부단체”)의 직전 5개년도 재정지원 금액 평균 배분 비율 중 최소값을 기본 배분율로 정하고, 해당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3%를 기본배분율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직전연도 12월말 기준 전국 인구수 대비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 비율을 기본배분율로 한다. <일부개정 2020.5.18.>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광역자치단체의 전년도 “재정력 역지수(1에서 재정력지수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합계에서 개별 광역자치단체 전년도 재정력 역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다만, 불교부단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0.5.18.>	내용	제4조(재정지원 기준) ① 작동 1. 작동 2. 작동

현행		개정	
구분		구분	
내용	3. 시도별 배분액이 직전연도 대비 4%에서 8% 사이에 증가한 경우 증가금액의 50%를, 8%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고, 시도별 배분액이 직전연도 대비 2%에서 4% 사이에서 감소한 경우 감소금액의 50%를, 4% 초과 감소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한다. <개정 2012.12.14.>	내용	3. 삭제
	4. 제3호까지 적용하고 난 후 남거나 부족한 재원은 제3호까지 적용한 배분 비율대로 추가 배분하거나 환수한다. <개정 2020.5.18.>		4. 삭제

□ 기대효과

〈표 3-26〉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의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변경에 의한 인천, 충남, 전북의 재정지원 형평성 개선유도
경제적 효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제4조제1항제3호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경우에 재정지원계정 배분액이 현실적으로 증가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로만 배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와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대한 배분 측면에서 상당부분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됨.

자료: 임상수·채은경·안지선(202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pp.77-79

(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

- 주요 내용: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2019년에 수도권사업과 비수도권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한 이후에는,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동일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
- 관련 법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연구자료(「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인천연구원, 2023)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1999년부터 시행된 이후, AHP분석, 고용효과분석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편하여 왔음
-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사업과 비수도권사업의 평가항목과 비중을 이원화하여,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사업은 지역균형발전평가를 강화(5% 상향)하고 경제성을 축소(5% 하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음
- 2019년 이후에 비수도권 사업은 낮은 B/C값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가점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수도권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B/C값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되지

않아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 수요가 부족한 수도권 낙후지역은 지역균형발전 가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동일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졌음

〈표 3-27〉 2019년 AHP 가중치 개편 후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 비교

구분	제도 개편 이전 (2017~2019년)		제도 개편 후 (2019~2023년 5월 기준)					
	전체		전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B/C 0.8 미만 통과	B/C 0.8 이상 미통과	B/C 0.8 미만 통과	B/C 0.8 이상 미통과	B/C 0.8 미만 통과	B/C 0.8 이상 미통과	B/C 0.8 미만 통과	B/C 0.8 이상 미통과
수도권	0.0% (0/17건)	5.88% (1/17건)	2.4% (1/42건)	9.5% (4/42건)	0% (0/18건)	11.1% (2/18건)	4.2% (1/24건)	8.3% (2/24건)
비수도권	0.0% (0/41건)	4.88% (2/41건)	20.3% (28/138건)	2.9% (4/138건)	17.4% (8/46건)	6.5% (3/46건)	21.7% (20/92건)	1.1% (1/92건)

주: AHP 점수 0.5 이상 사업은 통과, AHP 점수 0.5 미만 사업은 미통과로 표기

○ 개선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의 이원화는 유지하되,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는 것을 제안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에서 항목별 가중치는 수도권에 한해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항목 모두 2019년 이전으로 환원하고 지역낙후도는 균형발전지수 등의 가·감점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³⁵⁾

구분		2019년 이전	⇒	2019년 이후 현재		⇒	개선안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가	경제성	35~50%		30~45%	60~70%		30~45%	35~50%
중	정책성	25~40%		25~40%	30~40%		25~40%	25~40%
치	지역균형	25~35%		30~40%	-		30~40%	25~35%
	지역낙후도	가·감점제		가점제	-		가점제	가·감점제

[그림 3-23] 예비타당성조사 가중치 개선안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종합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2. 정보화 사업
 - B/C 분석시 :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 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5) 김동근 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인천연구원, 2023, p.116~117

3. 기타 재정사업
· 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 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③ 정책성 평가 항목 중 사업추진 여건, 정책효과, 사업별도평가항목의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1.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30~40%, 정책효과 60~70%
2. 사업별도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 사업추진 여건 20~30%, 정책효과 50~60%, 사업별도평가항목 20~30%
④ 사업별도평가항목 중 재원조달위험성 평가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은 총사업비에서 이미 확보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총사업비의 50% 재원을 확보한 경우 5점...90% 이상 확보한 경우 9점 부여
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중장기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AHP를 활용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각 개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개량사업은 AHP와 도로 위험도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로 판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 각 분석영역 별로 100점 평가를 시행하여 영역별 평점 및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한다.
1. 3개 평가영역 모두 85점 이상이거나 종합평점이 255점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 적정
2. 3개 평가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이 75점 미만이거나 종합평점이 225점 미만인 경우 :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요구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이 경우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보완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개선방안

○ 관련 법률 등 개정 방향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내용	제50조(종합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가 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u>경제성 60~70%, 정책성 30~40%</u>	내용	제50조(종합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가 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u>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 25~35%</u>

□ 기대효과

〈표 3-2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변경에 의한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 유도
사회적 효과	•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상황의 불합리와 수도권 낙후지역의 역차별이 있었으나, 수도권 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내부의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임. 최근 수도권 내 지역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어 공공투자사업에서 수도권 균형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음

자료: 김동근 외(2023),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인천연구원, p.116

(7) 대리처방 가능한 대리수령자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고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시설 종사자를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인정하지 않아 지속적인 진료와 약 복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만성질환을 가진 요양시설 입소자는 대리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약 복용 관리가 가능한 재가시설 종사자를 대리수령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시급
- 관련 법령 :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과
- 발굴 방식: 2025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며 진찰을 받은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여야 하나,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③ 환자의 형제자매
- ④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④의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⑤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하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장기요양급여*을 받거나 신체가 불편한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여야 하나,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 없이 거동이 곤란하거나 대리처방 받아줄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장기요양급여: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환자보다 장기요양등급이 높거나 신체·인지기능이 떨어지는 환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자 범위에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리처방이 불가하여 계속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처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개선방안

- 대리처방이 가능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구분	의료법	구분	의료법
내용	제17조의2(처방전) ① (생략) ② (중략)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내용	제17조의2(처방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중략)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예: 「의료법 시행령」 제10조 2항)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처방 가능한 대상자를 중증 수준의 환자로 한정하는 단서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의료법 시행령	구분	의료법 시행령
내용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3. (생략)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내용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표 3-29〉 전문가 검토의견

구분	내용
조문해석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의사 판단) - 장기요양등급 1급 및 2급은 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도 환자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판단 가능할 것 - 평소 진료 시 주치의의 대리 상담 처방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지참 필요
관련법 및 고시 개정 필요	-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달리 재가급여는 노인 가정에 단독 방문하여 시간제로 근무하므로 대리처방에 따른 요양보호사 급여 체계 검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서 대리수령 관련 업무 내용 추가 필요

자료: 인천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 기대효과

- 기존 대리처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투약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

- 현행 법령상 대리수령자 요건에 준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있었던 대상을 제도적으로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

(8)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아동에게 내국인 아동과 달리 취학통지나 사전 입학안내 절차가 없어 보호자의 혼선과 행정기관 간 반복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아동도 취학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를 위한 기초 정보를 관계 부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
- 관련 법령: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 소관 부처: 교육부
- 발굴 방식: 2025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내국인 아동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며, 해당 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취학 의무는 없고 입학 신청이 가능하다고만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9조에 따라 거주지 학구 내 초등학교의 장에게 직접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음
- 입학 또는 전학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출입국 사실, 외국인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검토한 후 입학을 허가하고 있음

〈표 3-30〉 내국인과 외국인의 취학대상 아동 현황비교(2025.2 기준)

구 분	부평구 관내 2025년 취학 대상 아동(2018년생)		부평구 등록 외국인 수
	내국인	외국인	
인원 수	2,995명	218명	17,078명 (전국 69개 자치구 중 6위)
취학의무	있음	없음	
취학통지서 발급여부	발급	미발급	
취학방법	별도의 신청 없음	초등학교장에게 입학 신청 → 학교장 승인	

- 입학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외국인 보호자에게는 별도의 취학 안내가 필요함
- 외국인 아동은 법령상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입학을 위해 반드시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하나, 이 사실을 모르는 보호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취학 배정 및 통지서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일부 학교에서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보호자에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라고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출입국 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함에도, 이를 알지 못한 보호자들이 여러 기관을 반복 방문하게 되어 민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국내 거주 외국인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F5 비자를 가진 아동의 보호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복적으로 취학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46만명, 총 인구 대비 4.8% 역대 최대(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발췌)】

- 2023년 외국인주민 수, 전년 대비 20만명 증가(8.9% ↑)해 역대 최다
* ('17년) 186만 → ('18년) 205만 → ('19년) 222만 → ('20년) 215만 → ('21년) 213만 → ('22년) 226만 → ('23년) 246만
- 국내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는 '22년 대비 7,809명(2.8% ↑) 증가

구분(단위:명)	외국인 주민수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	우리나라 총인구
2023년	2,459,542	289,886	51,774,521
2022년	2,258,248	282,007	51,692,272
증감	201,294	7,809	82,249
비율(%)	8.9	2.8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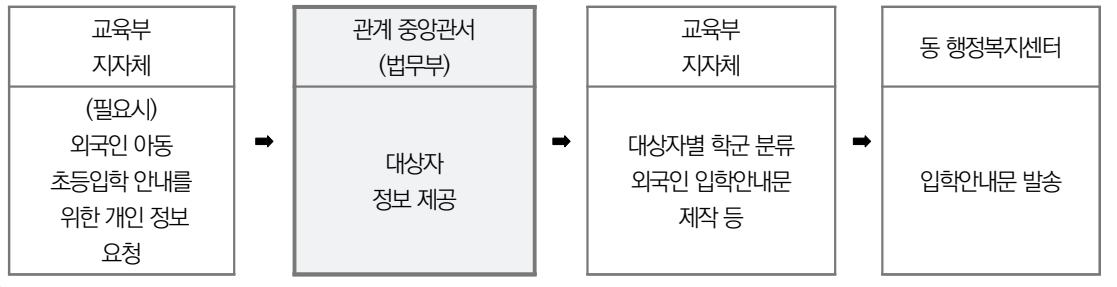
【그간 추진 상황】

- 2023. 4.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의무화' 건의
- 2023. 8. : 부평구(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외국인 아동의 입학신청기관 확대' 건의(現: 학교장 → 확대: 초등학교의 장 및 읍·면·동장)
↳ (교육부 답변내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며, 사전에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실질적인 필요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중장기검토 필요
- 2023. 6. ~ 2024. 12. : (김포시→법무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대상자 정보 요청 → (법무부) 법적 근거 없어 정보제공 불가 → (김포시) 개인정보위원회 정보 수신 가능여부 심의 요청 → (개인정보위원회) 정보제공 가능 의결 → (김포시) 2024. 12월 외국인 아동 초등입학 안내 통지 실시 (지자체 최초)
- 2025. 2. : 경기도 21개 시군 외국인 아동(2,037명) 초등입학 안내 통지 실시

□ 개선방안

-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아동에게도 입학 전 안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입학 지연, 민원 혼선 등을 예방하고, 교육 접근성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내국인 아동의 취학통지 절차에 준하는 입학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 정보, 거주 정보 등 기초자료를 관계 부처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학교, 행정복지센터, 보호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아동의 원활한 취학을 지원할 수 있음

【추진 과정】



현 행		개 정	
구분	초등교육법 시행령	구분	초등교육법 시행령
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자가 속하는 학군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내용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 ④ 생략 〈신 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귀국학생등의 초등학교 입학안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입학 안내를 위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성명·외국인등록번호 및 체류지주소 2. 보호자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에 귀국학생등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제5항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귀국학생등의 보호자에게 제17조(취학의 통지)에 준하여 입학안내를 할 수 있다.

〈표 3-31〉 전문가 검토의견

- 외국인 아동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행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타당함.
- 정보가 부족하여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 미연에 예방 가능

자료: 인천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 기대효과

○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 외국인 아동이 적정 시기에 학령기관에 진입하고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 및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장

- 외국인 보호자의 민원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 아동의 취학 대상 사전 파악을 통해 교육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며, 관련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

(9)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개선

- 주요 내용: 3기 신도시(계양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적기에 지정되지 못하면 자족기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지연되어, 공공주택 입주 이후 교통 혼잡과 장거리 통근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기 및 범위를 유연화하고, 수도권 광역 단위의 대체지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관련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 발굴 방식: 2024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나,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 하남교산)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과밀억제권역 규제정책'과 충돌하면서 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해제 시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역에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과 계획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황임('23.11.23.)
- (대체지정 시기)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개발사업 추진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공업지역 해제 지역 변경으로 인해 2023년 10월에 재심의가 이루어졌음
- (대체지정 범위) 또한 현행 제도는 동일 시·도 내에서만 대체지정이 가능하며, 인접 시·도 간 공업지역 조정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전체의 산업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주요 현안」

- ① 경기도(고양, 하남): 공업지역 부족으로 창릉, 교산 3기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불가
 - ② 인천시: 인천내항 폐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존 공업지역 해제물량 증가, GB 해제총량 부족으로 핵심사업 추진 어려움
- ※ 인천시·하남시 간 GB해제물량과 공업지역해제물량 조정을 위한 논의 착수 ('24.1.5.)

□ 개선방안

- 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적기 지정을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변경: 동시 지정·해제(先해제 後지정)→先지정 後해제 허용

※ 계양T/V 대체지정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先 지정 後 해제 우선 적용

현 행		개 정	
구분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구분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내용	(과밀억제권역) 대체지정은 해제와 지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가피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내에 선 해제 후 지정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	내용	(과밀억제권역) 대체지정에 따른 해제와 지정 시기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의 추가 확보를 위해, 공업지역 대체지정 가능 범위를 현행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광역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 상호 대체지정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현 행		개 정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내용	② ..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내용	② ..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대효과

- 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적기 지정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지구 입주 시기와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
-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거리 통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표 3-32〉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구분	내용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2024.1.11.)	중장기 검토 대체지정 시기 유연화(先지정 後해제)는 법령해석 검토 필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시·도 간 대체지정 허용)은 지방 반대 예상

(10)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전력거래기준 완화

- 주요 내용: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의 일환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도심형 산업단지에는 거래 대상과 용량 기준 제한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 대한 직접전력거래 요건(설비용량 및 계약전력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
- 관련 법령: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발굴 방식: 2024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200억 원 포함) 규모로 추진되며,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제조기업-발전소 간 직접전력거래(PPA) 플랫폼을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형 산단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사업 내용은 산단 입주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태양광 등 신재생 분산에너지원 인프라 구축(예: 인천 남동국가산단 9.3MW 태양광 설치)과 RE100 이행을 위한 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
- (문제점) 고시에 규정된 거래대상 및 규모 등으로 인해, 대단위의 발전소 또는 대기업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도심형 국가산업단지 등은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실정임

□ 개선방안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발전사업자 : 설비용량 1,000kW→300kW 완화
 - 전기사용자 : 계약전력 300kW→100kW 완화

현 행		개 정	
구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구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내용	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발전사업자)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산업용 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	내용	제4조(적용대상) ①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은 300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1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산업용 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

□ 기대효과

- 남동산단 내 現 고시 기준(발전설비 1,000kw)으로 수용 가능한 기업은 1개사*이나, 개선사항 반영 시(300kw) 남동산단 내 76개사(4.2%)가 추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입주기업 7,951개사 중 자가 제조기업 1,829개사의 건축면적으로 추산('23.11 기준)
- 최적화된 직접 PPA 거래 방식의 도입으로 재생에너지를 수용가에게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기업들의 RE100 이행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 선도

〈표 3-33〉 전문가 검토의견

구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의견	- 고시의 기준(설비용량1,000kW초과, 계약전력300kW이상)으로는 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입주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모델 구현이 대규모 사업장 위주로 구현되어, 중소기업에서는 이 사업적용이 어려움. - 산업단지별 설비용량 및 계약전력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기준완화에 대한 직·간접적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직접PPA 거래방식 활성화를 위해 고시 기준 완화 필요
전문가 의견	- 한전 송전망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직접PPA 제도를 활용한 분산에너지 사용 활성화 필요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적용대상)」 등에 규정된 거래대상 및 규모 등으로 인해, 대단위 발전소 또는 대기업은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 등도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② 산단 신재생 분산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급자족(자립화) 모델 구현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시 조건 완화가 시급한 상황

자료: 해당 부처 협의 사항 및 인천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11)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 주요 내용: 현행 「어촌·어항법」은 국가·지방어항에서 해제된 경우에만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국유지를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어항구역 내 국유지 활용에 제약이 크며, 정주어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지자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국유지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활용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관련 법령: 「어촌·어항법」 제27조 (관련 법령, 하위규정, 매뉴얼 등 규제의 근거 적시)
-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발굴 방식: 2024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어항구역 내 국유지를 포함한 어항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국유지의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며, 해수부 외 부처 소유 토지는 행정재산 지정 해제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함에 따라, 활용을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임
- 현행법상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에서 해제되어 어촌정주어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 어항시설을 기초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이나 지자체 자체개발 추진 시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를 대여하거나 매입해야 하며, 지자체는 매년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어촌정주어항 구역으로 지정된 국유지의 경우 어항의 기초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매각 및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 이로 인해 지자체는 어항구역 내 국유지 관리 주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부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함

□ 개선방안

- (1안) 현행「어촌·어항법」제27조(어항시설의 매각·양여) 제3항의 규정 개정을 통해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된 토지를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어촌·어항법」에는 기존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이 해제되고 새로이 지정된 경우에만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구분	어촌·어항법	구분	어촌·어항법
내용	제27조 ①~② (생략)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을 새로운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국가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지방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지방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어촌정주어항의 지정이 해제되고 해당 어항이 국가어항 또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경우	내용	제27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항구역 내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항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어항시설 지정권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 3. (삭제)

- (2안) 어촌어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해수부로 소관청을 지정하여 어촌어항관련 사업을 해수부가 일원화하여 추진
- 일반재산이 아닌 해수부 행정재산으로 구분하여 지자체에 관리 위임

□ 기대효과

- 어항의 원활한 개발과 안정적인 어업기반 마련으로 어촌어항의 통합 개발을 통해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 도모
- 물양장, 어판장, 어항편의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개발 및 관리 가능
- 어촌어항 사업 및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토지의 관리 일원화(해양수산부)를 통해 어촌신활력사업 등 국책사업 및 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예산의 절감과 원활한 사업추진

〈표 3-34〉 전문가 검토의견

구분	세부내용
전문가 의견	국가어항의 일부를 제외하고 어항의 관리권자가 지자체로 이관됨. 어촌·어항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어항관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어항시설의 관리와 점·사용허가 등 어항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어항에서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부담함. 소유자와 관리자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 노출 어촌어항에서 사용되는 부지는 해수부로 일원화가 합리적이며, 이를 지자체에서 위임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리권자에게 어촌정주어항의 지정토지를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제27조제3항외에 추가적으로 어촌뉴딜 및 재생사업으로의 신규토지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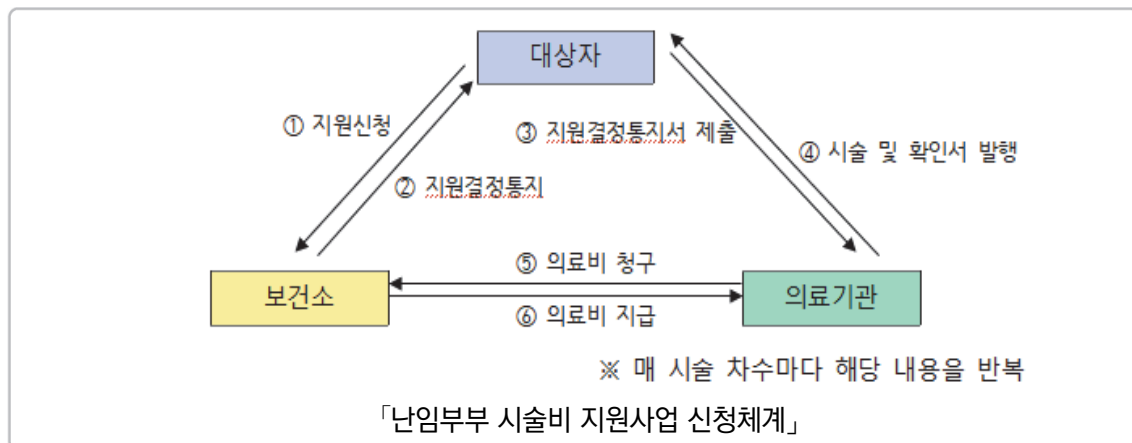
자료: 인천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계 전면 개편 건의

- 주요 내용: 현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는 시술 차수마다 보건소 방문과 종이 통지서 발급을 요구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격 확인을 간소화하고 '선시술 후청구' 또는 기간 단위 통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인 지원체계로 개편할 필요
- 관련 법령: 모자보건사업 지침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발굴 방식: 2024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행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위해 매 시술 차수마다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종이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시술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을 시술 차수별로 반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진행된 시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술비 누락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불편하고 반복적인 지원금 신청 절차

- 2024년 2월 기준, 전국 및 인천에서는 소득이나 거주요건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 보건소의 별도 대상자 확인 절차가 불필요함에도, 매 시술 차수마다 신청서 또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임

※ 신청자격 3가지(①난임진단서 ②법적 혼인상태 ③부부 중 최소 한명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시술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 이론적으로 임신 성공 시까지 약 50회에 이르는 반복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신청자의 행정적 부담이 과도함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동결, 신선), 지원금 한도 내에서 개인약제비 청구 매차수마다 가능

〈표 3-35〉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

구 분	지원신청(건/명)	시술건수(건/명)	평균지원(1인)	시술자 중 임신(명)	임신성공률
계	1,627 / 775	1,378 / 689	2.1회	296	21.5%
체외	1,389 / 617	1,180 / 556	2.3회	275	23.3%
인공	238 / 158	198 / 133	1.5회	21	10.6%

○ 공공행정 디지털화에 역행하는 종이문서 기반 절차

- 난임 시술비 지원을 위해 차수마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출력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구조로, 디지털 행정을 지향하는 정부 기조에 부합하지 않음
- 가정 내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 민원인이 PC방을 방문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지속

○ 지연 신청으로 인한 지원 제외 항목 다수 발생

- 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작된 시술은 해당 차수 지원금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고 있음
- 시술이 연속적·단기간 내 반복되는 특성상, 민원인이 차수 종료 시점과 다음 차수 개시 여부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이미 받은 시술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소득 및 거주 요건 폐지 이후에도 유지되는 불합리한 신청 체계

- 2024년부터 소득 및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보건소의 자격 심사 절차가 불필요함에도, 기존과 동일한 차수별 신청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 민원인과 행정기관 모두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반복적·불필요한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편이 시급함

□ 개선방안

○ 1안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 체계 폐지 및 '先시술 後청구' 방식 도입

- 현재 시술 전 보건소에서 매차수마다 발급받는 지원결정통지서를 폐지하고, 시술 후 청구 방식으로 개편
- 자격요건 확인은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작 시 부부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사실혼 부부, 외국인 등 별도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건소 방문 절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보완

○ 2안 : 차수별 통지서 발행 방식의 기간 단위 전환

- 기존의 '차수별 지원결정통지서' 발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일괄 발행하여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시술에 대해 청구 가능하도록 개편

현 행		개 정	
내용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내용	시술 시작 전 지원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통지서 발급하여
	후 '지원결정통지서' 배부 및 의료기관 제출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의료기관 제출 후 유효기간내에 의료기관에 시술하는 차수 지원 * 건강보험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 기대효과

- 불필요한 신청 절차 개선을 통한 민원인 서비스 수혜 만족도 증가
- 종이문서 제로화에 따른 공공행정 디지털화 기대 및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
- 지연신청으로 제외되는 지원금 없이 해당 차수 의료비 전액 지원금 사용 가능

(13)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입지허용

- 주요 내용: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시설만 설치를 허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 인평생교육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도심 내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이들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종류 및 설치범위를 개정할 필요
-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발굴 방식: 2024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드시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 시설 중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만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은 환경 훼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하여 주민복지 시설 확충에 일부 활용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실내·실외 체육시설, 야영장, 모의전투 게임시설, 도서관 등 오락·여가시설은 허용하면서도, 장애인·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남
 -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도심 내에는 주민 반대와 부지매입 부담 등으로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규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5.20 제정)과 「평생교육법」(2016.5.29 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을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시설’로 한정할 경우,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개선방안

- 도심지역 자치구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별표1)에 명시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지역공공시설 항목에 ①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평생교육시설 포함), ②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동 시행령 제13조(별표1)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설치 범위’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인프라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가 요구됨.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바. 지역공공시설

현 행		개 정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내용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내용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내용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하며, 부대시설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내용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정하며, 부대시설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시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기관이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의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도심 내 설치가 어려웠던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설치기
피 복지시설 등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① 건립부지 확보문제
해결과 ②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구입에 따른 사업비 절약, ③ 주변 민원발생 우려 저하 등의
다각적인 문제해결 효과 기대

〈표 3-36〉 해당 부처 및 전문가 검토의견

구분	세부내용
국토교통부 의견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및 다른 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복지시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를 활용하여 복지시설 등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전문가 의견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주민지원사업 1-2 복지증진사업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 관련 시설이 포함됨 - 하지만, 아동관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지원 시설로 포함되었고 아동관련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내 입지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은 장애인 특성상 적정하여 지역공공시설과 주민지원사업내 포함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

자료: 해당부처 의견 조회 결과 및 인천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14) 근로자의 안전과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이용 편의성 간 기준 충돌 해소

- 주요 내용: 계단 난간대 높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BF인증 기준 간 상이한 규정으로 인해 시설물 설계 및 관리 과정에서 시설주와 사업주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근로자와 이용 주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난간대 높이 기준을 85cm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발굴 방식: 2024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건의(인천시)에서 선정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관리하는 대부분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당함
- 또한 해당 시설물 대부분에는 직원 및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근로자가 상주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도 적용되어,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이중 규제 상황에 놓여 있음

〈표 3-37〉 법령 간의 시설물 높이 기준 상충

구분	세부내용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로 하여야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높이 0.8m-0.9m 규정 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제2호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제4항제2호	•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 가 되도록 할 것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와 BF인증 기준에 따르면, 복도·통로 및 계단 난간의 손잡이 높이는 80cm 이상 90cm 이하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공공시설 계단 난간이 이 범위 내에 설치되어 있음
- 반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해 계단 등 안전난간의 높이를 90c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BF인증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업장 안전관리 대상인 공공 시설 다수가 점검 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안전 확보 기준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간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4항은 계단 손잡이 높이를 85cm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난간 높이 기준(90c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추가적인 난간 보강공사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계단 난간대 높이에 대해 「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기 다른 법령에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시설물의 신축·증축·운영·관리 과정에서 시설주와 사업주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상부 난간대 설치 기준을 현행 90cm 이상에서, 「장애인등편의법」 및 BF인증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간 수준인 85cm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

현 행		개 정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생략)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하생략)	내용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현행과 같음)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85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하생략)

○ 모든 사업장의 안전난간 설치 높이를 일괄적으로 하향하기 어려울 경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BF인증 의무시설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하여 충돌되는 규제 개선

현 행		개 정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구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생략)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이하생략)	내용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현행과 같음)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다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및 BF인증 의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기대효과

- 상충하는 법령 간 시설물 높이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 편의성과 근로자의 작업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규제 개선이 필요
- 건물 준공 및 BF인증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다른 법령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보강공사가 필요한 이중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민간 부문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시설물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설주와 사업주가 신축·증축 및 운영·관리 시 겪는 혼선과 민원 발생을 줄이고, 부처 간 규제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음

〈표 3-38〉 전문가 검토의견

구분	내용
전문가 의견	• 일원화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함. - 혼선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공감함. - 다만, 계단 손잡이 설치의 취지가 이용자의 안전성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순히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치 기준으로 제시된 규격이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최적의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높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일원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 관계자(건축 분야, 안전 분야, 장애인 분야 등) 간 협의를 진행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 표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함.

자료: 인천연구원 해당분야 전문가 검토의견서

5) 광주광역시

(1) 수소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 규제 완화

- 수소충전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전국 확충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수소경제 정책 성공의 필수 전제가 됨
 - 복수 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운용지침」, 「환경영향평가법」 등)상 아래와 같은 규제장벽 반복 적용
 - * 입지 제한, 장기 인허가 절차, 중복 환경·안전평가
 - * 각 부처별(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별도 심사·개별 허가 요구
- 2025년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 190개 불과, 민간사업자 신규 진입 포기 및 사업 지연 사례 다수
- 지역별(광주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격차 심화
- 인허가 절차 통합 및 간소화(원스톱 서비스 등) 법령 개정 필요
- 입지 제한 완화, 환경·안전 기준 전국 표준화 및 기간 단축 등 행정혁신 필요
- 산단·도심 등 특수입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및 특례규정 신설 추진
-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정책·재정 인센티브 추가 지원 병행해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효과 극대화
- 관련 법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인허가), 제24조(안전관리)
- 「도시관리계획운용지침」 제4장(특수시설 입지 제한)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 평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건축법」 제52조(용도별 건축허가 기준)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주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각 시·도청
- 발굴 방식: 광주광역시 혁신전담반, 규제·현장간담회, 민간사업자·주민 건의, 2023~2025년 행정협의회 공식 안건 상정 및 실태조사 자료 기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필수임
 - 실제로, 법령상 중복 규제(입지·안전 기준·환경영향평가 등)로 인해 신규 설치가 지연되고, 민간 투자·확대가 위축되며, 인프라 구축이 전국적으로 미진함
- 2025년 기준 전국 수소충전소 누적 설치는 190개로, 정책 목표(2025년 300개, 산업통상자원부) 대비 63% 수준에 머무름
 - 광주광역시의 경우 누적 10개로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심화
 - 2024~2025년 전국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설치 지연 사례 41건(산업부 실태조사)

〈표 3-39〉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목표	2025년 실적
전국 설치(개소)	100	150	300	190
광주 설치(개소)	6	8	15	10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① 제22조(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인허가): 충전소 설치 시 다수 인허가 및 심사 의무 부과
 - ② 제24조(안전관리): 안전설비 검증 및 관리 기준 엄격
- 「도시관리계획운영지침」
- ① 제4장(특수시설 입지 제한): 충전소 입지 제한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 ① 제25조(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 평가): 환경평가 중복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① 제8조(위험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안전거리·장비 요건 강화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구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구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내용	- 복수 인허가·심사 절차 각각 개별기관에서 진행 - 각종 첨부서류·심의 누적, 절차 장기화	내용	- 인허가 절차 일원화·간소화(원스톱 처리센터 신설) - 신청·심사·허가 통합 및 처리기한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내용	- 모든 설치사업 통상적 환경영향평가 의무 - 위험도와 무관하게 동일 절차 적용	내용	- 저위험 입지(산단 부지 등)는 소규모·간이평가 허용 - 환경영향평가 등급화·차등 적용 근거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용	- 모든 충전소 일률적 안전거리·설비 기준 적용	내용	- 과학적 위험도 평가 기반의 차등 기준 도입 - 중소형, 저위험 충전소 규제 합리화

현 행		개 정	
구분	「도시관리계획운영지침」 제4장(특수시설 입지 제한)	구분	「도시관리계획운영지침」 제4장(특수시설 입지 제한)
내용	- 산업단지, 공원, 교통거점 등 주요 입지 다수 제한 - 설치 가능지역 한정	내용	- 산단, 도시공원 등 특정입지에 한해 예외 허용 신설 - 도로·차량 수요와 연계 입지 규정 마련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5조 신설/개정
 - 수소충전소 인허가 민원 원스톱 통합 처리 절차 신설
 - 안전관리 기준의 표준화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행령 조항 신설
- 「도시관리계획운영지침 세부시행규칙」 일부 개정
 - 특정입지(산단, 대중교통 결절점 등) 내 수소충전소 설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조항 명문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
 - 환경영향 평가 항목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행정효율화 조항 신설

□ 기대효과

○ 규제현안 해소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등은 다음과 같음

〈표 3-40〉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규제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전국 수소충전소 설치 목표(300개) 조기 달성 시 연 1,200억원 규모의 관련 장비·인프라 시장 신규 창출(산업연구원, 2025).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참여 확대로 광주 등 5대 광역시 기준 연간 5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 실태조사, 2025, p.49). • 수소차 보급 확대에 의해 연간 온실가스(CO₂) 17만톤 감축(환경부, 2025, p.104).
사회적 효과	•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 및 주민 생활편의 증진. •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 개선으로 인한 국민 건강 증진과 도시환경 질 향상. •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민원 해소 및 행정 신뢰성 제고—2024년 기준 전국 민원 40% 이상 감소 예상(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 2025, p.3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평가”, p.12
 김민주(2024), “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제효과 분석”, p.237
 광주광역시(2025), “에너지산업 현장 실태조사”, p.47

(2)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활용 규제

- 주요 내용: 국내 고령인구 비율 증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나, 내국인 인력 중심의 고용 정책으로 2025년 기준 요양보호사 총원율이 75%에 불과(보건복지부, 2025). 지방과 농어촌, 중소도시에서는 인력 수급 불균형이 특히 심각하여 돌봄 서비스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함. 외국인 근로자의 요양보호사 취업이 대부분 불허(취업비자 부재, 근무자격 제한 등)되고, 자격교육·경력 인정 기준 등이 내국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 정책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인력난을 일정 부분 해소한 바 있음.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 품질 저하, 노인복지 사각지대 확대, 지역 간 복지 격차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서 요양보호사 직종에 특화된 외국인 취업비자 신설 및 해당 자격의 취득과 전환 요건을 현실화(내국인 중심 제도 개선)와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 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절차 명확화 및 인정 교육 기준 완화,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시행령」 등 외국인 인력관리 관련 법령에서 요양보호사 업종 적용 범위 신설 및 외국 인력 채용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인증 시스템 마련, 체류 및 근로 관리 감독 강화로 서비스 품질 제고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범사업 도입, 외국인 요양보호사 현장 배치 지원사업 등 단계적 정책 도입 병행이 필요
-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23조, 「노인복지법」 제20조, 시행령 제10조, 제46조, 「고용허가제 시행령」 제5조,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근로조건, 교육 등 보편적 노동기준), 「사회보장기본법」(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의무)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주관), 보건복지부(주관), 법무부(출입국, 외국인 인력 관리), 고용노동부(외국인 근로정책, 고용허가제), 행정안전부(지방행정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보호사 자격 및 관리), 각 지방자치단체(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
- 발굴 방식: 광주광역시 및 전국 주요 지자체의 규제혁신 현장컨퍼런스, 복지기관(요양원·노인복지시설 등) 운영 실태조사, 대한노인요양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등의 지속적 정책건의 및 민원 통계분석(2023~2025년 데이터) 현장 종사자·시설관리자 설문조사, 주요 민원 분석 및 중앙-지방 간 규제 협의체에서 안건화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내 고령인구 비율 급증(2025년 65세 이상 인구 1,020만 명, 전체의 19.5%, 통계청)으로 요양보호사 인력수요가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지방·중소도시, 농어촌 등에서 내국인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지속, 요양시설 인력공백 및 서비스 미제공 사태 심화
 - 2025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충원을 75%로, 18,000명 규모의 인력 부족(보건복지부, 2025)
-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비자·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고용이 거의 불가(취업비자 부재, 자격 제한 등)
 - 2024~2025년 돌봄서비스 미제공 사례 7,400건 발생, 복지사각지대 및 사회문제 심화(지자체 실태조사)
 - 선진국(일본·독일 등)은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으로 인력난 해소, 국내는 관련 제도 미비로 서비스 품질 저하·노인복지 불균형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의 취업자격), 제23조(취업활동의 제한)

- ① 제19조(외국인의 취업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특정 분야(업종)에 취업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취업자격(비자 등)을 보유해야 하며, 지정된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취업이 엄격히 제한됨.
 - 주요내용: 요양보호사와 같이 정부가 별도 지정하지 않은 직종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E-7 등) 발급이 되지 않으며, 예외적 인력 수급 필요 또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만 한시적, 제한적 허용.
- ② 제23조(취업활동의 제한)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법령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 업종 등에 대한 취업은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내용: 현행 고용허가제 또는 특정 업종(예: 제조·건설 등) 외에는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 복지 서비스 직군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노인복지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등)

- ①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교육·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주요내용: 내국인에 한해 자격부여가 현실상 원칙이며, 외국인 자격 취득과 현장 배치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이 미비하거나 부재.
- ② 시행령 제10조(종사자 교육·자격 인정 관련)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필수 교육 이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행정절차가 완료됨.
 - 주요내용: 외국인 인력의 경우 국내 자격 교육 및 인정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없으며, 외국 내 유사 이력·경력 인정 폭이 극히 제한적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직종에 한정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지정 업종 외에는 서류접수 및 고용허가가 불가함.
 -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 서비스 업종은 현행 지정업종 목록(제조·건설·농축산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용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됨.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요양보호사의 자격 등)

- ①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 교육·훈련 및 관리감독에 관해 규정. 자격 기준·의무·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 정함.
 - 주요내용: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직종 취업이 가능(외국 교육·경력 인정에 관한 특별 규정 없음).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내용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법무부장관이 정한 체류 자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지정되지 않은 직종은 원칙적으로 취업 불가	내용	-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별도 취업자격 신설 근거 마련 (E-7 세부코드 신설 또는 별도 전담 자격 코드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요양보호사 자격 및 필수교육 이수 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 도입. 지역·업종별 인력부족 심화시 한시적 쿼터상향 및 신속 심사 특례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구분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직종의 취업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	내용	- 노인장기요양 돌봄분야(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협의에 따른 지정·승인시 제한 적용 제외 또는 완화. 인력부족 지역(농산어촌·중소도시) 지정 시 취업활동 제한 완화 근거 명시

현 행		개 정	
구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용	대통령령이 지정한 업종·직종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 허용, 돌봄·복지 직군은 대부분 미포함	내용	요양보호사(노인장기요양 돌봄) 직종을 허용 업종 목록에 추가. 지역·시설유형별(재가·시설) 쿼터, 숙련도(자격보유, 한국어능력) 기준, 임금·근로조건 하한선 등 보호장치 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구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외국인 고용 허용 업종의 지정 및 변경은 고시·령 체계에 따름	내용	- 노인돌봄 분야의 국가필수서비스 업종 지정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정기(연1회) 수급점검·쿼터 조정 절차법정화

현 행		개 정	
구분	「노인복지법」 제20조	구분	「노인복지법」 제20조
내용	- 요양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내용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인정 절차 명시(국내 교육 과정 이수 또는 동등학력·경력의 인정 기준 포함). 해외자격 상호인정(상호인정 협정·평가 기준) 및 보수 교육·언어·감염관리 등 필수 모듈 표준화. 취업 전 현장실습 의무화, 환자안전·인권 교육 이수 요건 규정.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요양보호사 직종에 대한 별도 취업비자(E-7 등) 신설 근거 규정 신설
 -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 시 '지역별·업종별 인력난 심화'에 따라 한시적 쿼터 상향 및 신속심사 특례 적용 조항 추가
 - 내외국인 동등 절차 적용 및 체류·고용 관리 감독조건 강화(불법취업 방지 등) 신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용허가제 시행령」
 - 요양보호사 직종을 외국인 근로 허용 업종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
 - 채용 업종별 쿼터·숙련도·자격요건(자격증, 교육 이수, 한국어능력 등) 구체적 기준 신설
 - 시범사업 도입(농산어촌·중소도시 등 지정 지역 한정) 조항 마련
 - 고용형태별(정규직, 시간제, 재가·시설형) 적용 기준 추가
 - 외국인 고용 등급제도(경력, 평가, 재교육 등) 관련 조항 신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
 -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국내 교육과정·시험 이수, 상호인정) 명확화
 - 필수교육 표준화 및 보수교육·현장실습·언어·감염관리 교육 의무조항 신설
 - 해외경력·학력 인정 폭 확대 및 기준 명문화
 -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도·감독서류 제출 의무화
-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외국인 요양보호사 신청·등록 및 평가관리 절차 신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관리 시스템 근거 조항 신설
 - 자격 상실·교육 미달 등 행정처분 절차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야간·교대근무 등 노동환경 특화 건강보호·감정노동 방지 지침 신설
 - 외국인 요양보호사 대상 근로조건, 안전·권리 고지 의무 다국어 병행 안내 조항 신설

□ 기대효과

○ 규제현안 해소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 등은 다음과 같음

〈표 3-41〉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구분	내용
경제적 효과	• 연간 18,000명 이상의 돌봄인력 총원이 가능해져 인력 부족 따른 시장 왜곡 및 인건비 급등 현상 완화 • 외국인·내국인 혼합 근무체계 도입으로 요양시설 및 지역경제 내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약 250억원 파급효과 추산) • 가족의 무보수 돌봄부담 완화, 사회적 비용(가족돌봄, 민원 등) 절감
사회적 효과	• 돌봄서비스 미제공 사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고령사회 지역 간 서비스 격차·복지 불균형 완화, 농산어촌·중소도시 돌봄 인프라 강화 •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 현장 근무자 피로도 완화
행정·정책효과	• 불법취업·무자격 근무의 제도권 내 흡수로 돌봄 현장 신뢰도 및 안전성 제고 • 표준화된 인력 관리 시스템 및 정기 교육·평가 정책(선진국형 인력관리 모델 기반) • 법령 및 하위법령 정비에 따라 중앙-지방 간 복지 전달체계 효율·시스템 선진화

자료: 보건복지부(2025), 전국 요양복지 인력 실태조사, p.67
이정화(2024), 고령사회와 복지인력 정책 연구, p.144
대한노인요양협회(2025),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사례분석, p.21

(3) 성인 실종자 DNA 등록 제한 완화

- 주요 내용
 - 2025년 기준 국내 실종신고의 약 73%가 성인 대상이지만 실종 성인 및 가족의 DNA 등록은 현행 규정상 제한적임(경찰청, 2025)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위주로 등록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
 - 그 결과, 전국적으로 성인 실종자 신원확인 및 가족 내 일치 여부 확인률이 낮고 미제공 사례가 누적(2024~2025년 신고 22,000건 중 성인 16,000건, DNA 등록률은 28%에 불과)
 - 가족의 동의·행정서류 등 과도한 요건(가족관계증명서, 실효성 부족)에 따라 현장 경찰 및 가족 모두 신원확인 및 실종 해결에 큰 어려움 호소
- 관련 법령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 DNA 등록과 이용) 현행: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가족 제한적 등록 허용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범위), 현행: 범죄수사·행방불명자 등 제한적 정보 수집·이용, 가족 동의 및 행정서류 절차 간소화(신고·조화와 연계 자동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DNA 정보 처리 및 제공 관련 통제
- 소관 부처: 경찰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 발굴 방식: 광주 등 지자체 민원, 실종가족 협회 등 현장 의견 수렴, 경찰청 현행법 대처방식 분석, 전국 규제혁신 간담회(2023~2025)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내 실종신고의 약 73%가 성인 대상(경찰청, 2025년 상반기 기준)
 - 2024년 전국 실종신고 22,000건 중 성인 실종 16,000건(아동·장애인·치매환자 포함 6,000건)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DNA 등록·검색 범위를 주로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로 한정, 성인 실종자와 가족은 등록 및 이용이 크게 제한됨
 - 실종 성인 가족의 DNA 등록률 2025년 기준 28%에 불과(성인 실종 16,000건 중 4,480건, 경찰청)
- 실종 성인들의 신속한 발견 및 신원확인 지연:
 - 2023~2025년 미해결 실종 성인 사건 연평균 4,000여건(경찰청, 2025)
 - 발견 소요기간 평균 24일(아동은 3일 내 발견 비율 90% 이상)
 - 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의서 절차가 까다로워 현장 등록을 저조
 - 전국 실종가족, 시민단체, 지자체의 반복적 민원 및 정책건의 다수, 경찰 실무자들도 신원확인 애로 호소
 - 성인 실종 장기화·미해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대 및 가족 심리적 고통 심각

〈표 3-42〉 성인 실종 및 DNA 등록 현황

연 도	전체 실종 건수	성인 실종	성인 DNA 등록	등록률(%)
2023년	21,850	15,900	4,300	27.0
2024년	22,000	16,000	4,480	28.0
2025년	22,300(예상)	16,300	4,650(예상)	28.5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 DNA 등록과 이용)
 - 현행: 실종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보호대상자의 가족 DNA만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
 - 성인 실종자의 가족 DNA 등록은 규정상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제한 적용.
 - 주요 내용
 - 실종 신고 시 아동·장애·치매 가족 DNA는 등록·검색 가능(신원확인 및 빠른 발견 가능).
 - 성인은 등록·검색이 불가능하거나 절차·근거가 미비.
 - 가족관계 증명, 동의 등 서류 요건이 복잡하여 현장 활용성이 떨어짐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범위·절차)
 - 현행: 범죄수사, 미성년자, 행방불명자 등 한정적 정보 수집 및 등록(성인 실종자는 미포함 또는 극히 제한적 적용)
 - 실질적으로 실종 아동 외 성인 실종자 가족 DNA 등록 활용 곤란
 - 주요 내용
 - 신원확인정보(DNA)는 주로 범죄·미성년자 실종, 치매환자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수집·분석.
 - 성인 실종사건 관련 가족 DNA 확보 및 신원확인 절차가 법적 근거 미비로 제한적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
 - 주요 조항: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제공을 엄격히 규제. DNA 등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 활용 목적 및 보호 조치 강화
 - 기타 행정지침 및 내부규정
 - 경찰청 실종자 대응지침, DNA정보관리업무규정 등에서 아동·특수대상자 중심 DNA 관리 운영, 성인 실종자 관련 업무 근거는 부재하거나 미흡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구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용	-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특정 보호대상자 가족에 한해 DNA 등록 허용 - 성인 실종자 가족은 등록 근거 부족·사각지대 존재	내용	- '성인 실종자 및 가족'도 DNA 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 - 실종신고 즉시 가족 DNA 등록 가능 조항 신설 - 가족관계 증명, 동의 간소화 또는 행정기관 연계 자동등록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구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구분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용	- 범죄, 미성년자, 지정대상 행방불명자 등 한정적 상황에 서만 정보 수집·분석·등록	내용	- 실종신고 성인 가족의 DNA 정보도 신원확인 목적에 사용 허용 - 실종·가출신고 접수 시 가족 DNA 수집·분석 신설, 수사 기관 간 협업체계 조항 추가

현 행		개 정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	- DNA 등 민감정보 수집·활용 엄격 제한, 근거 법령 있어야 가능	내용	- 성인 실종자 DNA 등록은 공익 및 당사자 보호 목적에 한해 예외 허용, 보호조치 강화 명시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종 성인 대상 가족 DNA 등록 및 처리 절차 신설(제10조 등)
 - 가족관계 증명 등 행정서류 간소화 및 자동 연계 프로세스 마련
 - 실종 신고와 연계된 신속 DNA 등록·검사 절차 의무화
-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인 실종자 및 가족의 DNA 정보 수집, 등록, 분석 대상 및 데이터베이스 포함 근거 신설(제7조, 제10조 등)
 - 실종사건 접수 시 경찰청·관련기관 간 신속 정보공유 체계 강화
 - 수집된 DNA 정보의 보관, 열람, 폐기 등 개인정보보호방안 보완
- 경찰청 행정규칙 및 내부지침
 - 실종 신고 시 가족 DNA 등록을 표준 절차로 명문화
 - 실종자 가족의 동의 및 등록 흐름도(원스톱 민원창구, 현장 채취 등) 신설
 - 분석결과 통보, 유가족 지원, 재등록 시 행정서류 축소 등 실무지침 보완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DNA 등 민감정보의 수집·처리에서 '성인 실종자 신원확인' 목적에 한해 예외 적용 사유 명시
 - 정보주체(가족 등) 권리·안전 확보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방안 추가

□ 기대효과

○ 규제현안 해소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3-43〉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실종신고 사건 신속 해결 및 장기미해결 비용 감소(연 150억원 대체효과, 경찰청 2025, p.88) • 행정효율 개선으로 인력·수사 예산 절감
사회적 효과	• 실종 가족 지원 및 정서적 부담 경감 • 신속 발견률 상승(성인 실종자 발견률 28%→45% 기대) • 사회적 안전망 확충, 국민 신뢰 증가
행정·정책 효과	• 경찰청 등 신원확인·수사 효율성 대폭 향상 • 실종자 관련 민원 신속 처리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선진화

자료: 경찰청(2025), 전국 실종 및 대처현황 보고서, p.88

보건복지부(2025), 실종가족 지원 실태조사, p.21

유가족 협회(2024), DNA등록 정책건의 자료, p.6

(4) 공공 야영장 및 전기 사용 규제 합리화

- 주요 내용
 - 캠핑 문화 성장에 따른 이용자 안전·편의시설 수요 급증에도 현행 규제체계가 시장 변화 미반영
 - 중소·농촌형 야영장 등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설비 안전 및 인허가 기준으로 시설투자 위축, 지역관광·야영레저 산업 경쟁력 저하
 - 민원업무 및 비용부담 급증, 신규 창업·콘텐츠 개발의 장애
- 바람직한 개선방향
 - 야영장 규모별, 시설유형별 안전 및 인허가 기준 차등화(일률적 기준 완화·현실화)
 - 간이형·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서류·점검 절차 간소화 및 예외조항 신설
 - 현장 맞춤형 점검주기·설치기준 표준화, 창업지원·시설 리뉴얼 시 인센티브 연계
- 관련 법령 : 「관광진흥법」 제42조(야영장 안전·편의시설 관리), 시행령 제36조~제38조(시설기준, 안전관리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4조(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시행규칙 제7조(점검기준, 안전거리 등)
 -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 및 시행령 제19조(용도·규모기준) 및 지자체 조례
 - 전기사용 관련 과도한 안전거리·설치 기준, 현장 현실과 괴리된 기술·행정요건 다수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 발굴 방식: 광주광역시 및 전국 현장간담회, 야영장 사업자 협회 및 이용자 민원 집계, 법령 실태 분석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코로나19 이후 캠핑·야영장 수요 급증(2024년 전국 야영장 이용인구 540만명, 문화관광부)으로 전기설비 등 편의시설 요구가 급상승
- 「관광진흥법」,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공공·민간 야영장 전기설비 설치·운영 관련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며, 전기설비 설치에 따른 인허가·점검·운영 규정도 복잡
 - 전국 야영장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설문: ‘전기설비 규제로 시설 확충·리뉴얼 어려움, 운영 부담 가중’ 응답 76%(대한캠핑협회, 2025)
- 중소 야영장, 농촌형 캠핑장 등은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적 안전거리·설비 요건, 비용·행정 부담 증가로 수입성 악화·콘텐츠 차별화 저해

〈표 3-44〉 야영장 시설 이용 및 관련 민원 현황

연 도	전국 야영장 시설	연평균 이용자수(명)	전국 전기설비 관련 민원(건)
2023년	2,300	5,100,000	1,800
2024년	2,600	5,400,000	2,300
2025년	2,900(예상)	5,600,000(예상)	2,700(증가 추세)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 「관광진흥법」
- ① 제42조(야영장 안전·편의시설 관리)
 - 야영장 및 관광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안전관리 기준, 편의시설 관리 책임 규정.
 - ② 시행령 제36조~제38조(야영장 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
 - 시설별 안전·위생·전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③ 주요 내용:
 - 모든 야영장에 대해 안전·전기설비,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점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
 - 규모, 유형, 입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규정이 부과되어 중소·농촌형 캠핑장 등 현실적 어려움 발생.

- 신규시설, 리뉴얼 시 복잡한 인허가 및 심사 필요

「전기안전관리법」

① 제4조(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모든 전기설비는 시설관리자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 지정, 안전점검, 기록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를 부여.

② 시행규칙 제7조(점검기준, 안전거리, 시설관리)

- 전기설비의 설치·운영·점검 기준, 안전거리 확보, 정기적 검사 등에 대한 세부 실행규정.

③ 주요 내용:

- 대규모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전기설비 안전조치 및 점검주기를 소규모 야영장에도 적용
-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거리, 기술요건, 점검주기 등으로 사업자 부담 가중 및 시설확충 저해.

「건축법」

① 제11조(건축허가) 및 시행령 제19조(용도변경 기준)

- 야영장 관리동·화장실 등 건축물 설치·용도변경 시 허가·신고 기준 규정

② 주요 내용:

-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은 전체 10% 미만(300㎡ 이하), 전기설비 추가·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제11조·제19조) 및 현장점검 필요
- 규모 무관 획일 적용으로 중소 야영장 행정 부담 증가, 간소화 필요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구분	「관광진흥법」 제42조, 시행령 제36~38조	구분	「관광진흥법」 제42조, 시행령 제36~38조
내용	- 야영장 전기설비 설치·점검 기준 일률 적용, 시설·안전 관리 규정 복잡·강화	내용	- 야영장 규모·유형별 기준 차등 적용, 간이형 시설 예외, 표준화된 설치지침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전기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7조	구분	「전기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규칙 제7조
내용	- 전기설비 안전거리 및 점검기준 획일 적용	내용	- 소형·임시전기설비 등 간소 점검 및 완화 기준 신설, 주기·항목 유연화

현 행		개 정	
	「건축법」 제11조		「건축법」 제11조
내용	- 용도별 전기설비 허가 반복 요구	내용	- 중소 야영장 등 일정규모 이하 면제 또는 간편화 규정 신설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 야영장 전기설비·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야영장 규모(수용인원, 면적 등) 및 유형(공공·민간, 도심·농촌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 신설
 - 간이형·소형 야영장에 대해 서류, 점검, 안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예외조항 및 표준 매뉴얼 도입
 - 신규 창업·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행정 심사·신고 절차 일괄화 및 인센티브 연계 조항 명시
 - 현장 실태조사에 따라 기준 조정 및 주기적 개정 근거 마련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안전관리 고시
 - 소형/임시/간이 전기설비에 대해 점검주기, 안전거리 등 안전관리 기준을 완화 또는 탄력 적용하는 조항 신설

- 창업초기, 비정기 이벤트형 캠핑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간이 기준, 셀프점검이나 스마트 점검 도입 가능 근거 명시
- 시설유형별(공공 vs. 민간, 농촌형 등) 맞춤형 교육·점검 체계 마련
-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 일정 규모 이하(소규모, 임시전기설비 등)의 야영장 전기설비 설치 시 건축허가·설치신고 절차를 대체·간소화 또는 예외 규정 신설
 - 노후캠핑장 시설 개보수 시 행정절차 단축(재축범위 확대, 서류 간소화) 및 시범사업 근거 마련
- 지자체 조례·내부지침
 - 지방 실정에 맞는 야영장 설비·안전관리 기준 별도 마련 및 적용 허용
 - 창업 및 신규시설 지원시 서류 제출·점검 항목 간소화 및 비용지원 조례 신설

□ 기대효과

○ 규제현안 해소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3-45〉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구분	내용
경제적 효과	• 시설투자 촉진, 지역관광 활성화, 야영장 산업 일자리(연 1,300명, 2025기준) 및 수익성 개선 • 점검행정·사업자 비용(연 70억원 이상) 절감 및 창업 촉진 • 신규 캠핑 콘텐츠 및 지역 연계관광 사업 확대
사회적 효과	• 야영장 이용자 안전·편의 개선, 국민 여가·복지 질 상승 • 농어촌·중소도시 캠핑문화 저변 확대, 지역주민 소득향상 • 각종 민원 감소, 행정서비스 신뢰도 제고
행정·정책 효과	• 수요변화 대응 행정합리화, 중앙·지방 협업 규제개선 모델 정착 • 사고율·민원 통계 감소, 시설점검·관리의 효율성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5), 전국 야영장·관광시설 실태조사, p.77
대한캠핑협회(2025), 야영장 규제 민원분석, p.35
산업통상자원부(2025), 전기설비 안전관리 개선방향, p.16

(5)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화신 등 민원서류 처리방식 개선

- 주요 내용
 - ① 규제개선이 필요한 이유
 - 국민생활 밀접 민원서류(가족관계증명 등) 전자발급·화신의 제한으로 국민 불편, 비용·시간 낭비 지속
 - 디지털정부 정책 기조(비대면 행정, 전자문서 활성화) 미이행, 관련 민원 반복증가 및 행정 신뢰 저하
 - ② 바람직한 개선방향
 - 민원 전자발급 범위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이혼·입양관계 등 전 분야로 확대
 - 본인확인 강화(공공인증, 전자서명 등), 모바일 민원창구·행정기관 간 자동연계 도입
 - 종이발급 의무 폐지, 행정 편의·국민 비용 동시 절감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
-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발급), 시행령 제12조(발급방법 및 수수료)
「전자정부법」 제13조(전자문서의 활용·유통 확대), 제17조(전자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등 본인확인·정보유출 관리 기준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각 지자체
- 발굴 방식: 광주 등 지자체 현장 민원실 의견수렴, 통계자료 분석, 민원포털 이용자 의견,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반영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민원서류 상당수가 여전히 오프라인 위주(창구접수, 우편 등)로만 발급·처리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연간 3,000만 건 이상의 가족관계서류 민원 중 전자발급 비율이 40% 미만에 불과(행정안전부, 2025).
 - 서류 제출을 위한 중복방문, 대기, 수수료 등 국민 불편 지속, 민원처리의 행정비용과 시간 부담도 큼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의 미흡한 범위 지정·연계 부재가 민원 디지털화 확대의 걸림돌
 - 개인정보 보호 및 본인확인 관련 기준 미흡으로 전자문서 활성화에 대한 현장저항·우려도 존재

〈표 3-46〉 민원발급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전자발급률(%)
민원서류 발급건수	28,500,000	30,000,000	38%
오프라인 비중	18,000,000	18,600,000	62%

○ 규제 관련 법률명 및 조항, 주요 내용 정리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증명서의 발급)
 -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입양 등 각종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절차 오프라인 창구, 우편 등 대면 위주 신청·발급 중심, 전자적 방법은 부차적으로만 규정
 - 시행령 제12조(발급방법 및 수수료) 증명서 발급방식 및 전자문서 발급 절차, 수수료 징수 및 운영방식 일부 명시
 - 인터넷 발급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범위·방법 제한적, 모바일·연계 미비
2. 「전자정부법」
 - 제13조(전자문서의 활용·유통 확대)
 - 전자문서의 제출·처리·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공기관의 책무 부여.
 - 실제 민원서류 발급·전자 화신에 대한 구체적 의무·실행수단 부족.
 - 제17조(전자서명)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및 본인확인에 관한 기본 규정.
 - 전자민원 신청시 인증·신원확인의 구체적 적용은 타법령 연계 의존.
3. 「개인정보 보호법」
 -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가족관계증명 등 민원서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보호의무 및 제공조건 규정.
 - 본인 확인·동의, 보관·파기 등 정보보호 절차 명시, 전자처리·유통 시 강화 필요
4. (참고) 각 지자체 조례·내부지침
 -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모바일 처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현장실행과 데이터 연계 범위는 지자체별 조례 및 행정규정에 근거

□ 개선방안

○ 관련 법령 개정 방안

현 행		개 정	
구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용	- 오프라인·대면 위주 발급, 전자발급 제한적 적용	내용	- 전자발급·전자화신 원칙화, 민원창구·온라인 확대 명문화
현 행		개 정	
구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구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내용	- 발급방식·수수료 최소 기준만 명시	내용	- 모바일, 인터넷 등 비대면 발급 방식 및 자동연계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전자정부법 제13조, 제17조	구분	전자정부법 제13조, 제17조
내용	- 전자문서·전자서명에 대한 선언적 규정, 본인확인 기준 미흡	내용	- 가족관계 등 주요 민원 전자발급의 원칙, 신원확인·보호 의무 강화 근거 신설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 “비대면·전자처리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발급 신청~처리~화신까지 전자화, 신원확인 과 개인정보보호 기준 명확화, 행정기관 간 자료 연계와 공동활용 체계화를 동시에 실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증명서 발급 및 화신 절차에서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자발급이 원칙이 되도록 규정 신설
 - 민원인의 신원확인 은 전자서명, 공공인증 등 다양한 디지털 인증수단으로 확대
 - 기관 간 자료 연계 및 자동 정보 제공 시스템 근거 마련
 - 종이 증명서 발급 의무 폐지 및 전자문서 우선주의 반영
 - 오프라인·현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국적 표준화된 최소 제출서류, 간소화된 절차 명확히 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 모바일 전자서명,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 기반의 민원실명인증 명문화
 - 행정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민원정보 공동활용 범위·절차 구체화
 - 개인정보 처리·유출방지 등 안전한 전자문서 관리 및 법적 효력 확실화 조항 강화
- 각 지자체 조례·지침
 - 지역 민원포털, 무인발급기, 모바일 앱 등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 범위의 단계적 확대 근거 마련
 - 원스톱 민원창구 확대, 데이터 연계 기반 맞춤형 행정서비스 뒷받침 조항 신설

□ 기대효과

○ 규제현안 해소 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3-47〉 규제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구분	내용
경제적 효과	- 연간 행정비용 150억 이상 절감(행정안전부 추산) - 민원인 시간·수수료 부담 감소, 종이서류 관리·보관 비용 감소
사회적 효과	- 국민 민원 편의성 획기적 향상, 비대면 복지제감 증대 - 디지털 행정 신뢰 제고, 지자체·기관별 정보격차 해소
행정적·정책적 효과	- 신속처리, 기록·보존의 효율화, 민원서비스 통합관리 실현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불필요한 현장방문·대기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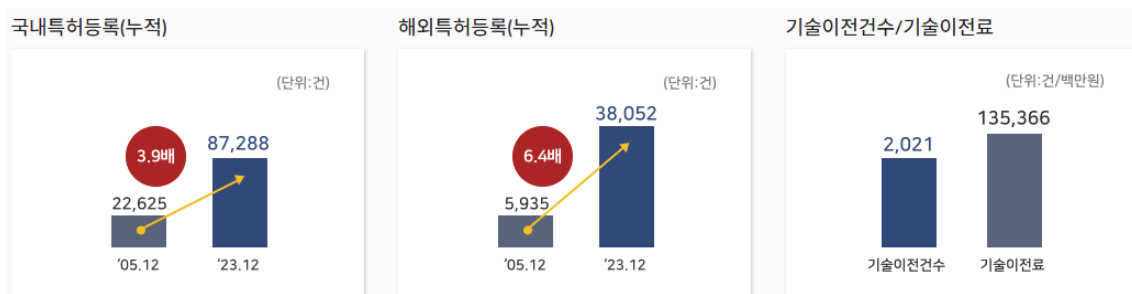
6)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1) 연구개발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개선

- 주요 내용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타 광역특구에 비해 특구 내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높아 적정수준의 연구산업단지 및 정주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특구의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범위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과정을 생략하여 지방분권 강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함
-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1항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발굴 방식 : 연구자료(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2020) 및 언론기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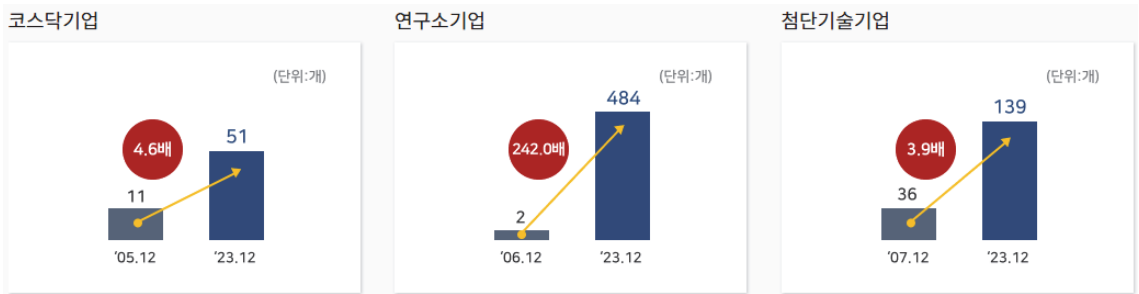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대덕연구개발특구는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서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높은 질적 연구성과를 내고 있으며, 기술창업 및 사업화를 통해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3-24] 대덕연구개발특구 성과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mps>)



[그림 3-25]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요 기업 현황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mps>)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 현황을 보면, 먼저 연구분야 입주기관은 정부출연(연) 27개, 교육기관 7개, 국공립연구기관 4개, 기타 연구기관 11개 등 49개가 있음
 - 비연구분야 입주기관은 정부기관 10개, 공공기관 23개, 기타 비영리기관 29개 등 62개가 있으며, 기업은 2,803개가 입주하여 있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력현황을 보면, 박사 18,161명, 석사 12,717명, 학사 이하 13,338명 등 연구기술직 44,216명과 생산직 및 관리직 52,398명 등으로 96,614명이 종사하고 있음

〈표 3-48〉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현황

연도	연구분야	비연구분야	기업	합계
2023	49	62	2803	2914
2022	47	56	2351	2454
2021	46	59	2356	2461
2020	46	58	2243	2347
2019	45	58	1971	2074
2018	45	53	1948	2046
2017	45	47	1784	1876
2016	45	46	1669	1760
2015	45	47	1613	1705
2014	47	47	1516	1610
2013	47	46	1484	1577
2012	46	45	1312	1403
2011	46	47	1306	1399
2010	44	45	1179	1268
2009	44	42	1006	1092
2008	43	38	980	1061
2007	43	36	898	977
2006	42	26	786	854
2005	42	23	687	752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mps>)

〈표 3-49〉 대덕연구개발특구 인력 현황

연도	연구기술직	생산직, 관리직 등	종업원수
2023	44216	52398	96614
2022	40170	51716	91886
2021	38716	47424	86140
2020	38995	43180	82175
2019	37166	40940	78106
2018	35898	39802	75700
2017	34919	37752	72671
2016	33138	36475	69613
2015	31334	36362	67696
2014	29638	37752	67390
2013	28877	38177	67054
2012	27423	36898	64321
2011	26493	36196	62689
2010	24434	31180	55614
2009	20522	25004	45526
2008	18209	23429	41638
2007	18796	21542	40338
2006	18532	18692	37224
2005	16759	6799	23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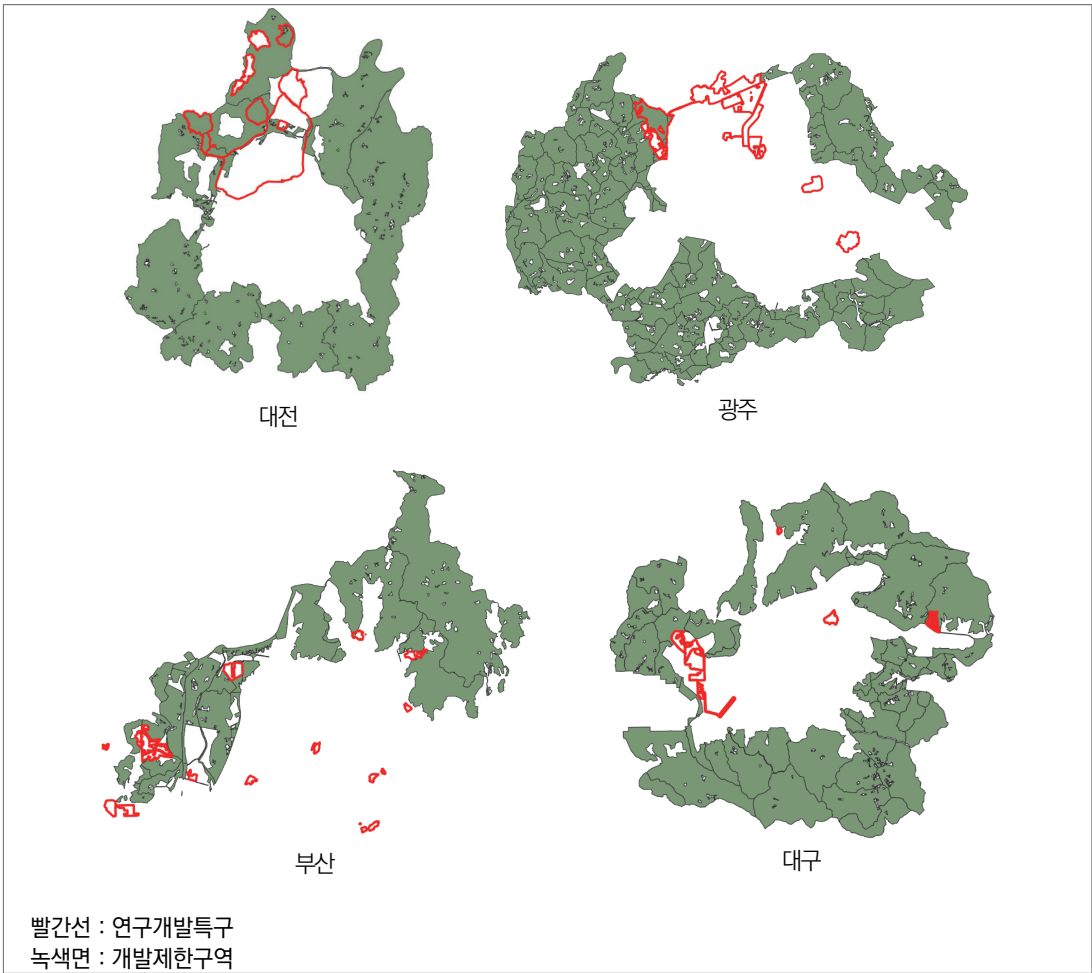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mps>)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업은 2005년 752개에서 2023년 2,914개로, 종사자는 2005년 23,558명에서 2023년 96,614명으로 약 4배로 증가하였음
- 앞으로도 기업 및 종사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연구 및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확보가 요구됨
- 또한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021~2025)의 대덕특구 육성 방향을 보면, 정부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공공연구성과의 전국적 확산과 공공기술 사업화의 허브로서 IT 융복합, 바이오 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강점분야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연구소기업 설립·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향후 연구3㎢, 산업5㎢, 주거 4㎢ 등 연구·산업·용지 신규 수요가 약 12㎢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타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넓은 면적이 확보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신규 연구 및 산업용지 공급에 한계가 있음

〈표 3-50〉 광역연구개발특구 현황

구분	지정시기	범위	면적	특화산업
대덕	'05.7월	(대전)유성·대덕	49.7km ²	• IT 융복합 • 바이오 의약 • 나노융복합
광주	'11.1월	(광주)광산·동·북구 (전남)장성군	18.6km ²	• 광기반 융복합 • 차세대전지 • 친환경자동차부품
대구	'11.1월	(대구)동·북·달서, 달성군 (경북)경산시	19.4km ²	• 스마트IT융합기기 • 의료융복합기기 • 그린에너지융복합
부산	'12.11월	(부산)강서·금정·영도·사하· 부산진·연제구	14.1km ²	• 해양플랜트 • 조선해양기자재 • 그린해양기계
전북	'15.8월	(전북)전주, 정읍, 완주	16.1km ²	• 융복합소재부품 • 농생명융합

자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내부자료



[그림 3-26] 주요 도시 연구개발특구 및 개발제한구역

- 대덕연구개발특구 면적은 49.7km² 중 12.4km²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특구면적의 약 25%를 차지함
 - 광주연구개발특구 면적은 18.6km²에 개발제한구역 3.3km²(약 18%), 부산연구개발특구 면적은 14.1km²에 개발제한구역 1.1km²(약 7%) 등임
-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연구환경 개선 및 효율적 입주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100만m² 미만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해제권한을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해야만 함
 - 100만m²에 대한 해제권한으로는 충분한 용지확보가 어려우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는 절차로 인한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용지관리를 저해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권한의 위임)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방안

현 행		개 정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항
내용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내용	〈삭 제〉

현 행		개 정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구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제1항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연구개발특구는 30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대효과
-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용지 확보의 충분성과 관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

(2)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 주요 내용 : 개발제한구역(GB) 내 수소충전소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생산·운송·저장시설 추가 구축이 불가하여 수소충전소 기반구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충전소 활성화가 필요함
-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발굴 방식 : 공무원 간담회(2025년 규제개선 과제 전문가 토론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1,761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매년 약 249대 수준으로 신규 보급이 지속되고 있어 수소 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현재 학하, 대성, 상서 등 총 9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이나, 장래 수소차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충전 인프라 추가 설치가 시급함
- 대전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개발제한구역(GB)의 면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시가 분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가 지리적·환경적으로 제한되고 있음

〈표 3-51〉 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비율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개발제한구역 비율	25.14%	45.21%	7.55%	48.62%	56.00%	23.41%

○ 특히, 도심 주거지 인접지에서의 안전성 우려 및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도심부 설치가 더욱 어려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상황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의 입지가능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1

버. 수소연료공급시설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나)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②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

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전국의 수소충전소(198개소 중 약 191개소)는 원거리에서 수소를 운반해오는 오프사이트(Off-Site)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소 구매단가가 높고 판매단가는 낮아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충전소 폐업 가속화 및 공영충전소의 지속적 재정투입이 요구됨

〈표 3-52〉 대전광역시 공영충전소 연도별 경영적자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충전소명	위탁예산	집행액(a)	수소판매(b)	단순적자액(a-b)
2021년	학하·신대	2,006,913	1,142,071	579,881	562,190
2022년	학하·신대·낭월	4,087,958	2,712,912	1,380,141	1,332,771
2023년	학하·신대·낭월	5,960,951	5,197,945	2,874,188	2,323,757
2024년	학하·신대·낭월	6,416,558	정산예정('25.)으로 적자액 증가 예상		
2025년	학하·신대·낭월·금고	7,510,389	정산예정('25.)으로 적자액 증가 예상		

○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함

〈표 3-53〉 수소연료공급시설 부지면적 현황

연번	소재지	수소시설	부지면적	규모	비고
1	강원 삼척	생산·충전·운송	6,315㎡	1.2톤/일	非GB
2	경남 창원	생산·충전	3,876㎡	1톤/일	非GB
3	경기 평택	생산·충전	5,000㎡	7.1톤/일	非GB
4	대전 동구	생산·충전	3,200㎡	1.2톤/일	GB
5	인천 중구	생산·충전	4,949㎡	1.2톤/일	非GB
6	전북 완주	생산·충전	3,500㎡	1.2톤/일	非GB

자료 : h2korea

- 개발제한구역(GB) 내 수소충전소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생산·운송·저장시설 추가 구축이 불가하여 수소충전소 적자 해소를 위해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충전소 활성화가 필요함
- 온사이트 방식은 도시가스 등 개질 수소생산설비와 수소충전소를 동일 부지에 함께 구축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외의 경우 원거리 부생수소 단가 10,200원/kg 와 근거리 생산수소 단가 7,810원/kg으로 -2,390원/kg의 수소 구매단가가 인하되어 매년 9.5억원 적자감소가 예상됨

□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개정

현행		개정	
구분	제3호 '버'목 수소연료공급시설	구분	제3호 '버'목 수소연료공급시설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에서 생산, 저장, 운송, 충전 등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복합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온사이트(On-Site) 방식 전환으로 수소 구매단가 대폭 인하
 - 도시가스를 개질하여 현장에서 직접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한 수소를 인근 충전소로 짧은 거리에 운송하는 온사이트 방식 전환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수소 모빌리티 확대 견인
- GB 내 환경훼손 최소화
 - 복합시설 설치의 경우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국토부 협의 및 중도의 심의를 득하여야 함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훼손 최소화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현금납부 가능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협소한 토지의 기부채납 및 수요없는 공공시설 설치 등 비효율적인 공공기여가 발생하기에 비용(현금)납부 공공기여 대상지 조건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도모함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제1항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2025년 규제개선 과제 전문가 토론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최초 지정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설치(공공기여)해야 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 등이 충분하다가 인정될 경우 비용(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제1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항~제3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21. 1. 26.>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8. 7. 17.>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3. 공공시설 또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

- ① 주요 역세권, 터미널, 교통결절지 또는 역세권개발구역,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 ② 5,000m² 이상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시설(교정, 군사, 철도, 공장 등) 이전부지
- ③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으로 행위제한 완화되는 부지

- '21. 1. 12. 이후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하는 경우만 적용하는 부칙 적용례 규정에 대하여, 시행 전 결정된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현행 규정상 공공시설 등 설치가 아닌 비용납부로 공공기여 가능한 지역은, 주요 교통 결절지 및 대규모 유희·이전부지 등 극히 제한적인 실정임
- 그로 인해,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 협소한 토지의 기부채납 및 수요없는 공공시설 설치 등 비효율적인 공공기여가 발생함
 - 市 지침에 따라 토지면적 15% 또는 토지가치상승분 20% 중 큰 금액을 공공기여로 함
- 비용(현금)납부 공공기여 대상지 조건(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개선방안

- 공공기여 현금납부 가능 대상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방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제1항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구분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내용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내용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 기대효과

- 공공기여 방안 확대로 지구단위계획 탄력적 운영
-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등을 적재적소에 설치

(4)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간소화

- 주요 내용 : 현행 BF 인증제도는 인증 신청부터 처리까지 평균 60~90일 이상(대기, 보완기간 포함)이 소요되며, 심사항목이 광범위하고 인증기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소규모·단순 용도 건축물의 경우 인증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행정집행을 도모
-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 발굴 방식 : 공무원 간담회(2025년 규제개선 과제 전문가 토론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무장애 설계를 갖춘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음
-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민간시설물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진행함
- 현행 BF 인증제도는 인증 신청부터 처리까지 평균 60~90일 이상(대기, 보완기간 포함)이 소요되며, 심사항목이 광범위하고 인증기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 건축 인허가와 별개로 진행되어 행정 중복 및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건축물(예: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은 규모와 용도에 비해 과도한 심사항목이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편이 지속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6) 대피소
- (7) 공중화장실
-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점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9)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시술소
-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6)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집회장(예식장·교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
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
터 미만인 시설
- (6) 대피소
- (7) 공중화장실
-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 (9) 지역아동센터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사술소
- (5)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6)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7) 독서실, 기원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불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며.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 개선방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 건축물의 용도, 특성, 이용자별로 맞춤형 인증 체계를 구축하려면 지표 체계, 점수 부여 방식 등 실효성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인증 절차는 복잡하고 심사 항목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소규모·단순 용도 건축물부터 우선 간소화 적용 가능
 - 인증지표 및 항목을 소규모 건축물에 맞게 간소화하고, 경미한 항목은 간이심사제나 서면심사 등으로 대체함

현 행		개 정	
구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구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내용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1. 공원 2.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내용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 1. 공원 2. 공공건물및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신설) 5. 소규모건축물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중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2조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현 행		개 정	
구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심사등)	구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인증심사등)
내용	제4조(인증심사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1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각 단)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별표2의 인증대상별 인증 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내용	제4조(인증심사등)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다만,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소규모건축물은 인증기관 내부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소규모 건축물 대상 간이심사, 내부심사제도 도입 시 처리기간 60일~90일에서 30일 이하 단축 가능

- 인증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심사인력 구성 시, 접수과정에서 협의와 심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며 위원 위촉에 따른 기간 단축과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절감
- 전면적인 제도개선보다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절차 간소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주차전용건축물내 교육연구시설 허용용도 추가

- 주요 내용 : 주차장 부지는 통상 단일 용도로 사용되어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여기에 교육·연구 시설을 결합하면 도심내 토지 및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발굴 방식 : 공무원 간담회(2025년 규제개선 과제 전문가 토론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 동구는 기존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지상 4~5층 부분을 시민 문화 강좌 및 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연구시설 입점 불가로 문화 및 집회시설(대강당, 전시실, 학습실, 공용 회의실, 사무실)로 용도변경 및 내부 환경을 개선하는 “동구 문화원·체육회 이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의 주차전용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일 용도(주차)로 활용되어 공간 활용률이 낮은 상황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입점 가능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입점 가능업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12개 업종만 입점이 가능함

〈표 3-54〉 주차전용 건축물 입점가능 업종 변화 내용

연도	입점 가능 업종 확대 내용
1992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1995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추가
1996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추가
1999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등 확대
2014	단독주택, 공동주택 추가
2016	창고시설 추가

- 교육연구시설을 추가해도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 대지면적 대비 건물 면적(건폐율), 연면적(용적률)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교육연구시설(예: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등)은 현행 입점 가능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입점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지자체·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복합문화·교육시설 조성사업의 입점 제한
 - 기존 유휴공간의 재활용 효율 저하 및 사업 지연
 - 교육연구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프라 확충 곤란
- 도심 내 토지 활용 효율성 제고: 주차장 부지는 통상 단일 용도로 사용되어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여기에 교육·연구 시설을 결합하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 복합용도 복합건축물은 도시 활성화와 창업·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됨
- 교통 혼잡 완화와 연계 개발: 주차전용건축물은 차량 유입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교육연구시설 입점 시 대중교통 연계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 가능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개선방안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구분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내용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내용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유희공간의 활용도 제고 및 주차전용건축물의 복합화 추진
-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및 주민의 접근성 개선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유연성 확보, 지역경제(발전) 활성화 기여

7) 울산광역시

(1)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주요 내용(지역 현안사업의 주도적인 이행과 원활한 추진 필요/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적으로 이양 추진)
-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항,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제2절, <광역시도시계획수립지침>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민선 8기 공약(5-2-1), 울산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73년도 최초 지정된 이후 울산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시공간구조 단절 및 균형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
-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도시공간구조 단절과 기형적 개발이 초래되고 있으며 개발 가용지 부족으로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현재 100만㎡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해제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사전 협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시·도지사의 해제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이 따르고 사전 협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2~5년)되어 적정 시기 사업 추진 불가로 성장 기회 상실 우려
 - 지방 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고도화된 지역현안사업의 주도적 이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전면 지방이양 필요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평가등급이 높아 도시발전을 위한 가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크며 행위제한 규정이 까다로와 생계형 영농 기반 조성, 국가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능의 입지가 불가함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자연·환경적 보전 가치를 6개 평가지표(표고, 경사, 농업적성, 임업적성, 식물상, 수질)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해 3~5등급지 위주로 해제
 - * 다만 농업적성도가 1·2등급지로서 농림축산부와 협의한 경우, 국방군사시설 등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대상지 정형화가 불가피한 경우 1·2등급지 해제 가능(이 경우 포함되는 1·2등급지는 가급적 원형보존하여야 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지역공약(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통한 도시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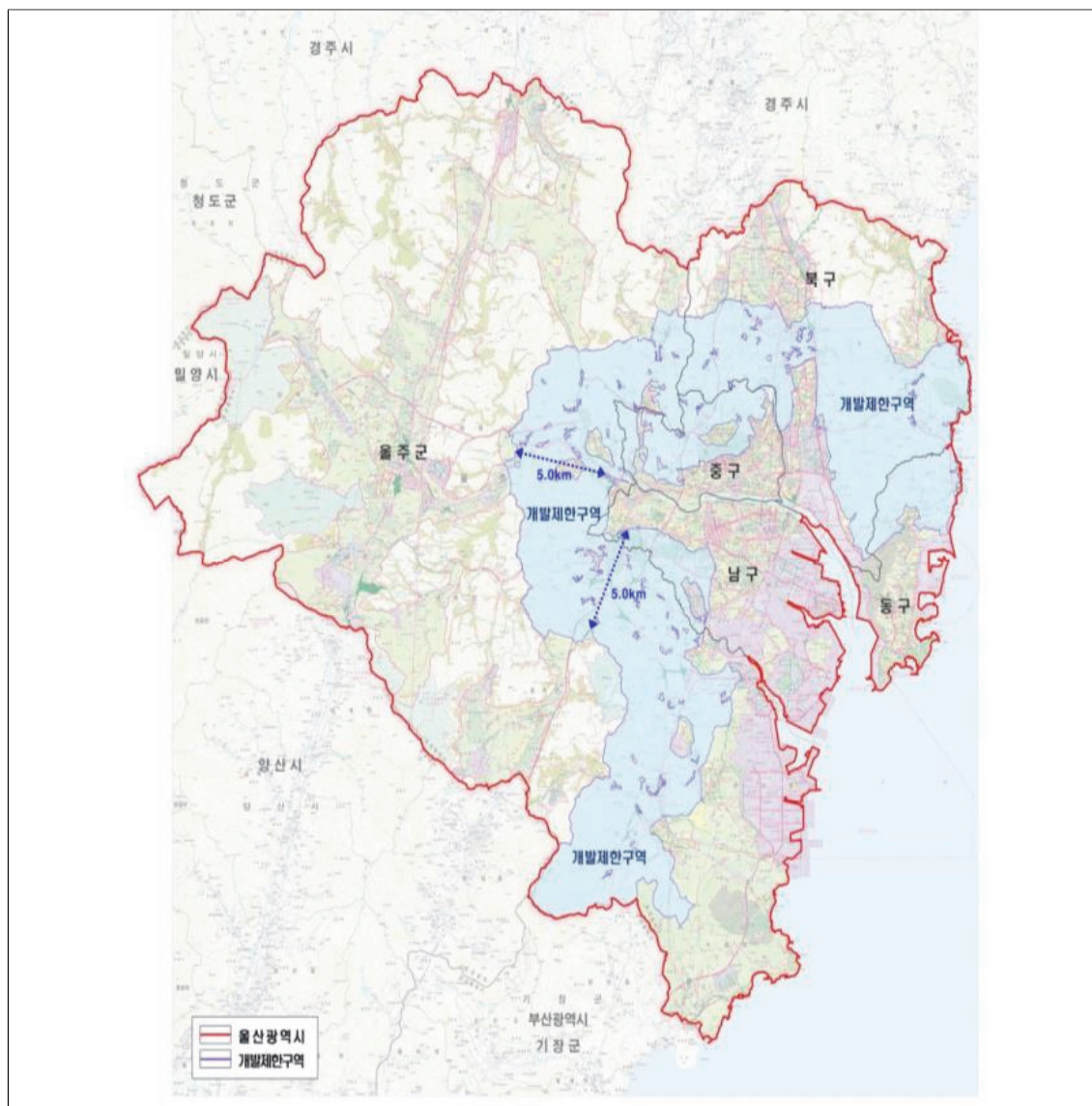
형 발전)으로 발표('22. 4. 27.)되었으며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회의를 4차례 개최('22. 12. ~ '23. 2.)하였으며 부울경차원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음('23. 2.)

- 대통령의 울산 민생 토론회('24. 2. 21.)에서 국가전략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 총량에서 제외 및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 발표 내용 상 해제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GB로 신규 지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국가전략사업 및 지역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GB해제가 가능한지 의문임

〈표 3-55〉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행정구역(km²)	개발제한구역(km²)	해제가능총량	비 고
1,060.7	268.7	23.3km²	GB면적 행정구역의 25.4%

자료: 울산광역시 내부 자료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③)
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선방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③, 삭제)
-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전면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절차 폐지

현행		개정	
구분	법령	구분	법령
내용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내용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③ 삭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①, 개정)
- 환경평가 등급 산정 체계가 표고 등 6개 항목의 최고 등급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수목의 성장으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의 약 90%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에 해당, 이러한 평가 등급을 각 항목의 평균값 또는 항목별 가중치를 두어 등급화 하거나, 매년 수목 성장률을 감안한 보정치의 적용 또는 시·도의 평균 임목 축적을 고려한 임상 평가 기준의 보완 체계 마련 필요
 - 환경평가 세부 항목 중 식물상등급의 임상도 1~2등급의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림청과 협의하여 해제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필요

현 행		개 정	
구분	시행령	구분	시행령
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락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토지, 제6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의 관통 대지 및 제7호에 따른 소규모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내용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법 제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 기대효과

- 지방 중심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광역 교통 여건 마련과 광역 발전축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으로 현 정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 제공
-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
 - 산업단지, 물류시설, 상업지역 등의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감소 대응
 -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 기대
-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활용과 관리의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진정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
 - 특정 지역에 집중된 개발부담 완화, 주택 공급 및 생활SOC 확충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지역내 균형발전 촉진
 -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역 주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전제로 한 친환경 개발 추진과 도시 내 산림 및 공원 기능 강화 등 기존 GB를 대체할 도심 내부 녹지 재편 기회 제공

(2) 노면전차(트램) 혼용차로 관련규정 개정

- 주요 내용(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와 트램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혼용차로 운영을 위한 법개정 및 규칙 제정 필요)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6조, 「도로철도법」 제18조의2 및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경찰청)
- 발굴 방식: 울산시 담당부서(광역트램교통과)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 전용차로 설치 원칙,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용차로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서는 혼용구간을 전체 선로의 1/5이하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16조에서는 노면전차(트램) 전용차로 통행 규정만 있어 다른 대중교통 수단(시내버스, 택시)가 통행할 수 없음
- 트램사업의 경우 도로공간 활용 측면에서 버스노선 개편 시 트램과 시내버스, 택시를 같이 운행하는 혼용차로 운영 필요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혼용차로를 전체 선로의 1/5이하로 설치토록 규정 규정하고 있으며,
 - 「도로교통법」에서는 트램 전용차로를 다른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어 트램, 시내버스 및 택시 간 환승 불편 및 도로 폭 협소 구간 교통 혼잡 우려

[부처 의견]

- 경찰청은, 2018년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18.3.27. 공포) 시에도 혼용차로 설치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노면전차 도입 초기부터 혼용차로를 운영하게 되면, 운전자들의 혼란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우선 초기에는 전용차로 또는 전용도로로 운영하고, 추후 필요시 보완 입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또한 아직 국내에는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고, 혼용차로 운영 시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다만, 현재 노면전차 도입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법률 간 규정내용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로교통법」에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 한편, 「도로교통법」에 혼용차로 통행 근거를 두는 경우 단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혼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기보다는 교통안전에 고려한 노면전차 혼용차로 통행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②항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通行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通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도시철도법」 제18조의2(노면전차의 건설·운전 및 전용로의 설치 등) ②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와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通行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트램과 동시에通行할 수 있도록 혼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교통법」 및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신설, 폐지)

○ 특정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노선버스, 택시가 혼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해당 내용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도로교통법」	구분	「도로교통법」
내용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通行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通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좌회전, 우회전, 횡단 또는 회전하기 위하여 궤도부지를 가로지르는 경우 2. 도로,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부속물 등의 보수를 위하여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내용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② _____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특정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노선버스, 택시가 정지없이 주행하는 경우

-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 혼용차로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시내버스관련 내용을 신설

현행		개정	
구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구분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내용	제4조(노면전차 혼용차로)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설계서비스수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수준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이하로 되는 경우 2. 자동차 등의 주행로를 노면전차 전용도로나 전용차로와 구분하여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좁은 경우	내용	제4조(노면전차용차로)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3. 시내버스, 택시의 정시성 확보와 빠른 이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③ 혼용 선로(「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혼용차로에 설치된 선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간은 전체 노면전차 선로의 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노면전차 선로의 설치 기준) ③ 폐지

□ 기대효과

- 도시 공간구조상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이 많은 울산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도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트램, 시내버스 및 택시 간 환승 불편 및 도로 폭 협소 구간 교통혼잡 해소
-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자동차 수요전환 유도 및 탄소 배출 저감 등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선 트램 개통(2026.05.예정), 대전 도시철도 2호선(수소 트램), 수원 도시철도 1호선(무가선 전기 트램)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됨

구 분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구 간	-	태화강역~ 신복교차로	북울산역~ 야음사거리	효문역~대왕암공원	신복교차로~ 북산성당
연 장(km)	47.635	11.015	13.69	16.99	5.94
사업비(억원)	13,617	3,280('23년)	4,020('20년)	4,085('20년)	2,232('20년)
건설계획	-	1 단계('29년 개통 목표)	2 단계(향후 추진)	향후추진	
		24.705km / 7,300억원 (국 4,380, 시 2,920)		22.93km / 6,317억원 (국 3,790, 시 2,527)	



(3) 자동차 폐차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주요 내용(자동차 폐차시 자동차등록증 반납 규정 삭제)를 통해 국민 부담(자동차 재발급 수수료) 경감과 행정력 낭비 축소 추진 필요)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울산시 담당부서(법무통계담당관실)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시 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 반납은 의무사항이나,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시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민이 많으며, 말소등록신청을 위해 일부러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수수료 700원)해야 하는 불편함과 등록증 발급을 위한 행정력 낭비 발생
- 폐차 후 등록증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말소등록 신청만을 위해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행위는 불합리

[부처 의견]

- 현재는 간편한 온라인 발급 및 전산화 등으로, 자동차등록증 도용 등 방지를 위한 자동차등록증 원본 회수 등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자동차 관련 이해관계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용처 또는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항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자동차 말소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반납 의무 규정 삭제

-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동차등록증 제도는 필요함
- 불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향상 및 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감소를 위해 자동차 말소등록(폐차) 시 자동차등록증 반납 의무 규정에 대한 삭제 또는 정비가 필요함
- 자동차등록증 비치 의무 규정 삭제(2015. 8. 11.), 자동차 정기검사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 규정 삭제(2021. 10. 14.), 말소등록에 따른 봉인 반납 규정 삭제(2024. 2. 20.) 등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 현행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충분히 자동차 등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시행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개정

- 자동차 말소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반납 내용 삭제

현 행		개 정	
구분	「자동차관리법」	구분	「자동차관리법」
내용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 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개정

-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봉인 내용 삭제

현 행		개 정	
구분	「자동차등록령」	구분	「자동차등록령」
내용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 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내용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번호판 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삭제

-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관련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구분	「자동차등록규칙」	구분	「자동차등록규칙」
내용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 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내용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따를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 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현행		개정	
구분	법령	구분	법령
내용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4. 12. 31., 2015. 3. 19., 2015. 7. 7., 2016. 12. 30., 2018. 12. 19., 2020. 2. 28., 2022. 12. 1., 2024. 6. 18.>	내용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6. 11., 2014. 12. 31., 2015. 3. 19., 2015. 7. 7., 2016. 12. 30., 2018. 12. 19., 2020. 2. 28., 2022. 12. 1., 2024. 6. 18.>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 기대효과

- 자동차 폐차 시 불필요한 서류 발급에 따른 행정절차 생략으로 민원 업무 축소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
 - 차주입장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절감 및 행정소요 시간 감소 등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 대규모 비용절감 효과 발생
 -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재발급에 따른 단순 업무 축소(재발급 인쇄·보관, 처리 등에 따른 행정력 감소)와 행정자원의 고부가가치 업무 집중 가능 등

(4)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완화

- 주요 내용 (수소충전소 수익개선을 위해 한전 전기공급약관 개정 등을 통해 산업용 전기로 전환 필요)
- 관련 법령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개정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발굴 방식: 기업인 간담회, 울산상공회의소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인프라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정부정책에 따라 수소차 및 수소충전 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전소 운영적자에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은 환경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비용으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환경부는 ‘22. 11월 적자 수소충전소 93곳 대상(평균 3,013만원/개) 연료구입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
 - ※ ’21년부터 연 1회 지원, ’23년부터 연 2회 지원

- 수소충전소 적자의 주요 원인은 충전기 내 압축기, 냉동설비 가동 등으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하며 충전소 운영 중 전기료 부담이 가장 큼
 - 수소충전소는 수소를 압축하여 저장했다가 수소전기차의 수소탱크에 적합한 기압으로 변환해 공급하여야 하므로, 수소의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냉각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일반 충전소와는 달리 전기사용량이 많음
 - 그러나 한국전력에서는 연료용 가스 제조업이 아닌 차량용 가스 충전소로 분류하여 일반용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음

〈표 3-56〉 국내 수소차 등록 및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전국		울산	
	2018년	2025.03.	2018년	2025.03.
수소차(대)	893	38,622	40	3,037
수소충전소(기)	13	396	1	13

자료: 수소경제종합정보포털(<https://www.h2hub.or.kr>)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기타사업 ①~⑮ (생략)
 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천연가스연료공급시설

□ 개선방안

- 기존 일반용(운송장비용 가스충전업) 전기요금을 적용 중인 수소충전소 사용 전기를 산업용 전기로 전환
 -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한전 이사회 의결을 통한 한국전력 전기요금 약관 개정 필요
 - ※ 2004년 가스충전시설(CNG 충전소) 산업용 전기(갑) 적용 규정 신설한 사례가 있음. 현재 산업용 전기(을)로 전환됨

(5)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광역도로] 대상 확대

- 주요 내용: 철도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까지 광역도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
- 관련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울산시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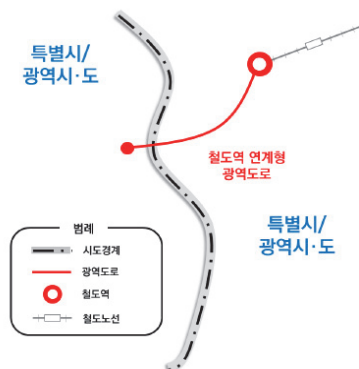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도로 대상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로 제한
-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걸치는 도로 사업은 노선 결정, 사업비 분담,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 계획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광역도로 사업 시행이 어려움
 - 2050 탄소중립 실현 국가 정책으로 광역철도의 신설은 많으나, 광역철도와 연계되는 도로망은 부족한 실정
- 현재 광역도로 사업의 시행계획은 수단별로 제한되는 사업의 성격 상 시설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고려되지 못하며 철도 대비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광역시설(도로, 궤도)과 수단(승용차, 철도, BRT)이 연계되는 종합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대중교통중심 광역 간선도로의 유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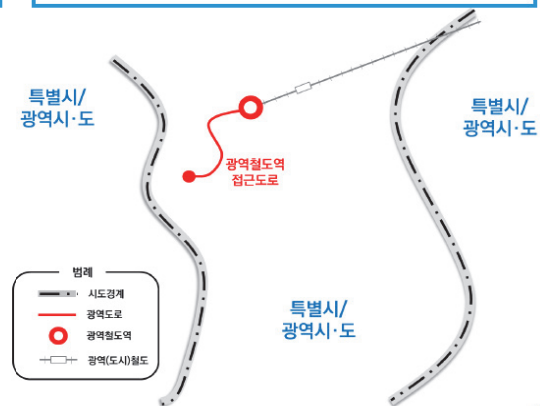
철도역 연계형 광역도로

-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도로가 **철도역과 직접 연계**
*철도역사를 포함한 **환승센터**와의 연계도 가능
- ✓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 **수단전환 효과** 발생
→ 승용차 통행량 감소 및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증가



광역철도역 접근도로

- ✓ 광역철도의 접근성을 위해 철도역사와 **시·도내** 주요지점을 연결
- ✓ 현재 광역교통법 상의 **광역도로 요건에서 벗어나는 유형**
- ✓ 대중교통과 연계한 광역통행을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과업 광역도로 유형으로 제안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 제안(2021. 11.)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생 략)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아. (생 략)

□ 개선방안

○ 광역도로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

- 철도(철도역, 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까지 광역도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구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구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아. (생 략)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아. (현행과 같음) (신설)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철도(철도역, 환승센터 포함)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
	3. (생 략)		3. (생 략)

□ 기대효과

- 동일 교통 수단, 타 지역 간을 연결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광역도로의 개념을 철도와 도로의 연결까지 확장하여, 광역도로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 울산지역의 경우, 서생역~국도7호선 연결을 광역도로 사업으로 추진하여 원전비상대피로 확보
 - 남창역, 덕하역과 온산국가산단 간 연결 도로망 확보를 통한 부산~울산 간 교류 확대

참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철도(「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 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 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 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라 한다)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3. “광역버스운송사업”이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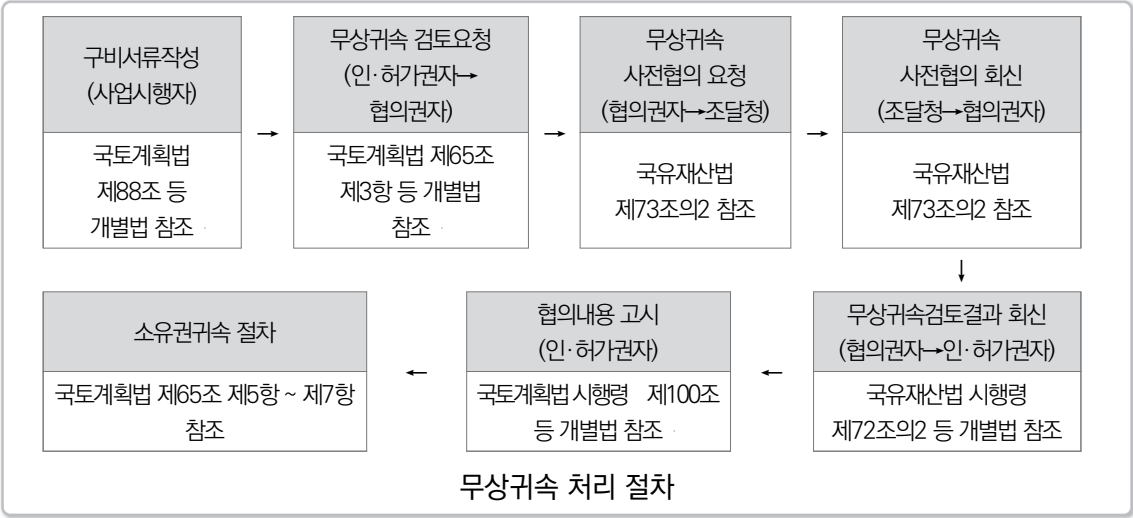
(6)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개선

- 주요 내용: 공공시설의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공공시설의 확장사업의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를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울산시 담당부서(건설도로과)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유재산 무상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제65조의 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 귀속하도록 규정
 - 무상귀속 처리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 협의 시 조달청장은 대법원 판례(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를 근거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되지 않으면 종래의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는 유상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종래의 공공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를 유상매입하여야 함



- 이로 인해 종래의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 토지보상 비용 과다로 인해 확장사업 시행 시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및 공사 추진 애로 발생
- 상기 판례*와 같이 국계획 제65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항은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을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개발 사업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필요한 국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 매입하여 공공시설 설치완료 후 공공시설을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시 발생한 사항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기존 공공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은[ex:도로확장(2→4내지 6차선)] 종래의 공공시설의 도로관리청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도로관리청이 동일한 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임
- 기존 2차로에 포함된 국유지는 이미 도로관리청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행정재산)임
 - *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의 제한) 및 제55조(양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일반·행정재산 무상 양여가 가능
- 또한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은 기존 도로의 연속적인 유지·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 매년 지자체는 도로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 등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정 예산을 투입하여 재포장 등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중임

- 따라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 확장사업과 개발사업자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사안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며, 위 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 구간에 포함된 기존 도로의 국유지는 모두 유상 매입하여야 하는 실정임
- * 무상귀속 대상 개발사업을 ‘단지형 개발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등 선형시설 개념의 사업은 고려하지 않음
- 공공시설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보상비 과다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개선방안

- 공공시설의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기존 공공시설의 확장사업의 경우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를 관리청에게 무상귀속이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내용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공공시설의 관리청에서 기존 공공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청에서 확장한 공공시설(용도가 폐지되지 않은 종래의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기대효과

- 지자체의 공공시설 확장사업 시행 시 국유지 무상귀속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및 주민 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 도로 확장, 하수도 증설, 방재시설 보강 등 공공성 높은 사업 대해 국유지 유상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관련 안정적인 사업추진 가능

- 상이하게 적용 받는 신규 설치와 기존 시설 확장이라는 동일한 공익 목적사업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공공재의 효율적인 이전과 관리체계 확립
-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이행률 제고로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 등

참고

【대법원 판례(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주요내용】

【원고, 피상고인】서울주택도시공사 /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소송이유】

송파구 장지동 647에 이르는 '위례중앙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나들목과 성남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설치되어 이용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지상의 도로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지하에 입체교차로(폭 4차로 19m, 연장 1,275m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건쟁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운 공공시설인 '장지교 삼거리 입체교차로'가 설치되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존에 지상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종래의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가 그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 귀속되 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으로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임.

【판시사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양도되려면 개발행 위허가를 받은 사업이 넓은 면적의 사업구역에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단지형 개발사업'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종래 공공시설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 이어야 함

8) 강원특별자치도

(1)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 확대 (해제 기준 완화)

• 주요 내용:

- ①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중 도로 개설 등 여건 변화로 생산 효율이 떨어진 소규모 자투리 농지에 대해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과제임.
- ② 현행 「농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3만㎡(3ha) 이하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나, 1만㎡(1h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등 절차가 요구됨.
- ③ 면적 제한(3만㎡ 이하)을 삭제하여, 중·대규모 필지도 여건변화 시 해제 가능, 단,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상 농촌관리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의무화,
- ④ 해제 결과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 절차적 안전망 확보

- 관련 법령: 「농지법」 제37조 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 부처: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특례를 부여받았으나, 이 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만 해제가 가능하고 최소 3만㎡ (약 1만 평) 이상 면적 요건으로 제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소규모 또는 지역적으로 소외된 농지들은 특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음
-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실제로 강원도에 부여된 해제 권한은 총 4,000만㎡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해제된 면적은 115만㎡에 불과하여 2.9% 수준에 그쳤음
 - 특히 철원군·인제군 등 일부 지역에 해제가 편중되고 다수 시·군은 참여하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
 - 이는 최소 지정면적 제한과 3년 한시 규정 탓에 도내 전 시·군에 고르게 혜택이 확산되지 못한 결과
- 또한,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 없이 그 지역 안의 토지 면적 3만㎡ 이하로 농진전용을 가능하게 제한함
 - 농업적 가치가 상실된 토지가 3만㎡를 초과할 경우 해제가 불가하며, 동일한 사유(여건변화)에도 면적 크기에 따라 차별 발생
 - 강원도는 도로, 댐, 군사시설, 도시확장 등으로 중규모 이상의 농지가 농업 이용 부적합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제도는 소규모 자투리 농지(3만㎡ 이하)에만 한정
 - 이러한 소규모 면적 제한의 불합리성과 지역 현실과 괴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토지 활용 저하가 문제로 지적됨

○ 규제 관련 법률명 및 조항

□ 농지법

- (내용)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제31조(제1~2항)

- (내용)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 농지법 시행령

- (내용)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략)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 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제 대상 면적은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 면적도 포함한 총 토지 면적이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음

- 이는 토지는 농지와 비농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해제 기준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

• (규제강화) 현재 해석상 3만㎡ 이하 면적 제한이 얼마나 엄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3만㎡ 제한은 순수 농지 면적만 해당으로 해석하여, 비농지(도로·하천 등 포함 부지)를 제외한 농지 면적이 3만㎡ 이하라면 해제 가능으로 보았음

• (규제효과) 비농지까지 포함한 총면적 기준을 적용 → 실제 해제 가능 범위가 축소

○ 유권해석은 법제처 공식 해석으로서 행정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준이므로,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완화해석 불가하여 지자체 재량권을 제약함

- 따라서 소규모 해제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도지사나 시·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주기 어려운 상황임

〈표 3-57〉 법제처 유권해석

구분	내용
질의	「농지법」 제31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농지법」 제14조제3항 참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각주: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규정(전단)하면서,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

구분	내용
	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각주: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지?
회답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 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를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령에 규정된 “농지”와 “토지”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다목 후단에서 같은 목 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아닌,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목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체 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3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문언상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각주: 1990. 4. 7.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이유 참조)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내 ‘토지이용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목적, 농업진흥지역 지정취지와 해제 사유가 소멸된 농업진흥지역의 환원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각주: 법제처 2022. 3. 18. 회신 21-0829 해석례 참조)이므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사유로서 면적에 관한 요건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체 토지의 면적이 아닌, 그 중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제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504호) 제10조제2항 단서 및 별표 6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시 작성하는 ‘토지조서’는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진흥지역 구획선 안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의 토지편입현황의 경우에도 ‘농지’와 ‘비농지’를 더하여 합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은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구획선 안에 위치한 모든 토지, 즉 농지인 토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비농지)의 면적을 더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후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면적뿐만 아니라 농지가 아닌 토지의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날짜/안건번호	2024.04.30 / 24-0247

자료: 법제처 유권해석 사례 페이지

□ 개선방안

- 여건 변화 해제 시 면적 제한을 합리화하고, 장관 고시·계획 정합성·시·도 심의·사후보고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 집행의 예측가능

성과 속도를 높이고자 함

- (효과) 농촌관리계획·특화지구와의 정합성 요건을 추가하여 난개발 우려를 방지

○ 소규모 해제 면적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현행 3만㎡ 제한을 삭제함

- (정합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에 따른 농촌관리계획·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보고 절차를 의무화

○ 도지사의 자율적 권한 범위 확대를 위해 제28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현행 승인 면제 예외(① 별표3 협의 지역, ② 사전전용협의 지역) 이외에 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장관 고시·계획 정합성 충족 시)에도 면적 제한을 면제

- (안전장치) 시·도지사가 여건변화를 인정하고 심의·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중앙·지방의 이중 안전장치를 확보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내용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내용	현행과 같음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면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관리계획 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내용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①(생략), ②(생략),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	내용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구분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가목
내용	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내용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지구·구역·단지·특구 등 안에서 해제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해제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즉, 장관 고시 기간·지역 안에서 농촌관리계획 또는 농촌 특화지구 지정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도 심의·보고를 거친 경우)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① 토지 활용도 제고 및 재산권 보호

- (현행 규정의 문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목은 3만㎡ 이하로 해제를 한정
- (법제처 유권해석) “3만㎡ 산정 시 농지뿐만 아니라 비농지까지 포함”된다고 해석
 - (문제점) 농지 외의 공간이 섞여 있더라도 전체 면적이 3만㎡를 넘으면 해제가 불가능. 즉, 실제 농업적 가치가 상실된 토지도 묶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함
- (개정 효과) 면적 제한 삭제 후에도 농촌관리계획과 정합성을 요건화하면, 토지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해제 가능 → 재산권 보장과 토지 활용 가치 회복

② 지역개발 촉진 및 투자 유발

- (현행 규정) 면적 제한으로 인해 투자 사업(예: 도로 인접부지, 도시 확장부지)이 막혀 민간투자 지연³⁶⁾
- (농촌공간계획 지원 확대)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통해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제된 토지를 계획적 투자·개발 사업으로 연계하겠다고 발표³⁷⁾
 - (예측 가능성 확대) 따라서, 개정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을 제공
- (정량적 분석) 한국은행 「2020 지역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강원도 건설업 생산유발계수 2.35, 부가가치유발계수 0.87
 - (농지 규제 개선 연결고리) 규제 해제로 인한 합리적 토지 이용 → 민간투자가 착수될 제도적 통로 오픈 → 새로운 민간투자 착수로 경제적 파급 효과 발생

36)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촉진지구 해제 사례

3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보도자료2025.2.9.(일).

- (규제 개선 효과) (투자 100억 원 가정 시) 강원도 생산유발 약 235억 원, 부가가치유발 약 87억 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연쇄효과)

- (정량적 분석) 한국은행 「2020 고용표」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8.2명/10억 원
- (농지 규제 개선 연결고리) 강원도 규제개선(해제→개발착수) 시 강원도 산업구조(관광·바이오·에너지 등)에 맞춘 건설투자 →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규제 개선 효과) (투자 100억 원 가정 시) 강원도 약 820명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 효과

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전환

- (필수 요건) 단순히 면적 제한을 풀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으나,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상 농촌관리계획·농촌특화지구 계획과의 정합성을 필수
- (기대효과) 이는 법정 계획에 따른 개발만 허용하므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면서도 합리적 개발을 촉진

②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 (주민참여 확대) 농촌공간계획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수립, 농식품부는 주민참여형 농촌공간계획 모델을 시범 도입해 생활SOC, 주거, 문화시설 공급과 연계한다고 발표³⁸⁾
- (기대효과) 해제 토지가 생활SOC와 연계되면 정주여건 개선,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효과 기대

③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개정안) 해제 결과를 반드시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심의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한 법정기구로, 지자체 의원·전문가·농민대표 등이 참여
- (기대효과)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 주민 수용성, 사회적 신뢰를 강화 가능

(2) 생산관리지역 내 농지전용 규제 완화

• 주요 내용

- ① 202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가능해졌음.
- ② 하지만, 농지법 시행령의 전용 제한이 그대로라 실제 입지는 막히는 “규제 충돌”이 발생함
- ③ 따라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전용허가 제한) 단서를 신설해 생산관리지역 내 소규모 휴게음식점에 대한 전용허가 예외를 명확히 하고, 규모·입지 안전장치(환경·상수원 이격 등)를 하위규정(시행규칙·지침)으로 구체화
- 관련 법령 : 「농지법」 제37조(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전용 제한대상 시설)
- 소관 부처 :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3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보도자료 2025.4.22.(화).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생산관리지역의 소규모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은, 상수원보호구역·하천 등 환경민감 지역과 이격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 가능함(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그러나 생산관리지역 대부분이 '농지'이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는 건축법상 일부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포함)을 농지전용 허가 제한시설로 규정
 - (법령 간 충돌 지속) 국토계획(입지 허용) vs 농지법(전용 금지)
- 현장에서는 국토계획법은 허용했지만 농지법 전용제한으로 토지구제 효과가 미비하다, 즉 반쪽 혜택이라는 보도와 지자체 민원 건의도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 공식 문제 제기) 아산시장은 “계획상 입지는 허용되나 전용 허가는 불가한 법령 간 엇박자가 현실화되어 민원(주간 평균 8건)이 지속된다”고 공식 건의³⁹⁾
 - (조례 정합화) 공주시는 2024.9.19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시행규칙의 '설치 불가 지역'(상수원·하천 등)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는 휴게음식점 건축 허용으로 정비⁴⁰⁾
 - (농지구제 지속) 다만 해당 토지가 '농지'이면 여전히 농지전용 허가 단계에서 제약을 받는 구조
- 결과적으로 농촌 카페·체험형 외식 등 소규모 6차산업 창업 및 투자가 지연·위축되고, 지역특산물 활용형 소득 다각화에도 제동이 걸리는 상황 발생
 - (문제의 핵심) 입지 허용이 아니라 농지 전용 불가

○ 규제 관련 법률명 및 조항

□ 농지법

- (내용)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 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농지법 시행령

- (내용)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자목·너목·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39) 대전일보,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반쪽' 혜택", 2025. 5. 25.

40) 공주시보 제904호(2024.9.19.)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 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개선방안

- 생산관리지역에서 소규모 휴게음식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입지 허용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하며, 2024.5.29 개정으로 “설치 불가 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시행규칙 제11조의9와 별표1의2로 명확화함
- 그러나 현행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농지전용 허가 제한시설로 열거해, 생산관리지역이 농지인 경우 전용 단계에서 사업이 막히는 구조가 발생
- 이 충돌을 해소하려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 단서(예외)를 신설해 조건부 허용으로 정합성을 맞추는 방안이 합리적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행		개정	
구분	「농지법 시행령」	구분	「농지법 시행령」
내용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자목·너목·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내용	제44조(현행과 같음) 〈신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19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은, 같은 건축물 내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전용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① 투자 착수 가능성 확대 → 생산·부가가치 파급, 일자리(취업·고용) 유발

- (의미) 전용 제한의 단서(예외)가 시행령에 명시되면, 조례로 입지 허용된 소규모 카페·제과점 등 전용 허가까지 이어질 제도적 통로가 열림

• (효과) 소규모 민간투자 착수 가능, 특히 소규모 건축·리모델링·내장 공사 및 운영단계(숙박·음식점 부문)에서 취업/고용 유발효과 발생

② 행정·사업비용 절감(리드타임·불확실성 축소)

- (의미) 입지는 허용되나 전용은 불가라는 규제 충돌을 해소하면, 지자체·사업자 모두 중복 질의·보완·민원이 감소

• (효과) 행정절차의 불필요한 대기·재협의 시간을 줄여, 허가 완료까지의 전체 소요기간 단축과 행정비용 절감.

- (근거) 법령 상의 정합성 확보(시행령 단서 + 시행규칙의 '설치 불가 지역' 명시)는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는 일반적 효과(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9,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 사회적 효과

① 난개발 방지 + 계획적 전환(안전장치 내재화)

- (의미) 단서(예외)는 무제한 완화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임

- (안전장치) 입지-전용-운영의 전 과정에서 법정 계획과 기준이 겹겹이 적용되어 무분별 개발을 구조적으로 차단

• (법령 준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9가 정한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준수

• (확산 억제) 농지법 시행령 단서에 소규모 범위(예: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같은 조건을 부가해 과도한 확산 억제

② 생활편의·정주여건 개선(농촌 서비스 인프라)

- (의미) 카페·제과점 등 생활편의 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근거리 서비스 접근성 향상

• (기대효과) 정주 매력도 제고

- (근거) 생산관리지역의 조례 허용과 시행규칙의 설치 불가 지역 명시는 허용되는 곳에 한해 생활 SOC를 보완하도록 설계됨(법정 근거 명확)

③ 법령 간 일관성·정책 신뢰성 회복

- (의미) 국토계획법(입지 허용)과 농지법(전용 금지)의 모순을 해소

• (기대효과) 민·사업자의 혼란·민원이 줄고 정책 신뢰가 회복

- (근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단서 신설로 예외를 명문화하면 법령 체계 간 정합성이 보장됨(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 시행규칙 제11조의9와 동조)

(3) 공공처리 유기성 슬러지의 ‘비료 원료 지정’ 합리화

- 주요 내용
 - ① 공공하수처리·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sludge)는 알루미늄 등 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행 비료 원료 기준(농진청 고시) 충족이 어려워 퇴비화 불가
 - ② 소각·매립 의존이 발생. 이는 비용·환경 측면에서 비효율
 - ③ 따라서 원료단계 일괄 차단이 아니라, 완제품(퇴비)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원료 지정을 허용(조건부 지정)하고, 전처리·혼합(희석)·모니터링을 병행하는 성과기준(Output control)으로 전환
- 관련 법령 : 비료관리법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 등: 장관이 공정규격을 설정·변경·폐지 가능),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6조(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별표3](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별표5](보통·부산물비료 원료), [별표6](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 소관 부처: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협의) 환경부
- 발굴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비료관리법 제4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폐지할 권한을 명시함
 - (고시기준)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 설정」이 제정되어, 제6조 및 [별표5]에서 원료군·성분한도를, [별표6]에서 원료 지정 요령을 규정
- 공공하수처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sludge)는 황산알루미늄 등 응집제 사용 증가로 인해 알루미늄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행 기준) 알루미늄(Al) 1.5% 이하, 구리(Cu) 360mg/kg 이하, 아연(Zn) 900mg/kg 이하 등 엄격한 중금속/금속류 상한이 적용
 - (문제점) 완제품 단계에서 충족 가능해도 원료 단계에서 지정 불허
- 그 결과, 자원화보다는 소각·위탁 처리에 의존하게 되고, 비용 부담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짐

〈표 3-58〉 홍천군 공공처리시설 유기성폐기물 중금속 기준 및 처리 현황

구 분	오니 중금속 현황		‘24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톤)		
	비료 원료 기준	부산물비료 공정규격	발생량	퇴비화	소각 등
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공공처리)	구리 360mg/kg 이하 아연 900mg/kg 이하 알루미늄 1.5% 이하	구리 360mg/kg 이하 아연 900mg/kg 이하 알루미늄 -	3,126	-	3,126
생활하수오니 (공공하수처리)			4,374	2,433	1,941

자료: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내부 자료

○ 위탁처리 단가는 톤당 15만~17만 원 수준으로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 퇴비화 처리 단가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⁴¹⁾

- (비효율성) 따라서 퇴비화가 가능한 자원을 원료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경제적·환경적으로 모두 비효율

○ 규제 관련 법률명 및 조항

□ 비료관리법

- (내용)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 (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1. 24.〉

제6조(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 ② 제3조제7항 및 제4조제7항에서 정하는 비료의 원료는 별표5와 같다. ③제2항 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사용 전에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요령은 별표6과 같다.

【별표3】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설정

1. 부숙유기질비료

비료의 종류	주성분의 최소함유량(%)	유해 성분의 최대함유량	그 밖의 규격
01. 가축분퇴비 〈산설 2002. 12. 31., 2010. 3. 29.〉 〈정의〉가축의 분뇨를 50%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발효 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	유기물: 30 이상 〈2010. 3. 29., 2012. 1. 2., 2013. 2. 14.〉	1.건물중에 대하여 〈2009. 10. 1., 2010. 3. 29.〉 비 소 45mg/kg 카드뮴 5mg/kg 수 은 2mg/kg 납 130mg/kg 크 롬 200mg/kg 구 리 360mg/kg 니 켈 45mg/kg 아연 900mg/kg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 10mg/kg	1. 유기물대 질소의 비 45이하인 것.〈개정 2013. 2. 14.〉 2. 건물중에 대하여 염분(NaCl): 2.0 % 이하 〈2009. 10. 1., 2010. 3. 29., 2014. 7. 1.〉 3. 수분(H ₂ O): 55 % 이하〈2010. 3. 29.〉 4. 부숙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 이상일 것. 가. 콤팩: 부숙완료 나. 솔비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다. 중자발아법 발아수 70이상〈산설 2010. 3. 29., 2010. 12. 23., 2014. 7. 1.〉 5. 염산불용해물 25% 이하〈산설

【별표5】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3.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

원료의 종류	비 고
1.식품품 제조 및 판매업(수산포함)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1.합성 및 특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는 제외 〈2002. 1. 31, 2012. 7. 3.〉 2.별표 6에 따른 비료원료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라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받은 원료만 사용할 수 있음 〈산설 2012. 7. 3.〉
2.음료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오니 〈개정 2020. 11. 25.〉	
3.종이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4.음면단위 농어촌지역 생활하수오니	
5.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 〈2002. 1. 31.〉	
물리적추출, 발효 단순혼합, 무균조작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6.화장품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2002. 1. 31.〉	
7.안축분뇨등 동물의 분뇨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8.음식물류 폐기물의 폐수처리오니 〈2009. 1. 12.〉	
9.기타 위항과 유사한 것 중 퇴비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2006. 1. 6.〉	

41)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내부 자료

【별표6】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
2. 지정기준
가.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성 분 명	규 격
1. 유기물	12% 이상<개정2013. 10. 1.>
2. 수분	85% 이하<신설2013. 10. 1., 2014. 7. 1.>
3. 건물중에 대하여	
가. 비소	45mg/kg이하 <개정2012. 7. 3.>
나. 수은	2mg/kg이하
다. 납	130mg/kg이하 <개정2012. 7. 3.>
라. 카드뮴	5mg/kg이하
마. 크롬	200mg/kg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바. 구리	360mg/kg이하 <개정2012. 7. 3., 2013. 10. 1.>
사. 아연	900mg/kg이하
아. 니켈	45mg/kg이하 <개정2012. 7. 3.>
자. 알루미늄	1.5 %이하<신설2013. 10. 1.>

□ 개선방안

- 원료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완제품 충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원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순환과 환경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
-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에 단서 조항을 신설
 - (주요 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공공처리오니)에 대해 전처리·혼합계획, 시험생산 결과, 완제품 공정규격 충족을 조건으로 원료 지정 가능
- [별표 5] 보통·부산물비료 원료 목록에 ‘공공처리오니(조건부)’ 항목을 신설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구분	「비료 공정규격 설정」 제6조
내용	제6조제3항 별표 5 제2호 중 사전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하여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의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요령은 별표 6과 같다.	내용	(현행과 같음) 〈신설〉 다만,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오니(이하 ‘공공처리오니’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처리 및 혼합계획, 시험생산 결과, 완제품의 공정규격 충족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구분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5	구분	「비료 공정규격 설정」 별표 5
내용	3.사전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 식품가공 부산물, 제지오니, 생활하수 오니, 축산분뇨오 니 등	(현행과 같음) 내용 <신설> “ <u>공공처리오니(조건부): 전처리·혼합 및 완제품 공정규 격 충족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u> ”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① 처리비용 절감

- (원료 기준 미충족 → 소각·위탁 처리 의존) 현재 공공하수처리·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는 원료 성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부분 소각·위탁 처리
- (톤당 고비용 →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이는 톤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자체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
- (조건부 원료 지정 → 퇴비화 전환·비용 절감 기대) 이는 톤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자체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

② 자원순환 통한 농업 지원

- (공공처리오니 활용 → 부산물비료 생산 기반 강화) 공공처리오니가 안정적으로 비료 원료로 공급되면, 부산물비료 생산 기반이 강화되어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음
- (비료 자급률 향상 → 농가 비용 부담 경감) 이는 비료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짐

③ 투자·고용 파급효과

- (추가 공정 투자 → 생산·부가가치·고용 파급효과) 공공처리오니의 활용 확대를 위해 전처리·혼합시설 보강, 시험생산,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추가 공정에 대한 투자
 - (주요 내용) 그 과정에서 건설·운영 관련 산업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며, 이는 생산 유발, 부가가치 창출, 고용 확대로 이어지고,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처리공정 개선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투자 기반으로 작용

○ 사회적 효과

① 환경부담 완화와 순환경제 기여

- (퇴비화 전환 → 환경부담 완화·토양 보전) 소각·매립 의존도를 줄이고 퇴비화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토양 유기물 보전에 기여
- (순환경제·탄소중립 부합) 이는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탄소중립 정책과도 부합

② 제도 정합성과 신뢰 확보

- (조건부 원료-완제품 기준 정합성) 지금까지는 원료와 완제품 규격 간 괴리로 현장 혼란이 발생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원료 조건부 허용-완제품 기준 충족”이라는 정합성이 확보됨
- (예측가능 규제 → 정책 신뢰 제고) 농가와 지자체 모두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정책 신뢰도가 제고

③ 지역 상생 효과

- (비용 절감·비료 공급) 지자체는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가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음
- (생산성·지역경제·순환경제 강화) 이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 농촌 순환경제 기반이 강화됨

(4) 곤충산업·바이오·푸드테크 융합 거점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 주요 내용

- ① 강원도(춘천)의 곤충산업거점단지는 시설·기업·농가·연구가 이미 묶여 즉시 성과화가 가능한 상태
- ② 하지만 일반법 안에서 거점단지 법정 지원, 종자보급·유통·수급안정, 융복합 연계의 근거가 분산·미흡해 실제 집행(예산·절차·권한)이 느리고 불확실
- ③ 따라서 일반법 내부에 핵심 기능을 명문화(‘법정화’) 하고, ② 집행형 권한을 도(강원)로 위임/대행하여 현장 속도·정합성을 높임
- 관련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 제3조(국가·지자체 책무) 및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제15조(권한위임·위탁), 동업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제3조(책무),
- 소관 부처: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연계)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 발굴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강원도는 거점단지(스마트팩토리·임대형 스마트팜·융복합센터), 운영협의체, 기업·농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현장의 준비 수준 대비 제도 공백) 일반법 안에 거점단지 지원, 센터 설치·운영, 수급·이력관리 등 핵심 기능이 흩어져 있거나 구체성이 낮아 국고·도비 지원의 안정성·절차의 명료성이 떨어짐
- 지정·운영 승인, 입주기업(임대형) 선정·변경, 수급·이력관리와 같은 일상적 집행 사무가 중앙 절차를 반복해 리드타임이 길어짐
 - (권한의 중앙 집중으로 인한 집행 지연) 현장 민원과 투자 타이밍을 놓치기 쉬움
- 식품·사료·소재 등 바이오·푸드테크 융복합 전주기(종자-사육-가공-인증-유통)에 걸쳐 해석·책임 주체가 분산
 - (규제 분절 및 융복합의 제도적 미비) 강원도가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움
- 현장의 준비 수준에 비해 법정 지원·절차·권한이 불명확하여 속도·예측가능성이 낮은 상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 (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먼저 곤충산업법 제3조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점단지·종자보급·유통관리와 같은 구체적 지원책이 미흡

- (효과) 곤충산업을 바이오·푸드테크 산업과 연계한 융합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방 역할 분담이 명확해짐

○ 법 제14조의2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로 한정되어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센터 설립 및 국가 R&D 연계 기능 근거가 불명확

- (법률 차원) 중앙·지방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 시행령에서는 권한을 도지사로 확대 위임해 현장 집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 시행령 제7조는 권한 위임 대상을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으로 한정하여, 도지사(강원 포함)가 거점단지·입주기업·수급조정 등 집행형 사무를 주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지자체 역할 확대) 이를 통해 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거점 운영과 산업육성의 전면적 실행기관이 될 수 있음

○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방향

현행		개정	
구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곤충종자보급센터, 수급안정 및 유통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거점단지를 설치·운영하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구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곤충종자보급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통한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곤충자원 선발 및 계통화 2. 우수 곤충종자의 개발 및 보급 3. 곤충종자 및 먹이원의 생산·이력 관리 4. 곤충종자 질병발생 관리체계의 구축 5. 곤충사육환경 기술 개발 및 컨설팅 6. 국가 R&D 사업 등과 연계한 종자 품질관리 및 산업지원 7. 그 밖에 곤충종자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행		개정	
구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내용	현행과 같음 <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① 산업 인프라 확충과 투자 촉진

- (주요 변화)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종자보급센터를 국가-지방이 함께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
- (효과) 시설·장비·임대형 스마트팜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 민간기업이 장기적 안정성을 보고 투자할 유인이 커짐 → 지역 내 R&D-생산-가공-유통의 가치사슬을 촉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안정적 공급망 형성과 수출 기반 강화

- (주요 변화) 종자·사육환경·품질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 고품질 곤충 종자 및 관련 원료(사료·소재 등)의 안정적 공급망이 구축
- (효과) 곤충 단백질·기능성 소재 등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의 핵심 조건

③ 행정비용 절감과 사업 속도 제고

- (주요 변화) 거점단지 승인·입주기업 관리·수급조정·유통이력 관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
- (효과) 현장 상황을 즉각 반영해 리드타임 단축, 중앙-지방 간 이중 심사·보고 절차 축소로 행정비용 절감 → 업과 농가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의사결정 환경에서 경영 안정성이 확보

④ 투자 유발(건설·설비·운영)과 경제 파급

- (현실적 투자) 거점단지(부지 23,815㎡·총 200억, 스마트팩토리·임대형 스마트팜·융복합센터) 기반의 투자·운영이 현실화되는 구조
- (연간 경제효과) 280억(직접 170·부가 110), 일자리 144명(임대형 80, 사료·스마트팩토리·전처리 64) 기대.
- (설명) 위 수치는 강원 거점단지의 시설·입주·운영 계획과 참여기업/농가 네트워크를 반영한 내부 추정⁴²⁾

○ 사회적 효과

①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주요 변화) 법 제3조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역할·책무·지원범위가 명확해 지면, 중앙은 정책·재정 지원, 지방은 설치·운영·집행 담당 → 이원적 협력 구조 정착
- (효과) 향후 분쟁·책임공방을 예방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임

② 산업 신뢰성·소비자 신뢰 제고

- (주요 변화) 종자 품질관리·질병관리·이력관리 강화는 안전성 문제 발생 시 회수·공표 등 사후조

42)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내부 자료

치로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

- (효과) 곤충식품·바이오 소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로 시장 수용성 확대

③ 지역사회 수용성과 참여 확대

- (주요 변화) 거점단지와 종자보급센터 운영에 운영협의체가 포함 → 농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거버넌스가 가능

- (효과) 지역 주민·농가의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과 산업 성과를 공동체 차원의 자산으로 만들

(5)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합리화

• 주요 내용

- ①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 세부사항은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지전용면적의 50% 이내'로 제한(예외 극히 제한)
- ② 진흥사업(집약·복합 배치·경사 적응형 설계)에서 합리적 설계·시공이 곤란해 안전 전제하의 범위 완화/예외 신설이 필요
- ③ 따라서 상위법·하위법 규정을 정합적으로 개선해 안전·환경성 기준은 유지하면서 도지사 심의·조건부 허가 재량을 확대(조례 연동)해 현장 속도·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 허가기준 근거) 및 제3조(산지관리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별표 연계·세부기준 위임),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비탈면 수평투영면적 50% 규정)
- 소관 부처: (주관) 산림청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 발굴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는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 초과 금지”로 규정

- (법규 구조상 병목) 예외는 국방·사방·하천·도로 등 제한적 분야에 한정 → 산업시설·관광·집약형 산지이용 진흥사업에는 적용 유연성이 낮음

- (실질 변경의 한계) 시행령 제20조는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세부기준을 별표로 위임하고 있어, 실질적 기준 변경은 [별표] 개정 없이는 불가

○ 경사·지형이 급변하는 강원 산지 특성상, 50% 고정 상한은 터널·교량·녹화·사방 등 대체수단을 충분히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배치 제약을 초래, 공사비 상승·공기 지연 유발(지방투자 유인 저하)

- (합리적 조건부 완화) 반대로 무제한 완화는 재해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안전 전제의 ‘조건부 탄력’이 합리적

○ 전반적으로 안전 전제의 제한적 완화를 가능케 하는 법적 여지가 부족하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재량(조건부 허가) 범위도 협소

□ 강원특별법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화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결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③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사방댐·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의 재해방지시설(이하 “재해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별표1의 3)]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5. 3. 1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생략

□ 개선방안

- 현행 시행규칙 [별표 1의3]은 복구대상 비탈면의 수평투영면적을 전용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여, 강원과 같이 산악·급경사 지형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 배치에 불합리한 제약이 발생
 - (개선안)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한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사방시설, 배수·녹화계획 등 안전조치를 충족한 경우에 한해 50% 상한을 70% 이내로 완화하거나 예외 적용을 허용
-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구체 사항을 시행규칙 별표에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로 완화 가능한 항목에서 수평투영면적은 제외
 - (개선안) 시행령에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항목”에 수평투영면적을 추가하고, 완화 상한선과 안전요건을 가이드레일 형태로 규정하여 지방정부가 합리적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령은 중앙이 세세하게 허가 기준을 통제하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 (개선안) 시행령 위임조항을 통해 ‘조건부 허가’ 여부 판단을 도지사(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정으로 위임하고, 도 조례에 세부 심의기준(재해저감, 사방·경관 관리, 복구 이행보증 등)과 허가조건 유형(예: 녹화 성공 기준, 모니터링 주기)을 명시
- 결과적으로 법(원칙과 위임) → 시행령(조례 재량 범위와 위임·대행 근거) → 시행규칙·별표(구체적 수치와 안전요건)의 3단계 체계를 완성해, 합리성과 안전성, 집행력까지 모두 확보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산지관리법 시행령	구분	산지관리법 시행령
내용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내용	제20조(현행과 같음) 1. 별표 4 제1호마목3)·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2)에 따른 허가기준 〈신설〉 <u>이 경우 같은 표 제1호 마목 3)에 대한 완화는 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한다.</u>
현 행		개 정	
구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구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내용		내용	〈신설〉 <u>⑨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예외 인정 여부는 도지사가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기준과 허가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
현 행		개 정	
구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 1의3]	구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 1의3]
내용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내용	(현행과 같음) 〈신설〉 <u>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경우 재해영향성 평가, 사방시설, 배수·녹화계획 등 안전조치를 충족하는 때에는 수평투영면적 상한을 70%까지 완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예외 항목 및 안전조치는 별표에서 정한다.</u>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① 인허가 리드타임·비용 절감

- (주요 변화1) 실질 허가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위임되어 있어(수평투영 50% 규정) 이 [별표] 자체를 손봐야 현장 설계·심사가 바뀔
 - (효과) 따라서 조건부 완화 신설이 바로 재심의·재설계·재시공의 반복을 줄임
- (주요 변화2) 조례 재량 확장(시행령 제20조제7항 보완)과 도지사 심의·결정(제20조제9항 신설)은 중앙 재협의·유권해석 반복을 줄여 승인·착공 지연을 축소
 - (효과) 시행령이 [별표]·조례와의 위임·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유권해석·정비자료에서 확인

② 투자 착수 가속과 파급효과

- (간접효과) 시설·사방·녹화·배수 등 추가 안전공정 및 산지이용 시설투자는 강원도 주요산업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고용유발효과도 발생

③ 재정·민간부담 완화(예산·조달 효율)

- (조건부 완화) 최소절개·터널·교량 적용 최적화가 가능 → 공사비·공기 절감 기대(현장설계에서 비탈면 발생 최소화 의무는 [별표 1의3]에도 반영)
- (효율성 극대) 조례 가이드레일(완화 상한·안전요건)을 명문화하면 수의적 협의·재심이 줄어 조달·심사가 효율화

○ 사회적 효과

① 안전·환경 리스크 관리 내재화

- (안전성) 완화는 재해영향성 평가, 사방시설, 배수·녹화계획 등 안전조치 충족을 전제로 허용(시행규칙·별표에 열거) → 무제한 완화 금지
- (효과성) [별표 1의3]은 비탈면 최소화·보호공 설치·녹화공법 등 안전·경관 기준을 이미 담고 있으며, 사방사업의 효과성은 산림청·지자체 자료⁴³⁾에서도 강조

② 규제의 예측가능성·정합성 제고

- (법령정합) 시행령(제20조 조례 재량·도지사 심의) → 시행규칙·[별표] (수치·안전요건)의 정합이 확보되면 현장 해석 혼선이 줄어들
 - (법제처 유권해석) [별표]의 의미·범위 명확화 필요를 지적해 왔음
- (성과) 인허가 기준과 절차가 문서화·표준화되어 민원·분쟁 감소, 정책 신뢰 상승

43)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내부 자료

③ 지역 수용성·거버넌스 강화

- (수용성 제고) 도지사(산지관리위원회) 현장 판단권과 조례의 공개된 심사기준은 주민·기업에 투명성을 제공
- (책임성 강화) 강원 특수지형(산악·급경사)에 맞춘 지역 맞춤형 허가조건(복구 이행보증·모니터링 주기 등)을 조례에 명시

(6) 공유림의 유연한 활용·거래를 위한 규제 완화

• 주요 내용

- ① 공유림(지방자치단체 소유 산림)은 행정재산 성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상 처분 제한(대부·매각·교환·양여 등 금지)과 사용·수익허가 중심의 경직된 체계를 따름
 - ② 이로 인해 입목·임산물의 탄력적 활용·거래가 어렵고, 지역 목재 수요 연계·산림경영계획 실행도 제약
 - ③ 따라서 공유재산법에 공유림·입목 등 산림형 자산에 대한 예외·특례적 운영 근거를 일반법에 명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의 공유림 경영계획(제13조)과 정합성을 확보, 사용·수익허가·입목처분 등 집행형 권한은 도지사에 위임·대행하여 현장 속도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
- 관련 법령 :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및 제20조(사용·수익허가), 산림자원법 제13조(산림경영계획)
 - 소관 부처: (주관) 행정안전부, 산림청 (협업) 기재부
 - 발굴 방식: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는 행정재산의 대부·매각 등 처분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예외 협소)하고, 제20조(사용허가)는 목적·용도 저해 금지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만 허용
 - (공유림·입목) 행정재산으로 취급되어 처분·거래의 유연성이 낮음
- 반면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하에 임산물 매각·대부·사용허가 등 별도 규정이 존재(경쟁입찰·수익계약 요건 등)해 운용 재량이 큼
- 산림자원법 제13조는 공유림별 경영계획 수립·인가를 요구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처분 제한·허가 체계와 충돌함
 - (산림경영과의 정합성 미흡) 경영계획의 실행(간벌재 판매, 지역 클러스터 납품, 공동사업 등)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
- 이와 같이 공유재산법은 재산의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허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산림자원법은 공유림을 계획에 따라 실제로 활용·경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핵심 문제) 하지만 두 법의 체계가 서로 맞물려 있지 않아, 공유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발생 → 공유림의 가치 실현 지연·지역 수요 미연계

〈표 3-59〉 강원도의 산림면적 대비 임가수 비율

구분	국토면적	산림면적	산림비율	임가수	임가비율(산림대비)
전국	10,041,260	6,286,438	63	103,416	1.65%
강원자치도	1,682,968	1,354,948	81	8,585	0.63%
경상북도	1,903,403	1,333,691	70	20,334	1.52%
전라남도	1,234,809	686,852	56	14,230	2.07%
충청북도	740,695	488,337	66	7,099	1.45%

□ 관계 법령

□ 공유재산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하기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기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하기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하기의 갱신 또는 사용하기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현지에 소재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보호협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협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및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하 “국유임산물”이라 한다)의 매수자가 그 국유임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물의 채취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중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수종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유림 안에 위치한 공·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 나. 임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
 - 다.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재해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한 자재의 공급
2. 재해를 입은 자에게 재해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또는 임산연료(林産燃料)의 공급
3.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개선방안

○ 현재 공유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처분과 사용에 제약이 많아, 실제 산림경영계획과 연계한 활용이 쉽지 않음.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법령 정비가 필요

- (상위법) 「공유재산법」 제19조의 단서에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임산물 처분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 신설

- (효과) 공유림 활용이 법률상 원칙적 처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도록 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처분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시행령) 집행 절차 구체화

① 시행령 제12조에 공유림 경영계획 목적형 사용허가 사유를 명시해, 집하장 설치나 지역공급 연계 등 목적형 사용을 허용

② 제37조의4를 신설해 공유림 입목·임산물 처분 절차를 사전가격평가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목조화나 사회적경제 공동사업 등 공익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

- (효과) 거래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수요와의 연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

- (권한 위임·대행) 시행령 보칙 부분에 제97조를 신설해, 공유림의 사용허가와 처분 승인 같은 집행형 사무를 도지사에게 위임

- (효과) 도 조례로 심의기준·가격평가·공급 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해, 집행 권한은 지방정부에 부여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

○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내용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내용	제19조(현행과 같음) 〈신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산림경영계획의 승인·집행절차, 가격평가 및 감시·공개 등)을 갖춘 임목·임산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내용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⑤ 생략	내용	제20조(현행과 같음) 〈신설〉 ⑥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집행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절차·요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내용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	제12조(현행과 같음) 〈신설〉 4.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임산물 가공·지역공급 연계 등 목적형 사용허가의 경우

현 행		개 정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4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4 (신설 조항)
내용		내용	〈신설〉 제37조의4(공유립 입목·임산물 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유립 입목·임산물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가격평가를 거쳐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 목재클러스터 또는 지역 공공건축의 목조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 2. 사회적경제 주체가 수행하는 산림자원 공동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때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질서와 가격의 적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검수 및 처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00조 (신설 조항)	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00조 (신설 조항)
내용		내용	〈신설〉 제00조(권한의 위임·대행)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유립 관련 집행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공유립 입목·임산물 처분 승인 등 처분 집행 사무 2. 공유립 산림경영계획 목적의 사용허가 사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할 때 조례로 정하는 심의기준·가격평가·우선공급 기준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검수·정보공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① 인허가·계약 리드타임 단축

- (개선)

- (상위법) 공유재산법 제19조 단서 신설로 ‘경영계획 연동 처분’ 근거 마련,
-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사유)에 산림형 사유 신설, 제37조의4(공유립 입목·임산물 처분)로 절차 표준화, 제97조(권한 위임·대행) 신설로 도지사가 집행행 사무(사용허가·처분 승인)를

원스톱 처리

- (효과) 심의·승인·계약 단계의 왕복(보완요구·유권해석 요청)이 줄어 소요기간과 행정비용이 감소

② 조달·거래비용 절감과 가격 신뢰성 제고

- (가격투명성) 경쟁입찰 원칙 + 수의계약 사유 한정 열거(시행령 제37조의4 신설안)로 가격형성의 투명성 제고.
- (분쟁최소화) 사전가격평가·검수·정보공개를 행안부령으로 표준화하면 계약 리스크·분쟁 비용 감소(온나라 전자시스템과도 정합)

○ 사회적 효과

① 투명성·공정성 강화 → 정책 신뢰·시장 신뢰 상승

- (이유) 경쟁입찰 원칙 + 수의계약 예외적·한정적 허용 + 정보공개 등 삼중장치.
- (효과) 특혜·가격 왜곡 우려 최소화, 조례 기준 공개로 예측가능성 제고(민원·분쟁 감소)

② 지역 수요 연계와 산업 생태계 강화

- (설비가동률·제품 다변화) 공유립 간벌재·부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지역 목재클러스터, 공공 건축 목조화 수요 연계
- (사회적경제 공동사업) 로컬 파트너십 활성화로 지역 내 부가가치 체류 확대

③ 지속가능성·거버넌스 내재화

- (자의성 최소화) 사용허가·처분이 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에 의해 운영
- (장 수용성 상승) 도지사 위임 + 조례 기준(심의·가격·우선공급)으로 책임성이 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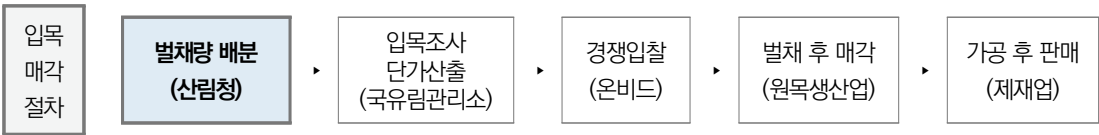
(7) 국유임산물 매각·공급의 ‘지역 연계’ 제도화

• 주요 내용

- ① 국유 임산물(원목 등)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매각되며(국유림법 제27조제1항),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사유가 법률에 열거되어 있음
 - ② 현행 법률의 예외사유 중 제27조제1항 제3호(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와 제27조제1항 제8호(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지역 우선공급’의 제도화 여지가 되는 조항
 - ③ 다만 지역제한은 공정경쟁·세입확보·형평성 논란 소지가 크므로, 제도 설계는 ‘물량·기간을 한정한 목적형/자격형 경쟁으로 신중히 해야함
 - ④ 따라서 법률의 기존 예외를 유지하되, 대통령령·부령에서 “지역 연계 방식”을 명확히 규정(예: 경제림육성단지·지역 목재클러스터·공공 목조건축 프로젝트에 한해 자격·용도 지정형 경쟁 또는 지역제한 경쟁(시범·물량상한))하고, 일상 집행은 지방(도/지방산림청)으로 위임·대행해 속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함
- 관련 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소관 부처 : (주관) 산림청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기재부
 - 발굴 방식 :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규제)발굴 워킹그룹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2023년 국산목재 이용량은 530만㎥, 목재자급률 18.6%(전년 15.1%)로 상승했으나, 전체 이용량 중 수입 의존이 여전히 높아 지역별 수급 변동이 큼⁴⁴⁾
- 국유임산물 매각은 현행 법률상 경쟁입찰 원칙이며 예외사유만 수의계약 허용(국유림법 제27조)
 - (현행 제도의 한계) 지역 우선공급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 지역 내 제재·목조건축 수요 안정화를 제도화하기 어려움



[그림 3-27] 국유임산물의 매각(국유림법 제27조)

- 또한, 국유림은 국가 재산이므로 정책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림청에 있음
 - (권한 배분 가능성) 다만 국유림법 제32조·시행령 제28조에서 권한 위임의 골격이 있어, 운영·집행 사무 일부는 위임·대행이 가능
- 법률의 예외조항만으로 ‘지역 우선’ 취지를 폭넓게 집행하기 어렵고, 국유 재산 특성상 정책 판단은 중앙, 일상 집행은 위임하는 구조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관계 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임산물을 그 연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내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목재의 용도 및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에게 그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을 매각하는 경우
6.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에 매각하는 경우
8. 그 밖에 목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국유임산물의 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

44) 산림청(2024) ‘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보고서’.

수행자

2.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3.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
 4. 국유림에 연접된 토지 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벌채한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요청한 자
- ②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림예정지 또는 천연하중(下種: 씨를 뿌리는 것)예정지 안의 임목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임산물을 사업실행시기 이전에 반출을 완료할 수 없어 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국가직영 산림사업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③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임산물의 반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임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유임산물의 채취·반출·가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물, 임산물적치장 또는 임도예정부지 안의 임목
 2. 매각된 임목의 벌채에 수반하여 생긴 걸쳐진 나무·손상목 및 오벌목
- ④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수출산업을 위한 원자재”란 원목과 부산물로서 수출용의 목재·약재·공업원료 및 식용원료로 가공하거나 수출용 버섯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 ⑤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산 보수·복원용으로 필요한 경우
 2. 임산물 소재지 주민의 공동사업이나 연료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 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增殖)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법률이 이미 용도·자격 지정 매각(제27조제1항제3호)과 목재 수급 원활화 목적(제27조제1항제8호)을 근거로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이를 구체적이고 투명한 집행기준(대상사업, 물량상한, 기간, 평가기준, 정보공개)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경제림육성단지·지역 목재클러스터·공공 목조건축 사업 등 특정 목적사업 한정, 자격·용도 지정형 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허용. 물량·기간·평가기준·공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지역 연계형 매각을 제도적 정착
- 국유림은 국가재산이므로 정책판단(총량관리, 물량상한 등)은 중앙정부(산림청)가 책임져야 하나, 입찰·검수 등 집행성 업무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추가) 국유임산물 매각의 집행행 사무(입찰공고, 자격검증, 검수, 정보공개 등)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국유림법 시행령」	구분	「국유림법 시행령」
내용		내용	〈신설〉 <u>제27조의2(지역 연계형 매각의 운영기준)</u> ① 산림청장은 국유임산물을 매각함에 있어, 경제림육성단지·지역 목재클러스터·공공 목조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사업에 한하여, 자격·용도 지정형 경쟁입찰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은 연간·차수별 물량상한 및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며, 평가기준·배점·사전가격평가·정보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범기간·물량으로 한정하고, 그 결과를 매 회차 종료 후 공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구분	「국유림법 시행령」	구분	「국유림법 시행령」
내용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않는다.(이하 각 호, 1호~21호 생략) ②~ ③ 생략	내용	(현행과 같음) 〈신설〉 <u>④ 산림청장은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신설 예정)에 따른 국유임산물의 매각 중 다음 각 호의 집행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u> <u>1. 매각 입찰공고의 시행</u> <u>2. 매수인 자격요건의 확인 및 검증</u> <u>3. 사전가격평가 결과의 고지</u> <u>4. 검수 및 반출 확인</u> <u>5. 매각 결과 및 계약 내용의 정보공개</u>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①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 제고 → 설비 가동률 및 투자 확대
 - (개선) 지역 연계형 매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면(제27조의2 신설), 공공 목조건축·목재 클러스터 등 안정 수요와 직접 연계된 공급체계가 만들어져 원자재 확보 리스크가 완화
 - (효과) ① 공급 안정 → 설비 가동률 상승 ② 투자 예측가능성 확보 → 민간투자 촉진

② 거래비용 절감과 리드타임 단축

- (개선) 제28조 개정으로 집행형 사무(입찰공고, 검수, 정보공개 등)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면, 윈스톱 집행이 가능해져 계약·납품 지연이 줄어들
- (효과) 리드타임 단축과 중복 절차 축소는 행정비용·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을 개선으로 이어짐

③ 국산재 이용률 확대

- (개선) 2023년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8.6% 수준, 지역 연계형 매각이 제도화되면 국산재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해, 강원도가 국산재 이용률 제고의 거점이 될 가능성
- (효과) 수입재 의존도를 낮추고 환율·운송비 리스크를 완화해 지역경제의 안정성이 강화

○ 사회적 효과

① 투명성·공정성 강화

- (이유) 기존 매각 과정에서는 수의계약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 수요와 직접 연결하는 기준은 모호해 '특혜 의혹' 제기 가능성
- (효과) 제27조의2 신설을 통해 경쟁입찰 원칙을 유지하되, 자격·용도 지정형 경쟁입찰과 정보공개 절차를 제도화하면 특혜 논란 차단, 공정성 확보가 가능

② 정책 신뢰성 및 지역 수용성 제고

- (효과) ① 제28조 개정으로 집행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면, 지역 주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 접근성·책임성이 높아짐 ② 지역 조례를 통해 심사·평가 기준이 공개되므로, 정책 집행이 예측가능하고 참여 가능한 구조 ③ 도민·산업계의 수용성과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

③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 (역할분담) 정책판단(총량·대상사업)은 산림청이 담당, 집행(공고·검수·정보공개)은 도가 맡음
- (정책일관성)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 균형을 이루어, 분쟁·지연을 줄일 수 있음

9) 충청북도

(1)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개선 시범지구 지정

- 대청댐 인근에 위치한 청남대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방문객을 위한 시설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
- 상수원보호를 위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 조치를 취할 경우,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범지구 운영을 제안
- 관련 법령: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3조, 제14조
- 소관 부처: 환경부 수도기획과
- 발굴 방식: 지자체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청남대는 '83년부터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어, '03년 소유권이 충청북도로 이관됨
- (규모) 1,825,641㎡, 53동 / 총 관람인원 15,045,276명(일 평균 2,254명)
- (문제점) 현재 충북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대청댐 주변의 광범위한 환경규제로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및 소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방문객이 불편할뿐더러,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비함
- (상수원보호구역) 101㎢ / (문의면 인구) '75년 13,340명 → '25년 3,567명

「수도법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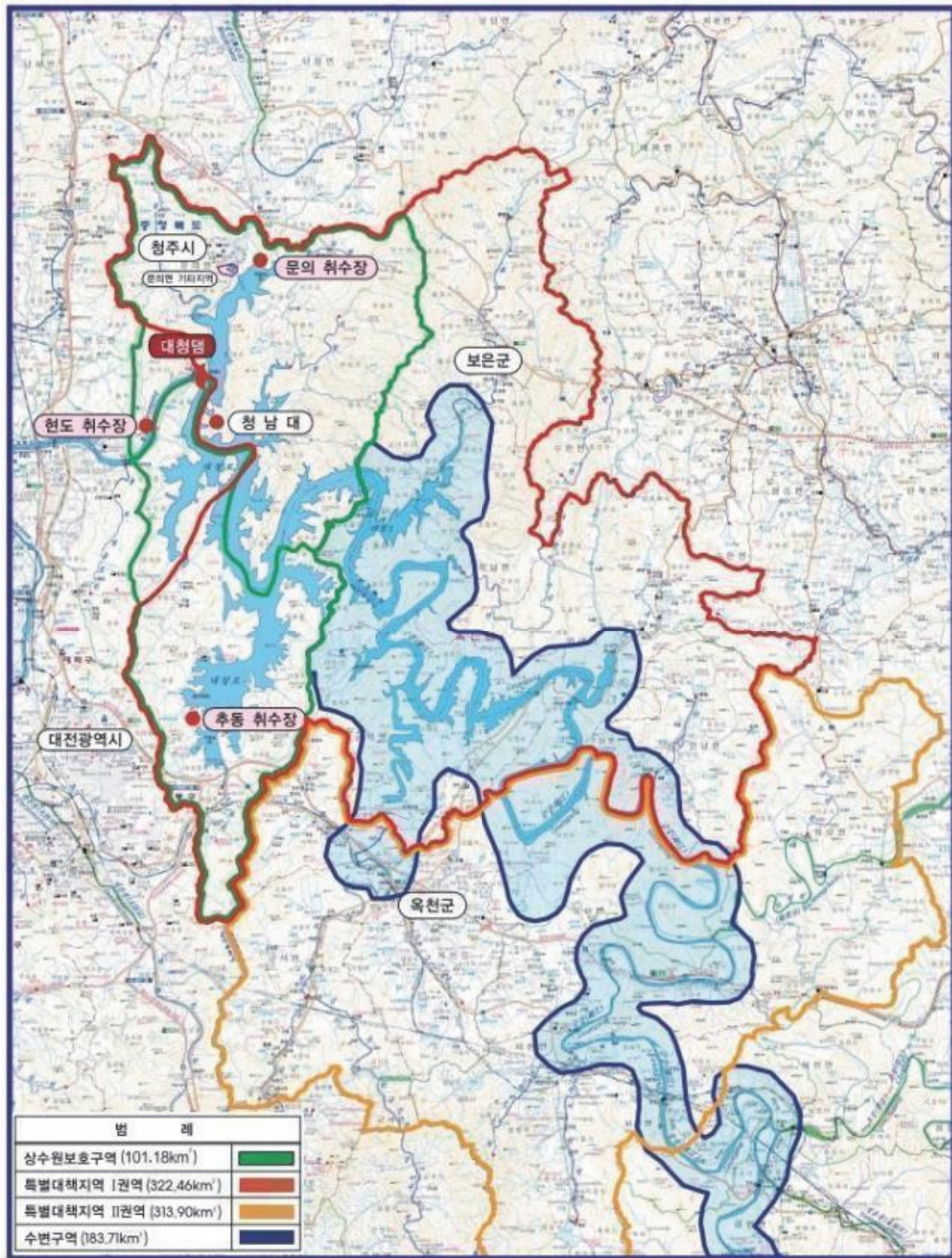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1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림 3-28] 대청호 주변 규제현황도

참고		
상수원 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등(현행)		
항 목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제13조)	환경정비구역에서 가능한 건축물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생활 기반 시설	- 연면적 100㎡이하 주택 및 66㎡이하 부속건물 신·증축 → 거주민(지목상 대지인 경우) - 연면적 132㎡이하 주택 및 66㎡이하 부속건물 신·증축 → 원주민 ※ 지하층이 없는 경우 154㎡이하 신증축	- 연면적 200㎡이하 주택 및 66㎡이하 부속건물 신·증축 -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동거할때 연면적 300㎡까지 증축(기존면적 포함)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의 건축물 신증축 200㎡이하(기존면적 포함)
소득 기반 시설	- 잠실 : 상전면적의 5%이하 - 버섯재배사 : 가구당 500㎡이하 - 생산물저장창고 : 토지면적의 1%이하 - 담배건조실 : 재배면적의 1%이하 -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가구당 200㎡이하 - 기자재보관창고 : 가구당 100㎡이하 - 관리용 건축물 :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의 1%이하 - 온실 : 가구당 3000㎡이하 - 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축사면적의 3배이내	
주민 공동 이용 시설	- 유치원, 경로당 - 종교집회장(300㎡이하) - 마을회관 - 정미소 및 방앗간(증축) - 효열비, 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농협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 일반목욕장 신·증축(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 종교집회장 신·증축 - 이·미용원·탁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사진관·표구점·독서실·장의사·당구장·마을공회당·창고 용도 200㎡이하 신증축(기존면적 포함) - 휴게 및 일반음식점 증축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100~150㎡이하 단,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
용도 변경	- 공장·숙박·일반음식점 → 오염 발생정도 낮은 용도로 - 축사·잠실 → 농산물 보관창고 - 기존 주택을 연면적 50% 범위 안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등으로 변경	- 기존공장·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연면적 150㎡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기준의 25% 이하 총호수의 10%이내 - 분류식 하수도시설을 완비하고 전량 모아서 보호구역 외 구역에 처리할 때 총호수의 20%이내 - 그 이외의 지역은 연면적 100㎡이하, 총호수의 5%이내

□ 개선방안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조항 신설
 - 규제개선*을 통해 관광·교육·환경·MICE가 함께하는 국민관광이 가능한 자연정원조성
 - 다양한 소비시설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충북도) 상수원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환경관리계획 이행
 - ➡ 하수전량→(처리後)보호구역 외 방류 / 청남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26년完)

개정안(조항 신설)	
구분	상수원관리규칙
내용	제00조 (행위제한 완화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행위제한 완화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의 관광, 교육, 복지, 문화목적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일 것 2. 비점오염 저감 및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락행위의 제한 완화 2. 제13조제4호가목부터 나목의 음식점 설치 기준(면적, 개수 등) 완화 3. 제12조제1호라목의 주민 편의를 위한 불가피하게 만수위선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는 도로(보행자 전용 교량) 설치 완화 4. 「주차장법」에 주차장의 설치 제한 완화 5.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주민 편의를 위한 도선의 운항(다만 친환경 운송수단일 것) ③ 시범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지구 지정 신청서 2. 시범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의 위치도 및 시설 배치(계획)도 3. 환경관리계획서(오염물질 관리대책,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등)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범지구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지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지구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부의 행위제한 완화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상수원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합리적인 규제개선 모델* 마련

* 시범지구 지정 ⇒ 체계적 환경관리 ⇒ 청남대 활성화 ⇒ 지역경제 발전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영 및 친환경 탐방·체험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청남대를 관광명소로 활성화, 청남대 방문객 편의 향상

(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출연금 및 지원금 확대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원기준 개선 필요. 댐으로 인해 수몰되었거나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요구됨
- 관련 법령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 소관 부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 발굴 방식 : 지자체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댐 관리 주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댐관리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음
- (댐운영에 피해주체 배제) 댐 운영 및 수익배분 등에서 지자체와 주민은 배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 관리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자원공사의 발전·용수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발전 6%, 용수 22%)*하여 댐 주변지역에 지원

* 출연금 재원기준(법 제44조)

- 발전판매 출연금 :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 공급용수 출연금 :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표 3-60〉 수자원공사 지원금 현황

(단위: 억원, 2022년 기준)

구 분	수입금(a)			출연금(b)			지원금(c)	비율(c/b)
	계	발전	용수	계	발전	용수		
수공전체	4,728	1,833	2,895	747	110	637	747	100%
소 계	2,994	1,232	1,762	462	74	388	254	55.0%
충주댐	1,671	639	1,032	265	38	227	124	46.7%
대청댐	372	170	202	55	10	45	52	94.5%
소양강댐	951	423	528	142	26	116	78	54.9%

※ 지원금(c) 집행 : 수자원공사 50%, 관할 시군 50%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지원금 산정 및 배분 기준(시행령 제44조 별표7) : 지원금 = 기본지원금 + 추가지원금

① 기본지원금 : 기초지원금 + 발전 계수 금액 + 용수공급 계수 금액 + 저수용량 계수 금액 (단위: 억원)

기 초 지원금	발전 계수 금액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연간 발전 용량(GWH)	금액	용수공급 능력(억㎥/년)	금액	총저수용량(억㎥)	금액
2.5	800 초과	6.0	20 초과	6.0	25 초과	6.0
	550 초과 800 이하	4.0	15 초과 20 이하	4.0	20 초과 25 이하	4.0
	350 초과 550 이하	3.0	10 초과 15 이하	3.0	15 초과 20 이하	3.0
	200 초과 350 이하	2.0	5 초과 10 이하	2.0	10 초과 15 이하	2.0
	40 초과 200 이하	1.5	1 초과 5 이하	1.5	5 초과 10 이하	1.5
	5 초과 40 이하	1.2	0.5 초과 1 이하	1.2	0.5 초과 5 이하	1.2
	5 이하	0.9	0.5 이하	0.9	0.5 이하	0.9

② 추가지원금 : (총출연금×0.85-총기본지원금)×((해당 댐 출연금÷총출연금)+(해당 댐 저수

면적÷총저수면적))÷2, 다만, 추가지원금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이 조정된 금액으로 한다.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단위:억 원)	조정금액(단위:억 원)
10 초과 30 이하	10+10 초과액×0.90
30 초과 70 이하	28+30 초과액×0.85
70 초과 100 이하	62+70 초과액×0.80
100 초과	86+100 초과액×0.75

○ 산정된 지원금 시군별 배분

- 수물면적(30%), 인구비율(30%)·면적비율(20%), 지원사업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20%)

※ 충주댐 지역별 지원비율 : 충주 42%, 제천 36%, 단양 22%

○ (지원금 산정 및 집행 불합리)

- 댐 건설로 인한 피해추정액은 1,900억 원/년(대청댐), 2,400억 원/년(충주댐)이지만, 피해추정액 대비 실제 지원금은 52억 원/년(대청댐), 124억 원/년(충주댐)에 불과

〈표 3-61〉 댐 주변지역 피해추정액

댐 명	합계	수물지역 피해액(억원/년)				주변지역 피해액(억원/년)				
		소계	지방세	농업소득	임업소득	소계	농업소득	주민건강	교통불편	기타
충주댐(1986)	2,467	2,352	284	1,313	755	115	53	41	21	-
대청댐(1981)	1,939	1,707	1,402	148	157	232	43	189	-	-

자료 : 댐 주변지역의 합리적 보상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2014.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 피해가 큰 대형 댐의 출연금 상당액이 수입이 없거나 적은 소형 댐 지원금으로 배분
- 지원금 집행자가 수자원공사와 관할 시·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군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 어려움

○ 주요 사업내용

〈표 3-6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구분	지원내용	시행자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축산업 관련·환경농업 기지내 및 농업 관련 사업	시장·군수·구청장
생활기반조성사업	의료환경조성, 생활여건 개선,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 습지조성, 생태하천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고립주민 교통비, 난방비, 통신비 등 지원	댐관리자(수공)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도서, 장학금, 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 지원 등	
그 밖의 지원사업	댐 저수사용료 보조사업, 홍보 및 부대사업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 댐 주변지역 출연금 및 지원금 현황

〈표 3-63〉 댐 주변지역 출연금 및 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합 계		63,071	63,071	66,472	66,472	70,633	70,633	68,457	68,457	74,666	74,666	76,365	76,365	90,762	90,762		86,692
다 목 적 댐 (23)	소양강	9,673	5,665	12,380	6,253	12,408	6,390	12,506	6,324	14,164	7,789	13,534	7,611	19,278	9,951		9,029
	안동	3,737	3,656	4,035	3,853	4,174	4,028	4,135	3,920	4,128	3,914	4,578	4,014	5,227	4,761		4,598
	대청	4,712	4,507	5,036	4,759	5,601	5,089	5,274	4,875	5,472	5,188	5,789	5,246	6,465	6,218		6,120
	충주	25,160	7,236	23,910	7,243	26,562	7,384	24,333	7,273	26,546	12,410	27,356	12,574	32,421	15,076		14,429
	함천	4,476	3,023	5,396	3,395	4,421	3,207	4,640	3,201	4,881	3,172	5,199	3,253	6,130	3,856		3,529
	주암	3,543	3,141	3,897	3,379	3,843	3,507	4,067	3,475	4,420	3,494	4,639	3,539	4,775	4,034		3,862
	임하	1,904	2,306	2,011	2,425	2,310	2,613	1,795	2,390	2,026	2,422	1,950	2,391	2,102	2,747		2,717
	남강	1,236	2,083	1,124	2,133	1,500	2,339	1,024	2,131	1,337	2,204	1,319	2,188	1,465	2,533		2,495
	섬진강	241	1,688	281	1,772	730	1,990	867	1,973	801	1,943	1,065	2,007	1,417	2,394		2,206
	부안	247	708	263	724	253	733	247	722	258	721	243	715	252	756		750
	황성	344	959	353	981	329	995	314	975	369	986	372	985	405	1,067		1,045
	용담	2,650	2,783	2,726	2,919	3,005	3,130	3,133	3,080	3,387	3,092	3,355	3,070	4,022	3,676		3,622
	밀양	422	825	390	824	380	831	431	841	479	846	509	854	538	898		880
	보령	739	1,086	757	1,115	875	1,180	855	1,155	986	1,177	1,030	1,188	1,048	1,278		1,264
	장흥	469	1,127	485	1,167	560	1,229	562	1,204	625	1,213	658	1,219	667	1,347		1,318
	평화	-	820	-	856	-	895	-	868	-	871	-	866	-	996		959
	군위	118	653	121	662	191	696	160	678	181	682	189	683	186	715		706
	부항	18	647	103	683	117	697	125	693	131	693	154	699	159	732		722
	군남	-	478	-	487	-	497	-	490	-	491	-	788	-	904		871
	성덕	1	575	4	580	2	585	7	583	14	585	72	603	84	625		618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출연금	지원금
보현산	-	572	28	586	52	599	47	594	52	595	108	611	115	632		627
영주	-	1,010	-	1,041	-	1,075	1	1,051	11	1,058	77	1,074	105	1,198		584
한탄강	-	-	-	-	-	-	-	-	-	-	-	953	-	1,115		1,070
기타	-	14,142	-	15,463	-	17,624	0	16,027	-	14,722	-	15,065	-	19,352		18,704
소계	59,690	59,690	63,300	63,300	67,313	67,313	64,523	64,523	70,268	70,268	72,196	72,196	86,861	86,861		82,725
용수댐 (5)	사연	460	374	202	267	432	361	466	404	554	462	392	387	353	359	432
	수어	952	538	1,040	559	1,061	575	1,075	613	1,130	658	1,193	671	1,235	674	667
	영천	623	782	723	785	760	823	809	944	830	1,027	919	1,025	963	998	958
	운문	1,124	1,035	1,052	967	906	940	1,163	1,156	1,346	1,315	1,319	1,261	1,202	1,165	1,161
	대곡	222	315	155	277	161	288	421	423	538	497	346	408	148	315	352
	기타	-	337	-	317	-	333	-	394	-	439	-	417	-	390	397
	소계	3,381	3,381	3,172	3,172	3,320	3,320	3,934	3,934	4,398	4,398	4,169	4,169	3,901	3,901	3,967

* 25년 출연금은 수자원공사 대외비 자료로 관리

자료 : 충청북도 내부자료

□ 개선방안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댐 관리에 지자체 참여) 댐을 주변 지자체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리하도록 개선(법 제5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내용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_____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한다. 다만, _____.

- (사업시행자 일원화) 지원금 집행자를 댐 주변지역 관할 시장·군수로 일원화(법 제43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내용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④ _____ _____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_____. <삭 제> <삭 제>

- (출연금 확대) 발전판매 수입금의 6%→10%, 용수판매 수입금의 22%→30%로 출연금 비율 상향(법 제44조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1.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생활용수·공업용수 100분의 22 이내	내용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1. _____00분의 10_____ 2. _____100분의 30_____

□ 기대효과

- 댐 건설로 인한 수몰과 각종 규제로 공익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
- 댐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댐 건설·운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향상

(3) 특수의료장비(MRI) 설치인정기준 완화

- MRI판독을 위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지방중소병원에서 MRI 운용이 중단되어 지역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음
- 관련 법령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 등)
-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현재 규정상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전속’으로 근무하여야 함
- (문제점) 영상의학과 전문의 사직 등 인력변동 사항은 중소병원 운영 중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 경우 MRI 운용이 중단됨
 - 이에 따라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병원의 심각한 운영난을 유발시킴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 등) 별표 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의 운용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 개선방안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등), 별표1 개정
 - MRI라 하더라도 촬영 후 비전속 전문의를 통한 판독의뢰가 가능하므로 모든 특수의료장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운용기준을 ‘비전속’으로 변경 운영
 - 영상 전송기술이나 원격 판독 시스템이 잘 구현되어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으로 있지 않아도 빠르고 정확히 판독 회신 가능

- ‘비전속’ 규정은 한 명의 전문의가 여러 병원의 MRI 판독을 지원함으로써 제한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구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내용	운용인력 기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MRI)	내용	운용인력 기준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MRI)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

□ 기대효과

-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간 의료격차 감소
- 제한된 의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 증대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전속 허용으로 여러 병원의 MRI 영상 판독 지원으로 의료시스템 효율 증가
- 환자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감소
 -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환자의 장거리 이동 불편함, 교통비, 시간 낭비 감소로 환자 편익 증가
-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특수의료장비 운용·활용 지속성 기대
 - 특수의료장비(MRI) 운용 전문인력을 ‘비전속’으로 완하시 취약지 의료기관의 장비 도입, 지속 운영으로 병원 경영난 해소

(4) 유기농·무농약 인증결과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중복검사 절차 개선

- 농산물 우수관리 및 GAP인증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의 인증비용에 부담이 되고 있음
- 관련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 소관 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유기농 및 무농약 인증은 각각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매년 갱신이 필요하며, GAP 인증(농산물우수관리)은 별도의 규정(고시)에 따라 2년 주기로 운영
- (문제점) 유기농·무농약 인증과 GAP 인증은 잔류농약, 토양·수질 검사 등 동일한 항목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인증 간 결과가 상호 인정되지 않아 농가가 이중으로 검사비용 부담
 - ※ GAP 인증 비용 : 평균 40~60만원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제6조의 2(심사결과보고)

- 타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개선방안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 동일한 항목의 검사를 포함하는 다른 인증(GAP 등)에 대해 절차 일부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GAP 인증 신청 시, 유기농·무농약 인증결과를 검사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행정규칙 개정 병행 추진

현 행		개 정	
구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구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내용	〈신설〉	내용	제6조의3(타 인증결과의 인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 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해당 인증의 검사 항목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심사 항목과 동일 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 결과를 GAP 인증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 인증 결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증서 사본과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검사결과의 유효성·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정 범위, 절차 및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정한다.

□ 기대효과

- 인증 비용 절감 및 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
 - 유기농 또는 무농약 인증 결과를 GAP 인증 시 일부 인정함으로써 농가당 연간 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 이중 행정절차 해소 및 인증 유지율 제고
 -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가의 제도 유지 의지가 향상으로 GAP 인증 참여율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가능

(5) 펌프카 '잔류콘크리트' 처리 체계 개선

- 레미콘 펌프카 잔류 콘크리트를 현재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불법투기 등의 문제 발생
- 잔류콘크리트를 재활용하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세부규정 필요
- 관련 법령: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 소관 부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발굴 방식: 기업단체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 황) 2022년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08호, 2022. 9. 6.)」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레미콘 타설 후 펌프카 호퍼에 남아 있는 잔류콘크리트'를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라호에 따라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생산 가능하나, 실제 재활용 절차 및 설비 기준에 세부 규정은 모호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에 잔류콘크리트를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기준 없음

* 굳지 않은 잔류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량·혼합, 성형, 탈형, 양생 등의 시설

○ (문제점) 現 건설현장 펌프카의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

- (대형 공사장) 펌프카의 잔류콘크리트를 공사 현장에서 임시 보관 후, 굳은 후에 건설폐기물로 처리

- (소형 공사장) 펌프카 잔류콘크리트를 레미콘 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 회사로 이송 후 처리*하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 불법투기 사례 다수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차량 및 허가 받은 중간처리업 사업장에 처리하여야 함. 레미콘 차량으로 이송하고 레미콘 회사에서 처리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됨

- (시멘트 물 무단방류에 따른 환경 오염) 레미콘 차량으로부터 약 3톤의 물을 공급 받아 펌프카 세척 후, 세척폐수를 레미콘 차량이 받아 가는데 이 중 1톤 정도는 레미콘 차량에 받을 수 없어 무단방류되고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 관련)
-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에 잔류 콘크리트를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이 없음
 - 펌프카의 잔류콘크리트는 타설 작업 중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로 레미콘 품질의 하자와는 무관함

□ 개선방안

○ 잔류콘크리트를 순환골재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 정비

가. 시설항목 : (10)잔류콘크리트 추가

마. 사업장부지 : 잔류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시설 기준 추가

3. 비고에 내용 추가



[그림 3-29] 펌프카 폐콘크리트 처리 개선 방향

현 행		개 정	
구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구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내용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 ~ (9) 현행유지	내용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 시설 (10) 잔류콘크리트(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시설(펌프카 잔류콘크리트를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마.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 2,000제곱미터 이상, 잔류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시설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3. 비고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비고 마. 제2호가목(1), (2), (6), (7) 및 같은 호 나목(1) 항목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잔류콘크리트(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7), (10) 항목만 갖출 수 있다.

□ 기대효과

- 불법투기 되던 잔류콘크리트를 합법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순환골재 재생제품 생산 확대 및 건설폐기물 처리 합리화
 - 전국 펌프카 약 6,200대 중 하루 30% 운영시 ⇨ 1,860톤의 잔류콘크리트 발생
- 펌프카 세척 폐수(시멘트 물)의 무단 방류 방지로 수질·토양 등 환경보전
 - pH 12의 강 알칼리성과 유해 중금속(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수의 불법 배출 차단 ⇨ 수질·토양 등 환경보전 효과

(6)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유지 위한 지분율 변경

- 연구소 기업 지분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
- 지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자본금 증액시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는 것을 제안
- 관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의 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발굴 방식: 기업단체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 주체가 1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하고 유지해야 함
 - *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19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음(5개 광역특구, 14개 강소특구)
 - 2025년 5월 기준으로 등록된 연구소기업은 2,091개사 중, 등록취소된 연구소기업은 733개사이며, 그 중 지분율 미달로 취소된 건은 180건(24.6%)임
 - ※ 지분율 미달 이외 등록취소 사유는 특구외 이전 276건(37.7%), 폐업등 221건(30.2%), 기타 56건(7.6%)

♣ 연구소기업 개요

1.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2. 설립혜택
 - 가. 세제혜택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취득세 면제
 - 나. 기타혜택 : 연구소기업 전용 특구육성사업 참여 및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 (문제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가 연구소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하는데, 기업의 투자 유치 및 경영 자율성 확보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 특구 관련 기업간담회 개최시 기업에서는 지분율 유지 의무가 초기 자금 조달을 지연시키고, 민간 투자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여 부담이라는 의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인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지분율 기준의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지분율을 10%에서 5%로 변경하고, 자본금 증액시 5년간 유예되는 지분율도 5%에서 3%로 변경
 - ※ 제13조의 비율은 '05. 7. 27. 시행령 제정시 20퍼센트 → '18. 5. 8.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금에 따라 10~20퍼센트로 변경 → '21. 6. 22. 시행령 개정으로 10퍼센트로 변경
- (공공연구기관의 지분 유지 역할 재정의) 단순한 지분 보유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창업유도 및 기술지원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지분만 확보하여 기업의 자율성 보장

현 행		개 정	
구분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	구분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시행령
내용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내용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⑤ _____ _____ 5퍼센트를 말한다.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제13조 제5항에 따른 비율(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5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인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_____ _____ _____ _____ 3퍼센트 _____ _____ _____ ② _____ _____ 3퍼센트 이상일 _____ _____ _____

□ 기대효과

- (창업 및 투자 촉진) 등록 지분율 변경으로 창업에 유리한 조건 조성으로 창업 촉진과 투자 유치시 장애물을 제거하여 투자를 촉진
-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소 기업의 등록 취소가 감소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7) 도축·집유장 연 1회 이상 별도 검사 의무 조항 삭제

- 현행 제도상 도축·집유·식용란선별포장업장은 시도지사가 연 1회 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도축장과 집유장의 경우 이미 시도 소속 검사관이 상주·상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복 규제 문제
- 관련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과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의 경우 시도지사의 연 1회 이상 검사 의무 적용

-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거나 수거검사를 하는 것과 별개로 도축·집유·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도지사가 검사를 실시해야함

○ (문제점) 도축·집유장의 경우 시도 소속 검사관이 현장 위생관리 업무 상시 수행

- 도축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 검사관이 상주하면서 도축검사 및 영업장 위생관리 전반에 관련된 업무 수행
- 집유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 검사관에 의해 원유공영검사 및 책임수의사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이 이뤄지고 있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 개선방안

○ 도축·집유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시·도지사의 검사 의무조항 삭제

현행		개정	
구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구분	축산물 위생관리법
내용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내용	제19조(출입·검사·수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참고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참고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하는 내용임

□ 기대효과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리·감독 기관의 중복·과도한 점검 대응에 따른 수검대상 업체의 불편 해소
 - ※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연 1회 이상 별도 의무 점검 사항 없음
-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시도 점검인력 부족 문제 해소
 - 생산단계 축산물작업장(도축·집유·식용란선별포장) 위생감시 업무 담당자 시도별 1명으로 매년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업무에 투입 등으로 인력 부족 및 업무 과중 문제 발생

〈표 3-64〉 지역별 위생감시 업무 담당자 및 생산단계 작업장 현황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담당자	2	1	1	1	1	1	1	1	1
생산단계 작업장	199	56	57	91	70	71	112	59	18

(8) 식품첨가제(식물세포 배양용배지) 관련 규제완화

- 현행 규제에서는 식물세포 배양 시 사용하는 배지성분을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원료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야생 식물의 포장 재배 시 사용하는 비료성분, 양액성분은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원료가 아니며, 식물세포 배양 시 사용하는 원료 성분(주로 MS medium 등)은 야생 식물의 포장 재배 시 사용하는 비료(또는 양액) 성분과 동일하므로 최종 생산물인 야생 식물과 식물세포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
- 관련 법령 :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 발굴 방식 :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식품위생법」에서 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서 정한 신청 및 인정 절차에 따라 ‘지정고시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식품 원료로 인정
- (문제점) 현행 규제에서는 식물 세포배양 제조 공정시 사용하는 배지성분을 식품첨가제로 인정된 원료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해석
 - 이러한 기준과 규격으로 국내 스타트업 벤처들이 제품 테스트나 출시 자체가 너무 어려운 실정
 - 이미 해외(FDA 등)에서는 어느 정도 조건부로 유연하게 허가해주고 있음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2016.12.)」

2. 제출자료의 종류, 요건 및 내용 등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제조공정에 사용된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

- 제조공정에 사용된 각종 기구의 명칭과 식품첨가물 등의 명칭과 함량
- 제조 중 사용된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 * 상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매와 효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시적 식품원료 검토가 불가능함.

□ 개선방안

- 식물세포 배양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배지성분의 경우 반드시 식품첨가물에 등재된 배지성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기준 완화
 -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현 행		개 정	
구분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구분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내용	2. 제출자료의 종류, 요건 및 내용 등	내용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2. 제출자료의 종류, 요건 및 내용 등
	3) 제조공정에 사용된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		다.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제조공정에 사용된 각종 기구의 명칭과 식품첨가물 등의 명칭과 함량		3) 제조공정에 사용된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
	- 제조 중 사용된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 제조공정에 사용된 각종 기구의 명칭과 식품첨가물 등의 명칭과 함량
	* 상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매와 효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시적 식품원료 검토가 불가능함.		- 제조 중 사용된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한다.
			* 상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매와 효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시적 식품원료 검토가 불가능함.
			[추가]
			* 단, 위 기준 및 규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용매, 미생물, 식품첨가물 등이 제조공정에 사용되었더라도, 해당물질이 제조공정 후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한시적 식품원료 검토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인증기준 완화를 통해서 식물세포 제조공정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비용 절감과 수입원료 확보 기간 단축으로 제품 제조공정의 편의성 확보 및 관련 시장 확대

(9)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제도 개선

- 신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해야 하나, 이는 거동 불편자·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접근성이 낮고 감염병 등 사회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 또한 수료 확인이 수작업으로 이뤄져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며,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됨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1조
- 소관 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발굴 방식 :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황)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고, 신규영업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함.
- (문제점) 오프라인 중심 교육방식은 환자, 임산부,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접근성이 낮음
 - 감염병 등 사회변화에 따른 유연한 교육방식 부재
 - 교육수료 확인 수작업 등으로 행정 비효율 초래

※ 2011년 온라인교육 도입 → 2022년 집합교육으로 환원 (온라인 확대 필요성 재부각)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개선방안

-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도 기존영업자처럼 집합교육뿐만아니라 온라인교육도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선택권 부여
- 온라인교육 시 대리수강 문제 해결을 위해 화상교육 실시

현 행		개 정	
구분	식품위생법	구분	식품위생법
내용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_____ _____	내용	제41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_____ _____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 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삭 제〉

□ 기대효과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대상자의 시간 및 비용절감
- 환자·임산부·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교육 접근성 향상
- 반복학습 가능 및 수기 행정업무 축소로 행정 효율성 향상

10) 충청남도

(1)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기준 개선

- 주요 내용: 정부는 수소발전 기술경쟁 및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입찰시장 개설('23.6.)
- 관련 근거: 「수소법」 제25조의6 수소발전 입찰시장(구매자에게 수소 등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이하 구매량, 연도별 구매량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구매량을 공급할 수소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의 평가기준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 발굴 방식: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개선과제 건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입찰시장의 평가기준에서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계통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불합리
 -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해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친환경 발전소 건설이 절실하나, 불리한 평가배점으로 지역내 수소발전사업자 진입 및 투자에 애로
-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2021년 수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 규제 관련 법령 및 주요 내용

2024년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 공고문(24.5.24.)

○ 입찰서 평가 방법

■ 평가 배점

가격 평가점수	비가격 평가점수	총 점수
60점	40점	100점

- [최저 입찰가격 ÷ 해당 입찰자의 가격] × 60

■ 비가격 평가 점수

- 계통평가(총50점, 비가격 지표 총 배점 40점 기준 20점)
 -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발전기 성능, 분산전원 역할, 계통 수용성 평가

※ 다만, 소규모 사업자(설비용량 1MW 미만)의 경우 계통 수용성 평가 제외(만점 부여)

구분	배점	내용							
1. 유연성 자원(발전기 성능)	5								
1.1	출력 증가감소율	정량 3	• 유연성 자원으로 필요한 성능(속도) 평가						
1.2	최소운전 출력범위	정량 2	• 유연성 자원으로서 필요한 성능(감발량)평가						
2. 분산전원 특성	정량	20	• 설비용량 및 전압을 활용한 분산전원 역할 평가						
			배점	20	10	6	3	1	0
			40MW 이하 중						
			기준	380V (저압용)	22.9 kV (공용 선로)	22.9kV (전용 선로 1회선)	22.9kV (전용 선로 2회선)	154kV 이상	40 MW 초과
3. 계통 수용성	25								
3.1	지역 수급비율	정량	10	• 발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공급능력 기여 평가					
				배점	10	7	3		
				기준	해당 지역* 전력 판매량/발전량** 비율				
				100% 이상	50% 이상 100% 미만	50% 미만			
				* 지역 단위는 접속(변전소(154kV기준) 위치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					
				** 전력판매량 및 발전량은공고일 기준 최신 한국전력통계의 최근 1개년 자료					
3.2	수요지 인근 여부	정량	15	• 지역적 측면 연계 여유도 평가					
				$\text{여유도} = \max\left(\frac{\text{해당변전소의 최대수요량} - \text{해당변전소의 총연계발전량}}{\text{해당변전소의 최대수요량}} \times 15, \right.$					

□ 개선방안

○ 일반수소 입찰시장 평가배점 기준 개선

- 전력자립도에 따른 차등 배점 폐지 또는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계통연계 여건이 개선되는 지역에 대한 가점 부여

- 현행 평가기준은 석탄화력 발전 피해지역에 대해 향후 석탄화력폐지*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일자리 감소 등 이중적 차별로 작용

*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충남 소재 석탄화력발전 폐지용량은 8,000MW이나, 대체발전소 건설은 1,000MW로 7,000MW용량 감소

□ 기대효과

○ 타 지역과 대등한 여건에서 수소발전 사업 추진

- 지역 여건에 따른 사업의 차별적 요소 해소

○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완화

-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석탄화력 발전사업을 대체할 대체발전소 건설을 통해 경제적 손실 및 일자리 감소* 최소화

* 생산유발 감소 19.2조원, 부가가치유발 감소 7.8조원, 취업유발 감소 7,557명 / 산업부, '21.12

(2)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농업 구조개혁을 위한 공공 스마트팜 부지확보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은 농촌지역으로 농촌의 구조와 농업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 스마트팜 정책의 성공이 필수적으로, 공공 스마트팜 사업의 기반조성이 필요
-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별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 발굴 방식: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23.10.)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인구소멸, 농업소멸, 지역소멸을 당면하고 있는 농업농촌 현실속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임. 이에 충남도는 도정의 제1과제로 '스마트농업 육성'을 선정하여 청년농 유입을 통해 농업농촌환경을 선제적·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 스마트팜 부지확보가 필수적인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파편화된 부지 및 장기간 소요로 인해 골든타임 내 스마트단지 조성에 한계
-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23.7) 및 시행('24.7)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률의 개정없이 추진동력을 얻기에 한계가 존재

○ 규제 관련 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규제현황

- (공익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 제8호 [별표]에는
-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이 있으나 최근 제정된 스마트농업법의 경우 반영되지 않음
- (농어촌공사 비축토지 활용)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할 때, 매도·임대 대상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농업인·법인에 국한되어 지자체의 비축토지 활용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단지 및 육성지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공익사업으로 인정(별표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1	구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1
내용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97) 생략 〈신설〉	내용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제8호 관련)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97) 현행과 같음 (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제5조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도지사 계획에 포함된 스마트 팜 단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7. 26. 시행

- 농어촌공사 비축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매도 허용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개정

현 행		개 정	
내용	제19조의3(매도·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2. 농업인 또는 새로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자 3. 농지를 이용하려는 법인 〈신 설〉	내용	제19조의3(매도·임대대상자) 1. _____ 2. _____ 3. _____ 4. 스마트농업 등 공공의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 기대효과

○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는 영농환경 구축

- 청년농업인 유입(3,000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선도

○ 스마트농업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 ※ 충남의 우듬지스마트팜(농업회사법인)은 10ha(3만평) 규모시설에서 초단기(17년~22년) 매출액 467억 달성, 대통령 UAE 순방시(23.1) 1,080만 달러 규모 스마트팜·식품 가공공장 구축 MOU체결

(3) 신태양광 보급 확산을 통한 RE100 달성

- 정부의 탈석탄, 탄소중립 정책으로 화력발전소가 폐지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해 산업경제 침체, 인구소멸 등 지역위기 확산
- 관련 법령: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충남도 내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 소관 부처: 산업부(재생에너지 산업과, 입지총괄과)
- 발굴 방식: 공무원 의견 접수 및 협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정부의 탈석탄, 탄소중립 정책으로 보령화력 1·2호기가 '20. 12. 폐지되어 일자리 감소로 산업·경제 침체, 인구 소멸 등 지역 전반 위기

-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 폐지(충남 14, 경남 10, 인천 2, 강원 2) 예정
- 생산유발 19.2조원(↓), 부가가치유발 7.8조원(↓), 취업유발 7.6천명(↓) 감소(산업부/21년)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 대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규제 대응 필요

○ 이격거리 제한 등 지자체별 규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입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 낮고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한 산업(농공)단지가 최적 입지로 평가됨

○ 다만, 산업(농공) 단지 내 발전시설 설치는 개별법 및 충남도 내 산업단지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부지 안 건축물 상부설치에 한함”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내 산단 태양광 보급 확대에 애로

- * 산업단지 내 유희부지나 공터 등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재생에너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①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5. 12.>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나) 공장부지 중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발전설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18조의2에 따른 해당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개선방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완화 필요

현 행		개 정	
구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구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내용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내용	“공장부지 안(용지, 사면 등)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기대효과

- 산업(농공) 단지 내 방치된 유허부지를 에너지 생산 자산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자산 가치 상승 유도
 - 유허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입주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 RE100 대응 역량 강화,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에 기여
 - 아울러, 침체된 지역 산업생태계에 신규 투자 유인 제공, 발전설비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향후 RE100 인증 또는 ESG 평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단의 국내외 투자 유치 경쟁력 상승 가능성 제고

(4) 건축물정기점검기관의 일방향적 지정·통보 절차 개선

- 주요 내용 : 행정기관 내부에서 작성된 명부에 있는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일방적 통보로 인해 관리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 및 비용절감 기회 박탈
-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8조제1항 제3항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발굴 방식 : 공무원 의견 접수 및 협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관리자에게 지정해서 통보함에 따라 해당 건축물 관리자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에 따른 불만
- 여러 점검기관 업체 간 시장경쟁에 의한 비용 절감 기회의 박탈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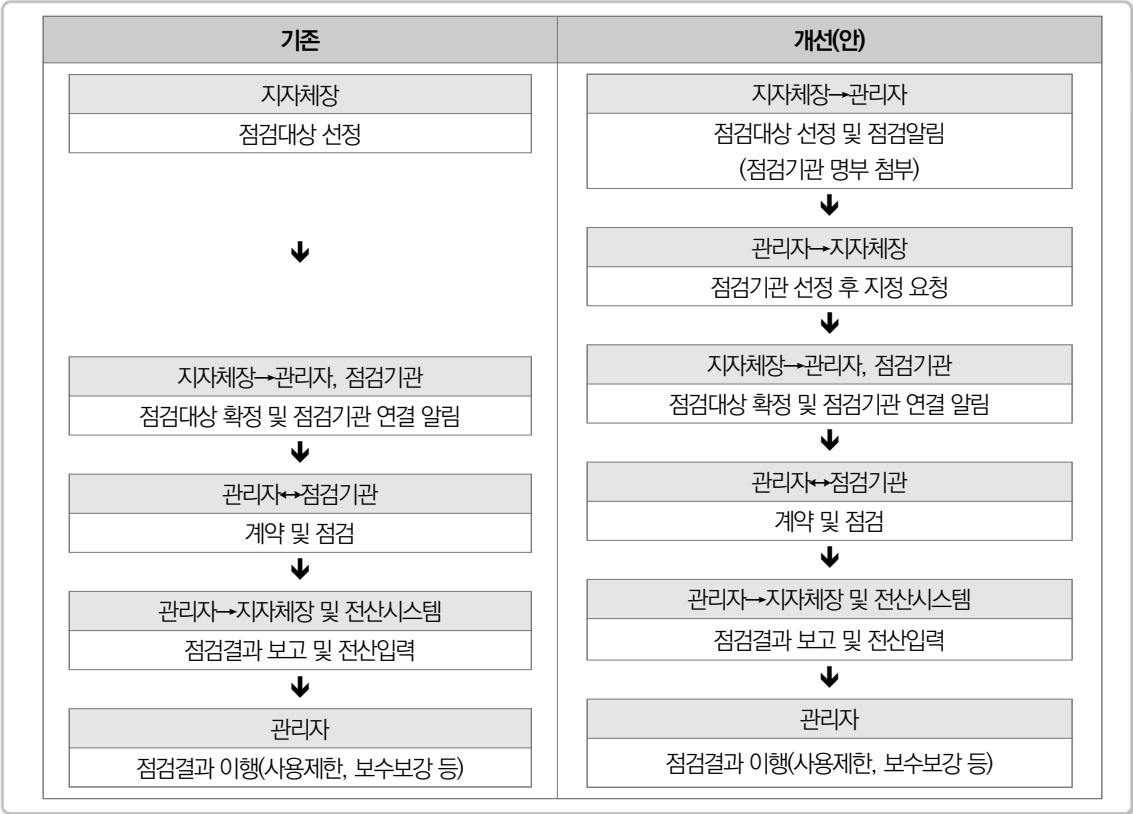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개선방안

- 기존의 모집공고에 의한 명부 작성 절차는 유지하되, 점검기관 명부를 사전에 알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리자가 어떤 기관을 지정해 주기를 요청할 시 그 기관을 지정토록 선택의 폭 확대·개선
- 관리자와 특정 기관 간의 유착관계 유무 등 확인 必

현 행		개 정	
구분	건축물관리법(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 18조 제1항	구분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제1항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명부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 요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지정하여 통보한다.

○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방향



□ 기대효과

- 관리자가 점검기관 선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율적 관리 기반 조성
- 관리자의 점검기관 선택권 보장 및 점검기관 간 경쟁 유도로 점검비용 인하 기대

(5) 지방이양(전환사업)된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2020 소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전환사업)결정으로 전환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관련법 및 지침 등 정비 필요
- 관련 법령: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3항, 제6조 제1,2 3항, 제7조 제1항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 발굴 방식: 공무원 의견접수 및 협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2020년부터 소하천정비사업 지방이양(전환사업) 결정
 - 2026년까지 2019년도 국비지원분을 전환사업보전분으로 재정 지원중
 - 2026년부터 지자체 자율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자체 예산편성 정비 사업 시행 필요

- 전환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련법 및 지침 등 정비 필요
-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중기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의 승인 또는 협의를 받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소하천정비사업 사업비 120억 원 이상 행정안전부, 사업비 20억 원 이상 시도의 사전설계 검토 필요
 - 일상감사, 계약심사, 조달청 원가심사, VE(설계경제성 검토) 업무와 중복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9. 12. 10.>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19. 12. 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3. 21., 2019. 12. 10.>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⑤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31.]

「소하천정비법」 제7조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1. 16.>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0. 3. 31.]

□ 개선방안

- 전환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군 예산 등 실정에 맞도록 소하천정종합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시군(기초소하천위원회) 심의 후 고시함이 필요
 - ※ (현행)소하천정비법 시·도 승인, 협의 → (개선)기초소하천위원회 등 승인
- 사업전 설계검토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원가 검토 업무가 중복됨에 따라 재해예방 사업 추진지침 개정 필요
 - ※ (현행)행안부 및 시도 설계검토 → (개선)계약심사 이행(자체 설계검토)

현행		개정	
구분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구분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2항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내용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용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분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구분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내용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용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기초소하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기초소하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분	「소하천정비법」 제7조 제1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구분	「소하천정비법」 제7조 제1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기초소하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개정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 사전 설계검토 대상 소하천정비 사업 : 행정안전부 120억원 이상 / 시도 20억 이상
- 총사업비 10% 이상 설계변경시 행정안전부 및 시도 사전 설계검토를 다시 받아야 함
- ※ (현행)행안부 및 시도 설계검토 → (개선)계약심사 이행(자체 설계검토)

□ 기대효과

- 기초지자체 예산 등 여건 맞는 소하천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정비 도모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6)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변경

- 주요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E38로 분류되어 있으나 C코드로의 전환은 구체화되지 못해 제조업 대상 기업 세제지원 등 정부지원 혜택에서 제외
- 관련 법령: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차전지 재활용 공정 업종 코드 조정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환경과),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발굴 방식: 공무원 의견 접수 및 협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가 급증하여 2030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당 산업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24. 7.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법안 마련이 늦어짐
-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은 E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로 분류되어 있으나, C코드로의 전환은 구체화 된 것이 없음
- 현재 E38로 분류되면, 제조업(C코드) 대상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R&D 인센티브, 입지지원 등 정부지원 혜택에서 제외됨
- 부여군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선정으로 MOU를 체결한 S기업은 사용후 배터리 재생을 위한 소재·부품 산업으로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되어 투자유치, 정책자금 확보,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기존 E38 폐기물 코드에서 C28 전기장비 제조업 또는 유사 제조업

코드로 이중 분류 혹은 코드 신설 및 전환과 분류기준 정비가 필요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시, 이차전지 재활용 공정기 제조활동과 유사함을 반영하여 업종 코드 조정 필요

□ 기대효과

-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적용범위 확대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부여일반산업단지 연계 가능성 향상
- 국내외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확대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 확대 촉진

(7) 농업용 간이시설의 등기 불가 문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대장 기재 요건 개선

- 주요 내용: 스마트팜 시설은 등기 지원이 가능한 반면 일반 농업시설은 사실상 자산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농업인의 금융접근성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5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의견 접수 및 협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등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용 비닐하우스, 간이작업장, 고정식 온실 등이 건축물로 인정되며 별도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개 '간이건축물'로 분류되며 사용승인 대상이 아니고, 그로 인해 건축물대장 기재가 불가능 → 결과적으로 등기 및 담보 활용이 차단됨
- 특히 스마트팜 시설은 예외적으로 등기 지원이 가능한 반면, 일반적인 농업시설은 사실상 자산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농업용 비닐하우스·작업장·간이창고 등은 건축물의 정의에는 해당되나,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시설'이라는 이유로 건축물대장 기재가 거부됨
- 이로 인해 실제 존재하는 농업시설임에도 등기가 불가능하여 담보로 활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다수 존재
- 특히 정보화 기반(스마트기기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실무적으로 간이구조물 또는 임시시설물로 간주되며, 가설건축물 신고조차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어 결과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 및 등기에서 배제됨
- 동일한 목적의 농업시설임에도 행정해석과 지역별 관행에 따라 등기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도 빈번

〈표 3-65〉 지역별 농업시설 등기 관련 처리 현황

지자체	처리방식	대상 시설 예시	주요 입장/기준	결과
논산시	기재 허용	고정식 비닐온실	2019년 농협 컨설팅 연계, 가설건축물 신고 후 대장 등록 가능 처리	농가 A, 건축물대장 생성 → 등기 완료
서산시	기재 적극 지원	농막, 농자재창고	1,200건 이상 도면 무료 제공, 신고 절차 원스톱 처리	가설건축물대장 등재 다수 사례
공주시	기재 불허	비닐하우스, 간이창고	신고 의무 없는 시설은 대장 생성 불가 방침 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 등기 불가
보령시	기재 불허	농업용 비닐하우스	건축법상 도시지역 아닌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아님 판단	대장 기재 불허, 민원 반복 발생
예산군	제한적 허용	고정식 온실, 자재창고	고정성 입증된 경우 한시적 양성화 허용 검토	일부 기재 허용 사례 존재
부여군	미비/혼재	자재창고, 세척장 등	일부 신청자 기재 시도 사례 존재하나, 내부 판단 기준 불명확	농민 민원 지속 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0. 14.>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4. 10.>
 -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사아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휴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개정 2014. 10. 14., 2014. 11. 11., 2021. 11. 2.)>
이하 생략

□ 개선방안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일정 요건의 농업용 시설은 간이건축물로 인정
 - 단,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불가
- (개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조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용 구조물(예: 자재창고, 세척장, 고정식 비닐온실 등)에 대해 '간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예: 연면적 100㎡ 이하, 농업용도 확인서 발급, 농지법·산지법 상 제한사항 미해당 시 '건축물대장 등재 간소화 조항' 신설 필요

현 행		개 정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구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내용	일정 요건의 농업용 시설은 간이건축물로 인정 ※ 단,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 불가	내용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업용 구조물(예: 자재창고, 세척장, 고정식 비닐온실 등)에 대해 '간이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 예: 연면적 100㎡ 이하, 농업용도 확인서 발급, 농지법·산지법 상 제한사항 미해당 시 '건축물대장 등재 간소화 조항' 신설 필요

□ 기대효과

- 농업시설에 대한 공적 자산 인정 확대 → 담보 제공 가능
-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 용이
- 지자체 해석 차이 해소 및 불법건축물 발생 방지로 행정 효율성 제고
- 스마트농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일반 농업시설까지 제도권 포용
- 농업 기반시설의 자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된 자금 순환 확대
- 결과적으로 농업경영 안정과 시설투자 활성화 → 지역농업 및 농촌경제 활력 제고

(8)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유치업종 완화

- 주요 내용: 산업단지 개발계획 상 유치업종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신성장 업종 및 융복합 업종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
- 관련 법령: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 발굴 방식: 공무원 의견 접수 및 협의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수도권과 1시간대 거리의 교통 접근성과 국가적 지원을 갖춘 기회발전 특구 후보지로, 기업 유치 여건이 우수
- 그러나 현행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성장 업종 및 융복합 업종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
- 최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입주 의향 기업 다수가 규제에 막혀 유턴 또는 이탈하고 있으며, 잔여 부지 분양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중
- 업종코드가 현행 개발계획에 존재하지 않아 시장 수요가 높은 기업조차 입주 불가 또는 입주 지연 사례 다수 발생

□ 개선방안

-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의 업종코드 추가

현 행		개 정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소분류)
청정 첨단자식 기술 클러스터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연구개발업(70)	청정 첨단자식 기술 클러스터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전기장비 제조업(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연구개발업(70)
수송산업 클러스터 (군산산단 연계)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인쇄업(1811)(18119 기타 인쇄업 제외)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23192)	수송산업 클러스터 (군산산단 연계)	1차 금속 제조업(24) -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25)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인쇄업(1811)(18119 기타 인쇄업 제외)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23192)
지역친화형 산업 클러스터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식료품 제조업(10)	지역친화형 산업 클러스터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식료품 제조업(10)
뷰티산업 클러스터	- 계면활성제 제조업(C20421) -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C20129)	뷰티산업 클러스터	- 계면활성제 제조업(C20421) -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C20129) 화장품 제조업(C20423)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C20499)

□ 기대효과

- 산단 분양률 제고: 유치업종 완화 시 잔여용지 분양률 20~30%p 향상 기대
 - ※ 현재 분양률: 68%(임대면적 제외)
- 신규 투자유치 확대: 연간 5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유입 기반 마련
- 고용 창출 효과: 직·간접 포함 약 300명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 정책 연계성 확보: 기회발전특구 전략산업 유치 기반 강화 및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에 기여
- 지방재정 파급효과: 공장 신축 및 가동 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세수 증가
 - ※ 분양률 100% 시 예상 연간 세수: 18,165백만원

11) 전북특별자치도

(1) 특례시 지정요건 완화 및 재정여건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만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함. 아울러,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 재정특례(창원시·청주시 등에 한정 적용)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새로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재정특례가 적용되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때 과거 창원시 및 청주시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 연장 기간에는 지원 규모를 6%-5%-4%-2%-1%로 점감하는 방식을 도입함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98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등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원주전주 통합 관련 논의자료 및 입법사례 등 참고하여 보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지방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제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등록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만을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만 도시는 설령 행정수요가 광역시급이라도 특례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주(약 65만명)·청주(약 85만명) 등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들이 인구 요건 미달로 특례시에서 배제되고 있음
- 현재 전북·충북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중심도시들은 실제 생활권 인구와 행정수요 면에서 100만 도시 못지않은 역할을 해왔으나 특례시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격차와 자치권한 제한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 정부의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으로 한정할 경우 특례시로 인정되는 지역이 수도권과 일부 지방(창원) 밖에 없어 사실상 수도권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음. 실제로 현 기준으로는 수원·용인·고양·화성(수도권)과 창원(경남) 5개 도시만 특례시 지위를 얻었고, 이들 도시는 광역시급 행정·재정 권한과 각종 인프라 확충 등 추가 혜택을 받고 있음

- 반면 전북과 같이 광역시가 없어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들은 특례시 미지정으로 또 다른 격차가 증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재정특례(통합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추가지원)도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창원시·청주시 등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통합특례시 추진의 제도적 미비) 전주시와 완주군은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나, 현행 법령상 통합이 이루어져도 인구 100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시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임.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이전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만 재정지원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완주-전주 통합(그리고 논의 중인 목포-신안 통합 등) 신규 통합자치단체가 법정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표 3-66〉 통합 지방자치단체 추진 현황

지역	추진현황
전북 전주·완주	• ('97, '07) 통합 추진했으나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 • ('13) 주민투표 실시 했으나 부결 (찬성 44.6%, 반대 55.3%) • ('24. 6.) 시민단체 주도 전주·완주 통합서명운동 • ('24. 7.)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통합건의서 정부제출 • ('25. 7.) 전북-도의회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 제정, 105개 상생안 법제화 추진
전남 목포·신안	• ('94~'12) 6차례 통합 논의 있었으나 통합실패 - ('23) 목포신안통합추진위 출범 • ('24. 7.) 목포시장·신안군수 통합 입장문 발표 ※ 목포·신안·무안·영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 • ('25. 1.) 민간통합추진기구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25. 3.) 목포-신안 '상생협력사업 이행협약' 체결
경남 진주·사천	• ('10) 진주·사천 통합 논의 있었으나 통합실패 • ('24. 5.) 진주시장 진주·사천 통합 제안 (사천시장은 통합제안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 • ('24. 6.)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 출범 • ('25. 1.) 진주시장, 사천시장 행정통합 추진 의지 재선언

자료: 통합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도자료 등 참조

- 현행법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통합특례시 추진에 필요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역민 및 자치단체 간 설득, 조율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통합 유인이 떨어지고,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대응 측면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59조제4호 및 제61조제3항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정하여 시범 실시한다.

③ 제53조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1년에는 100분의 6, 2022년에는 100분의 5, 2023년에는 100분의 4, 2024년에는 100분의 2, 2025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에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100분의 6, 2026년에는 100분의 5, 2027년에는 100분의 4, 2028년에는 100분의 2, 2029년에는 100분의 1로 한다.

□ 개선방안

- (법령 개정: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지방자치법」 제198조를 개정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구체적으로 동 조항 제2항 제1호의 특례시 정의를 변경 및 추가하여, 현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통해 광역시는 아니지만 높은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중심도시들이 인구 50만을 넘는 경우 특례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구분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내용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내용	② (현행과 같음)… 다만,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대도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이 면 제1호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 (법령 개정: 통합자치단체 재정특례 확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부칙 제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에 관한 적용례를 개정하여, 2015년 이후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 에도 동일한 교부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구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적용례 등)
내용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 ④ (생략)	내용	①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제53조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 현행 법령은 2015년 1월 1일 이전 통합된 경우에 한해 “통합 전년도 폐지된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10년간 매년 추가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자체로 확대함. 이에 따라 완주-전주 등이 2027년 이전에 통합 시, 창원시·청주시 등 기존 통합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10년간 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재정지원 연장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지원율을 연차별로 점진 축소(6%→5%→4%→2%→1%)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음. 이는 앞서 창원시 통합 사례에서 재정특례 연장 시 채택된 방식으로서, 청주시 등 향후 통합 특례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 기대효과

- (지방 대도시의 자치역량 강화) 특례시 지정을 통해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가 광역시급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확보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한층 원활해질 것임. 기초자치단체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사무와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이는 해당 도시가 인근 지역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간 형평성과 지역소멸 대응) 특례시 기준 완화로 전주·청주 등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도시들이 추가됨에 따라 특례시 지정의 지역편중 현상이 완화되고 제도 수혜의 형평성이 제고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대도시에 대한 분권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임
- 나아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지역 핵심도시의 경쟁력 강화가 곧 주변 지역의 인구유지와 경제활력 제고로 이어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부도 이미 「지방자

치법」에서 특례시 추가지정 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국가 정책기조와도 부합함

- (통합특례시 추진 및 지역발전 기반 마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논의 중인 시군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곧바로 특례시 지위와 재정특례를 인정받게 되어 통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통합에 따른 행정구조 개편과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이 원활해지고,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해짐. 이는 전북 지역이 오랜 기간 겪어온 낙후와 발전 정체를 타개할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특례시로 증대된 위상은 향후 기업유치, 인구유입 등의 선순환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완화에도 기여할 것임

(2) 의료취약지역 시니어 닥터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학연금법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의료취약지역의 시니어 닥터제도는 퇴직한 의사를 해당 지역의 계약직 지방공무원 지위(보건지소장 등 의사)로 재고용하여 지방소멸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연금 제도상 퇴직 후 이러한 방식으로 재고용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사학연금) 수령이 전면 중단되어, 일할 경우 실 때보다 실질 기대수익이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함. 이는 시니어 의사의 의료취약지 유입을 크게 저해하는 규제로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 지급정지 예외를 마련하여 시니어 닥터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관련 법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동 조항에서 퇴직연금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동법 준용 규정에 따라 사학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되고 있음
- 소관 부처: 교육부 (※ 협조 부처: 보건복지부 -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사업 관련)
- 발굴 방식: '전북특별자치도 2025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사례 참고 및 제도 보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의료취약지 공중보건 인력 감소 심각)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보건지소들은 젊은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의료공백이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어 전북 남원시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16개 보건지소에 16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7명에 불과하며, 곧 5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 사이 공중보건의가 약 27% 감소했고, 특히 2024년에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등의 영향으로 의대생 현역입대자가 1,300여 명으로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공중보건의 배치 인원의 추가 감소가 예상됨. 이로 인해 의료 불모지로 불릴 정도로 농촌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어, 환자들이 병이 있어도 방치하거나 원격진료에 의존하는 실정임(KBS, 2025.4.)⁴⁵⁾
- 실제 전북 정읍 고부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고 대다수가 운전을 못 하며, 버스는 몇 시간에 한 대풀이고 택시비는 왕복 3~4만 원이 들어 의료 접근성이 매우 낮음. 그 결과 전국 평균 5.1%인 장애 발생률이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정읍시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격

45) KBS. 2025.4.9. 공중보건의 5년간 27% 줄었다...심화되는 '취약지 의료 공백'

차가 발생하고 있음(농민신문, 2025.4.)⁴⁶⁾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시니어 의사의 지역 의료기관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핵심 현안인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 없이는 시니어 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 (시니어 닥터제도의 의의와 한계) 경력 많은 은퇴 의사인 시니어 의사들이 농촌으로 오면 의료 수준 향상과 주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실제 사례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은퇴한 임경수 원장이 전북 정읍 고부보건지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소문을 듣고 인근 읍·면 주민들까지 찾아오면서 환자 수가 이전보다 90% 가까이 증가하고 처방 의약품 종류도 2배로 늘어났음

전국 최초 보건지소 시니어의사 채용

- 2024.11월 채용
- 보도매체 : 전북일보 등 14개 매체
- 보도기사 요약

- 임경수 전 정읍아산병원장이 퇴임 후 정읍 고부보건지소장으로 임용되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 실시.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니어 의사를 보건지소장에 선제 채용한 전국 최초 사례.

- 이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제때 진료를 받게 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시니어 닥터제도는 정부도 '시니어의사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60세 이상 전문의를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에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이는 임상경험과 사명감을 갖춘 시니어 의사의 전문성을 지역 의료현장에 활용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임. 특히 젊은 의사들을 강제로 농촌에 오게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시니어 의사 확대에 해답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문제는 현재 제도적 장애 요소임. 시니어 의사를 지방에 유인하려 해도, 연금 수급권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함.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퇴직 교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재임용될 경우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대학교수 등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여 사학연금을 받고 있던 의사가 지방 보건지소 등의 계약직 지방공무원(보건지소장 등)으로 임용되면 그 순간부터 연금 지급이 멈춤
- 앞서 임경수 지소장의 경우, 서울아산병원 교수로 33년간 재직한 후 매달 약 450만 원의 사학연금

46) 농민신문. 2025.4.17. [인터뷰] "의료 불모지 농촌... '시니어 의사' 유입으로 답 찾아야"

수급권이 있었으나, 정읍 보건지소장으로 일하는 동안은 월 300만 원 남짓한 급여만 받을 뿐 연금은 수급 중지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됨

- 이렇듯 일할수록 손해가 되는 구조로 인해, 더 많은 시니어 의사들이 농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 4. 17.,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0., 2021. 3. 23.>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 5. 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5. 29., 2018. 3. 20.>

□ 개선방안

- (법률 개정 방향)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분야에 한정하여 사학연금 지급정지 예외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개정을 추진함
- 현행 법령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다른 공적연금 적용 직역(공무원 등)으로 재임용 시 퇴직연금 전액정지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 예컨대, 사학연금법 제42조에 단서 조항을 두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의 예외 규정을 명시함
- 이를 통해 시니어 의사의 공공복지 기여를 연금 불이익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구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구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단서 신설)
내용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내용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기간 중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하위법령 개정 방향) 상기 법률개정에 따라 연금 지급정지 예외의 구체적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우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예외 적용 대상 직무와 지역 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 즉 시행령에 ‘연금 지급정지 예외 대상 복무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취약지역에서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함

현 행		개 정	
구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조(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 복무자의 연금지급 특례) 신설	구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조(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 복무자의 연금지급 특례) 신설
내용	없음	내용	①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복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취약지역 내에서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임용되어 복무할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복무개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금 지급정지 예외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해당 시니어 의사의 신분 및 임용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시니어 닥터의 채용 절차와 연금 예외 적용이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함
- (유관 의견) 시니어닥터 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규제개혁을 시도해 온 정읍시 담당 공무원과 이 규제개혁에 관해 심사한 전문가 심사위원 모두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에 동의하였음. 다만 연금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논의 역시 필요함

□ 기대효과

-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백 해소) 연금 수급권 보장으로 경제적 손실 없이 봉사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은 시니어 의사들이 농촌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퇴직 전문의들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지역 주민들의 기초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직결됨. 실제 고부보건지소 사례에서 보듯 시니어 의사 한 명의 부임으로 환자 진료 이용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주민 건강관리가 체계화될 수 있었음
- 또한 전국적으로 시니어 의사가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에 확충될 경우, 오랜 기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만성질환자들의 관리가 가능해짐.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만 잘 관리해도 장애 발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있으며, 조기 치료로 응급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여 중증으로의 악화를 막는 효과도 기대됨. 이는 곧 지역 사회의 장애인 발생률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재정적·경제적 효과) 시니어 닥터제도 활성화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예방의료 강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정기적인 진료와 교육을 받으면 뇌졸중·심근경색 등의 중증 질환 및 합병증 예방으로 이어져, 고가의 응급의료·장기입원에 드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환자 개인에게도 의료비 및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음. 예컨대 정읍 고부면 주민들은 과거 큰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택시비 3~4만 원을 지출해야 했으나, 보건지소에서 가까이 진료를 받으면 이러한 직접 비용이 절약되고 경제적 여력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음
- 나아가 농촌 지역의 인구유지 및 활력 제고에도 기여함. 의료 서비스가 갖춰지면 고령 주민들의 지역 정착 의지가 높아지고, 도시 대비 취약했던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농촌 인구유출을 완화하는 간접 효과도 예상됨

(3)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법령상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도 현금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투명성 확보 장치와 부작용 방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료원의 자율적 재원 조달을 지원하고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기부금품 모집행위 금지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등
-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협의 필요)
- 발굴 방식: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전북특별법 특례발굴 자료 참조 및 보완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지역의료 격차 및 재정 취약) 지방의료원은 주로 의료취약지 주민의 필수요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33곳이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약 1,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의협신문, 2025.7)⁴⁷⁾.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지방의료원이 시설·장비 투자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자체 재원 조달 수단이 부족하여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의료원의 재원 확충 수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현행 규제로 인한 모금 제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자·출연 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외부 기부금품을 공개 모집하는 행위가 법으로 제한되어 왔음.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 운영 재원으로 “보조금·출연금 및 기부금”을 명시하고 있어 형식상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법령상 모금행위 금지로 인해 적극적인 기부 유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는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지정 기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모금에는 한계가 있음. 결국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모금 제한 규제로 인해 지방의료원은 필요한 재원을 지역사회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민간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한편 사립대학병원 등 민간 의료기관은 자유롭게 기부금을 모집하여 병원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실제로 대학 동문·지역 기업·환자 등을 통한 거액 기부가 활발하여 일부 민간병원의 경우 연간 수백억 원대 기부금이 조성되기도 함. 이에 반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동일한 의료환경에서 기부금품 모금이 막혀 있어 재정 확충 수단이 제한되고, 민간 병원 대비 발전기금 조성 기회가 없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음. 정부도 최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히며 공공병원 재원조달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공의료 영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특례 입법의 한계) 2025년 4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한해 3년간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발의(의안번호 2210059), 8월 현재 소관위 심사 중에 있음. 이 개정안의 경우 적용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정작 재정 형편이 어려운 비(非)인구감소지역 소재 지방의료원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기준과 연장 절차가 불명확하여 지방의료원의 기부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운 구조임. 단기간 시범 운영으로는 기부문화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3년 후 중단될 가능성이 존재하면 잠재 기부자들도 장기 지원을 망설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즉 특례 입법안의 대상 범위와 시행기간 제한으로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47) 의협신문. 2025.7.4. 지방의료원 무분별 신·증축보다 기존 기관 효율화가 먼저

- (투명성 및 부작용 우려) 지방의료원에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할 경우, 모금·사용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적 부작용 방지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됨. 공공병원이 자체 모금을 시작하면 기부금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함. 특히 기부금 용도의 지정과 공개, 회계의 분리 관리, 외부 감사 등이 필요하며, 기부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나 부당한 기부 강요 행위(준조세화) 등 부정유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금지 규정과 감독 장치가 요구됨. 현재 특례안 역시 최소한의 별도 계정 관리 등만 언급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부금 유치 과정에서 의료기관 간 과열 경쟁이나 기부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투명성 확보 방안과 사후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것이 규제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개선방안

- (법률 개정 방향)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예외 사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시행령 제13조를 개정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자원 마련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적용 대상은 전국 모든 지방의료원으로 하고, 허용 기간은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칠 수 있도록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법 규정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외의 다른 지역 공공의료원도 재정 확충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단기간에 제도가 일몰되지 않도록 하여 기부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구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구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내용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내용	〈신설〉 ① (생략) ②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필요시 동 조항의 유효기간을 부칙에 5년간 한시 규정 후 평가를 거쳐 연장 가능하도록 명시)

- (관련 법령 정비) 상기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 모집을 실시할 경우 지켜야 할 투명성 확보 절차와 부정유치 방지 조치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 예를 들어 시행령에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모집·사용계획의 사전 승인,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별도 계정관리 및 회계감사, 정보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함
-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부당한 혜택 제공 금지, 기부 강요 금지 등 윤리적 모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 방안(예: 모금 취소나 벌칙)을 포함하도록 개선함
- 현재는 지방의료원 자체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세부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므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관리·감독 장치를 신설하여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구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신설〉	구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신설〉 예시
내용	없음	내용	- 지방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법의 절차에 따라 미리 모집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기관(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각 지방의료원 내에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모금 대상·방법 및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함. 동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모금액은 별도 계정에 분리하여 관리하고, 「의료법」 제62조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함.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실적은 정기적으로 대외 공개하도록 의무화 - 부정한 방법의 모금 금지: 기부자에게 진료상 특혜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3자를 통한 기부 강요 등 부적절한유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모금 허가 취소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기대효과

- (재정 확충 및 의료서비스 향상) 지방의료원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 허용으로 연간 수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지방의료원들은 해당 기부금을 활용하여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왔던 의료장비 현대화, 시설 개보수, 필수 전문의 채용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부금으로 MRI·CT 등 고가 장비 도입이나 응급의료센터 확충, 노후 병동 개선 등이 가능해져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경우 발전후원회를 통해 연간 수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확보하여 병원 발전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도 유사한 규모의 민간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이는 지방의료원의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 만성적 적자 폭 감소 및 경영 정상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나아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참여를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지역보건의료 강화 및 균형발전) 이번 규제 개선은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정책 및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맥락을 같이함. 지방의료원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주민들은 대도시로 이동하지 않고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됨. 특히 전북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가 완화되고,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로 이어져 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모금을 통해 지역 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병원을 지원하고 성장시키는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 효과도 기대됨.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상생하는 새로운 공공의료 발전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정책 지속성과 전국적 파급효과)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성과가 입증되면,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은 계속적이고 전국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음. 정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국고 지원 없이 지역 공공医료를 강화하는 수단이므로 정책적 수용성이 높고, 향후 다른 지자체의 지방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른 공공의료기관으로 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전체 공공의료 분야에 자율재원 조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부족한 보건재정 문제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임. 아울러 본 개선안은 한시적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 여부를 점검하면서 추진되므로 정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성과 평가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음.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중앙부처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이며, 전북에서 시작된 모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규제 혁신의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4) 관광지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전국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에서 관광철마다 불법 노점상 난립과 무단 영업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전북 내 자연공원 관광지(내장산, 모악산 등)에서는 단풍철·행락철마다 불법 상행위와 이에 따른 환경 훼손, 안전 위험, 지역 상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자연공원법」상의 행정대집행 권한의 한계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근본대책이 요구됨. 이에 자연공원 내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 관련 법령: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
- 소관 부처: 환경부 (※ 협조기관: 국립공원공단,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 발굴 방식: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참조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전국의 자연공원은 관광철마다 불법 노점상과 무허가 상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음. 대표적으로 전북 내장산 국립공원은 단풍철이면 입구부터 내장사까지 도로와 탐방로가 수십여 개의 노점상으로 점령되어, 경관 훼손은 물론 보행 혼잡,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공원 내 계곡 주변에서 무단 평상 설치와 취사, 오수 방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악취·해충 발생 민원도 증가 추세임
- 문제는 이러한 위법행위가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으며, 관리기관 간 권한 불일치로 인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이 어렵다는 점임. 즉 현행 「자연공원법」의 대집행 권한 구조가 기초자치단체(시장·구청장)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해 불법 영업행위 근절에 장애가 됨
- 현재 법안의 권한과 한계를 살펴보면, 현행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관리청(공원관리청)은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공원관리청이 곧 대집행 권한의 주체가 됨
- 동법 제4조에 규정된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즉,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도) 차원에서 관리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원관리청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자연공원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환경부(국립공원) 또는 시·도지사(도립공원)”에게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관리청인 군립공원이 아닌 이상 직접 대집행을 집행할 법적 권한이 없음
- 이러한 구조는 현장 단속의 한계를 초래함. 공원관리청이 아닌 지자체장은 설령 자기 관할 구역 안에 국립·도립공원이 있어도, 그 안의 불법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임
- 현행법령상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필요시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권한위임 규정), 사전 협조요청 없이는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대집행을 시행하기 어려운 구조임. 결과적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어려워지고, 단속 공백 시기에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과태료 부과 권한은 군수(광의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면서, 강제철거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지 않는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즉 적발과 통보는 공원관리청, 처벌(과태료)은 지자체장이 맡도록 이원화되어, 정작 실행행사(노점 철거)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구조임. 이는 신속한 행정집행을 어렵게 하고 공원관리청의 인력 부족 시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됨
- 더욱이 불법 노점상 대부분이 외지 상인으로, 세금과 임차료를 회피하며 합법 상인의 매출을 잠식하고, 지역 내 소비 자금의 역외 유출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큼. 따라서 자연공원 내 불법 노점상 문제는 단순한 위생·질서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행정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실질적인 행정대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

-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법률 등 개정 방향)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대집행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제언함. 구체적인 개정 취지는 자연공원 내 불법 영업행위 단속 및 불법시설물 철거에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고려함
- (공원관리청의 범위 확대) 법 제31조를 개정하여, 국립·도립공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원 구역이 속한 시·군·구의 장도 행정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예컨대 “공원관리청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과 같이 조문을 수정하여 지자체장의 집행 권한을 명시함
- (권한 위임 절차 간소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원관리청의 사전 승인이나 복잡한 협의 절차 없이도 불법시설물 철거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함.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타 법령 사례 준용) 여타 법률에서 기초지자체장에게 현장단속 권한을 부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노점상 단속 근거를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서도 현장 단속 주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과거 계곡·하천 불법점용 시설 철거 사례(경기도 계곡정비 사업 등)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집행이 성과

를 거둔 바 있으므로, 자연공원에서도 지자체가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시행령·규칙 정비)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하위법령에서 대집행 절차, 비용 처리, 권한위임 세칙 등을 정비함. 예컨대 행정대집행 비용의 사후 징수, 철거인력 및 경찰지원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하여 지자체 집행 시 실무상의 혼선을 최소화함

현 행		개 정	
구분	「자연공원법」 제31조 제2항 (행정대집행)	구분	「자연공원법」 제31조 제2항 (행정대집행)
내용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내용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이 대집행할 수 있다.”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문구 삭제, 기초자치단체장 직접 집행 가능하도록 주체 확대)

- (하위법령 개정 방향)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신규조항 신설 및 별표5 위임사무목록 개정
- 시행령에 대집행 절차·비용·보고 세칙을 신설하고, 위임사무 목록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명시하여 상위법 개정과 정합성 확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의2(기초자치단체장의 대집행 절차) (신규 조항 신설)

- ① 자연공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대집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원관리청에 대집행 계획을 통보한 후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철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집행을 한 후 지체 없이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집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집행 결과 보고서(별지 서식)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다.
- ③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따라 불법행위자에게 징수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5 (공원관리청 위임사무 목록) 개정

- ⑫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공원관리청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기초자치단체장 추가)

□ 기대효과

- (신속한 위법행위 차단) 지자체가 즉각 현장조치에 나설 수 있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짐. 공원관리청의 인력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단속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불법 노점상이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음. 예컨대 남한산성의 사례처럼 광역 단위 장기간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기에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됨

- (공원의 환경·위생 개선) 불법 노점상 철거로 쓰레기 투기와 오폐수 방류 행위가 줄어들어 자연공원의 환경질이 향상됨. 하천 수질오염과 토양 훼손이 예방되고, 무단 취사·판매로 인한 악취, 연기, 폐기물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음. 이는 공원을 청결하고 쾌적한 탐방 공간으로 복원하여 탐방객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실제 정읍시에서는 내장산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 후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확립) 밀집된 노점상 철거로 탐방로와 도로의 통행 안전이 확보됨. 관광객들은 보다 넓은 보행로에서 안전하게 다닐 권리를 보장받고, 차량 교통도 원활해짐. 또한 가스버너·전기시설 등 미검사된 설비로 인한 화재·감전 사고 위험이 사라지고, 노점상의 음주판매로 인한 무질서도 차단되어 전체적인 공원 질서가 개선됨. 불법 상인의 공무집행방해 등 갈등 상황이 예방되어 단속 공무원의 안전도 확보됨
-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효과) 불법 노점상 퇴출은 합법적인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짐. 그동안 외지 노점에 유출되던 관광 소비가 지역 상점, 식당 등으로 돌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세원을 포착해 조세 정상화 효과도 기대되며, 관광지 이미지 향상으로 재방문을 증가와 체류 시간 연장 등 장기적 관광경제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유지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함

(5)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규제 완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내국인은 법적으로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고, 사업자·소비자·행정기관 모두에게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국인 관광객도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완화하고,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관련 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및 운영 조건 규정)
-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발굴 방식: 전북특별자치도 2025년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건의과제 참조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2년 도입된 제도로, 도시 지역 내 주택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임. 해당 제도는 공유경제 및 체험형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관광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초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제도화되었기에 내국인 대상 영업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반면, 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내국인도 도시에서 가정 체험형 숙박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가족 단위 여행, 로컬 기반 커뮤니티 여행, 장기체류형 근거리 관광(생활관광) 증가에 따라 농어촌 중심의 민박업 구조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2023년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 및 2024년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 전략」에서도 지속가능한 분산형 관광 체계 구축, 지역관광 활성화, 비수도권 관광 인프라 확충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됨. 이는 도시민박 제도 개선의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함
- (관광객 측면: 숙박 선택권 제한 및 체류불편) 내국인 관광객이 도시지역에서 일반 가정 체험형 숙소를 이용하려는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외국인 대상 민박만 가능하여 도심 내 공유 숙박을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특히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에서는 민박업 운영이 불가하여, 비수도권 도시 또는 관광 잠재지역에서의 체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는 관광객의 체류 만족도 저하뿐 아니라 도시관광 콘텐츠의 확산에도 장애로 작용함
- (사업자 측면: 영업 제약과 수익 손실) 도시지역에서 민박 형태의 숙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해야 하며, 내국인 손님도 거절해야 하므로 객실 공실에도 불구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비효율 구조가 발생함. 현실적으로 외국인·내국인을 구분하여 영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는 위법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민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스텔·일반숙박업·임대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는 ‘형식적 우회 등록’을 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러한 구조는 정책 신뢰성 훼손, 등록률 저하, 제도 회피 현상을 야기함
- (행정기관 측면: 규제 모호성 및 관리 한계) 지자체는 등록 시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투숙객의 국적을 일일이 확인·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임. 일부 도시재생지역 외 사업자들은 내국인 영입이 불가능한 점에 대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민원 증가와 불법 운영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음. 제도 미비로 인해 행정기관의 사후 감독 부담이 커지고, 민박업 자체의 정책 효과는 축소되고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 개선방안

- (법률 개정 방향)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개정하고, 숙박 이용 대상을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확대함

현 행		개 정	
구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구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바목
내용	명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외국인 관광객 한정(예외적 내국인 허용) 도시재생지역 마을기업: 외국인 우선, 내국인은 제한적 허용	내용	명칭: 관광 도시민박업 대상: 모든 내외국인 관광객 도시재생지역 마을기업: 외국인 우선, 내국인 명시적 허용

- 현행 지침(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내국인 대상 등록 절차, 안전 및 위생 기준, 등록 요건, 플랫폼 연계 방식 등을 구체화함.
- 특히 객실 수 제한, 거주 요건, 층수 요건 등도 유연화하여 소형 주택과 청년층 1인가구 등도 도시민박 시장에 참여 가능하도록 조정 필요
- 또한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장치 마련이 필요함.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시 기존 일반숙박업계(호텔·모텔 등)와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므로, 연간 내국인 대상 영업일수 제한(예: 연 180일 이내)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 우선 도입 등 단계적 접근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시민박 등록 시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기금 조성,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법상 주택의 숙박시설 전용 방지 장치 등을 개선방안에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지역경제의 다층적 활성화) 현행법 하에서는 외국인만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시 내 유희주택 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광 자원은 존재하나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도시에서 체류형 관광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개정으로 내국인이 도시민박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도심 내 미이용 공간이 숙박 자원으로 전환되고, 지역 중심의 소비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유도함. 이는 도시관광 기반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구조로 평가됨
- (관광객의 선택권 확대 및 체험숙박 활성화) 내국인이 도시에서 체험형 민박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적으로 합법적 경로가 거의 없었으며 비공식 또는 불법 숙소에 의존해야 했음. 개정안을 통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이 공식화되면, 플랫폼 기반 숙박 예약·리뷰·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되어 소비자의 신뢰와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 여성 1인 여행객, 로컬 체험을 선호하는 소비층에게 중요한 대안이 됨
- (행정 효율성 및 규제 실효성 제고) 현재 지자체는 등록 시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를 안내하나, 실제 투숙객 국적을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로 인해 불법·미등록 숙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단속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임. 내국인 대상 이용을 합법화하면, 제도권

등록 유도 및 자율적 준법 운영이 가능해지며, 행정기관은 단속 대신 등록·지도 중심으로 전환하여 정책 집행 효율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박상곤, 2023)⁴⁸⁾

○ (공유숙박 생태계의 구조적 성장 기반 조성)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현안 연구⁴⁹⁾에 따르면, 공유숙박은 플랫폼 기반 숙박산업의 핵심 요소로 성장 가능성이 크며, 공식 제도 및 운영틀 마련이 플랫폼 사업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음(박상곤, 2023).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면, 숙소 콘텐츠 큐레이션, 지역 체험상품 연계, 호스트 인증제 도입 등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며, 플랫폼 기반 디지털 숙박 모델로의 전환이 활성화됨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유경제 고용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공유숙박은 업체당 신규 고용 창출 효과 1.43명, 고용 이동효과 0.3명 수준을 보임(권순원 외, 2016)⁴⁹⁾. 이 수치는 단순 숙박운영자뿐 아니라 지역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 효과임. 또한 문체부의 공유숙박 제도화 추진방안에서는 공유숙박 전면 제도화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숙박관리업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 상승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12) 전라남도

(1) 해상풍력 외부망 REC 가중치 산정 기준 개선

- 주요 내용 :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시 '전력계통연계점' 해석 차이로 실제보다 낮은 가중치가 적용되어 사업성이 저하됨. 실제 송전선로 연결 지점이 아닌 인근 섬 해안선 기준 거리로 계산되어 불합리한 보조금 축소 사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연계거리' 정의를 실제 기술적으로 연계 가능한 송전선로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관련 지침·규칙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적인 가중치 산정으로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투자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별표2
-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해상풍력의 REC(공급인증서) 가중치는 '연계거리'에 좌우되는데, 이 연계거리의 기준이 어느 지점을 계통연계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짐

※ 연계거리(Connection Distance)는 REC 가중치 산정이나 제도 운영 시, 발전소에서 기준이 되는 계통연계점⁵⁰⁾까지의 직선거리 또는 경로거리이며, 법령·지침에서 정의된 방식에 따라 산정됨

※ 외부망 거리(External Grid Distance)는 발전소(해상풍력 단지)에서 한전 계통망에 접속되는 지점까지의 송전망 구간

48) 박상곤. 2023.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현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9) 권순원·정동일·박지순(2016), 공유경제 허용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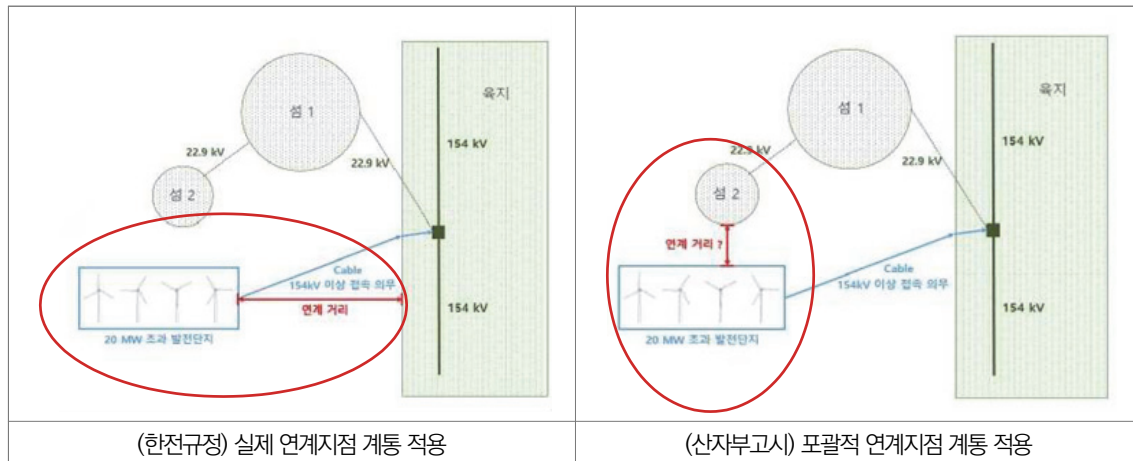
- 발전사업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계통연계점 기준’ 해석 차이로 보조금(REC) 가중치 하락
- ‘전력 계통연계점 기준’ 해석 차이로 보조금 가중치 하락에 따른 해상풍력 사업성 저하
- 한전은 설비 40MW 초과 시 154kV 이상 송전계통에 연계해야 한다고 보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실제로 연결되는 송전선로의 지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 실제 연계지점의 거리 기준으로 보조금 가중치가 산정되어야 하나, 이와 무관한 곳의 거리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중치가 하락되어 보조금 축소로 이어짐

□ 문제점

- 연계거리 산정의 왜곡
 - 실제 접속선로까지 거리 대신 인근 섬 해안선까지의 거리로 계산되면, 동일한 프로젝트도 연계거리가 왜곡되어 가중치가 달라짐
- 경제성 훼손(정량 근거)
 - 원도장보고 사례에서 ‘실제 연계지점’ 기준과 ‘포괄적 해석’ 기준의 연계거리 차이 11.44km가 발생했고, 그 결과 REC 가중치 4.329 → 4.178(-0.151)로 낮아짐
 - 판매가격 추정 기준으로 약 2,300억 원(20년)의 손실이 산정되며, 이는 동일 설비용량(400MW)·발전량에서 해석 차이만으로 발생한 손실임
- 사업 예측가능성 저하
 - 어떤 지점을 ‘계통연계점’으로 볼지 불명확하면, 사업자는 초기 투자·입지·송전망 연계 설계에서 가중치 리스크를 헤지할 수 없고, 금융조달과 사업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짐
- 정책 목표와의 불일치
 - 연계거리 해석 차이로 합리적이지 않게 가중치가 낮아지면, 해상풍력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역행하게 됨

한 전 규 정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	산자부고시 적 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40MW 초과 발전사업은 154kV 이상 계통에 연계 필요		송전계통이 연결된 인근 섬의 해안선이 REC 가중치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	

[그림 3-30] 전력 계통연계점 기준 해석



[그림 3-31] '계통연계점' 해석 차이에 따른 연계거리 비교 예시

〈표 3-67〉 공사 완도장보고 해상풍력사업(예시)

구 분	한전규정	산자부고시 적용 사례	비 고
설비용량	400MW	400MW	발전량 1,057,956MWh/년
외부망거리	15.704km	4.264km	
가중치(REC)	4.329	4.178	
판매가격 추정(20년 운영)	8조 3,361억원	8조 1,061억원	-2,300억원

□ 개선방안

- '계통연계점'의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한 관련규정(고시) 개정
- "한전계통"을 "기술적으로 연계가능한 송전선로"로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내용	8. ④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 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내용	8. ④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기술적으로 연계 가능한 송전선로 와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대상 설비가 연계 가능한 한전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현 행		개 정	
구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③ 풍력설비	구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 1〉 ③ 풍력설비
내용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 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이하 “외부망”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내용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기술적으로 연계가능한 송전선로 와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이하 “외부망”이라 한다)를 의미한다.

□ 기대효과

○ 사업성·안정성 향상

- 실제 송전선로 연결 거리를 기준으로 REC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불합리한 보조금 축소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 명확한 산정 기준 확립으로 가중치 변동에 따른 재무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짐

○ 예측 가능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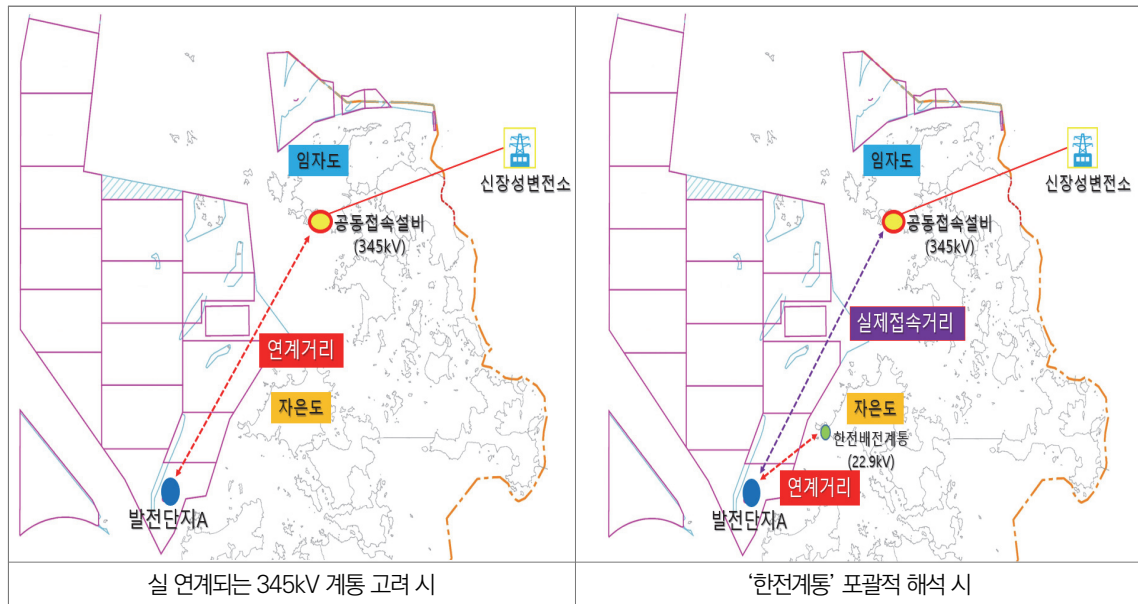
-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가중치와 수익성을 산출할 수 있어, 금융 조달과 투자 의사결정이 용이해짐
- 법령·지침의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임

○ 해상풍력 투자 촉진

- 수익성 확보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사업자의 추가 투자를 촉진함
- 장기적으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

- 해상풍력 발전량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함
- 국제적 탄소중립 흐름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 실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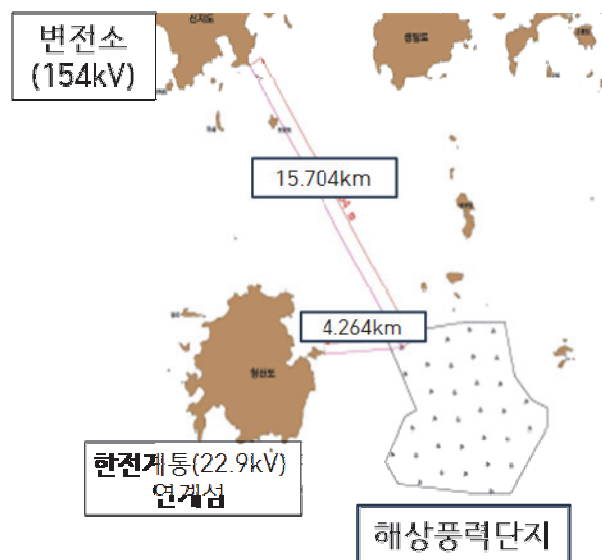
[그림 3-32] 전남 집적화단지 연계거리 검토 사례

※ 개정 고시 적용 시, 실제 연결계통에 연계거리가 측정되어 REC 가중치 증가

참고

해상풍력사업 REC 가중치 하락 사례

- 연계거리 해석 차이에 따라 REC 가중치 산정 시 오차 발생
 - 해상풍력 ‘연계거리’ 조건상 사업별 실제 연계지점이 아닌 최단거리의 육지 또는 섬의 한전 계통점을 기준으로 함(“계통연계점” 대한 해석차이)
 - 완도장보고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연계거리 해석차이에 따라 가중치 산정 시 11.440km 오차 발생으로 20년 운영 시 약 2,300억원 손실 발생



완도장보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 하락 예시

• 판매수입 산정

완도장보고 해상풍력 REC 가중치 산정 기준에 따른 판매가격 추정

구 분		한전규정	산자부고시 적용 사례	차 이	비고
① 발전량(MWh/년)		1,057,956	1,057,956		400MW*365일*이용률
전력판매단가 (원/kWh)	② SMP가격	81.91	81.91		
	③ REC 가격	72.09	72.09		
	④ 가중치(REC)	4.329	4.178	- 0.151	
	⑤ 판매단가	393,988	383,102	- 10,886	②+(③×④)
판매가격 추정(연간)(백만원)		416,822	405,305	- 11,517	①×⑤
판매가격 추정(운영기간)(백만원)		8,336,439	8,106,101	- 230,338	①×⑤×20년

(2)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완화

- 주요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는 토양 염도 5.5dS/m 이상 농지가 사업 부지의 90%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염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도 일부 구간이 기준 미달이면 사업이 불허되어 농지 활용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농가 소득 기회가 상실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한 부지가 필요하나, 현 규제가 염해농지 활용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토양 염도 요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염도 외에 농업 생산성, 경작 불가능성, 토양 복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탄력적 허가 제도 도입, 간척지·염해 집중권역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허가 비율·절차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현행 규제의 경직성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불가
- 예외적으로 간척지 등 토양 염도가 높은 농지에 한정해 허용하되, 토양 염도 5.5 dS/m 이상인 면적이 전체 사업 부지의 90% 이상이어야 설치 가능

○ 현장 여건과 불일치

- 염해로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임에도 9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불가
- 일부 간척지·염해농지는 농업 활용 가치는 낮지만, 재생에너지 부지로는 잠재력이 높음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 인구 감소와 쌀 소비량 감소로 유휴농지가 확대되고, 농가 소득 감소 우려 심화
- 유휴·저활용 농지를 활용한 농외 소득 창출 수단의 필요성이 커짐

○ 정책·산업적 필요성

- 국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입지 확보가 중요하며, 염해농지를 활용하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 가능
-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확산할 수 있음

□ 문제점

○ 90% 염도 요건의 과도함

- 토양 염도 5.5 dS/m 이상 농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90% 이상이어야 허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지나치게 높음
- 실제로 염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라도 일부 구역이 기준 이하이면 사업이 불허됨

○ 규제와 현장 실정의 괴리

- 염해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 시 농지전용 불가
- 농민 입장에서는 낮은 생산성과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체 활용이 제한됨

○ 유허농지 증가와 소득 기회 상실

- 쌀 소비 감소·농촌 인구 고령화로 유허농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태양광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기회를 놓치고 있음

○ 재생에너지 확충 목표 차질 우려

-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적합 부지를 발굴해야 하나, 현 규제는 염해농지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이 됨

□ 개선방안

○ 염해농지로 인한 농업소득 보전을 위해 토양염도 5.5(dS/m) 이상인 지역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60으로 축소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

○ 탄력적 허가 기준 도입

- 염도 기준 충족 여부 외에도 농업 생산성, 경작 불가능성, 토양 복원 비용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 도입
- 일정 기준 미달 지역이라도 지자체·농업 전문가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유허·저활용 농지 활용 지원

- 염해농지 외에도 장기간 휴경지,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를 태양광 설치 허용 대상으로 확대

- 농지 태양광 설치 후 일정 기간 경작 병행 가능하도록 영농형 태양광 모델 활성화

○ 지역 맞춤형 규제 차등 적용

- 간척지·염해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탄력적 허가 비율 및 조건 설정
-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영향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농지 훼손 방지

현 행		개 정	
구분	농지법 시행규칙	구분	농지법 시행규칙
내용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내용	제31조의2(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6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③탄력평가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 허가 가능). 가. 최근 3년 평균 수확량이 동일 생활권 평균의 50% 이하 나. 토양 복원(개량) 비용이 동일 면적 관행 농업 대비 200% 이상 다. 휴경기간 누적 2년 이상 또는 재배 포기 신고 이력 ④간척지·도서·염해집중권역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허가 비율·절차의 탄력적 조정 및 공익기여 조건(지역 전력공유, 농민 참여이익 배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유희·저활용 농지의 효율적 활용

- 염해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낮아 경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를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
- 휴경지·저활용지 활용으로 농지 방치·잡초화·관리 비용 증가 문제 완화

○ 농가 소득 다변화 및 안정화

- 태양광 발전 판매 수익을 통해 농업소득 외 지속적 부가수익 창출 가능
- 영농형 태양광 병행 시, 경작과 발전을 동시에 수행하여 농가 총수입 증대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기여

-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확대
- 염해농지 활용은 환경 훼손 부담이 낮아 친환경적 에너지 전환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

- 발전사업 설치·운영 과정에서 지역 인력 고용, 기자재·서비스 수요 증가
-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환원(마을 기금, 인프라 개선 등) 가능

□ 전문가 의견(요약)

- 전체적인 인구 감소로 쌀 소비량이 감소되어 의무적으로 유휴농지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소득 감소가 예상되어 새로운 소득방안 차원에서도 영농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상태라 판단
- 특히 간척 사업을 통해 확보된 농지의 염분이 높아 쌀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
- 이에 위에서 언급한 토양염도 5.5(dS/m) 이상인 지역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60으로 축소하여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필요

※ 전문가 정보

구 분	소속	직위(직급)	성명
담당자	(주)신호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조○○

(3) 소규모 섬 지역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 기준 완화

- 주요 내용: 섬 지역 소규모 소각시설은 간헐적·단시간 가동과 제한된 처리 규모로 인해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이 대규모 시설 대비 현저히 적음. 현행 기준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과도한 규제는 운영 부담과 폐기물 처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불법투기나 운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따라서 연간 총발생량이 0.1g-TEQ 미만인 섬 지역 소각시설에 대해 배출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함.
- 관련 법령: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가목1)
- 소관 부처: 환경부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섬 지역의 소규모 소각시설은 운영 방식과 환경영향 면에서 육지의 대규모·연속 가동 소각시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설 용량과 가동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소규모 섬 지역인 신안군 흑산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연간 다이옥신 배출량이 0.023g-TEQ에 불과하여 대규모 마포자원회수시설(0.144g-TEQ) 대비 6분의 1 수준이며, 농도를 높게

가정하더라도 연간 총량은 여전히 현저히 낮음. 이는 섬 지역 소각시설이 간헐적·단시간 가동을 하며, 폐기물의 성상과 처리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차이임.

-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배출농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도한 규제는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폐기물 처리 효율성을 저하시킴. 장기적으로는 불법 폐기물 투기, 해상 운송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연간 총발생량이 0.1g-TEQ 미만인 소규모 섬 지역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역 현실을 모두 반영하는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고, 지역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흑산 해양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시 연간 총 배출량

$$: 0.023g\text{-TEQ/년} \times \frac{5ng}{m^3} \times \frac{2,400m^3}{1시간} \times \frac{8시간}{1일} \times \frac{240일}{1년} \times \frac{1g}{10^9ng} = 0.023g/년$$

□ 개선방안

- 섬 지역 소각시설 예외조항 신설, 소규모 섬 지역 소각로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완화 또는 총량규제 건의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4호가목1) 개정

현행				개정			
구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구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내용	(단위: ng-TEQ/Sm³)			내용	(단위: ng-TEQ/Sm³)		
	구분	신설 시설	기존 시설		구분	신설 시설	기존 시설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0.1	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인 경우	0.1	1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1	5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미만 2톤 이상인 경우	1	5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5	10		시간당 처리능력이 2톤 미만 1톤 이상인 경우	5	10
					<u>시간당 처리능력이 1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신설)</u>	<u>15</u>	<u>15</u>

□ 기대효과

○ 규제 형평성 확보

- 대규모·연속 가동 시설과 간헐·소규모 가동 시설 간 배출 특성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 기준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해소
-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주민과 지자체의 수용성을 높임

○ 운영 효율성 향상

- 과도한 규제 준수를 위한 불필요한 설비 개선·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다른 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음
- 소규모 섬 지역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져, 처리 지연이나 장거리 해상 운송 부담이 줄어듦

○ 환경·경제적 부작용 최소화

- 불필요한 해상 운송 및 장거리 폐기물 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연료비 증가를 줄임
- 불법 투기 가능성을 낮춰 해양·육상 환경오염을 예방함

○ 합리적 환경보호 체계 확립

- 연간 총발생량이 극히 낮은 시설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고, 환경영향이 큰 시설에 집중 관리함으로써 규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짐
- 환경보호와 지역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정책 모델로서, 다른 지역에도 확산 가능성이 있음

□ 참고.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섬 지역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현행 측정 농도($5\text{ng}/\text{Sm}^3$)보다 3배 높은 $15\text{ng}/\text{Sm}^3$ 를 가정한 오염물질 배출량 시나리오를 설정함
- 이 수치는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의 '시간당 처리능력이 1톤 미만 25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의 완화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임
- 흑산 해양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계산 결과, 연간 총배출량은 0.069 g-TEQ 로 증가하였으나, 대규모 마포자원회수시설(0.144 g-TEQ)에 비해 여전히 2.08배 낮음
- 즉, 배출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섬 지역 소각시설의 배출량이 대규모 시설보다 현저히 적음

□ 참고자료.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흑산 해양폐기물 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시 연간 총 배출량: 0.023g-TEQ/년
$$\frac{5ng}{m^3} \times \frac{2,400m^3}{1시간} \times \frac{8시간}{1일} \times \frac{240일}{년} \times \frac{1g}{10^9ng} = 0.023g/년$$
- 마포자원회수시설 배출허용기준 시 연간 총 배출량: 0.144g-TEQ/년
$$\frac{0.1ng}{m^3} \times \frac{200,000m^3}{1시간} \times \frac{24시간}{1일} \times \frac{300일}{년} \times \frac{1g}{10^9ng} = 0.144g/년$$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총량 비교(연간)

구분	시설규모 (ton/d)	농도 (ng/Sm³)	유량 (m³/hr)	연간배출량 (g/yr)	비고
흑산소각	5	5	2,400	0.023	※ 연간배출량기준 마포소각 = 6.2608 × 흑산소각
마포소각	750	0.1	20,000	0.144	

※ 농도를 ‘15ng/Sm³’으로 조정할 경우, 흑산소각의 배출량은 0.0691g/년. 마포소각 연간 배출량 = 2.0839 × 흑산소각 연간 배출량

- 증빙자료(흑산면 소각시설 대기측정기록부-2024년 1월)

현장기상	기후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흐림	9 ℃	90 %	769 mmHg		남동 풍		4.5 m/s			
④ 시 료 채 취	배출가스 유량			산소 농도				배출가스 속도		3.5 m/s	
								배출가스 온도		69 ℃	
	입자상		가스상		입자상		가스상		배출가스 수분량		4.3 %
	1973.5 Sm³/시간		1973.5 Sm³/시간		표준	12.0 %	표준	12.0 %	배출가스 수분량		4.3 %
	32.9 Sm³/분		32.9 Sm³/분		실측	14.9 %	실측	14.9 %	굴뚝내경		0.62 m
방지시설	명칭				대상물질				방지효율		굴뚝 높이
	순간식반응탑(5,434Nm³/hr)+ 여과집진시설 (5,791Nm³/hr)				-				-		%
채취일시	2024년 1월 17일		시료채취자		여영민		이승규		-		(서명)

- 증빙자료(마포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2022년)

마포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제3장 시설 가동현황

○ 마포자원회수시설 2022년 환경상영향조사 기간 중 발생되는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을 전 항목에서 하회하여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농도 관리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3> 환경상영향조사 기간 중 마포자원회수시설 오염물질 배출현황

구분 일자	배출가스량 (Sm³/hr)			먼지(DUST) (mg/Sm³)			비고
	1호기	2호기	3호기	1호기	2호기	3호기	
01월 24일	68,432.14	71,290.14	68,518.70	1.88	0.77	0.80	-
01월 25일	67,565.64	71,085.48	66,694.90	1.83	1.37	0.80	-
01월 26일	67,350.86	70,762.64	66,315.60	1.43	1.69	0.99	-
01월 27일	68,264.30	70,119.92	67,736.58	1.39	2.12	1.51	-
01월 28일	69,110.18	71,135.92	69,100.86	1.27	1.57	1.30	-
평 균	68,144.62	70,878.82	67,673.33	1.56	1.50	1.08	-
배출허용기준	-			10			-

(4) 섬 지역 최종 매립 폐기물의 육지 반출 허가

- 주요 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폐기물의 육지 반출이 어렵고, 매립시설 증설이나 신규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활용 목적 외에는 기 매립 폐기물 굴착·반출이 불가하여 매립용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을 통해, 재활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섬 지역 매립폐기물 굴착·반출 허용하여 매립시설 수명 연장, 재활용률 제고, 환경위해 저감,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제11호
- 소관 부처: 환경부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국내 유인도서에 약 8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육지로의 폐기물 반출이 어렵고, 한정된 토지 면적으로 매립시설 운영에 한계가 있음
- 섬 지역은 임야 비중이 높고, 용도지역상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보전산지가 많아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움
-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은 매립된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이 아니면 파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
- 대표 사례인 신안군 흑산면 매립시설은 국립공원 내 위치하며, 지반이 실트(뺨)·연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수층이 높아 신규 부지 확보가 곤란하며, 육상 운송도 목포항까지 화물선 왕복 9시간이 소요됨

□ 문제점

- 매립시설 증설·신규 부지 확보 곤란
 - 법령상 입지 제한, 대체 부지 확보의 어려움, 기존 시설의 포화 상태로 인해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
- 지형·지질 제약
 - 섬 중심부는 산지, 해안은 취락지역과 방조제로 연결, 평지는 연약지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설·운영에 제약
- 법적 제약으로 인한 매립용량 부족
 - 재활용 목적 외에는 기존 매립 폐기물의 굴착·반출이 불가해, 장기적으로 매립시설 포화와 환경·위생 문제 심화
- 행정·재정 부담 가중
 - 신규 매립장 설치 시 부지 확보, 사전절차, 사업비 투입 등으로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 소모가 큼

□ 개선방안

- 섬 지역 매립시설 용량 확보를 위해 재활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기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공통기준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 공통기준
내용	가.~아. (현행과 같음) 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파낼 수 있다.	내용	가.~아. (현행과 같음) 자.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한 폐기물을 파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파낼 수 있다. 다만, 섬지역의 매립용량 확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립 용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활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파낼 수 있다.

□ 기대효과

- 매립시설 수명 연장
 - 기존 매립폐기물 선별·재활용을 통해 신규 매립 필요량 감소
 - 섬·도서지역과 같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
- 재활용률 제고 및 자원순환 촉진
 - 매립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품목(순환골재, 대체연료, 복토재 등) 회수 가능
 - 국가 폐기물 감축 및 순환경제 이행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
- 환경위해 저감
 - 매립시설 포화로 인한 불법 투기·무단 소각 등 부적정 처리 방지
 - 장기 매립에 따른 침출수·악취 발생량 감소
-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 신규 매립장 건설·운영 비용 절감
 - 기존 부지 내 관리·보수 위주로 전환 가능,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감소

참고

섬 지역 최종 매립장 현황(흑산면)



- 위치 : 목포항으로부터 93km, 화물선으로 왕복 9시간 소요
- 지형 : 중심에는 산지, 해안에는 취락지역과 방조제로 연결
- 지반 : 평지는 실트(뽕), 연암으로 구성, 해수층이 높아 굴착 시 용출 우려
- 규제 : 국립공원 내 위치, 자연공원법 적용 ☞ 기존 매립시설 포화 시 대체 부지 확보 어려움

(5) 푸드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한 폐기물법 개정

- 주요 내용 : 현행 법령은 '농산물가공잔재물'을 '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로 포괄해 분류체계가 불명확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예: 원료추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업사이클링 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환경·경제적 잠재효과가 제한되고 있음. 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에 '농산물가공잔재물' 세부 분류를 신설하고, 국제 기준(EU EWC, 일본 Food Recycling Law 등)에 부합하는 재활용 유형(R-3-4 원료추출 등)을 부여하여 식품위생법·사료관리법 등 관련 안전기준과의 교차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푸드 업사이클링의 단계적 시행과 정량 목표 설정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4의3
- 소관 부처: 환경부
- 발굴 방식: 2025년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규제 발굴 보고회

□ 추진배경

○ 농식품 부산물의 자원가치 재인식

- 국내외에서 식품 부산물을 기능성 원료, 첨가물, 사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산업이 급성장

- 폐기물로만 보던 관점을 벗어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사회·산업적 수요 증가

○ 순환경제 및 ESG 경영 확산

- 탄소중립,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기업의 재활용 확대 노력이 활발
- 부산물 활용도를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국제적 흐름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필요

- 미국·EU 등 선진국은 식품 부산물의 세부 분류와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해 산업 활용을 지원.
- 우리나라도 법령·지침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 필요성 증대

□ 문제점

- 현행 폐기물관리법 체계는 업사이클 식품 원료(농식품 부산물 등)를 포괄적 ‘폐기물’로만 취급하고 유형별 재활용을 엄격히 제한해, 업사이클링 식품 확산 저해
- 폐기물 재활용은 유형별로 엄격히 제한되며, 고시된 세부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경성 평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는 재활용이 금지되어 원료 활용이 제약됨
- 식물성잔재물 다수가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로 묶여 제한적 용도만 허용되고, 원료추출형(R-3-4)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산업적 활용이 어려움
- 국내·외에서는 이미 잔재물을 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분류 및 유형 부재로 현실과 괴리 심화

□ 해외 사례

- 해외 주요국은 식품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령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안전기준과 활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표 3-68〉 푸드 업사이클링 관련 해외 국가 사례

구분	미국	EU	일본
기본 법령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및 각 주별 폐기물·재활용법	Directive 2008/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waste and repealing certain Directives.	食品循環資源の再生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식품 순환 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 부산물 정의	유기성 부산물 중 재활용·재사용 가능 항목을 세부 정의(예: 곡물박, 과일·채소 찌꺼기, 제과부산물 등)	‘식품 부산물(Food Waste)’을 발생 단계별 (생산·가공·소매·소비)로 정의	‘식품 잔재물’을 발생원별로 구분 (제조·가공·유통·외식)
분류체계	주(州)별 규정·허가 체계 (비유해성 폐기물은 주가 주도)	European Waste Catalogue(EWC) 코드 부여, "유해·비유해 폐기물 분류", 고유 식별번호 관리	사료·비료·원료화·에너지화 등 4대 재활용 경로 명시

구분	미국	EU	일본
재활용 유형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에탄올, 식품원료 추출, 기능성 소재화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바이오플라스틱, 원료화, 바이오연료	사료, 비료, 원료추출, 메탄가스 생산 등
원료추출 허용 여부	허용(RCRA·FDA 기준 준수 시 기능성 원료·첨가물 제조 가능)	허용(EFSA(유럽식품안전청) 가이드라인 준수 조건)	허용(위생관리기준·HACCP 준수 조건)
특징	- 주(州) 단위로 세부 기준·인센티브 운영 'Upcycled Certified' 민간 인증 제도 확산 2030년까지 식품 손실·폐기 50% 감축 목표	- 순환경제 전략 내 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강조 '식품 폐기물 감축 목표'를 회원국 별로 설정, 이행계획 의무화	- 재활용율 법정 목표(예: 제조·가공업체 95% 이상) - 사업자별 감축·재활용 보고 의무

- 자료. 1. 미국 (US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U.S. Code, Title 42, Chapter 82 – Solid Waste Disposal. <https://www.epa.gov/rcra>
2. 유럽연합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08L0098>
 European Waste Catalogue (EWC) – Commission Decision 2000/532/EC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00D0532>
3. 일본 (Japan), Food Recycling Law (食品リサイクル法)
https://laws.e-gov.go.jp/law/412AC0000000116/20230616_505AC00000000063

- 미국은 '자원보전회복법(RCRA)'을 기반으로, 비유해성 폐기물(음식물 포함)은 RCRA Subtitle D 체계 아래 각 주(州)에서 규정·허가 기준을 마련해 재활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기성 부산물은 주·EPA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활용·재사용 가능 품목을 세부적으로 정의하며, 활용 유형에는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에탄올, 식품원료 추출 등 고부가가치 방식이 포함됨. 특히 FDA 규정(21 CFR 117.95, 21 CFR Part 507)과 지침(GFI #239)을 충족하면 기능성 원료나 첨가물 제조도 가능함. 또한 'Upcycled Certified®'와 같은 민간 인증제 확산과 2030년까지 식품 손실·폐기 50% 감축 목표 추진을 통해 시장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유럽연합(EU)은 '폐기물기본지침(Directive 2008/98/EC)'과 순환경제 행동계획을 통해 '식품 폐기물(Food Waste)'을 생산·가공·소매·소비 단계별로 정의하고, 유럽폐기물목록(EWC) 코드 체계에 따라 유해·비유해 폐기물로 분류함. 재활용 범위는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화 등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안전·위생 기준 충족 시 원료 추출이 허용됨. 특히, 회원국별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정책 실행력을 담보함.
-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 촉진에 관한 법률(Food Recycling Law)'을 근거로, 식품 잔재물을 발생원별(제조·가공, 유통, 외식)로 구분하고 사료·비료·원료화·에너지화 등 4대 재활용 경로를 명시함. 원료추출은 HACCP 준수 등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되며, 업종별 재활용률 목표를 법정화(예: 제조·가공업 95% 이상)하고, 사업자별 감축 및 재활용 실적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해외 주요 국가는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 ▲다양한 재활용 경로 허용 ▲안전·위생 기준의 법적 연계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의무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식물성 잔재물 세부 분류에 ‘농산물가공잔재물’ 항목 신설
 - 원료추출(R-3-4) 등 고부가 재활용 유형 부여
- 재활용 범위 확대
 - 식품·사료·기능성 원료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국제 기준 부합
 - 해외 선진국의 식품 부산물 재활용 사례 반영하여 제도 정합성 확보

현 행		개 정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1항 관련)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제4조의2제1항 관련)
내용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생략)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내용	1. 지정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생략)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51-17-30 농산물가공잔재물(신설)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현 행		개 정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구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내용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 ∴	∴ ∴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R-4-5, R-5-1, R-5-2, R-5-4, R-6-1, R-8-2, R-10
내용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 ∴	∴ ∴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R-5-3, R-9-1, R-9-3, R-9-4, R-10
			R-4-5, R-5-1, R-5-2, R-5-4, R-6-1, R-8-2, R-10
내용	51-17-30	농산물가공 잔재물	<u>R-3-4, R-4-8,</u> <u>R-5-3, R-9-1,</u> <u>R-9-3, R-9-4,</u> <u>R-10</u>
			<u>R-4-2, R-5-1,</u> <u>R-5-2, R-5-4,</u> <u>R-8-2, R-10</u>

□ 기대효과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 미국 RCRA, EU WFD, 일본 Food Recycling Law 등 공식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 정의·분류체계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국제 통상·환경 협약에서의 제도 호환성 높아짐.
- 특히 EU의 EWC 코드 체계와 EFSA 위생 기준을 반영하면, 해외 수출 시 규제 충돌·추가 검증 절차를 최소화

○ 재활용 시장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 사료·비료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바이오연료, 기능성 소재 등 다양한 재활용 경로가 제도적으로 인정되면, 관련 산업의 기술 개발·투자 유인 확대
-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동시에, 부산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예: 건강기능식품 원료,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가능

○ 사업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관리

- 발생원별·분류체계 기반의 관리로, 사업자가 자신의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재활용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규제 준수 부담 완화
- 재활용 실적 보고·모니터링 체계가 표준화되면 행정기관의 관리 효율 향상

○ 환경적 효과

-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매립·소각되는 폐기물 양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순환경제 전환 기여
- 특히 식품 부산물의 바이오가스화·메탄 회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여

○ 소비자·사회적 인식 제고

- 'Upcycled Certified™'와 같은 민간 인증제와 연계하면,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의 가치와 환경 기여도를 인식하게 되어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
- 재활용·감축 목표의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 활동 강화

(6) 수산부산물 활용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시행령」은 보관 기간을 '발생 시작일 기준 90일'로 규정하여, 장기 수확 업종(예: 패류 양식)에서 실질적인 처리·활용 기간이 부족하며,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정화 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범위가 제한되어, 굴 패각 등 부산물의 재활용 활용 근거가 부족함. 따라서 보관 기간 기준을 '발생 종료일로부터 90일'로 변경하여 업종별·계절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물질 제거 등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부산물의 저질개선·환경개선 용도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장관리법」 개정을 통해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정화·정비 작업 활용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수산부산물 발생량 증가와 관리 부담 심화

- 국내 양식어업과 수산물 가공 산업이 확대되면서, 연간 발생하는 수산부산물(굴·홍합 패각, 어류 내장, 비늘 등)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
- 해양투기 전면 금지(2012년 런던의정서 발효) 이후 육상 처리 의무화로, 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 처리 비용과 보관 부담이 크게 상승

○ 현행 법제도의 적용 범위와 유연성 부족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연간 10톤 이상 배출 사업자에 한해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분산형 어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부산물이 제도 밖에 방치됨
- 분리 배출된 부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처리업체 또는 자원화시설에 인계해야 하고, 보관 기간은 90일로 제한되어 있어 계절성·생산 시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어장 환경 개선 자원의 활용 제약

- 굴 패각 등 일부 수산부산물은 해양 환경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음(예: 바지락 서식지 저질 개선, 산소 공급, pH 완충)
- 그러나 「어장관리법」상 어장정화·정비 사업은 흙·모래 살포만 허용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대체재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어촌·양식업의 지속가능성 위기

- 처리 비용 증가, 보관·운반 한계, 활용처 부재로 인해 일부 어가는 불법 투기나 무단 방치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해양 환경오염과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짐
- 어장환경 악화는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며, 특히 도서 지역과 고령 어업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경영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

□ 문제점

○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존재

- 연간 10톤 이상 배출 사업자만 분리배출 의무 대상이므로, 소규모 양식장·어가·도서지역의 어업인들이 배출하는 다량의 수산부산물이 제도 관리 밖에 방치됨
-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불법 투기·방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활용 제한으로 인한 재활용률 저조

- 굴 패각 등 환경개선 효과가 입증된 부산물도 「어장관리법」상 어장정화·정비 재료로 활용 불가
- 법령상 허용된 활용처(사료·비료 등)로의 전환이 물류비·가공비 부담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

○ 운반·보관 부담 및 비용 증가

- 허가받은 처리업체 또는 자원화시설까지 장거리 운반이 필요하며, 도서지역의 경우 운송비가 육상보다 2~3배 높음
- 90일 보관 기한 제한으로, 어장관리·양식 일정과 맞물려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도상 불가능

○ 해양환경 및 양식업 지속성 위협

- 부산물 무단 방치 시 부패·악취·병원균 발생 등 환경·위생 문제가 심화
- 어장 바닥의 유기물 축적이 심화되어 산소 부족, 패류 폐사율 증가 등 양식업 생산성 저하로 직결

○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과 「어장관리법」, 그리고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현장에서는 중복규제 또는 활용 제한이 발생
- 결과적으로, 자원순환·환경개선·양식업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동시에 달성되지 못함

【현장사례】

- 바지락 양식장 굴 패각 살포 제한 시 바지락 폐사율 급증
- 2011년 고흥군 포두면 남성에서 굴 패각을 활용한 양식장 저질개선 효과를 확인한 결과 굴 패각 미살포시 바지락 모두 폐사

□ 개선방안

○ 수산부산물 보관·처리기준 합리화

- 보관기간이 '발생 시작일 기준 90일'로 되어 있어, 수확 기간이 긴 업종(예: 패류 양식)에서는 실질적인 보관·활용 기간이 부족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여, 보관 기준을 '수산부산물 발생 종료일로부터 90일'로 변경하여 계절·작업 특성 반영

○ 활용 범위 확대 및 처리기준 완화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용도가 제한적이며, 저질개선·환경개선 재료로의 활용 근거가 미흡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개정하여, '이물질 제거 후 위생·안전 기준 충족 시 저질개선 목적으로 사용 가능' 조항 신설하여, 재활용 자원화 시설뿐만 아니라 목적별 사용처 확대(환경개선, 복토재 등)

○ 어장정화 자재 범위 확대

- 「어장관리법」에서 어장정화·정비 시 사용 가능한 자재 범위가 제한되어, 수산부산물 활용 근거가 부족함
- 「어장관리법」 제2조를 개정하여 어장 바닥 정화 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부산물(예: 굴 패각)을 허용 자재에 포함. 이를 통해 굴 패각·패류껍질 등 부산물을 흙·모래의 대체재로 활용 가능

현 행		개 정	
구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90일을 말한다.	내용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수산 부산물 발생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말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해야 한다.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_____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 또는 양식업권(어업권을 득한 양식어장 저질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구분	「어장관리법」	구분	「어장관리법」
내용	제2조(정의) 1. ~ 4. (생략) 5. “어장정화·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내용	제2조(정의)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 또는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에 적용받는 수산부산물을 말한다)을 새로 까는 일

□ 기대효과

○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감축

- 수산부산물(굴 패각, 패류 껍질 등)의 재활용 범위 확대와 보관 기간 합리화로 매립·소각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해양 투기 금지 이후 발생한 처리 비용 부담과 환경오염 위험을 동시에 완화

○ 어장환경 개선 및 수산자원 회복

- 굴 패각 등 재활용 부산물을 저질개선·정화작업에 활용하여 퇴적물 오염 완화 및 저서생물 서식 환경 개선 효과 기대
- 어장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처리비용 절감: 보관 기간 기준 변경으로 물류·처리 일정의 유연성 확보, 급박한 처리로 인한 고비용 부담 감소
- 자재 대체 효과: 흙·모래 등의 자재 구매 비용 절감, 지역 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

○ 지역사회·산업 활성화

- 도서·벽지 어항 등 취약지역에 권역별 집하·가공 거점이 구축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산업 육성 가능
-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부산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 제도 신뢰성 강화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과 「어장관리법」의 연계 강화로 현장 적용성이 높아지고, 법령이 실제 산업 구조와 부합
- 소규모·분산형 어가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제고

□ 참고. 관련법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로부터 수산부산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육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작업장이나 해상에서 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고정적으로 설치된 작업대를 말한다)을 보유한 자
2.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수산물가공업 시설을 보유한 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이 영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 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수산부산물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또는 제7조에 따른 분리배출시설 등에 인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부산물에 붙어 있는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수산부산물을 배출할 것
2.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할 것
3. 수산부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배출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리배출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배출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것
2. 보관 장소에서 침출수(浸出水)·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3.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을 것
4. 수산부산물을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산부산물과 침출수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할 것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리배출의무자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E-8) 제도에 천일염 분야 추가

- 주요 내용 :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어업 분야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수산물 생산·가공에는 포함되지만 천일염 생산은 명시되지 않음. 천일염은 3월부터 10월에만 생산되는 전형적인 계절 산업임에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는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E-9 고용허가제를 이용하면 천일염 비생산 기간에도 근로계약 유지·임금 지급이 필요함.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어업 분야에 '천일염 생산'을 명시하여, 천일염 업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령 :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지침」
- 소관 부처: 법무부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정부에서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법무부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서 신청 대상 어업분야에서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음

참고

어업 운영 가구, 영어조합·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문제점

- 천일염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이루어지는 계절적 산업임
-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한 근로의 경우 취업기간이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10월부터 3월까지의 시기에도 계약을 유지해 임금을 지불해야 다음 연도의 근로 보장이 가능함
- 2015년 「수산업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라“어업”의 범주에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어업분야에는 반영이 안됨

□ 개선방안

- 천일염 생산여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가능한 어업 분야의 적용 업종에 천일염 포함

현행			개정			
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침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지침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분야		
내용	허용 수산물		내용	허용 수산물	적용 업종	
	①	육상 가공·생산		① 해조류	육상 가공· 생산	㉠ 김 건조, ㉡ 기타
	해조류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양식	㉢ 해조류 ㉣ 해조류종자
	②	육상 가공·생산		② 어패류	육상 가공· 생산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 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 선별·포장 ㉢ 명태 가공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가공) ㉤ 전복종자생산
어패류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양식				㉥ 가리비 종패투입·망교체· 채취포장(시범)
				③ <u>소금</u> <u>제조</u>	가공	㉦ 가공소금 ㉧ 기타
					생산	㉨ 천일염 ㉩ 정제소금 ㉪ 재제조소금 ㉫ 기타소금

□ 기대효과

○ 인력 수급 안정화

- 천일염 생산은 염전 면적 대비 노동집약도가 높고, 단기간(4~9월)에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함
-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적용 시, 생산 성수기에 맞춘 적정 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인력 부족 문제 해소

○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유지

-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 지속 고용 가능 → 작업 효율성 향상, 불필요한 교육·훈련 비용 절감
- 안정적인 인력 투입으로 수확 시기 지연 방지 및 천일염 품질 균일성 확보

○ 지역경제 활성화

- 염전이 밀집한 전남 신안·무안 등 지역의 생산량 증가 → 판매·유통 활성화로 지역 소득 증대
-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지역활력 제고

- 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 계절근로자 제도에 포함됨으로써, 비생산 기간 인건비 부담 해소 → 사업자 재정 건전성 확보
 - 기존 E-9 고용허가제 대비 행정·관리 부담 경감
- 천일염 산업 보호
 - 안정적 생산량 확보로 국산 천일염 공급 안정
 - 식품안전·원산지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 참고. 관련통계

〈표 3-69〉 천일염 생산 현황(2011~2024년)

(단위: 건, ha, M/T)

연도별	구 분	생산자수		염전면적		생 산 량
		허 가	가 등	허 가	가 등	
2011		947	855	2,982	2,662	236,589
2012		950	854	3,021	2,662	230,720
2013		951	854	3,018	1,645	289,522
2014		952	855	3,042	2,631	211,095
2015		944	847	2,970	1,660	236,836
2016		925	845	2,884	2,613	224,124
2017		902	842	2,832	2,636	226,937
2018		892	827	2,801	2,589	211,627
2019		883	818	2,744	2,519	213,517
2020		862	798	2,672	2,465	139,936
2021		837	773	2,594	2,387	234,414
2022		749	687	2,368	2,171	203,244
2023		751	652	2,181	2,024	191,511
2024		704	605	2,166	1,197	164,406

자료 : 통계연보, 대한염업조합

(8) 민간 우주시험발사체 발사 허가제도 및 보상기준 신설

- 주요 내용 : 우주산업이 민간 중심의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되며 상업용 소형위성·재사용발사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민간 시험발사체에 대한 발사 허가 기준과 정의가 「우주개발진흥법」에 없음. 법적 근거 부재로 민간기업이 시험발사를 진행하려면 공역사용, 공유수면점용, 어업권 보상 등 개별 인허가를 직접 수행해야 하며, 행정·재정 부담이 커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원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우주개발진흥법」에 시험발사체 정의와 발사 허가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사체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
- 소관 부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발굴 방식: 전라남도 2024년 하반기 중앙규제 개선 발굴 간담회

□ 추진배경

○ 우주산업이 기존 정부 주도의 개발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변화하면서, 급격한 성장과 함께 민간기업 주도의 상업용 소형위성발사체 발사 서비스 시장 확대

* 재사용발사체, 초소형 위성 등 우주기기 제작뿐만 아니라 우주관광, 위성영상분석, 우주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

○ 민간기업은 발사체의 신뢰성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해 추진기관 및 부품의 성능검증용 시험발사체 지속 발사 예정

* 2030년까지 발사계획 : A사 100회, B사 75회, C사 33회(해외 계획 포함)

참고 미국의 경우 2020년 9월 '상업용 우주 운송 규정(Commercial Space Transportation Regulations)'을 발표함.

- 간소화된 규칙은 상업용 우주 운송에 대한 안전한 성과 기반 규제 접근 방식을 제공
- 이 규칙은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의 상업용 우주 발사 및 재진입 규제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요구 사항을 제거함. 여러 규제 조항을 통합·개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운영과 비행체에 대해 단일한 면허 및 안전 규정을 적용. 또한, 이 규칙은 비행체 운영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 안전 요건, 그리고 비행체 운영 면허의 조건과 조항을 설명함.
- 이 규칙에서 시험발사체에 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시험발사체 허가(Experimental Permit)'의 정의와 허가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발사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준궤도 로켓에 대한 정의가 존재함. 준궤도 로켓(Suborbital rocket)이란, 전부 또는 일부가 로켓 추진에 의해 비행하며, 준궤도 궤적으로의 비행을 목적으로 하고, 상승 구간 중 로켓 추진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추력(thrust)이 양력(lift)보다 큰 비행체를 말함

□ 문제점

○ 시험발사체 발사 허가기준 부재에 따른 민간기업 시험발사 추진 애로

- 현재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기권을 통과하여 인공 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 공간으로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준 궤도발사체(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 포함

- 우주발사체가 우주공간에 진입하기까지는 충분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입증되어야 가능,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서는 엔진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가 필수적으로 반복 선행되어야 함

- 현재 시험발사체에 대한 규정 및 발사 허가 기준 부재로 민간기업이 각종 허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행정, 재정, 민원처리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불가(공역사용 허가, 공유수면 및 해수면 점사용 허가, 선박통제, 어업권 보상 등)

* 시험발사체 발사 중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시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처벌 가능성 및 발사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및 어업보상 등 문제 발생

○ 시험발사체 발사에 따른 어업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부재

- 현행법상 민간이 발사 시 어업 출입통제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 없으며, 보상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한 민간 추진 어려움 및 재정 부담 가중

- * (참고) 나로호·누리호 발사에 따른 어업 출입통제 보상
 - 보상주체: 국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개발진흥법 제20조의 2
 - 보상절차: 보상접수 → 손실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실시 → 보상금 지급
(약 6개월 소요, 항우연과 보상금 지급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민원처리는 고흥군 수행)

【현장사례】

- 발사체 기업 B사에서 우주발사체 특화지구 전남 고흥에서 시험발사체 준비 중
- 발사부지 선정, 시험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마을주민(봉래면 예내리) 및 어민화와 지속 협의 중이며, 각종 허가 위해 관계기관(국토부·해수부·해경·지자체)과 면담 추진 중
 - 나로우주센터 사용 협의하였으나 누리호 반복발사, 차세대발사체 발사장 공사 등의 사유로 사용 불가 방침
 -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우주사업자에게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안전 인력 및 사용 시기 문제로 실제 사용 어려움

□ 개선방안

- 민간주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사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시험발사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시험발사체에 대한 정의 규정 및 발사허가 기준 마련
 - 민간 시험발사체 발사에 따른 보상 기준 별도 신설

현행		개정	
구분	「우주개발진흥법」	구분	「우주개발진흥법」
내용	제2조(정의) 1~3의2 (생략)	제2조(정의) 1~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신설> “시험발사체”란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로켓 추진을 이용하여 준궤도(suborbital) 궤적으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발사체로서, 상승 과정에서 로켓 추진이 작동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추력이 양력보다 크며, 궤도 진입 없이 지구로 복귀할 수 있는 재사용 가능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이 발사체는 연구·개발, 발사체 설계 및 장비 검증, 운용 기법 시험, 면허 요건 충족 입증 또는 승무원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가를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2조제3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의3 <신설> 민간 발사 및 시험발사체 발사 보상 기준	

* 시험발사체: 로켓, 항공기 등 공역허가를 받는 최저 고도부터 발사 허가를 받지 않는 최대 고도(예, 1km 이상 ~ 100km 미만)

□ 기대효과

○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우주개발진흥법」에 시험발사체 정의와 발사 허가 기준이 명시되면, 민간 기업과 정부 모두 동일한 해석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 규제의 예측 가능성 높아짐
- 법령에 근거한 허가·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국제적으로도 발사 안전성 및 규제 신뢰도를 인정받아 해외 협력·투자 유치에 긍정적임

○ 행정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 현재처럼 공역 사용, 공유수면 점용, 어업권 협상 등 개별 절차를 각각 밟을 필요 없이, 통합 발사 허가 또는 원스톱 행정지원 체계 구축
- 절차 단축으로 발사 준비기간이 짧아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인허가 지연에 따른 간접 비용 감소

○ 피해보상 체계의 명확화

- 어업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면, 개별 협상에 따른 갈등·분쟁 감소
- 보상액 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어 사업자·어업인 간 신뢰가 향상되고, 발사 일정 지연 가능성 최소화

○ 민간주도 우주산업 활성화

- 불확실성과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시험발사에 참여할 수 있음
- 재사용 발사체, 소형 위성 발사 등 신시장 진입이 늘어나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촉진

○ 국가 경쟁력 제고

-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이 적극적으로 발사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기술 수준과 발사 인프라 경쟁력 상승
- 장기적으로는 발사 서비스 수출과 우주경제 파급효과 확대에 기여

□ 전문가 의견(요약)

- 현행 우주개발진흥법상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험발사체 발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 신고·예비평가 제도 및 보상기준 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정보

구 분	직위(직급)	성 명
담당자	전라남도 고문변호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송○○

□ 참고자료. 미국 FAA의 ‘재사용 가능한 준궤도 시험발사체(Experimental Reusable Suborbital Rocket)’ 허가 제도와 운영 현황

□ 제도의 목적과 배경

- FAA는 상업 발사체 규제 체계 내에서, 연구·개발, 기술 검증, 승무원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발사 활동에 대해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마련.
- 상업 운송이나 화물 수송이 아닌, 시험·훈련 목적의 재사용 가능 준궤도 발사체를 대상으로 함.

□ 시험발사체 정의

- 로켓 추진을 이용하며, 최고점(아포지)이 궤도에 도달하지 않는 궤적을 비행하는 발사체.
- 재사용 가능해야 하며, 추진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추력 > 양력.

□ 허가 발급 조건

- 용도 제한: R&D, 면허 요건 충족 시험, 승무원 훈련
- 유효기간: 1년, 해당 설계로 무제한 발사 가능
- 금지사항: 유상 운송 금지, 정부의 손해배상 보장 제외, 허가 양도 불가

□ 안전·운영 요건

- 위험요소 분석(Hazard Analysis) 수행 및 위험 완화책 마련
- 인구 밀집지역을 피해 운용구역(Operating Area) 설정
- 궤적이 운용구역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영향점 억제(IIP Containment)’
- 실시간 궤적 추적 및 관제,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 재정 책임

- FAA가 ‘예상 가능한 최대 손실액(MPL)’을 산정하여 보험 또는 재정 증빙 요구
- 제3자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정부 자산 피해 범위 모두 포함

※ 자료 : 미국 FAA(2020) ‘Streamlined Launch and Reentry Licensing Requirements’

13) 경상북도

(1) 산불피해지역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 확대에 관한 규정 신설

- 주요 내용 : 대형 산불 등 산림재해로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된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 「산지관리법」 제6조
- 소관 부처 : 산림청
- 발굴 방식 : 산불 피해복구 지원 실·국 회의 과정에서 발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과 각종 산림재해가 빈발하면서 임업생산 기능을 상실한 보전산지가 지속적으로 확대
- 2025년 3월 대형 산불 피해 현황
 - 피해 지역 :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 산림 피해 : 99,289ha (역대 최대 규모)
- 산불 확산속도 : 시간당 8.2km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대비 1.6배), 초속 17m/s 강풍으로 '비화현상' 발생하여 급속 확산



[2025년 경북산불]

○ 산림재해 급증 추세

- 대형 산불,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재해 빈발로 임목 소실 및 고사 증가
-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된 보전산지 지속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강도 및 확산속도 급격한 증가

○ 현행 제도의 한계

- 산림재해로 인한 임업생산력 상실지역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 근거 부족
- 중앙정부 중심의 복잡한 심의절차로 인한 피해지역 복구 지연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권한 부족으로 주민 피해 장기화
- 임업적 가치가 상실된 산지에서도 불합리한 보전산지 규제 지속 적용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 방안 수립의 어려움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방안

○ 「산지관리법」 제3조 제3항 제3호 신설

- 현행 보전산지 지정해제 사유(①~③호)에 더해, 대형 산불 피해지역 및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등 임목의 대량 소실·고사로 임업생산 기능이 상실된 산지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 이와 같은 신설 규정을 통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피해지역에 대해 과학적 평가와 탄력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마련

○ 복구·활용 방안과 연계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 단순 지정에 그치지 않고, 피해 지역을 임업·농업·산업용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종합계획 동시 수립
- 복구계획 수립 시 지역 생태계와 환경특성 반영하고, 장기적 산림관리 전략과 연계하도록 의무화

현 행		개 정	
구분	「산지관리법」	구분	「산지관리법」
내용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② (생 략) ③ 1. ~ 3. (생 략)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대형 산불 피해지역,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등 산림을 구성하는 임목의 대량 소실, 고사 등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된 산지(산설) 5.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지역 맞춤형 개발: 지자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토지 활용 및 투자 유치
- 복구 비용 절감: 중앙 심의 절차 단축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복구 시기 단축
- 지역 산업 활성화: 산림복구 및 신규 임업·농업용지 확보를 통한 경제 기반 조성

○ 사회적 효과

- 주민 중심의 복구: 지자체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 생활 안정 조기 달성
- 지역 공동체 회복: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 복구 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결속 강화
- 사회적 안전망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 및 지원 체계 마련

○ 환경적 효과

- 지역 생태계 고려한 복구: 지자체의 지역 환경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산지 관리
- 신속한 2차 재해 예방: 지자체의 빠른 대응으로 산사태 등 2차 재해 위험 최소화
-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 복원 및 관리 방안 수립

(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처리기간 단축

- 주요 내용 :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장기간 처리로 인한 신속한 정책집행 저해
- 관련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제16조 제3항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발굴 방식 : 경상북도 저출생본부 협의과정에서 발굴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2013년 도입 이후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와 중복·누락 없는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으나, 과도한 처리기간으로 인해 신속한 정책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문제점) 협의 처리기간의 과도한 장기화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
 - 일반안전 : 협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처리
 - 쟁점안전 : 협의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처리
 - 조정절차 :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총 1만 209건의 협의를 요청되었으며, 이 중 지자체 요청 건수는 9,787건으로 전체의 95.9%를 차지
- 연평균 약 890건의 지자체 사업이 협의 대상이 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대두
 - 사업 추진 지연 :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협의과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난항
 - 공약 이행 차질 : 지자체장 공약사업 및 의회 의결사업의 적기 시행 곤란
 - 업무 연속성 저해 : 담당자 인사이동(주로 7월)으로 인한 사업 연속성 저해 및 사업 무산 사례 발생
 - 예측가능성 부족 : 협의 결과 통보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 곤란

〈표 3-70〉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요청 현황

(단위: 건)

협의기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중앙부처	30	14	13	31	39	52	63	59	48	34	39	422
지자체	31	67	348	1,040	1,191	1,109	1,255	1,029	1,123	905	1,689	9,787
합계	61	81	361	1,071	1,230	1,161	1,318	1,088	1,171	939	1,728	10,209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2024),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통계, 내부자료.

〈표 3-71〉 중앙부처 및 지자체 협의 완료 건수(재협의 이후 협의완료 포함)

(단위: 건)

협의기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중앙부처	29	38	46	55	48	33	33	30	113
지자체	812	1,016	816	818	738	837	811	1,362	2,644
합계	841	1,054	862	873	786	870	844	1,392	2,757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2024), 사회보장사업 협의제도 통계, 내부자료.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 30일까지 협의를 요청해야 하나 실제 지자체 업무 사이클을 살펴보면
 - 정기 인사 : 7월 실시로 담당자 변경 시점과 협의 신청 마감의 중복
 - 신규사업 발굴 : 9~10월에 주로 이루어지는 차년도 신규사업 발굴
 - 실제 사업 시행 : 협의 완료 후 차차년도 또는 차차차년도에야 사업 시행 가능
- 이로 인해 신규 사업 발굴(9~10월) ⇒ 협의 신청(익년 6월) ⇒ 협의 완료(익년 말 또는 익익년 상반기) ⇒ 사업 시행(익익년 또는 익익익년)의 장기간 소요 구조가 고착
- 지역복지 혁신과 주민 참여 저해 요소로 장기간의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
 - 혁신 동력 저하 :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지역복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욕 감소
 - 주민 참여 제약 : 주민제안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적기 추진 어려움
 - 지역 특성 반영 한계 : 급변하는 지역 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곤란
 - 민관협력 위축 : 민간부문과의 협력사업 추진 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참여 기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협의의 진행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5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법적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문적 검토 및 관련부처(서)의 의견수렴과 협의요청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에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개선방안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

- 기존 쟁점안건의 협의 처리기간(최대 6개월)을 원칙적으로 단축하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협의 요청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보완·수정 요구 시, 기한을 엄격히 설정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

현 행		개 정	
구분	협의기간	구분	협의기간
내용	법적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으로 전문적 검토 및 관련부처(서)의 의견수렴과 협의요청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에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내용	_____. 다만,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 지자체,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간 사전협의를 정례화하여 불필요한 조정 절차를 줄이고, 정책 추진 속도 제고

□ 기대효과

○ 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예상되는 정량적 효과

- 처리 건수 증가 : 연간 약 1,000여 건의 사회보장사업 신속 추진 가능
- 사업 시행 단축 : 평균 3개월 이상 사업 시행 기간 단축

○ 지자체 행정효율성 증대 및 예측가능성 향상

- 예측가능성 증대 : 명확한 원칙 하에 한정적 예외 적용으로 대다수 사업의 신속 추진 가능
- 차등화된 처리 : 시급성 인정사업은 예외기간 적용으로 맞춤형 처리 시스템 구축

○ 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공약이행률 제고

- 공약 이행률 향상 : 단축된 협의기간으로 대다수 사업의 임기 내 공약이행 가능
- 정책 연속성 확보 : 예외사업은 내부 기준과 심의·공개 절차를 거쳐 체계적 관리
- 분권형 복지체계 : 혁신적 복지사업 발굴 효과 유지 및 주민 권익 보호 강화
- 정책 신뢰도 향상 : 예외의 합리적 적용으로 중앙-지방 간 신뢰관계 증진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효과성 제고

- 복지수요 적기 대응 : 신속한 처리를 통한 주민 복지 수요 적시 충족
- 정책실험 및 환류체계 : 다양한 정책 모델 시범 실시 기회 확대
- 사업 완성도 제고 : 예외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

(3)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업종확대 및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및 관련 업종추가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 소관 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부
- 발굴 방식 : 공무원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현행 세제 지원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에 따라 18개 업종으로 한정

- 환경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친환경 업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부재
- 기회발전특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 육성 지원 제도 미비

○ 외국교육기관 설립 제한으로 인한 외자유치 한계

-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지역: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등으로 한정
- 신공항 건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외국자본 유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시설 부재로 실질적 외자유치 한계

○ 관련 법률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업종을 18개로 한정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을 특정 구역으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① 외국학교법인인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제1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제2호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추천권자

-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의 장
- 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 업종 주요 특징

- 제조업, IT, 문화관광, 물류, 복지 등 다양한 분야 포괄
- 일부 업종은 특정 사업 제외 조건 존재
- 신기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업종 우대

〈표 3-72〉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업종 (18개 분야)

번호	업종 분류	세부 내용	제외 사항
1	제조업	전체 제조업	-
2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	정보통신업	전체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 제공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4	핀테크업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	• 전자금융거래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소액해외송금
5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
6	문화예술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
7	신재생에너지업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전기생산사업	-
8	물류업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9	공동집배송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사업	-
10	항만물류업	항만시설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
11	호텔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카지노업 - 보세판매장 사업
12	관광레저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 휴양 콘도미니엄업 - 골프장업
13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
14	유원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
15	관광식당업	관광식당업	-
16	직업교육업	직업기술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17	노인복지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
18	친환경 가스업	연료용 가스 제조·배관공급업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한정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 참고하여 작성

□ 개선방안

○ 세제 지원 업종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을 개정하여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친환경 산업 등 신성장 업종을 세제 감면 대상에 추가
- 지역 특화산업 및 미래 신산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 지정 방식을 유연화하고, 일정 주기로 업종 리스트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서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 18. (생략)

19. 순환 경제 사업 <신설>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제19조(특구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제정

현 행		개 정	
구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구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내용		내용	제19조(기회발전특구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인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기회발전특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지역 경제 다변화: 친환경 업종 세제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세수 증대: 장기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대
- 투자 유치 증대: 외국교육기관 설립으로 기업 입주 증가 및 지역별 투자 확대
- 외국인 투자 활성화: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 사회적 효과

- 인구 유입 촉진: 글로벌 인재 및 청년의 지방 정착 유도, 수도권 집중 완화
- 환경 개선: 친환경 업종 육성을 통한 지역 환경 질 향상
- 교육 서비스 개선: 지역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의 교육 수요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 문화 다양성 제고: 국제적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국제화

○ 정책적 효과

- 지방시대 실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효과를 통한 균형발전 촉진
- 지속가능발전: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산업 생태계 고도화: 지역특화산업과 글로벌 교육 인프라 융합
- 국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국제적 인재 양성 기반 마련

(4) BF 인증절차 개선

- 주요 내용 : 2021년 인증 의무시설 범위 확대되었으나, 인증평가기관 및 관련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심의기간 소요
- 관련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소관 부처 : 보건복지부
- 발굴 방식 : 시·군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평가하는 제도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
 - 2021년 12월 인증 의무시설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인증평가기관 및 관련인력 부족으로 과도한 심의기간이 소요될 뿐더러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에 과도한 기간 소요
 - 아울러, 심의자의 주관적 매뉴얼 해석에 따른 설계변경 반복으로 추가 예산 소요 및 공기 지연으로 공공건축물 사업지연 초래
 -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의 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도 증가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
- (문제점) 공공시설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고 설계에 반영하더라도, 본인증 시에는 예비인증 당시와 다른 심의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공사 진행에 따른 예산과 시간 소요
 - 관련 법령으로 인해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인증평가기관은 전국 11곳에 불과

□ 개선방안

- BF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시도별 거점 인증기관 지정
 - 현행 전국 11곳에 불과한 인증평가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지역별 접근성 확보
 - 인증기관 확대를 통해 평가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인증 형평성을 확보
- BF 인증 취득 소요기간의 단축을 위해 제3조 본인증 처리기한을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차등 개정하고, 본 인증은 예비인증 당시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 건의
 -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본인증에서는 변경 사항만 검토하도록 제도를 개정하여 중복 심의를 최소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본인증 처리기한을 예비인증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 BF 인증제도 운영에서 심의위원의 주관적 해석을 막아 불필요한 보완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설계 도면 보급 등 일관된 기준과 매뉴얼을 현실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개편 건의

현 행		개 정	
구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구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내용	[별표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A, B, C -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다만, D 제출)	내용	[별표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현행과 같음) -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단서 삭제)

□ 기대효과

○ 행정적 효과

- 인증 대기·심사 기간 단축으로 공공시설 준공 지연 해소
- 지자체의 행정 부담 완화 및 공공건축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 경제적 효과

- 불필요한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비 발생을 줄여 예산 절감
- 건설업계의 민원 감소와 사업 추진 안정성 제고

○ 사회적 효과

- 이동약자의 접근성 향상으로 공공서비스 이용권 보장
- 지역 간 인증 형평성이 확보되어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제고
- 시민 불편 해소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정책적 효과

-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기반 마련
- 궁극적으로는 포용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성과 달성

(5)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제한 완화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으로 인해 행정수요 대응 난항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 시·군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에 따라 지자체 인구수 기준으로 청사면적 규정
 - 인구수에 따른 청사 면적 제한으로 사무공간 부족 및 민원 처리 등 불편 사항 발생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127,402㎡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68,333㎡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52,784㎡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특별자치시		35,383㎡
도	경기도	77,633㎡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44,97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43,376㎡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39,089㎡
특별자치도		32,223㎡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1,829㎡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2,020㎡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4,061㎡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특별시		24,930㎡
광역시	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	11,054㎡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7,291㎡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특별자치시		4,889㎡
도	경기도	29,164㎡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	12,700㎡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	11,524㎡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	9,878㎡
특별자치도		8,467㎡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구분			기준면적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830㎡
		인구 15만명 이상	1,996㎡
	광역시의 군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자치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명 미만	2,96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명 미만	1,358㎡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1,698㎡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2,581㎡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문제점) 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업무는 계속하여 다변화되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비례해 공무원 정원 증가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개편 등이 이루어질 경우 공간 부족으로 사무실 구성이 비효율이고, 공간 제한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공급 난항
 - 또한 업무에 필요한 각종 집기, 장비, 책자 또한 늘어나 상당수 지자체가 공간 부족
 - 세대별 평균 키, 평균 몸무게 등이 계속 늘어나 예전과 달리 1인에게 필요한 공간이 증가
 - 공간부족 문제는 직원 뿐만 아니라 내방 민원인에게도 불편 초래
 -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지자체 청사 면적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

□ 개선방안

- 청사 면적 산정 기준의 탄력적 적용
 - 현행 인구 기준 중심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공무원 정원, 조직 구조, 지역 특수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준 면적을 현행 대비 1.5배까지 확대하고, 여기에 공무원 정원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 자율성 부여
 -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맞게 청사 면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 면적의 $\pm 30\%$ 범위 내에서 자율성을 보장
 -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사와 의회 청사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청사의 다기능화 추진
 -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주민 커뮤니티 공간, 재난 대응 거점, 공공 문화·교육 공간 등 다목적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를 확대
 - 청사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발전

□ 기대효과

- 행정적 효과
 - 충분한 업무 공간 확보로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성과 사기 진작
 - 공간 제약으로 발생하는 행정 서비스 공급의 제약이 해소되어 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
- 사회적 효과
 - 주민 친화적 공간 확보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

- 넓고 쾌적한 민원 공간 제공으로 주민 체감 서비스 품질 제고
- 청사가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주민과 행정 간 신뢰 증진

○ 정책적 효과

-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신종 감염병 대응,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청사가 신속 대응 거점으로 활용 가능
- 청사 공간 개선은 젊은 공무원의 이탈 방지와 공직 선호도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6) 임업후계자 요건(연령) 완화

- 주요 내용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임업후계자 요건을 완화하여 산림경영 활성화
-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 부처 : 산림청
- 발굴 방식 : 시·군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임업후계자는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

-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농산촌 역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
- 이에 임업후계자 지정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사회적인 고령화에 따른 임업후계자 연령 유연화 필요

○ (문제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층이 많은 임업분야의 자격요건 완화 필요

- 실제 귀농·귀산촌 인구 상당수가 50~60대임에도, 현행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이들이 임업후계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이에 매년 임업후계자 지정 대상 인구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임업 기반의 지속성과 산림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

□ 개선방안

○ 임업후계자 요건 중 연령 제한을 65세 미만으로 상향

- 임업후계자 지정 요건 중 연령 기준을 현행 55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상향

- 필요시 향후 70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근거 마련
- 임업후계자 선정 방식 다변화
 - 단순 연령 기준 완화에 그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 이행 능력, 건강 상태, 경영 지속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계자를 지정
 - 귀산촌 인구, 은퇴 인력 등 다양한 계층이 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후속 지원체계 강화
 - 고령 임업후계자의 체력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 장비·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청년 임업인과의 협업 구조를 유도

현 행		개 정	
구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제3조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내용	제3조 1.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노령층에게 경제적 자립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 다양한 연령대의 임업 참여 확대를 통해 산림산업 인력난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사회적 효과
 - 고령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 내 역할을 강화
 -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귀산촌·귀농 인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 정책적 효과
 - 임업후계자 모집 저변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
 - 임업 기반의 지속적 유지 및 발전 가능성 확보
 -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인력 운용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산림정책과 지역산림 관리의 균형 발전 도모

(7)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대상 확대

- 주요 내용 : 현행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금을 모금, 접수 할 수 있으나, 현재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에도 기부금 허용
- 관련 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 발굴 방식 : 시·군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현재 주소지가 고향인 사람들도 많지만 이 경우 주소지라는 이유로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에서 제외

-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가 고향인 사람, 즉 본인의 고향에 살고 있는 주민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 유도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제 거주지가 자신의 고향일 경우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문제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 할 수 있다고 명시

□ 개선방안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이 고향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기부를 허용하도록 개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거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고향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부를 허용
- 고향의 범위를 출생지, 가족근거지, 초·중·고 학력 이수지 등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을 최소화

○ 제도 홍보 및 참여 활성화

- 개정된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현재 거주자들의 참여 독려
- 주민 스스로가 지역 발전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문화·교육·복지 분야 지정 기부 등)을 마련

현 행		개 정	
구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구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내용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내용	제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단, <u>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도 해당 지역이 고향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신설)</u>

□ 기대효과

- (기부참여 확대) 현재 거주지와 고향이 동일한 사람들에게도 고향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 범위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기부금 확보로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지역 농특산물 답례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발생
- (애향심 고취)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
주민 참여형 재정 확충 모델로서 지방분권 및 자치재정 확립에도 기여

(8) 자연공원 내 식도(케이블카) 설치 관련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도립, 군립공원의 경우 식도 설치규정을 완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공원 활용 유도
- 관련 법령 : 「자연공원법」
- 소관 부처 : 환경부
- 발굴 방식 : 시·군 제안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금오산도립공원에는 연간 약 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대경선(구미~경산) 광역철도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 추세
 - 이에 구미시는 금오산 권역 개발사업을 통해 노약자·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주요 경관을 조망하고 역사·문화를 향유할 권리 보장하고자 관련 규제 개선 희망
- (문제점) 현행 「자연공원 내 식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국립공원을 기준으로 마련된 획일적 규정을 도립·군립공원에도 동일하게 적용
 - ‘주요 경관 지점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과 동시에 ‘주요 봉우리 및 탐방로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도·군립공원의 경우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곤란
 - 예컨대 금오산도립공원(면적 37㎢)은 설악산국립공원(354㎢)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난항

□ 개선방안

- 케이블카 이용객의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 우려는 체계적인 관리와 자연보호 조치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으며 오히려 체류시간을 줄여 훼손이 줄어든다는 일부 견해도 있음
 - 주등산로와 연계하여 설치 시 자연훼손 최소화하는 대응시스템 마련과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필요
 - 사전·사후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 지역경제 활성화·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도·군립공원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 필요
 - 국립공원과 도·군립공원의 명확한 차이(공원규모, 생태환경, 자연경관, 문화·역사, 탐방로 등), 도·군립공원 관리주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활용 등을 고려할 때, 2011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현시점에 적용하기는 곤란
 - 따라서 기존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원 규모 50km² 이하 소규모 자연공원에 대해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 마련(지역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관리 가능)



[유럽의 사례]

현 행		개 정	
구분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구분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II.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내용	II. 자연친화적 삭도 설치를 위한 고려사항
	1.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 ㉣ (생략) ㉣ <신 설> ㉣ ~ ㉥ (생략)		㉡ ~ ㉣ (생략) ㉣ 50km ² 이하 소규모 자연공원의 경우, ㉣, ㉣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 (생략)

□ 기대효과

- 경제적 효과
 - 연간 80만 명 수준의 방문객 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숙박업·외식업·기념품 산업 등 연관산업의 매출증대 예상
 - 케이블카 설치·운영, 유지보수, 관광해설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고용기반 강화
 - 장기적으로는 금오산을 거점으로 한 광역 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해져 구미 및 경북권 관광산업 활성화

○ 사회적 효과

-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주요 경관을 쉽게 체험할 수 있어 관광의 형평성과 접근권 개선
-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자긍심과 결속력 강화
-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서 도시이미지 제고

○ 환경적 효과

-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전제로 할 경우, 탐방로의 무분별한 이용을 줄여 오히려 자연훼손 억제 기대

14) 경상남도

(1)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 주요 내용 : 한국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현재 주 단위로 엄격히 제한된 연장근로 때문에 인력 가동률을 성수기에 높이고 비수기에 줄이는 유연한 대응이 불가함.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주당 근로시간 관리 단위의 확대 및 특례 적용 대상 확대가 요구됨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3조, 제63조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 발굴 방식: 기업인 간담회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를 의미
-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OECD 최고 수준⁵⁰⁾이고,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
-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2018년), 50~299인 기업(2020년), 5~49인(2021년)⁵¹⁾의 순으로 단계적 도입
- 제도 도입 이후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삶의 질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나, 모든 업종·사업장에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산업 현장에 어려움도 발생
- 기계·조선 등 수주산업에 특화된 경남 지역의 경우, 기업들이 탄력적 인력 운용에 제약을 받아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충원의 여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제도 적용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

50) 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967시간으로 OECD 38개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1,763시간)을 크게 상회.

51) 30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021년 적용 이후 수차례 계도기간 연장을 통해 실질적 적용을 유보되어왔지만, 2024년을 끝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유예가 종료.

- 또한, R&D 분야 등 특수직무의 경우 몰입과 집중이 중요한데, 엄격한 주 52시간 근무의 틀로는 유연한 장시간 집중근무와 같은 자율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는데 제약으로 작용
-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국들의 연구개발 인력들이 몰입과 집중으로 밤낮없이 몰두하는데 비해, 한국은 획일화된 근무 형태가 적용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52시간 도입 이후 고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⁵²⁾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근로시간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예외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필요
-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주 단위 근로시간 한정을 완화하거나,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

52) 신우리·김난주(2021)는 주 52시간 도입이 기업의 성과에 음의 값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유진성(2023)은 주 52시간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0.82%p, 자기자본이익률 3.01%p 정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을 통해, 급증한 주문 대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 12시간 초과 연장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를 개정하여 연구개발직, 첨단산업 업종 기술직 일부를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직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 근로기준법 제53조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해 생산량 급증, 수주 증가, 연구개발 집중 필요, 산업안전 확보 목적 등 업종별로 한시적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

현 행		개 정	
구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구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내용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	(개정)제51조(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제51조의2(6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6개월을 초과하고 1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구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구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내용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	(개정) ④ 사용자는 업무량의 일시적 급증, 기술개발의 긴급성, 고객 납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및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제1항과 제2항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1주간 연장근로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또는 (신설) 제53조의2(연장근로 유연화 한시특례)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1주 18시간 (또는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속휴식시간, 근로시간 저축제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구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구분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내용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설) 4.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 신설에 따른 반도체·AI 등 적용 제외 업종 명시

○ 법령 개정과 병행하여 연장근로 인가 절차,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이행 기준, 사후 점검 기준 등 구체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대효과

○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규제 유연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용 유지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특히 경남 지역의 경우 주력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납기준수율 향상과 수주 증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R&D 부문의 예외 인정은 신기술 개발의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 산업단지의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근로자 측면에서는 연장근로 규제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서 불법 초과근로에 대한 관행이 감소하고, 수당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환경으로 전환

○ 규제 개선을 통해 노사 간 협상 여지가 생길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보전에 대해 타협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에 기여

(2) 외국인 산업인력 쿼터 제한

- 주요 내용 : 한국은 인구 감소와 3D 업종 기피로 제조업·농어업 등의 인력부족이 심각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업종별 연간 도입 인원(쿼터)과 사업장당 고용한도가 제한되어 필요한 외국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 특히 경상남도는 조선·기계 등 제조업 비중이 높고 농수산업도 활발하여 외국인력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임. 그러나 업종 쿼터 제한과 기업규모·연혁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있어 현장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현장의 일손 부족 해소가 시급함
-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고용허가제 총괄), 법무부(비자 발급·체류관리)
- 발굴 방식: 기업인 간담회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외국인 산업인력 쿼터 제한은 국내 고용허가제를 통해 산업 분야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총량과 사업장별 비율에 설정된 규제를

〈표 3-73〉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염업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업체에 한함

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 업종 중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 1:1 전속계약(청소 등 위탁)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1)'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택배업(49401),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자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 기피업종 증가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
- 경남도 역시 제조업 생산라인과 조선소 현장, 농촌 지역 등에서 만성적인 일손 부족 현상이 만연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 규제도 현재 제조업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소규모 기업일수록 최대 고용 가능 인원이 낮게 설정

〈표 3-74〉 사업장 유형별·규모별 구인인원

구분	기준	총 고용허용인원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내국인피보험자수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단, 내국인 2배 초과 불가)
	내국인피보험자수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301명 이상	80명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미만	10명(계수 미적용)
	연평균 공사금액 15억원 이상	공사금액×0.8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5명 이하	4명(택배 12명)
	내국인피보험자수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택배 18명)

구분	기준	총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택배 3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택배 42명)
	내국인피보험자수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택배 60명)
	내국인피보험자수 101명 이상	25명(택배 75명)
농축산업	작물 재배업, 축산업	영농규모(㎡)에 따라 15~40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임업 중요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15~40명
양식어업	면적	10명 또는 15명

주: 뿌리산업, 지방기업(비수도권)의 경우 20% 추가 고용 가능.

자료: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

- 2024년부터 E-9 고용의 범위가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완화되었으나,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에 한정하고 있고 호텔·콘도업의 경우 인력 공급을 담당한 외국 인력 파견 업체와 1대1 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 등이 규제로 작용
- 체류기간도 최대 4년 10개월(기본 3년, 연장 1년 10개월)로 제한되어 숙련공이 되어도 귀국해야 하며, 성실외국인근로자에 한해 재입국 제도⁵³⁾를 적용하여 산업간 전직의 어려움 발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기능확인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53)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을 것
 - 나.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동일업종 내 근속기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라.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권익 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을 것
2. 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을 것
3.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선방안

-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탄력적 운용과 예외허용 범위를 넓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12조에 “지역별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으로 추가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지역 특화 업종에 외국인력 활용을 우대
-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에서 지방 전략산업 특별쿼터 항목을 신설하고 절차를 마련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의 상향 조정 및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명, 5인 이상은 최대 2명 등 획일적 기준 개선
-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 요건 등 고시로 정한 사업장의 고용허가 발급 요건을 완화
-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숙련공의 장기체류에 대한 조건 완화

현 행		개 정	
구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12조	구분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제12조
내용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획의 참여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용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1.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획의 참여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신설) 3. 지역별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

5인 미만 사업장 최대 1명, 5인 이상은 최대 2명 등 확실적 기준 개선, 연간 도입쿼터 중 20% 범위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추가배정할 수 있도록 개정

고용허가 발급 요건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 요건” 완화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비

성실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도)

“한 사업장” 근속에서 고용주 추천 시 “동일 업종” 근속 시 체류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 기대효과

- 외국인력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 입장에서 숙련공 부족을 신속히 메워 설비 가동률을 올릴 수 있어 생산량 증대와 납기준수에 따른 매출 증대 기대
- 음식점업 등에 외국인력을 확대 허용할 경우,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영업시간 확대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효과 기대
- 장기적으로 외국인력 유입 확대는 지방 인구감소에도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다문화 정착 지원을 병행할 경우 지역 소멸위기 완화 효과도 기대

(3)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규제

- 주요 내용 :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설립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경남도 또한 AI·데이터센터 등 고부가산업 유치를 추진 중이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각종 법령 정비를 통해 인허가 프로세스 일원화·간소화, 입지 제한 완화 등이 요구됨
 - 관련 법령 : 「건축법」,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주차장법」 제19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 발굴 방식: 기업인 간담회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데이터센터 설립·운영 규제는 대규모 데이터센터(IDC)를 건립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입지 제한, 인허가 절차, 환경·전력 관련 규제를 의미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 과정에 있어 10여개의 법령과 지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

〈표 3-75〉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관련 법령

구분	법령		주요내용	비고
구축	건축	건축법	건축 인허가 전과정및 건축물 용도 분류 등의 근거	
		국토계획법	대상부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근거	
		도시교통정비법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유발부담금 근거	도심내 구축시
		지하안전관리특별법	지하굴착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조사의 근거	지하굴착시
		소방시설법	건축 중 소방시설 설치 및 인허가/소방점검 근거	
	에너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녹색건축인증/에너지효율인증 등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사용계획협의/제출의 근거	
운영	IT/기반 시설전반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근거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분석평가 근거	기반시설지정시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법적 근거	금융권
	시스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근거	
	기반시설	소방시설법	소방특별조사 / 소방기능작동 및 종합정밀점검 근거	
		시설물안전법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점검의 근거	
		전기사업법	발전설비 및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압력용기 안전검사 근거	
	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진단, 보일러/열교환/급탕기점검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 측정 및 데이터보관(10년)증거	업무용시설
		녹색성장법/배출권거래법	온실가스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근거	일정규모이상DC

주: 데이터센터의 성격(상업용/자사용), 내부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의 분야(금융, 공공등), 시설설비종류, 건축물 용도 등 에 따라 차이가 존재

○ 먼저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도 함께 발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데이터 센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건축비 100분의 1 이하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 4. 판매시설
 -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6. 의료시설 중 병원
 - 7. 업무시설
 - 8. 숙박시설
 - 9. 위락시설
 -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데이터센터의 경우 많은 상주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주차장법」에 따라 면적 400㎡당 1대 주차가 가능한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가 적용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르면,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센터도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적용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함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3조(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10메가와트 이상(10메가와트 미만을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용량을 증가하여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2.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적으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 개선방안

-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있는 데이터센터의 건축물 용도 재분류를 통해 각종 규제로부터 제외 추진

현 행		개 정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내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데이터 센터	내용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데이터 센터(삭제) (신설) 30. 신산업건축물 가. 데이터 센터

- 외부 이용객이 없고, 서버룸 중심의 설계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실효성이 없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미술작품 설치 의무 대상에서 예외될 수 있도록 추진

현행		개정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구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내용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내용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 데이터센터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 데이터센터는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실사용자 기준을 부과

현 행		개 정	
구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내용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내용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 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삭제)

○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데이터센터 설치 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추진

현 행		개 정	
구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구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내용	없음	내용	제##조 (신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추천한 디지털기반 핵심 산업시설로 지정된 경우

□ 기대효과

- 데이터 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 완화 시, 국내외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지역 내 설립이 가속화되어 지역 일자리 및 세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경남 제조기업들이 지역 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AI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렴하게 쓰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신사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주변 도로·통신 인프라가 함께 확충되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으로 교육·복지 지원이 늘어 지역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4) 통영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규제

- 주요 내용 : 통영시는 도산면 법송리·수월리 일원 약 446만㎡ 부지에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이 중 67만5천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현재 조건부 지정 상태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확보 부지 매입과 일부 규제 개선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기회발전특구(ODZ)는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정주환경 개선 등을 일괄 지원하는 새로운 특구 제도로, 통영시 기회발전특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관광형 기회발전특구에 해당

- 통영 도산지구 관광단지 개발은 경남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프로젝트로, 2037년까지 친환경 체험관광지구, 문화예술공연지구, 신산업업무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약 2조 원대의 민간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호텔·콘도 4,400실, 인공 해변, 수중미술관, UAM투어 등 미래형 관광인프라가 포함
- 구체적인 규제 현안으로는 먼저 공유수면 매립 사용 등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존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 ⑧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인근 해역이 수자원보호구역(한산만수산자원보존지구)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제약 발생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관리관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제7항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환경오염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관청은 미리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행위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건축물이나 토지 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 관리관청은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기간·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변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개발 제약 요인으로 작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그 외 UAM 관광투어의 경우 국토부의 「항공안전법」의 공역 제한 등에 저촉될 것으로 예상

「항공안전법」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선방안

○ 「통영 도산지구 관광특구 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업구역 내 각종 인허가를 일괄 승인하고 관계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안을 검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신설

현 행		개 정	
구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구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내용	없음	내용	(신설)제23조2(규제특례 적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입지·형상·고도·매각 관련 규제 2.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개발입지 제한 규제 3. 「환경영향평가법」,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관련 부속 규제 ② 규제특례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며, 관계부처 협의 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른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③ 규제특례의 적용 대상 사업, 지역, 적용 기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 기대효과

○ 통영 기회발전특구 사업의 규제 장애가 제거되면 대규모 민간투자가 실현되어 지역경제에 혁신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통영을 세계적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통영시에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소득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경남도 입장에서 보면, 통영시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은 후속 특구 지정의 모범 사례가 되어 추가 특구의 유치와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UAM 관광 같은 신사업의 경우 특구에서 실증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법·제도 개선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농지 소유·거래 규제

- 주요 내용: 개정된 「농지법」 시행(21.8.18.)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강화 및 시·군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등이 도입되면서 농지 소유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됨. 이로 인해 경남 지역의 농지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농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농촌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과 귀농·귀촌 유입 감소로 지역 활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대두됨. 이러한 거래 감소 상황을 완화하고, 투기 억제와 농지 활용 촉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요구됨
- 관련 법령: 「농지법」 제8조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발굴 방식: 도의원 간담회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건 이후 정부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계획서 작성 및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제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2022년 법 시행 이후 농지 거래량이 급격히 위축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농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논 26.5%, 밭 22.2% 감소하여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경남도의 경우 2022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가 전년보다 21.7% 줄었고,⁵⁴⁾ 특히 도시민 주말농장·체험 영농 목적의 농취증 발급은 33.5%나 감소⁵⁵⁾한 것으로 집계
- 농지가격 급락 및 자산 유동성 악화가 발생하여, 농민들의 재산권과 은퇴 대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도 제동이 걸려,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 흐름이 둔화
- 즉, 농지 투기 방지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농지 이용 비효율과 농민 재산권 과잉 제한, 농촌경제 침체라는 부작용 발생

54) ('20) 34,122건→('21) 42,817건→('22) 33,525건 (자료 : 농어촌공사, 농지정보시스템, 도 내부자료).

55) ('20) 8,509건→('21) 9,830건→('22) 6,538건 (자료 : 농어촌공사, 농지정보시스템, 도 내부자료).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지법」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농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신청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농경영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체험농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제1호마목의 서류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구·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⑤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⑥시·구·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현행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재검토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장벽은 완화 추진
- 농촌 정주 의사가 있는 귀농·귀촌 희망자나 주말농장 목적 소규모 취득자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
- 농지법 내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투기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없이도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구분	「농지법」 제8조	구분	「농지법」 제8조
내용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내용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정 면적 미만 농지 또는 영농 체험목적 농지의 경우 시·군 공무원의 서류심사만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추진

「농지법」 제8조에 신설된 단서 조항에 대한 예외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

① 취득 면적이 330㎡ 이하이고, ② 영농체험·주말농장 등 단순 자금 목적이며, ③ 신청인이 농촌 이주자 또는 귀농·귀촌인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시·군수가 서류 심사만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

□ 기대효과

- 농지 소유·거래 규제의 합리적 개선은 침체된 농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가져와 농촌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생
- 매매 거래 활성화로 농지 가격의 급락세가 완화되고 적정 수준으로 안정되어, 농민들의 자산 가치 보전과 투자 여력이 향상
- 은퇴 농민의 원활한 농지 매각이 가능해지면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고, 그 농지를 젊은 귀농인이나 기업농이 인수하여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경작주체의 세대교체와 농업 생산성 제고 효과 창출
- 도시민의 주말농장·체험영농 진입이 다시 늘어나면 농촌 지역에 주말 거주인구 증가와 관광수요 창출 등 부수적인 경제효과도 기대

(6) 낙동강 권역 관광개발 관련 규제

- 주요 내용 : 경남은 낙동강권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으나, 주요 규제들이 낙동강 유역 곳곳에 중첩되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하천법은 치수 목적으로 강변 개발을 엄격히 통제하고, 습지보전법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습지 주변의 인공 구조물을 금지하며, 낙동강수계법은 상수원 수질을 이유로 민간 시설 투자를 봉쇄하는 구조임. 따라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 발전 및 환경 보전 조화가 요구됨
- 관련 법령 : 「하천법」 제38조, 「습지보전법」 제13조, 「낙동강수계법」 제5조
- 소관 부처: 환경부
- 발굴 방식: 공무원 간담회 등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낙동강 생태역사 관광벨트 등 낙동강 연안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중첩 규제로 난관에 봉착
- 낙동강 주변 지역에는 하천관리구역(홍수관리구역)·습지보호지역·수변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구가 겹쳐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 창녕군의 우포늪 일대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로 랍사르등록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공구조물 설치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밀양시와 합천군의 낙동강변 또한 부산·김해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숙박시설이나 식음시설 같은 관광인프라 신설이 법적으로 불가
- 동시에 이들 지역 대부분은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속해 대규모 건축이나 토지개조 시 국토교통부 산하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구조
- 일례로, 부산·경남 6개 지자체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보호구역 87.2km² 중 19.4km²를 해제하여 관광개발에 활용하려 했지만, 대체 서식지 마련 미흡 등을 이유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도 존재
- 구체적으로 「하천법」의 경우, 낙동강 제방 인근의 조금만 큰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하천관리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습지보전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즉각 중지명령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된 낙동강 주변 수변구역 안에서는 대부분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

「하천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식재 <2018. 8. 14.>

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식재 <2019. 2. 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행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습지보전법」 제14조(중지명령 등)

-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에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원상회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0조의2(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활동을 하거나 수색정찰을 하는 경우(매복활동을 포함한다)
2. 수색로를 개설하는 경우
3. 관측 및 시계확보를 위하여 갈대를 제거하는 경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하천법의 경우 시행령의 예외 조항 개정을 통해 치수 여건이 충족된 구간에 한해 소규모 친환경 친수시설 신축을 허용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구분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구분	「하천법 시행령」 제45조
내용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2019. 2. 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행위	내용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2019. 2. 8.>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행위 5. (신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친환경 친수시설

-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해 생태관광 특례에 관한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환경훼손이 경미하고, 탐방로·관측소 등 비상주 시설에 한정할 것 등을 명시

현 행		개 정	
구분	「습지보전법」 제13조	구분	「습지보전법」 제13조
내용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개정)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습지 생태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오염 업종에 대해 수변구역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검토

현 행		개 정	
구분	「낙동강수계법」 제5조	구분	「낙동강수계법」 제5조
내용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내용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5. 위생적으로 관리되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결된 숙박·음식업소

○ 한편, 현재 낙동강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하천관리청, 문화재청 등 여러 기관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로, 행정절차가 중복되고 승인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발생

○ 이에 (가칭)낙동강권 관광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에 관련 인허가의 일괄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낙동강 연계 관광사업에 대해 환경·하천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 통합 심의하도록 하고, 환경부·국토부·해양수산부 등 범부처 합동 심의위원회 설치를 추진

□ 기대효과

○ 제한적이거나 개발이 허용되면,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어 헌법상 재산권(제23조)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효과 발생

○ 규제 완화로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의 토지에 대한 자산가치 상승 및 담보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수변구역 규제 완화로 펜션, 수상레저센터 등이 들어설 경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가 기대

○ 습지보호지역 내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방문객 대상의 습지 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전 활동 참여를 유도

○ 부처협업의 강화 및 일원화된 심의 체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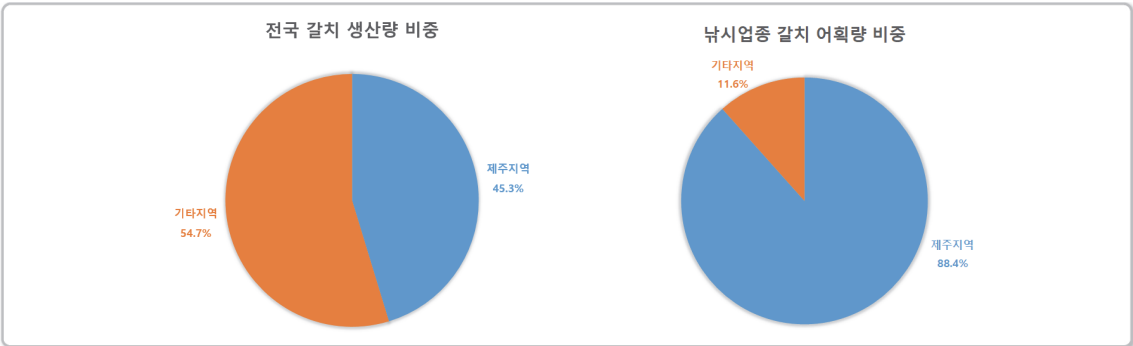
15) 제주특별자치도

(1) 근해연승어업 갈치 포획 금지기간 해제

- 주요 내용 : 제주지역은 전국 근해연승어업 갈치 어획량의 99.5%를 차지하나, 동일 낚시업종인 근해채낚기·연안복합어업은 금어기에서 제외되는 반면 근해연승어업만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TAC 제도 도입(22.7)으로 과학적 자원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음에도 기존 금어기를 병행 적용하여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갈치 포획금지기간 제외 대상에 근해연승어업을 추가하여 업종 간 형평성 제고와 TAC 기반 합리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
-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 발굴 방식: 공무원 TF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갈치어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전국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평균 갈치 어획량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은 전국 갈치 생산량 57,375톤 중 26,010톤을 생산하여 4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낚시업종의 경우 전국 소계 25,636톤 중 제주가 24,318톤(94.9%)을 차지하여 사실상 제주가 전국 낚시업종 갈치어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임



○ 업종별로는 근해연승어업이 전국 14,910톤 중 제주가 14,830톤(99.5%)을 생산하여 압도적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근해채낚기 88.4%, 연안복합 88.5%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반면 대형선망, 저인망, 안강망, 자망 등이 포함된 그룹어업은 전국 31,738톤 중 제주가 1,692톤 (5.3%)에 그쳐 제주지역 갈치어업이 근해연승어업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보여줌

〈표 3-76〉 평균 갈치 어획량(2019년 ~ 2023년)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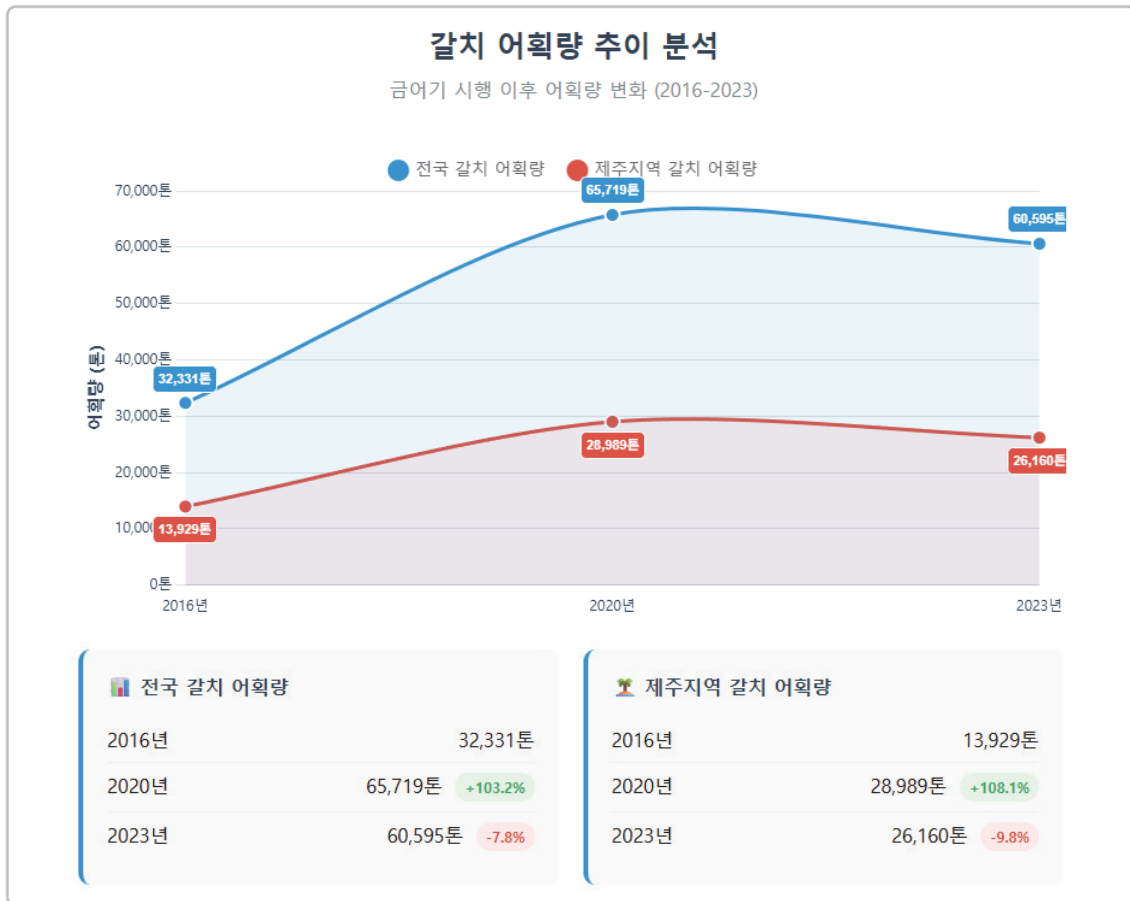
구분	합계	낚시업종(3종)				그물업종
		소계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연안복합	
전국	57,375	25,636	14,910	3,909	6,817	31,738
제주 (전국대비)	26,010 (45.3%)	24,318 (88.4%)	14,830 (99.5%)	3,457 (88.4%)	6,031 (88.5%)	1,692 (5.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4)

* 그물업종에는 대형선망, 저인망, 안강망, 자망 등 포함

- 갈치 금어기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별표1](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 개정을 통해 근해연승어업을 포함하여 최초 설정됨(7월 1일~7월 31일). 이후 2018년 4월 10일 시행령 개정에서 제주지역 근해연승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어기 적용 수역을 북위 33도 이북으로 한정하는 조정이 이루어져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음
- 금어기 설정은 당시 갈치의 산란기(6~11월), 산란을 위한 이동패턴, 주요 조업시기(4~11월), 업종별 어획비율,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근해채낚기와 연안복합어업은 금어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제주지역의 주력 어선인 근해연승어업은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음
- 2016년 한일 EEZ(상호 배타적경제수역) 어업협상이 결렬로 인한 어장 축소는 제주지역 근해연승어업에 심각한 타격을 가함. 기존 일본 EEZ에서의 조업이 중단되면서 어업인들은 대체어장을 찾아 더 먼 거리로 출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조업거리는 기존 서귀포 남방 기준으로 일본 EEZ 90~100마일(약 160~185km)에서 동중국해 등 중국 EEZ 400마일(약 740km)로 대폭 늘어나 조업거리와 시간, 출어경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어선 전복, 실종 등 해난사고 위험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입어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연간 어획 감소량 연평균 18,200톤, 수입감소액 연평균 7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어민신문, 2025)⁵⁶⁾.
- 특히 기존 금어기가 한일 EEZ 협상 결렬로 인한 피해와 맞물리면서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TAC 도입 이후에도 금어기를 유지하여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갈치를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대상 어종에 포함함. TAC는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 허용치를 설정하여 배분하고, 어획량이 목표치에 이르면 어업을 종료시키는 과학적 자원관리 제도임. 그러나 TAC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포획금지 규제(금어기)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어업현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2016년 금어기 시행 이후 전국 갈치 어획량은 2016년 32,331톤에서 2020년 65,719톤까지 증가했으나, 2023년 60,595톤으로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제주지역 갈치 어획량 역시 2016년 13,929톤에서 2020년 28,989톤까지 증가 후 2023년 26,160톤으로 감소하여 기존 금어기 제도만으로는 지속적인 자원관리 효과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56) 어민신문 (2025.8.18.) <https://www.eomin.co.kr/etnews/?cid=21030100&no=67057>



- 현재 정부는 TAC를 기반으로 한 어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음. TAC의 안정적인 관리 여부와 갈치 자원수준, 어업현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금어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개선방안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기간 규정에서 갈치어종에 대한 근해연승어업을 제외하여 금어기 규제에서 해제함
- 개선은 동일한 낚시업종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실상 제주지역에만 적용되는 지역차별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음
 - (현행 유지) 금어기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TAC와 중복되는 규제가 지속되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어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음
 - (부분 조정) 금어기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 수역을 한정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미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위 33도 이북으로 한정된 바 있어 추가 효과가 제한적임
 - (전면 해제) TAC 제도가 2022년부터 도입되어 과학적 자원 관리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금어기

규제를 근해연승어업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따라서 근해연승어업을 금어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면 해제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

○ 현행규정

- 북위 33도 이북(以北)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갈치 포획 금지
- 제외 대상: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 개선안

- 북위 33도 이북(以北) 해역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갈치 포획 금지
- 제외 대상: 근해연승어업,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 개정안

현 행		개 정	
구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내용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자. 갈치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구역 및 수심 자. 갈치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u>근해연승, 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u>).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선안은 TAC와 금어기의 이중규제를 해소하고 통합된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함. 이를 통해 근해채낚기, 연안복합어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간적 규제에서 어획량 기반 관리로 전환하여 과학적 자원관리 체계를 완성함

□ 기대효과

○ 어업인 생계 안정

- 제주지역 근해연승어업은 전국 어획량의 99.5%(2019~2023년 평균 14,830톤/14,910톤)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치 의존도가 70.4%에 달함. 금어기 해제 시 조업 기회가 확대되어 연평균 18,200톤의 어획 손실과 724억 원의 수입 감소 피해(어민신문, 2025)를 완화할 수 있음.
- 이는 어업인의 소득 회복뿐 아니라, 조업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특히 갈치 중심의 전문 어업 구조를 가진 근해연승어업 특성상, 규제 해제 효과가 직접적이며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생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조업경비 절감

- 한일 EEZ 협상 결렬 이후 조업거리는 기존 90~100마일(약 160~185km)에서 중국 EEZ 400마일(약 740km)로 4배 이상 증가하여, 연료비·인건비·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남. 금어기 해제가

이루어지면 어업인이 계절별·시기별 자율적으로 조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원거리 출어를 줄이고 연료비 절감 및 안전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는 단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어선 전복·실종 등 해난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 효과도 수반함

○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 갈치 어획량은 전국의 45.3%를 차지하며, 이 중 근해연승어업 비중이 절대적임. 금어기 해제에 따른 어획량 증가와 안정적 공급은 수산물 유통·가공업체·저장 및 운송업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고, 고용 유지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갈치는 제주 지역 대표 수산물로서 관광산업과도 연결되어 있어, 수산물 직거래, 음식관광, 지역 축제 등 연계 산업 활성화로 파급효과가 확산됨. 따라서 금어기 해제는 단순히 어민 개인 소득 증대에 그치지 않고 제주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업종 간 형평성 제고

- 현재 동일 낚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해연승어업만 금어기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근해채낚기(88.4%), 연안복합(88.5%)은 제외되어 있음. 규제 해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업종 간 형평성을 회복하고, 어업인 간 갈등 완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 효과를 가져옴
- 나아가 어업계 내부의 불신이 줄어들고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TAC 기반 관리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규제 합리화 및 정책 신뢰성 확보

- TAC는 어획량 한도를 설정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2022년부터 갈치가 포함됨. 그럼에도 기존 금어기가 유지되면서 현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인식되고 있어 정책 신뢰성을 약화시켜 왔음
- 금어기 해제는 이중규제를 제거하여 TAC 중심의 일원화된 자원관리 체계를 확립함. 이는 정부의 「어업 선진화」와 부합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합리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향후 유사한 규제 개선의 모델이 되어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제주해녀 원정물질 주소지 기준 완화

- 주요 내용 : 현행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6개월 이상 주소지 거주요건으로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한 전통적인 제주해녀의 원정물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저강도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음. 동일한 신고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어업법」상 신고어업에는 거주요건이 없어 법령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독도 출항물질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한 제주해녀의 역사적 전통이 단절될 우려가 있음. 「수산업법」 제48조 개정을 통해 신고어업 주소지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법령 간 형평성 제고와 전통 해녀어업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 소관 부처 : 해양수산부
- 발굴 방식 : 간담회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현행 「수산업법」 제48조는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어업은 면하·허가어업 이외 어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어업을 의미하며, 「수산업법」 제4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2개 어업으로 분류됨
- 맨손어업은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정의되며,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어업방법이 엄격히 제한됨
-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신고를 수리한 시·군·구의 관할수역을 조업수역으로 하고,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이나,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제주해녀의 육지부 원정물질이 불가능한 상황임

〈표 3-77〉 법령상 신고어업의 유형 및 개념

구 분	주요 개념
신고어업	면하·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나잠어업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맨손어업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수산업법 제48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자료: 최선영(2024)

-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원정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해녀어업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적 조사를 꺼려하는 특성상 실제보다 적게 인원이 파악되어 현황보다 더 많은 해녀가 원정물질을 희망할 것으로 추정됨

〈표 3-78〉 해녀 원정물질 현황(2023년 5월 기준)

구 분	어촌계	인원	원정지역	조업내용	원정시기	비 고
현 황	21개소	66명	8개 지역	해삼, 전복, 성게, 소라	3~6월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4)

- 제주해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독도 출항물질로 독도어장에 진출하여 경제활동 및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는 등 출항해녀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음
- 이러한 제주해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2023년 제주해녀박물관-독도박물관 공동기획전 '제주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 개최를 통해 재조명되었으며, 제주해녀를 기리는 제주해녀관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에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 현행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의 6개월 거주조건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18755호, 2022년 1월 11일 전부개정, 2023년 1월 12일 시행)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조항임
- 해당 규정의 도입 취지는 과거 일부 타 지역 어업인이 지역을 이동하며 어획활동을 함에 따라 수산자원을 둘러싼 지역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레저인 등이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 어업 신고증명서를 받아 조업하는 등 지역의 영세어업인·어촌계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특히 지역어업인과 타지역 어업인, 레저활동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 간 지속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업하려는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하는 조건이 신설됨
-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6개월 이상 주소지 거주요건으로 사실상 제주해녀 원정물질을 제한하고 있어 전통적인 '원정 해녀'의 명맥이 끊길 우려가 발생함
- 따라서 신고어업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인 기업형 어업 및 레저인의 남획 방지 목적은 유지하면서도, 전통적인 해녀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 마련을 통해 제주해녀의 원정물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 개선방안

- 「수산업법」 제48조상 신고어업의 6개월 이상 주소지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제주해녀의 원정물질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에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신고어업에는 '6개월 이상 거주' 규제가

없어 동일한 신고어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고어업이라는 동일한 어업 유형에 대해 법령에 따라 상이한 거주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 대한 거주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신고어업 제도는 본래 영세한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으므로, 이러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맨손어업은 손으로 낚·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고, 나잠어업은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낚·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어업방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어획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신고어업 주소지 거주요건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구분	「수산업법」 48조	구분	「수산업법」 48조
내용	①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내용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제40조·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제주해녀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독도 출항물질로 독도어장에 진출하여 경제활동 및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는 등 출항해녀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전통적 어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 해녀어업인 생계 안정
 -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한 전략적 조업이 가능해져, 어업인의 조업 계획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영 안정성이 확보됨. 특히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의 특성상 계절별 자원 분포에 따른 이동 조업이 필수적이므로, 규제 해제 효과가 직접적이며 단기간 내 체감 가능한 생계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전통 해녀어업의 보전 및 활성화
 - 6개월 거주요건으로 인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전통적인 '원정 해녀'의 명맥을 복원하여, 제주해녀 고유의 어업 방식을 보전할 수 있음. 이는 신고어업 유효기간 5년과 연간 60일 이상 조업 의무 등 기존 관리체계 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도 전통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옴

○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현대적 계승

- 제주해녀들이 일제강점기부터 독도 출항물질로 독도어장에 진출하여 경제활동 및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한 출항해녀의 역사적 의의가 현재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2023년 제주해녀박물관-독도박물관 공동기획전 '제주해녀, 대한민국 독도를 지켜내다' 개최와 제주해녀관의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설치·운영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제주해녀의 역사적 가치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실질적인 어업활동 복원으로 이어져,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법령 간 형평성 제고 및 제도 합리화

- 「내수면어업법」제11조(신고어업) 및 동법 제9조에 따른 신고어업에는 '6개월 이상 거주'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에만 거주요건이 적용되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됨. 이는 동일한 신고어업 유형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회복하여 어업인 간 갈등 완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용성 제고 효과를 가져옴
- 신고어업 제도 본래의 취지인 '영세한 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실현되어, 어업계 내부의 불신이 줄어들고 정책 신뢰성이 제고됨

○ 지역경제 연계 효과 및 관광산업 시너지

- 제주해녀의 원정물질 복원은 단순히 어민 개인 소득 증대에 그치지 않고, 제주 해녀문화의 광역화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교류와 관광 연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영세어업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 확보

-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신고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실현되어, 어업인 보호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짐

(3) 지정면세점 크루즈 방문객 등 대상 면세품 판매 허용

- 주요 내용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이용 제한으로 크루즈 관광객 등 해외 출국자는 지정면세점 이용이 불가하여, 강정항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중문면세점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주시 소재 보세판매장까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크루즈 관광이 성장(2023년 76척·167,000명 → 2025년 300척·800,000명 예상)하는 상황에서 실제 체류시간 4~5시간 중 면세쇼핑을 위한 이동시간으로 관광활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으며, 동일한 면세쇼핑 수요임에도 출도 방향에 따라 이용 가능 시설이 차별화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크루즈 관광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제주시 지역에만 편중되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정면세점 이용대상을 '제주자치도 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크루즈 관광객의 쇼핑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발굴 방식 : 공무원 TF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근거하여 공·항만 4개소와 시내면세점인 중문면세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은 2009년 3월 개점 이후 16개 품목 244개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음(1인당 연 6회, 1회당 미화 800달러 구매한도)

〈표 3-79〉 지정면세점 시설현황

시 설 명		내 용	면적(임대)	비 고
지정 면세점	영업시설	매장, 고객 동선	2,285.60㎡	691.4평
	후방시설	사무실, 라커, 전산실, 휴게실, 매장창고, 기타	1,270.37㎡	384.3평
소 계			3,555.97㎡	1,075.7평
보세창고		공항화물터미널	1,377.36㎡	416.7평
공항인도장		제주국제공항 인도장	104.15㎡	31.5평
제주시 인도장	2부두 인도장		69.62㎡	21.1평
	7부두 인도장		39.20㎡	11.9평
소 계			1,590.33㎡	481.1평
합 계			5,146.30㎡	1,556.8평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4)

〈표 3-80〉 지정면세점 영업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억원)	557	521	477	401	343	306	506	540
인력현황(명)	345	345	303	282	266	230	254	25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4)

- 지정면세점은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크루즈 방문객 등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함
-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세판매장(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은 제주시 연동 지역에만 위치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크루즈의 제주 입항이 2023년부터 재개(76척, 167,000명)되었으며, 이후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며 2024년에는 274척·64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선박수 260.5%, 관광객수 283.4%의 증가를 기록함
- 이러한 성장세는 2025년에도 지속되어 약 300척·8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3년간 선박수는 약 4배, 관광객수는 약 5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표 3-81〉 연도별 제주 크루즈 관광 현황 (2023-2025)

연도	입항선박 수(척)	관광객 수(명)	전년 대비 변화
2023	76	167,000	-
2024	274	641,000	+283.4%
2025	300(예상)	800,000(예상)	+24.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25)

-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회복과 제주의 지리적 이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주가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주요 기항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들의 면세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서귀포시 강정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이 강정항에서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은 양호하나, 현행 제도상 해외 출국자는 이용이 불가함
-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이 면세쇼핑을 위해서는 제주시 소재 보세판매장까지 원거리(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기항 평균시간 8시간 중 입출국 절차(약 3시간)가 소요되어 실제 체류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 면세쇼핑을 위한 제주시 이동 시 관광활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함

□ 개선방안

- 해외로 출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서귀포 중문면세점(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개정
- 지정면세점 이용대상을 기존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크루즈 관광객 등 해외 출국자도 포함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구분	제주특별법 제255조	구분	제주특별법 제255조
내용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u>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u>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내용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u>제주자치도 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u>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u>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u>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내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u>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u>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u>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u>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u>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u>

□ 기대효과

- 강정항 입항 크루즈 관광객이 면세쇼핑을 위해 제주시까지 왕복 3~4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어, 중문면세점까지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됨
- 실제 체류시간 4~5시간 중 면세쇼핑을 위한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관광활동 시간이 확보되고,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 관광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표 3-82〉 개선 후 관광 시간 변화

구 분	현재	개선 후	변화량	변화율
면세쇼핑 이동시간	3.5시간	40분	-2.8시간	-80%
이동 외 관광활동 시간	1.5시간	4.3시간	+2.8시간	+287%
입출국 절차시간	3.0시간	3.0시간	-	0%
총 기항시간	8.0시간	8.0시간	-	0%

- 관광시간 대폭 증가와 쇼핑 편의성 개선으로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 재방문 의향 및 추천 의향이 증가함
- 크루즈 관광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 제주시 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서귀포 지역으로 확산되어 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
 - 서귀포시 일대 상권 활성화 및 연관 서비스업(교통, 숙박, 음식업 등) 동반 성장 효과 기대
 - 제주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운영수익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공익재원 확보로 제주관광 재원 확충
- 면세쇼핑 접근성 개선으로 제주가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핵심 기항지로서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크루즈 선사의 제주 기항 선호도 증가
 - 제주의 크루즈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 경쟁력 향상으로 아시아 크루즈 시장 내 제주의 위상 제고
-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시 집중 이동이 분산되어 제주시 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도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 및 환경 부담 경감
- 크루즈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에게 차별 없는 면세쇼핑 기회 제공으로 국제자유도시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효과
- 국제적 관광지로서 제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글로벌 관광 경쟁력 강화

(4) 크루즈 출국 보안검색 제도개선

- 주요 내용 :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크루즈 관광객 출국 보안검색 의무로 인해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선에서의 이중 보안검색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크루즈 제주기항 평균 8시간 중 입국심사 2시간, 출국보안검색 12시간이 소요되어 실 체류시간이 45시간으로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크루즈선 대형화로 탑승 관광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안검색 시간이 더욱 증가하여 실질적인 관광 및 쇼핑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있으며, 한중일 크루즈 노선에서 중간 기항지 출국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곳이 한국뿐인 상황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요 경쟁 관광지 대비 불리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이러한 중복적 보안검색으로 인한 체류시간 감소는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지출경비 188달러(24만4천원)의 소비 창출 기회를 제한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저해하고 있어, 동법 제30조의2제1항에 "대한민국에 기항하는 국제항해 여객선에 한하여 출항 시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생략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시간 증대와 제주 크루즈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관련 법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 발굴 방식: 공무원 TF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회복과 제주의 지리적 이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주가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주요 기항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크루즈선 대형화로 인한 탑승 관광객 수 증가와 함께 제주 지역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크루즈 제주기항 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입국심사에 2시간, 출국보안검색에 1~2시간이 소요되어 실 체류시간은 4~5시간이 되는 구조임. 최근 크루즈선 대형화로 탑승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입국심사와 출국보안검색 시간이 증가하여 실 체류시간은 더 감소하고 있음
-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및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위해 인물·무기류·폭발물 등의 진입 차단을 위해 선박에서도 철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만을 통한 위해 인물과 폭발물 등 위해물품의 반출입 방지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와 국제협약 당사국 정부의 항만시설 보안성 보장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선박보안계획서)

- ①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5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

-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이하 “항만시설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는 보안사고와 같은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항만시설(항만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전산·통신시스템을 포함한다)·선박·화물·선용품 및 사람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크루즈 관광객 출국 시 국제여객터미널에서의 1차 보안검색과 크루즈선에서의 2차 보안검색으로 이루어진 이중 보안검색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사에서도 크루즈 선내 안전을 위하여 탑승 시 별도의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어 관광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이러한 중복적 보안검색으로 인한 크루즈 관광객의 체류시간 감소는 지역상권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관광 및 쇼핑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한중일 크루즈 노선에서 중간 기항지 출국 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상황으로, 이는 타 경쟁 관광지 대비 불리한 제도적 여건으로 작용하여 제주도의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주요 아시아 크루즈 기항지들의 보안검색 제도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은 크루즈 기항 시 입·출국 보안검색을 생략하고 터미널과 선내에서 간단한 신원·출입확인 및 무작위 검사만을 실시하여 관광객 편의와 보안 균형의 실용적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에도 크루즈선 입항 시 보안감독관이 직접 승선하여 선사의 내부 보안검색 및 프로세스 전 과정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중복적 보안검색 방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음

〈표 3-83〉 크루즈 보안검색 제도 비교

국가	입국 보안검색	출국 보안검색	특징
한국	해양수산부 지침과 IMO(ISPS) 국제 규정에 따라 터미널 진입 단계와 선박 출입 전 이중 보안검색(X-ray, 신분확인, 수하물 검사 등)을 실시		중복적 검색체계, 보안 강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페낭), 태국(푸켓)	크루즈 기항 시 승선명단·여권 등만 확인하고, 별도의 지문채취나 수하물 전수검색 없이 출입	전수 수하물 검색 대신 무작위(Random) 표본검사, 기본 출입증 확인 정도만 진행	관광객 체류 편의와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해 규제 완화
일본	정부 소속 보안감독관이 직접 크루즈선에 승선해 선사 내 보안 업무, 검색 절차를 감독(감독 체계는 ISPS Code, IMO 기준과 일치)	선사가 자율적으로 내규에 따라 실시하며, 공식 감독관이 감독/기록 확인	효율적 감독체계

- 국제크루즈 관광객 출국 시 보안검색 면제 특례 도입을 통한 승객 체류시간 증대는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안전 확보 의무와 관광산업 활성화 간의 정책적 균형점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 개선방안

- 크루즈 기항관광 특성을 반영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에 "단, 대한민국에 기항하는 국제항해 여객선에 한하여 출항 시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생략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크루즈 관광객 출국 보안검색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현 행		개 정	
구분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0조의2	구분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30조의2
내용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내용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단, 대한민국에 기항하는 국제항해 여객선에 한하여 출항 시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생략한다.

- 보안검색 생략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크루즈선사의 선내 보안검색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크루즈선사 보안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완적 안전조치 방안을 법령에 반영함
- 크루즈 터미널의 보안시설 기준 강화와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등 항만시설 보안 강화 방안을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 출국 보안검색 생략에 따른 보안 공백을 최소화함
- 법률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크루즈선사의 보안 의무 위반 시 적절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법령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강제 수단을 법령에 반영함

□ 기대효과

- 크루즈 관광객의 출국 보안검색 간소화를 통해 현재 평균 4~5시간인 체류시간을 1~2시간 추가 확보함으로써 기항지에서의 실질적인 관광 및 쇼핑 시간을 대폭 증대시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 1인당 지출경비가 188달러(24만4천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체류시간 증대에 따른 추가 소비 창출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통해 제주 크루즈 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이는 재방문 의향 증대로 이어져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중일 크루즈 노선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중간 기항지 출국 보안검색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 주요 경쟁 관광지와 동등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의 크루즈 관광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추후 국내·외 운영사례 및 관련 국제기준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안검색 절차 간소화 방안의 도입을 통해 관광객 편의성과 국제 보안기준(ISPS-Code) 준수 간의 균형잡힌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면 다른 크루즈 기항지에도 확산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선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제4장 | 공동 규제현안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1. 공동 규제현안 발굴
2. 공동 규제현안의 내용
3. 규제 개선방안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제4장 | 공동 규제현안 발굴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1. 공동 규제현안 발굴

1) 공동 규제현안 발굴 개요

- 연구진 논의를 통해 공통 현안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 설정
 - (단계별 접근 필요) 우선순위를 정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며, 이해 갈등이나 체계적 조사연구가 필요한 안건은 중장기 추진
 - (우선적 현안 고려) 여러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규제 현안을 선정할 필요
 - (전략적 선정 필요) 가장 많은 지역이 꼽은 우선적 현안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완화이나, 여러 지역이 함께 처음으로 선정하는 공동 규제현안은 자치분권 패러다임에 부합하도록 지속가능성 고려한 전략적 선정 필요
 - (합리성 고려) 예외적 유예나 지원을 해달라는 민원성 요구가 아니라, 현실에 맞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공동 현안으로 선정 필요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규제’를 공동 규제현안으로 선정하고 추가적 분석 실시
 - 해당 현안은 복수로 꼽힌 전국 공통현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고, 최근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간 이해갈등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2. 공동 규제현안의 내용

1) BF 인증제도 개요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도 시행
 - BF 인증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2021년 12월 BF인증 의무시설에 국가·지자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등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이 추가됨

□ BF 인증의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BF 인증 대상 및 인증 신청자

〈표 4-1〉 인증 대상 및 인증 신청자

구분	인증 대상	인증 신청자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지역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지자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해당되는 공원, 신축건축물, 증축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 개축건축물(전부개축하는 경우)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함

자료: BF 홈페이지(<https://www.koddi.or.kr/bf/info/kind.do>)

□ BF인증 절차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성되며, 인증 시 인증 수수료를 납부



[그림 4-1] BF 예비인증 및 본인증 절차

- 예비인증: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에 받도록 함
- 본인증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음

-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2) BF 인증 현황 및 문제점

□ BF인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 초래된다는 비판 제기

○ 2008년 BF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 대상 및 의무인증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배선헤위, 2024: 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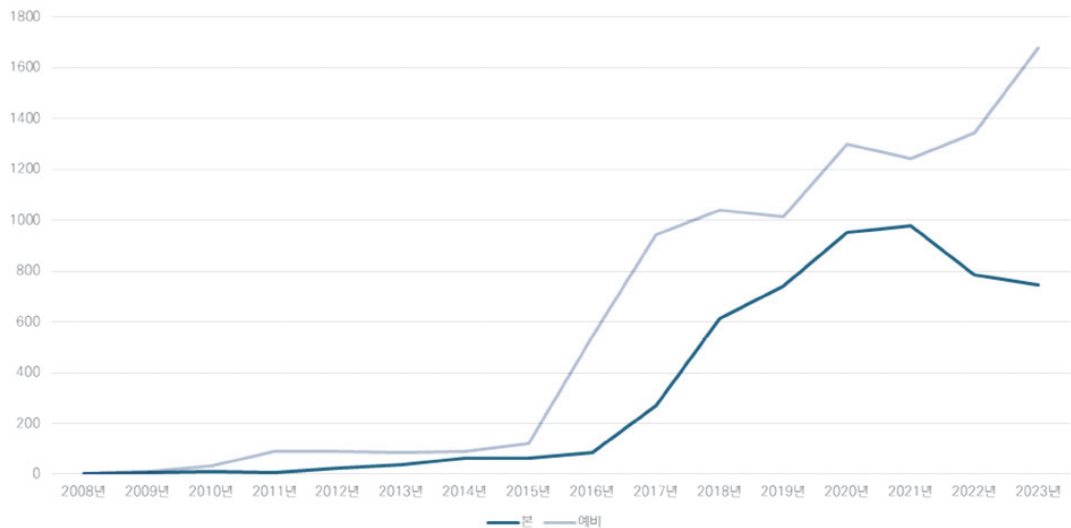
〈표 4-2〉 BF 인증 제도 관련 법·제도 제·개정 사항

연도	법령 제·개정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주요 내용			
		의무인증대상	인증대상	유효기간	기타
200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제정 (시행 2008. 7. 15.)	-	신규도시(구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5년	인증제도위원회, 인증기관, 인증심사기준, 인증절차 및 수수료, 인센티브 규정
200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 2010. 6. 30.)	-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와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을 계획 또는 정비한 지역	-	
20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시행 2010. 7. 9.)	-	-	-	인증의 신청권자,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인증기관의 지정 등 규정
20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시행 2011. 9. 16.)	-	5만㎡ 미만 공원 추가	-	
20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15. 7. 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폐지 (시행 2015. 8. 3.)				

연도	법령 제·개정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주요 내용			
		의무인증대상	인증대상	유효기간	기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제정 (시행 2018. 8. 3.)	-	-	-	인증심사기준(인증지표 및 기준),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201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 2018. 8. 10.)	-	-	-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 수정
2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12.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설치, 신축하는 도시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추가 예비인증 의무화	-	10년	예비인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과태료 기준 신설
20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 2022. 10. 2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추가	-	10년	사후관리 강화 예비인증 규정 과태료 부과 규정
20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12. 4.)	인증 의무 대상을 신축뿐 아니라 개축, 증축, 재축으로 확대	-	-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202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5. 3. 20.)	-	[건축물 용도 확대(추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방송국 및 침술원 등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동물병원 및 독서실 등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로 추가	-	[최소 면적 기준 삭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아동센터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안마시술소의 최소 면적 기준을 삭제

자료: 배설희 외(2024: 30~31, [표 2-9])의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 실제로 배선헤 외(2024)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5,022건의 인증이 이뤄졌는데,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 신축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의무 인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간의 시차를 두고 2017년부터 BF인증 실적이 급증(배선헤 외, 2024: 54~55)



[그림 4-2] 본인증과 예비인증 인증건수 추이

원저자 주: 한국장애인개발원(2024), 인증실적현황을 바탕으로 연구진(배선헤 외, 2024)이 작성
자료: 배선헤 외, 2024, p.55

○ 실제 BF인증 지연으로 사업기간 장기화 등 문제가 불거진 사례 다수 보도

〈표 4-3〉 BF인증 지연 관련 언론보도 주요 사례(2024~2025년)

보도일자	제목	관련 사례	매체명
2025. 12. 17.	BF인증 지연에 내년 전국체전 설비 공사 '우려'	• (제주 서귀포시) 2026년 전국체전 준비 관련, 체육시설 BF 인증(예비 인증만 3~6개월 예상) 지연 시 시설 이용 문제 발생 가능성 우려	제주매일
2025. 12. 3.	대구 남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BF 인증으로 설계용역 중단	• (대구 남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용역이 BF예비인증 과정에서 20건 보완요구 받으면서 잠정 중단되었으며, 착공 지연 시 사업비 증가 및 주민 불편 초래 우려 • (대구 북구) 행정복지센터 건립 BF 예비인증에 7개월 소요되면서 공사비가 인상돼 지방채 발행	매일신문
2025. 7. 16.	"예비 땀 적합, 본인증선 부적합"...BF인증 제도, 수도권 편중·일관성 논란	• (경남도교육청) A유치원은 유아용 장애인용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유아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았음. 그러나 본인증 단계에서는 해당 시설이 실제 사용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및 예산 낭비 발생 • (대전 대덕구) 최근 5년 간 평균 BF 인증 소요기간이 330일에 달했고,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가 4건에 이름	뉴스스
2025. 4. 9.	공주시 'BF인증' 지연	• (충남 공주시)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 2022년 11월 실시한 예비인	동양일보

보도일자	제목	관련 사례	매체명
	피해... 충남도는 뭐하나?	증 결과를 2023년 3월에 받았고, 2024년 6월 실사 후 본인증 완료 증서는 같은 해 12월에 발부받아 예비인증부터 본인증 완료까지 총 2년 소요	
2025. 2. 2.	대구·비수도권 지자체 BF 인증절차 행정력·예산 부담 지속	(대구 북구) 2023년 6월 행복 북구 통합가족센터 본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기관 담당자 현장 방문이 늦어져 한 달간 인증이 미뤄짐 (대구 북구) 평생교육 학습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는 2023년 BF 예비인증 용역에 착수했으나, 인증기관으로부터 두 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고 2024년 5월에야 BF 예비인증을 받음	경북일보
2024. 12. 3.	'BF 인증' 늦어 공공시설 차질... "제도 개선 시급"	(강원 삼척시) 경로당 신축 공사 끝나고 7개월 지나도록 BF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함 (강원 삼척시) 삼척북한체육공원 등 4개 공공 시설물은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예정된 준공 일자보다 늦게 준공됨 (강원 삼척시) 최근 5년간 신축한 14개 공공 건축물의 BF 인증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1개월로 집계됨	KBS뉴스
2024. 7. 19.	BF인증이 뭐길래... 길어진 심사에 사업 지연	(광주 서구) 다목적센터 BF 예비인증 절차가 늦어져 공사 지연 (광주 서구) 커뮤니티센터 준공 이후 BF본인증 신청한 지 10개월간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kbc광주방송
2024. 6. 18.	BF(무장애)인증 하세월... 지자체 공기 지연 잇따라	(울산 울주군) 울주종합체육센터가 2024년 3월 건물 준공을 마쳤으나, 2월 본인증 심의 시 일부 보완 요청이 발생해 개관전 재공사	울산일보
2024. 5. 26.	인천 지자체·행정기관 BF 인증 하세월... 사업 지연에 공무원들 '진땀'	(인천 남동구) 구월3동 '성마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완료가 BF인증 때문에 반 년 가량 지연됨 (인천 동구) 다목적시설인 '송림골 꿈드림센터'는 2023년 8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BF인증에만 8개월이 소요돼 개관이 지연됨 (인천시교육청)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BF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시설 개방이 늦어짐	중부일보

자료: 연구진이 관련 언론기사 검색하여 정리(최종검색일: 2025. 12. 22.)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BF 인증 관련 개선 건의가 이뤄진 사례가 11건 이상 확인됨

- 인증 기간 과다, 인증 기관·인력 부족 및 기관의 수도권 편중, 심사기준의 모호성·비일관성(본·예비인증 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 주요 개선 건의 사항은 인증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인증 기관 확대, 처리 기한 부여, 일정 기간 도과 시 (조건부) 허가 간주, 인증 수수료 인상, 심사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및 명확화 등임

〈표 4-4〉 BF인증 개선 건의

지자체	건의시기	문제점	개선 건의 주요 내용
강원 A단체	2019. 12.	- 인증 기간 과다 (최대 4개월) - 기관별 심사 기준 상이 -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 BF 인증기관확대 및 지역별 안배 배치 - 처리 기한 부여(1개월)
전남 B단체	2022. 12.	- 인증절차, 인증기간 과다(예비 3~6개월, 본인증 2~3개월) - 인증기관 수 적고 수도권 편중	- 업무처리기간 단축(4주→1주, 준공기한 1개월 이내) - 인증기관 시도별 3개소 이상 설립
전남 C단체	2023. 7.	- 인증절차, 인증기간 과다하여 사업기간 지연(예비인증 3~6개월, 본인증 2~3개월) - 용도만 기준으로 하여 인증 대상 적용	- 처리 기간 (40일) 도과 시 조건부 허가 - 인증기관 전국 확대(시도별 3개소 이상) - 건축물 규모 기준 마련(소규모 건축물 가성품 품목을 BF인증 제품으로 등록)
전남 D단체	2023. 12.	- BF인증기간 과다(5개월) - 예비 인증 시 최고 수준의 수정 요구 - 본인증 시 예비인증보다 과도한 변경·재시공 요구로 건축물 사용 제한	- 인증권자를 시·군·구로 변경하여 인증기간 단축 - 일정 기간 도과 시 인증 간주 - 예비인증 시 최소 기준 충족 시 인증 승인 의무화 - 본인증 시 예비인증 범위 외 추가 조건 부과 방지 조항 신설
전남 E단체	2024. 8.	- 인증기관 부족해 인증 지연에 따른 건축 인,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차질 - 본인증 시 추가 사항 재시공 등 공사비 부담 과다	- 인력·인증기관 확충 - 처리 기한 단축 - 본인증까지 일관된 심사기준 적용 - 실시간 인증 진행 상황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
경남 F단체	2025. 2.	- BF인증기간 과다(예비인증 3~6개월, 본인증 5~6개월) - 인증기관별 심의기준 불명확	- 관급자재 BF인증률 추가 및 해당 자재 사용 시 관련 지표 검토 제외 - 예측가능한 인증제도 - 용도별, 건축행위 특성별 인증체계 간소화 - 인증업무 전산화 및 인증과정 결과 공개로 위원회 공정성·투명성 증가
전북 G단체	2025. 2.	- 인증기관 및 인력 부족, 수도권 편중 - 예비인증과 본인증심사기준 불일치, 심사위원 상이 - 시공 오차 허용범위 과소	- 인증기관 확대 및 지방소재 인증기관 지정 운영 - 예비인증과 본인증 심사기준 표준화, 일관성 유지, 심사위원 통일 - 설계-시공 간 오차범위 허용치 완화
서울 H단체	2025. 3.	- 인증 기간 예측 불가(접수 대기 기간 1~2개월, 인증 10개월) - 통일된 운영 규정, 심사매뉴얼 미비	- 통합 운영 규정 및 심사기준 마련 - 서울지역 전담 인증기관 추가 설치(서울시가 자치구 인증 대상 총괄관리, 필요시 전담부서 설치)
대구 I단체	2025. 3.	- 인증기준 일관성 부족 - 예비인증 받은 설계도서 변경에 따른 본인증 지연 - 본인증 시 과도한 보완 요청 - 보완 시공 시 예산·지연 문제 -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 예비인증 심사강화 통한 본인증 심사·보완 기간 단축(설계도서 변경 시 공사 중 예비인증) - 본인증시 예비인증 받은 사항 이행 여부만 확인(예비인증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대한 보완 요청 금지 규정)
충남 J단체	2025. 3.	- 인증기관 부족, 수도권 편중 - 인증기간 지연(5~9개월) - 평가기준 객관성 부족	- 인증기관 확충(기관 부재 시도 우선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준 일원화
강원 K단체	2025. 4.	- 인증기관·담당 인력 부족 - 예비·본인증기준 적용 일관성 부족, 신규 지적사항 추가 발생해 공사비·사업지연 문제 - 낮은 인증 수수료로 처리 지연 - 인증 소요기간 장기화	- 인증기관 확대 지정 및 담당 인력 증원 - 인증 수수료 인상 검토 - 인증 소요 법정 기한 규정 - 인증 기준 정비(건축 규모·성질 따른 차등 적용, 명확한 인증 기준 마련)

자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부자료(2025)

○ 지방정부 협의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BF인증제도 관련 개선 건의 및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⁵⁷⁾

- (지방정부 협의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협의회(25. 9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5년 7월)
- (지방의회) 전남 고흥군의회(25. 11월), 부산 기장군의회(25년 10월), 대전 대덕구의회(25년 6월), 경기 안산시의회(25년 6월), 전북 남원시의회(25. 4월), 전북 순창군의회(25년 3월), 강원 삼척시의회(24년 11월), 전북 정읍시의회(22년 11월)
- (지방자치단체장) 충남 공주시장(25. 3월) 등

□ 정부는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수수료 현실화 및 인증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

- 2025년 12월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으로 발표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가 9대 추진 과제 중 여덟 번째 과제로 포함됨
- BF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수료 현실화를 제외하면 인증기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음
 - 한편 '공공주택 등 인증 의무 대상 확대'가 추진 과제로 포함되어 있어 인증기관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인증기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됨

57) 강원일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발의", 2024. 11. 26.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112614313819798>); 굿모닝충청, "최원철 공주시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신속 처리해야", 2025. 3. 11.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71>); 남도일보, "고흥군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촉구", 2025. 11. 26.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506>); 뉴스핌, "최익순 강릉시의장, '장애물 없는 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 2025. 9. 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16001050>); 메트로신문, "기장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25개 안건 심사", 2025. 10. 1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1017500313>); 브레이크뉴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BF인증 연석 간담회 개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 개선 필요"", 2025. 7. 9. (<https://www.breaknews.com/1131517>); 시민일보, "안산시의회,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2025. 7. 1.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8405651954>); 전민일보, "정읍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촉구", 2022. 11. 9.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144>); 전북일보, "남원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건의안 2건 채택", 2025. 4. 17. (<https://www.jjan.kr/article/20250417580078>); 전북일보, "순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2025. 3. 26. (<https://www.jjan.kr/article/20250326580105>); 충청일보, "김기흥 의원 "BF 인증 절차 늦어 주민 불편...제도 전면 손질해야"", 2025. 6. 2.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709>)

목표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생활 전반의 접근성 확보			
추진 전략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이용	장애인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추진 과제	① 교통환경 및 관광 여건 정비 ① 특별교통수단 확대 ②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③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④ 장애인 차량용 보조 기기 지원 ⑤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비치 확대 ⑥ 무장애관광 인프라 확충 및 홍보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강화 ① 무효 주차표지 반납 근거 마련 ② 주차표지 발급 기준 변경(자동차-개인) ③ 재발급 제한 관련 행복e음 기능 추가 ④ 주차표지 서식 변경 ⑤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불법주차 합동단속 ⑥ 무효표지 집중회수 기간 운영	③ 편의시설 확대 및 설치기준 보완 ① 의무설치 대상 확대 ② 화장실 세부기준 추가 ③ 독립형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 ④ 경사로 비치 대상 확대 ⑤ 경사로 설치 매뉴얼 개발 ⑥ 편의시설 설치 기준 ISO 국제 표준 반영 ④ 주거문화체육 편의 및 재난 안전 확보 ① 주거약자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전세주택 지원, 주거복지센터 확대 ③ 반다비체육센터 설치 지원 ④ 스포츠 경기장 관람 환경 개선 ⑤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기준 개정 ⑥ 대피 도우미 매칭 ⑦ 장애인 접근을 위한 소방체험관 시설개선	⑤ 편의시설 현황 정보 활용성 제고 ① 실태조사 대상 확대 ② 편의시설 정보 현행화 주기 단축 ③ 전수조사 결과 나라통계2.0 탑재 ④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웹 접근성 확보 ⑤ 지침 제공 플랫폼 운영 ⑥ 일상의 정보 접근 개선 ① 접근가능한 ATM기 보급 ② IT 보조기기 보급 ③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④ 정보 활용 교육 실시 ⑤ 전자문서 점자 변환 시스템 설치 지원 ⑥ 학교 편의시설 지원	⑦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강화 ① 편의시설 상세기준 개정 ②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품질 제고 ③ 편의시설 관련 빈발 민원 분석 ⑧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 ① 인증 대상 확대 및 기준 개정 ② 인증 인센티브 마련 ③ 수수료 현실화 및 인증기관 확대 ④ 인증운영기관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 ⑤ 해설서 제작 및 교육 ⑨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한 제품 사용성 개선 ①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 ② 공모전 및 전시 ③ 국제세미나 개최

[그림 4-3] 제6차 계획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지자체 합동(2025), p.12

〈표 4-5〉 건물 전체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 추진 과제

구분	추진 과제
의무 인증 대상 확대 및 분야별 인증 기준 개선	① 공공주택 등 인증 의무 대상 확대 및 공원 등 인증기준* 개정 *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인증 인센티브 마련 및 인증기관 확대 등을 통한 인증 활성화	② 인증 취득 시 일정 비율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 검토, 민간시설의 BF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 수수료 지원(지자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바닥면적만큼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됨 ③ <u>물가연동한 수수료 산정 등을 통한 수수료 현실화 및 인증 취득을 위한 대기 문제 완화를 위한 인증기관 확대</u> ※ ('25년)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1개소 有
인증 품질 확보 및 사후관리 강화	④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의한 인증운영기관* 지정 및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훼손된 시설개선 확보 * 인증기관 관리, 인증 관련 연구개발, 인증 정보체계 구축 등
인증 업무 기준 구체화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⑤ 심사위원별로 적용하는 인증기준* 편차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해설서'를 제작하고 심사·심의위원 교육 실시 * 수치화된 정량적 기준과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과 같은 정성적 기준 존재

자료: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2025), p.29

□ BF인증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제기한 주요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인증기간 과다) BF인증에 소요되는 정확한 기간은 알기 어렵지만, 배선헤 외(2024)의 연구에서 BF인증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증 절차 관련해서 처리 기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배선헤 외, 2024: 97)

- 인증업무, 심사·심의 분야 응답자에 비해 인증 컨설팅, 발주 및 건축물 관리 업무, 건축 설계 업무 분야 응답자가 처리 기간에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배선헤 외, 2024: 97)
- 설문조사 결과, 예비인증 접수 후 인증 취득까지 평균 5.7개월, 본인증 접수 후 인증 취득까지 평균 6.7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용역계약 기간 내 BF 예비인증을 완료했다는 응답은 26.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배선헤 외, 2024: 106~107)
- 인증기간 과다는 그 자체로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이후에 논의할 문제점들인 인증기관 수 부족, 심사기준의 모호성·비일관성의 결과이기도 함

〈표 4-6〉 인증 절차 관련 만족도 (5점 평균)

(단위: 점)

구분	인증 과정의 효율성, 간편성	접수 방식의 일관성과 편의성 확보 여부	제도 지원 및 의무 사항	처리 기간	심사 및 심의 위원 위촉	최종 의결 방식의 일관성 및 공정성	보완 및 재심의 요청 절차와 방식
발주 및 건축물 관리 업무 (n=44)	2.11	2.34	2.32	1.82	2.20	2.23	2.23
건축 설계 (n=52)	2.10	2.37	2.35	1.79	2.44	2.38	2.35
인증 컨설팅 (n=28)	1.50	1.86	1.86	1.21	2.07	1.71	1.82
인증업무 (n=18)	3.22	3.28	2.94	2.89	3.72	3.61	3.33
심사·심의 (n=31)	3.10	3.16	2.65	2.39	3.61	3.61	3.58
기타 (n=9)	2.78	2.78	3.11	2.33	2.78	2.78	2.67
전체 (n=161)	2.30	2.50	2.42	1.97	2.60	2.52	2.49

자료: 배설훈 외(2024), p.97 [표 3-14]

○ (인증기관 부족 및 편중) BF인증기관은 225년 11월 기준 전국 11개소에 그치며, 기관의 수도권 편중도 심각

〈표 4-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현황(2025. 11월)

구분	인증기관명	인증범위	지정 유효기간	소재지
1	한국장애인개발원	전체	'25. 9. 28. ~ '28. 9. 27.	서울시 영등포구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축물	'25. 9. 28. ~ '28. 9. 27.	경기도 성남시
3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건축물	'25. 9. 28. ~ '28. 9. 27.	서울시 중구
4	(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	전체	'25. 9. 28. ~ '28. 9. 27.	서울시 서초구
5	한국농어촌공사	건축물	'25. 9. 28. ~ '28. 9. 27.	전남 나주시
6	(주)크레비즈인증원	건축물, 공원	'25. 9. 28. ~ '28. 9. 27.	서울시 영등포구
7	(사)건축성능원	건축물	'25. 1. 1. ~ '27. 12. 31.	서울시 송파구
8	(사)한국건축사공기술사협회	건축물	'25. 1. 1. ~ '27. 12. 31.	서울시 금천구
9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공원	'23. 3. 28. ~ '26. 3. 27.	대구시 동구*
10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23. 3. 28. ~ '26. 3. 27.	서울시 송파구
11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건축물, 공원	'23. 3. 28. ~ '26. 3. 27.	서울시 광진구

주: 한국부동산원 본사는 대구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나, 인증 업무는 서울에서 진행한다고 보도됨(자료: 경북일보, “대구·비수도권 지자체 BF 인증절차 행정력·예산 부담 지속”, 2025. 2. 2.)
자료: 인증 기관 현황은 BF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내용 참고(최종 접속일: 2025. 12. 22.), 인증기관 소재지는 가장 최근 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정정 공고’ (2025. 11. 7.) 및 각 기관 홈페이지 참고

- 최근 10년간 인증기관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증 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추가된 신규 지정기관은 5곳에 그침
- ※ 2025년 대한건축사협회가 인증기관 신규 지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장애인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⁵⁸⁾

〈표 4-8〉 BF 인증기관 지정 추이

구 분	인증기관	지정(유효기간 3년)													비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인증 범위
1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기존										
2	한국장애인개발원	기존	변경		기존			기존			기존				• 확대('17): 전체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존			기존			기존			기존				• 건축물
4	(주)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신규			변경			변경			기존				• 확대('19) • 축소('22): 건축물
5	(사)한국건물에너지 기술원				신규			변경			기존				• 확대('22): 전체
6	한국농어촌공사							신규			기존				• 건축물
7	(주)크레비즈인증원							신규			변경				• 확대('25): 공원 추가
8	(사)한국환경건축 연구원	신규			변경			변경	기존						• 확대('20): 공원 추가 • 축소('22): 건축물
9	(사)한국녹색기후 기술원	신규				변경			변경						• 확대('20): 공원 추가 • 확대('23):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10	한국부동산원	신규				변경			기존						• 확대('20): 공원 추가
11	(사)건축성능원										신규				• 건축물
12	(사)한국건축시공 기술사협회										신규				• 건축물

자료: 배선헌 외(2024: 50) [표 2-15]에 최근 지정·인증범위 변경 내역을 추가함

- 인증기관 인력은 기관별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언론 보도 기고에 따르면 11개 기관의 전체 담당자 수는 10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짐⁵⁹⁾
-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관을 중심으로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BF인증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우 15인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기관의 경우는 3~6인 정도의 전담 인력을 두는 것으로 파악됨

58) 자료: 한국장애인신문, “[성명]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위협하는 건축전문가집단의 BF 인증기관 지정, 즉각 중단하라!-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25. 6. 17. (<https://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40>)

59) 자료: 중도일보, “[기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2025. 3. 16.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316010004409>)”,

〈표 4-9〉 BF 인증기관 인력 현황(2025년 12월 기준)

구분	인증기관명	인증 담당부서	담당(인)
1	한국장애인개발원(운영기관)	유니버설디자인 환경부 BF인증팀	15인 (※육아휴직자 제외)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BF인증팀	6인
3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녹색건축본부 건축안전인증센터 BF	-*
4	(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	BF인증센터 BF인증팀	-*
5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 농촌공간디자인부	3인
6	(주)크레비즈인증원	BF인증센터	-*
7	(사)건축성능원	BF인증원 BF인증센터	-
8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인증원 BF인증센터	-
9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건물평가인증부	5인*
10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	-*
11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1본부 BF인증부	-*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한국장애인개발원(2025, <https://www.koddi.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5, <https://www.kead.or.kr/>);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2025, <https://www.kpcqa.or.kr/>); (사)한국녹색기후기술원(2025, <https://www.kgct.or.kr/>); 한국농어촌공사(2025, <https://www.ekr.or.kr/>); (주)크레비즈인증원(2025, <https://www.crebizqm.co.kr/>); (사)건축성능원(2025, <http://www.kibp.or.kr/>); (사)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2025, <https://www.kpeaea.or.kr/>); 한국부동산원(2025, <https://www.reb.or.kr/>); (사)한국환경건축원(2025, <https://www.kriea.re.kr/>);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2025, <https://kege.or.kr/>)를 참고해 작성하되,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중 일부*는 배선헌 외(2024: 51) [표 2-16](2024년 1월 기준)를 참고

- (심사기준 모호성·비일관성) BF인증 심사기준에 유형별로 정성적 지표가 상당수 포함되어 심사 및 심의위원 판단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배선헌 외, 2024: 40~46)
- 인증 유형별로 정성적 지표 비율이 16.8%(도로)~29.0%(건축물)에 달함(배선헌 외, 2024: 40)
- 녹색건축 인증은 혁신설계 분야만 정성적 지표를 적용하며, 지능형건축물, 장수명주택 인증은 정성적 지표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심사기준의 모호성 문제를 예방하고 있는 점과 대별됨(배선헌 외, 2024: 71)

〈표 4-10〉 공원·여객시설·건축물 BF 인증기준 지표 분석(정량●/정성○) (배선헌 외, 2024)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매개시설	접근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의 확보	○	○	○
	종합안내소로의 접근	종합안내소로의 접근유도를 위한 동선 및 안내시설, 안내소의 설치 위치	-	○	-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	●	●
	단차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	●	●
	기울기	접근로, 보도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 평가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마감	○	○	○
	보행 장애물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의 연속성 확보와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원	여객 시설	건축 물
		뒹개	●	●	●
		차량 진출입부	-	●	-
		턱 낮추기	-	●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	●
		주차면수 확보	●	●	●
		주차면	●	●	●
		보행 안전통로	●	●	●
		안내 및 유도표시	●	●	●
	출입구	진출입 통제 계획	●	-	-
		공원입구와 보도와 의 경계	●	-	-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	●
		주출입문의 형태	-	●	●
		유효폭	-	●	●
		단차	-	●	●
		전면 유효거리	-	●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
		경고블록	-	●	●
	내부 시설	일반 출입문	단차	-	●
			유효폭	-	●
			전·후면 유효거리	-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통로/ 복도	유효폭	-	●
			단차	-	●
			바닥마감	-	○
			보행장애물	-	●
			손잡이	-	○
		계단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	●
			책면 및 디딤판	-	●
			바닥마감	-	○
			손잡이	-	○
			점형블록	-	●
		경사로	유효폭	-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원	여객 시설	건축 물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	●	●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	○	○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및 설치	-	●	●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굽기	-	○	○
	승강기	설치장소	승강기의 설치장소	-	○
		전면활동공간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	●
		크기(통과 유효폭)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	●
		유효 바닥면적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	●
		이용자 조작설비	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	-	●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시설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	-	●
		점자블록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	●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	○
유도 및 안내 시설	점자 블록	설치 위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점자블록 설치	-	○
		규격 및 재질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	○
	안내 설비	안내판설치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	●
		안내판의 정보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	-
		통합안내설비 (시각장애인)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와 적절성	●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	-	●
		경고시설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의 설치	○	-
	경보 및 피난 설비	시각·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 설비	비상시 시각·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시스템 및 청각경보시스템 설치	-	○
	접수대 및 안내소	설치장소	접수대 및 안내소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 난간 설치	-	○
		설치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소의 설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	●
위생 시설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유형별 대응방법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	●	●
		안내표지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	●
	화장실 접근	접근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	●
		바닥 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	○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환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	●
	대변기	칸막이출입문	출입문 유효폭, 형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설비, 손잡이 및	○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원	여객 시설	건축 물
		잠금장치 설치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	●	●	●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	●	●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	○	○	○
	기타설비	세정장치대변기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	●	●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	○
	세면대	형태	○	○	○
		거울	●	●	●
		수도꼭지	●	●	●
	욕실	구조 및 마감	-	-	○
		기타설비	-	-	○
	샤워기	구조 및 마감	-	-	○
		기타설비	-	-	○
편의 시설 및 기타 시설	접근 및 이용성	시설까지의 접근로	○	-	-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	-	-
	공원 시설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	-	-
	객실 및 침실	설치율	-	-	●
		설치위치	-	-	●
		통과유효폭	-	-	●
		활동공간	-	-	●
		침대구조	-	-	●
		객실 바닥	-	-	○
		유효폭 및 단차	-	-	●
		유효바닥면	-	-	●
		손잡이	-	-	○
		점자표지판	-	-	●
		설치높이(설비)	-	-	●
		초인등	-	-	●
	관람석 및 열람석	설치율	-	-	○
		설치위치	-	-	○
		구조	-	-	●
		열람석의 구조	-	-	●
	접수대 및 안내 데스크	설치위치	-	-	○
		높이 및 하부공간	-	-	●
	피난구	피난방법 및 위치	-	-	●
		피난의 구조	-	-	○
	임산부 휴게 시설	유효폭 및 단차	-	-	●
		내부구조	-	-	●
	기타	휴식공간	●	-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공원	여객 시설	건축 물
	설비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	●	●
		개찰구	통과 가능한 별도의 개찰구	-	○	-
			통과 유효폭	-	●	-
		비치용품	해당시설에 비치해야 하는 용품 비치 여부	-	-	●
		승강장	기울기	-	○	-
			바닥마감	-	○	-
			점형블록	-	●	-
			승강장과 차량간격	-	●	-
			스크린도어	-	●	-
			휠체어사용자의 승차 위치 표시	-	●	-
보행 연속 성	공원 내부 보행로	BF보행로의 지정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 지정	●	-	-
		보행안전 공간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	●	-	-
		단차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	-	-
		기울기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경사	●	-	-
		바닥 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	-	-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자전거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	●	-	-
		보행유도의 연속성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	-	-
		종합평가			5%(평가항목의 총점기준)	○
계	정량적 지표			32	52	66
	정성적 지표			13	23	27

자료: 배선헌 외(2024: 40~46) [표 2-13]

- 건축사가 경험한 불합리한 BF 인증심의 사례를 다룬 한 기사에 따르면 심의 시 기준치 이상의 설계 요구, 심사 범위 이외의 의견, 주관적 해석 등이 주된 문제로 불거지는 것으로 나타남⁶⁰⁾

60) 자료: 서울건축사신문, “BF인증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 사례 및 개선점”, 2024. 7. 26.

참고

BF인증 심의 시 불합리 사례 (서울건축사신문, 2024)

- 사례 1.** 경사지에서 외부 휴게공간으로 나가는 작은 출입문을 설계했는데, 일반인들이 편의상 사용할 수도 있는 문임에도 불구하고, BF인증 의무화 대상이라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문은 설치할 수 없어 문을 아예 없애 버렸다.
- 사례 2.** 지형 특성상 경사면 데크를 만들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여 계획이 엉망이 되고 말았다.
- 사례 3.** 지하 소규모 선관에 1층으로 연결되는 900mm 폭의 계단을 설계했는데, 심의에서 유효 폭 1,200mm 이상 계단을 요구하였다. 협소한 공간이라 결국 계단을 없애고, 비상 탈출 사다리대로 대체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례 4.** 외부 경사로를 1/18 이상으로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9 이상을 요구하여, 이에 맞춰 경사로를 변경했더니 이후 수평 동선이 좁아져 모든 사람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다. 1/19 이상을 요구한 이유는 시공 오차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 사례 5.** 공공건물의 내부 각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계하고, 외부 20평 정도의 임대공간에 작은 직원용 화장실을 설계하였으나, 남녀가 구분되는 장애인 화장실을 넣으라는 심의 의견을 받았다. 화장실을 계획할 경우 임대면적의 절반을 차지하여, 모든 화장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 사례 6.** 외부 주차장이 2개의 레벨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레벨에서 건물로 진입이 가능하고,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레벨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외부 주차장에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요구하여, 계획안의 디자인 변경은 물론 불필요한 공사비 증가를 초래하였다.
- 사례 7.** 소규모 공공시설 현상설계의 경우 설계 기간이 6개월인 경우가 많으나, BF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7-8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설계기간의 연장은 물론 사업 지연을 초래하였다.

자료: 서울건축사신문(<http://www.siranews.co.kr>), “BF인증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 사례 및 개선점”, 2024. 7. 26.

○ (인증 수수료 문제) BF인증 수수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⁶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으며, 사후관리비가 별도 책정되지 않고 본인증 간접경비에 포함되는 등 수수료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배선헌 외, 2024: 178)이 제기됨

〈표 4-11〉 BF인증 수수료_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 원)

구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 설, 도로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 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125(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 비용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 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6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시행 2022. 4.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 2022. 4. 1., 일부개정] 시행 2022.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2022. 4. 1., 일부개정]

구분	지역 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고
	10만㎡이상~ 200만㎡미만	200만㎡이상~ 300만㎡미만	300만㎡ 이상	교통수단, 여객시 설, 도로	
간접비	9	9	9	6	위 비용3%
교통비	120	120	120	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429	429	429	286	

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시행 2022. 4. 1.] [별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제4조 관련)

〈표 4-12〉 BF인증 수수료_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만 원)

구분		300㎡미만 (제1구간)	300㎡이상 ~ 1,000㎡미만 (제2구간)	1,000㎡이상 ~ 3,000㎡미만 (제3구간)	3,000㎡이상 ~ 10,000㎡미만 (제4구간)	10,000㎡ 이상 (제5구간)
본인증	기준 수수료	4,03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 인증	기준 수수료	2,060,000**				
	적용 요율	0.5	0.8	1.0	1.2	1.5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일까지 1.25요율 적용(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주1: 본인증 기준 수수료(4,030천 원) = 인건비[서류 및 현장심사 750천 원(250천 원×3인) + 심의비 750천 원(150천 원×5인) + 행정인건비 1,000천 원(224천 원×1인×15일×0.2, 224천 원×1인×15일×0.1)] + 기술경비 500천 원(인건비×0.2)+교통비(50천 원×5인)+간접경비(사후관리비 포함) 780천 원(인건비×0.3)

**주2: 예비인증 기준 수수료(2,060천 원)=인건비[서류심사 750천 원(250천 원×3인) + 심의비 750천 원(150천 원×5인)+ 행정인건비 330천 원(224천 원×1인×15일×0.1)+기술경비 180천 원(인건비×0.1)+간접경비 50천 원(※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 원 추가)

자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시행 2022. 4. 1.] [별표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제4조 관련)

- 다른 유사 인증에 비해 BF 인증 수수료가 적어 인증기관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심사원을 배치하게 된다는 현장 의견도 제기⁶²⁾

62) 자료: 건축사신문, “BF 인증 받는데만 1년…전국 BF 인증기관 9곳뿐, 인증 신청 몰리는데 관리감독 없어 ‘인증 지연 무방비’”, 2024. 6. 28.

BF 인증 받는 데만 1년…전국 BF 인증기관 9곳뿐, 인증 신청 물리는데 관리감독 없어 ‘인증 지연 무방비’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수수료 적어 녹색건축 인증 등
다른 인증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심사원 배치 현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수수료가 적어 다른 인증업무에 비해 심사원을 적게 배치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예비인증과 본인증은 각각 허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준공 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증이 지연되면 공정 자체가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략)

구분	BF인증	녹색건축 인증
인증 수수료	3,000~10,000㎡ 미만 예비인증: 247만 2천 원 본인증: 483만 6천 원	- 3,000~5,000㎡ 미만 : 590만 원 - 5,000~10,000㎡ 미만 : 90만 원 ※ 예비인증/본인증 동일함

자료: 건축사신문, “BF 인증 받는 데만 1년…전국 BF 인증기관 9곳뿐, 인증 신청 물리는데 관리감독 없어 ‘인증 지연 무방비’”, 2024. 6. 28

3. 규제 개선방안 및 지방이양 추진방안

□ BF인증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과 정부 간 역할 조정 필요

○ BF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BF인증규제는 현재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BF인증기관은 부족하고 수도권에 편중돼 있으며, 심사기준이 비일관적이고 모호해 심의과정의 예측가능성이 낮아 인증지연으로 인한 지역 현장의 비용부담이 커지는 상황

- BF인증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지체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정부와 민간 이해관계자의 제도개선 건의가 증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와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자 함

- 앞서 살펴본 인증기간 과다,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심사기준의 비일관성 및 모호성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기존 선행연구, 지방정부 건의내용, 기존에 발의된 의안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함

○ 아울러, BF인증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에 대한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BF인증규제 사무의 지방이양 방안 또한 검토함

-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BF인증제도 운영 총괄 소관 부처로서, 2년마다 업무 수행을 교대로 하고 있는데, 시설 유형 차이로 인해 두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총괄 주체의 이원화는 효과적인 제도운영과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행정기관과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임

제20대 국회 제371회 (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14.)

- **장정숙 위원:** 장관님, 오늘 상정한 법안 중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BF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선 올해 기준 의무인증 대상 1,400건 중에서 367건, 전체 26% 가량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 이후 의무인증 대상이 이렇게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지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인증 활성화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BF인증을 두 부처가 나눠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혼선이 생긴다거나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복지부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장관님께서 어려운 사항이 혹시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짧게?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서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료: 국회의의록 누리집(<https://record.assembly.go.kr/>)

- 제도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BF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하여 인증기관의 관리·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유일한 BF인증 운영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기존 BF인증 업무에 추가된 운영기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업무 가중, 편파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⁶³⁾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21. 6. 8.]

□ 먼저, 지역 공통의 애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검토가 필요한 BF인증규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인증절차 효율성 제고) BF인증기관 확대 및 전문인력 확보가 근본적 대책일 것이나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인증절차를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

- (소규모건축물 심사절차 간소화) 배선헤 외(2024) 연구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연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인증기관 내부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에서 심사를 진행

63) 자료: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②”, 2023. 8. 11.

함으로써 심사단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질을 표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배선헌 외, 2024: 189-191)

- **(본인증 및 예비인증 일관성 확보)** 예비인증에서 논의되지 않은 기준이 본인증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예비인증과 본인증의 심사단 구성을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증은 예비인증에서 주문한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명확화할 필요
- **(정량지표 중심의 인증기준 개편)** 인증기준을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하고, 불가피하게 정성지표가 필요한 부분은 매뉴얼 제작을 통해 최대한 자의적 해석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디지털 기반 통합운영시스템 운영)** 배선헌 외(2024)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BF통합운영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하여 인증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경우, 인증 업무의 신속한 수행과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를 공히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배선헌 외, 2024: 194)
- **(인증 허용 오차 범위 명확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규칙」⁶⁴⁾에서와 같이 허용되는 시공 오차를 명확히 하여 과도한 재시공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2024)는 계단의 단높이 및 너비, 휠체어 회전 반경, 복도 폭 등과 관련하여 허용 오차를 마련할 필요성 제시
- **(BF인증 기성품 사용 시 해당 지표 평가 제외)** BF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자재 등 기성품을 사용할 시 해당 지표는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결과의 예측가능성도 높일 필요

64)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퍼센트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퍼센트 이내
반자높이	2퍼센트 이내
벽체두께	3퍼센트 이내
바닥판두께	3퍼센트 이내

○ **(인증수수료 현실화)** 타 인증에 비해 낮고 물가 상승분 반응이 어려운 인증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편하고 재심사 수수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해야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 참여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참여 인력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본인증 산식에 사후관리비를 항목으로 명확히 할 필요(배선헤 외, 2024: 195)

□ 상기한 제도 개선 전제 하에, 근본적으로는 BF인증 사무의 지방이양을 고려할 필요

○ 인증 심사기준이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되고,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대폭 감소하는 경우, BF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사무는 지방정부에서 더욱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BF인증 사무의 지방이양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BF인증 의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더 확대될 예정임. BF인증기관이나 전문인력 등 인증 인프라를 단시간 내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개 중앙행정기관과 1개의 BF인증 운영기관, 11개의 BF인증기관이 전국의 모든 수요에 대응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고,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의 BF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입법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중앙정부 중심 운영의 한계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24. 11.)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대상시설이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제공〉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092호))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이라 함) 의무가 없는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일정 수준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건축기준의 완화)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제10조의2에 따른 예비인증을 신청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참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 (2025. 2.)
 〈법인이나 개인이 BF 인증을 받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김예지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21호))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인이나 개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이라 함)을 받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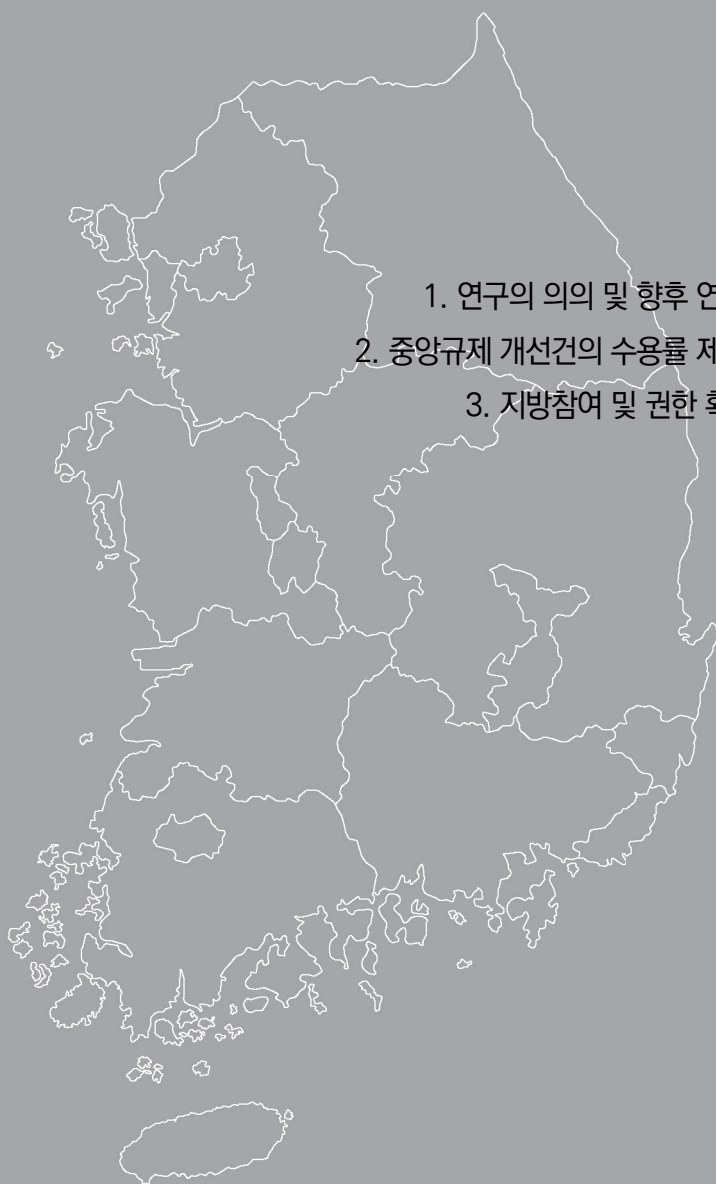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13조(설치의 지원) ①② (생략) 〈신설〉	제13조(설치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인이나 개인이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현장 여건과 시설의 특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면 중앙정부보다는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BF인증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정량지표 중심으로 인증기준이 개편되고 매뉴얼이 마련되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대폭 완화되며, 심의 진행 과정이 공개되는 디지털 기반 통합운영플랫폼이 마련되는 경우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더라도 표준화되고 예측가능한 제도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BF인증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가 포괄적으로 BF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BF인증제도 관련하여 정부 간 역할은 다음과 같이 조정될 필요

- 중앙정부는 BF인증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의 마련,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의 BF인증에 관한 인센티브 적용 시 필요한 재원의 마련, BF인증 디지털 통합운영플랫폼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지방정부는 BF인증 사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갖고, 현장 여건에 맞게 인증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이양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무와 더불어,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이전과 인력 보강이 필수적임

제5장 |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2. 중앙규제 개선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3. 지방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5장 |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1) 연구의 의의

- 이 연구는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규제현안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현안을 확인하였다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음
 - 지금까지 규제개혁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으며, 지방정부는 규제 집행의 현장에서 제기되는 개선 건의들을 취합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음
 - 건의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규제개혁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부족했고, 지방의 규제 애로에 관한 지방정부 간 논의의 장 또한 부족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규제현안에 관한 상호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음
 - 대한민국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는 각 시도연구원 연구진이 해당 시도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적인 규제현안을 100건 발굴하였으며, 이 중 전국적인 현안, 권역이나 지역 특성별로 공동 해소 추진이 가능한 현안들을 상당수 발굴하였다는 데 일차적 의의가 있음
- 지방정부 공동 현안을 선정하는 기준을 논의하고 전국 공동 현안을 시범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규제혁신 관련 협력을 위한 참고사례를 제시함
 - 발굴된 규제현안 가운데 지방정부 공동으로 개선을 건의할 만한 현안을 선정하는 기준과 접근 방법에 관해 논의함
 - ① 우선 실현 가능성 높은 과제를 추진하고, 이해 갈등이나 체계적 조사 연구가 필요한 안건은 중장기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
 - ② 여러 지역에서 애로를 겪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
 - ③ 자치분권 패러다임에 맞는 현안을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성
 - ④ 민원성 요구가 아니라,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안건을 선정할 필요성을 확인함
 - 발굴된 현안 중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규제’를 선정하여 규제의 내용,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시범적으로 분석함
 - 그러나 공동 현안에 관한 시범 분석은 물리적 한계로 인해 주로 문헌연구와 자료분석,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데 그침

- 해당 현안에 관한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연구진 간 지속적인 토론·숙의의 과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의 규제현안과 공동으로 추진할 만한 안건을 확인하고, 안건 발굴 방식·개선 방안 도출 방법 등에 관해 상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음
- 이후에는 향후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대략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함

2) 향후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1)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 중심의 연구협력 체계 구축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협력 체계의 필요성

- 지방규제혁신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일회성 연구를 넘어 지속적·체계적인 연구협력 체계 필요
 - 수년 주기로 지역의 핵심 규제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할 만한 안건을 발굴하여,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연구원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지속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 정례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학습 및 연구네트워크 강화, 관련 자료원의 체계적 축적을 통한 지방규제혁신역량 강화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 규제 실태와 집행 현실에 가장 근접한 시·도연구원이 연구의 중심 주체로 기능할 필요
- 중앙-지방 규제 정책 수립 시 실질적 자문을 수행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

□ 지방규제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정립

-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지방규제 연구 플랫폼으로 설정
- 공동 연구의제 설정 및 연구 방향 조정 등 총괄 역할
- 혁신 대상 규제 판정 기준의 공동 마련
- 전수조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의 표준화
- 시·도별 연구 결과의 비교·종합 및 확산
-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등 관련 기구와의 연구 및 실무협력 추진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발굴한 공동 의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대한민국시도연구원협의회에서 실시하거나, 대한민국시도연구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규제개선방안을 협의체를

통해 중앙에 효과적으로 건의하거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 공동의 규제현안에 관한 공론화를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실무 협력 가능

□ 이원적 트랙 운영 및 분야별 워킹그룹 구성

- ‘권역·지역 특성별 규제현안 공동 분석’과 협의회 차원의 ‘전국 공통 규제 공동 분석’ 정례화
 - 농·어촌 지역, 섬 지역 등 지역 특성별로 공통된 규제 현안 또는 중부내륙권, 수도권 등 권역의 공통 규제현안을 공동 분석하여 개선 추진하는 트랙을 운영하되, 공통 현안의 존재 여부나 개선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협력 추진
 - 전국 차원의 규제 현안 개선을 추진하는 트랙의 경우, 상기한 바와 같이 추진 주기(예: 3년)와 방식 등을 협약을 통해 일정 수준 제도화하여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속적인 연구협력 기반 조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신산업, 환경, 보건 등 특정 분야별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연구의 깊이와 활용도 제고

(2) 수요자 체감 중심의 ‘퀵윈(Quick-Win)’ 전략 및 혁신 효능감 제고

□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적 규제혁신 전략

- 지방규제혁신 초기 단계에서는 정비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 내 성과가 확인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
- 규제권한 이양이나 구조적 제도 개편은 난도가 높아 성과 가시화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 초기 성과 부재는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효능감 저하로 이어질 우려

□ 사문화 규제 및 중복규제 정비를 핵심 축으로 한 단계적 접근 전략

- 사문화 규제
 - 환경·기술 변화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
 - 법적·정책적 저항이 낮아 신속한 정비 가능
 - 정비 즉시 행정 절차 간소화 효과 발생
- 중복규제
 - 동일 행위·대상에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경우
 - 통합·간소화를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감소 효과 창출
 - 목적·구조는 유사하나 적용 범위가 다른 유사규제와는 구별하여 접근 필요

- 사문화 규제와 중복규제 정비는 행정 내부 효율성 제고를 넘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 가능

□ 효능감 제고 및 확산

- 작고 빠른 성공 우선: 거대 법령 개정 이전에 지침 변경이나 적극 행정만으로 즉각 해결 가능한 '그림자·행태 규제'를 최우선 정비하여 '성공 경험' 축적
- 규제에 대한 체감 부담 감소를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
- 체감형 성과 확산: 인허가 서류 간소화, 불필요한 증빙 폐지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불편을 신속 해결하여 혁신의 효능감(Efficacy) 제공 및 지지 기반 확보
- 영국 RIO 모델 벤치마킹: 규제혁신실(RIO)과 같이 승인 시간을 50% 단축하는 성과를 도출하여 기업에 확실한 혁신 신호를 전달
-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연계 가능성 확대

(3) 소결

□ 시·도연구원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연구 체계를 기반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연구협력 추진

- 사문화 규제와 중복규제 등 정비 가능성이 높고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
-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효능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규제개혁으로 확산

□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 주민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 기대

□ 이하에서는 지방규제혁신과 중앙규제 권한 이양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함

- 2절에서는 이번 공동연구의 시사점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규제 개선 건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3절에서는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2. 중앙규제 개선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중앙규제 개선 추진체계 및 과제 처리 현황⁶⁵⁾

□ 추진체계 개요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행 중앙규제 개선 체계는 지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 및 조정 과정을 거쳐 규제를 해소한 뒤 환류하는 순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현행 중앙규제의 개선 추진체계는 1단계 규제발굴, 2단계 규제검토(관계기관 협의), 3단계 규제해소, 4단계 규제개선 및 환류의 4단계 체계로 구축되어 운영 중임

□ 추진체계 단계별 주요 내용

○ 첫 번째 단계는 규제발굴 단계로 지역 현장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검토하여 공식적인 규제개선 과제로 전환하는 단계임

-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규제 애로를 파악하는 단계로 규제발굴 방법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발굴과 대국민 공모에 의한 발굴 방식으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내부 검토를 거쳐 반기별로 행정안전부로 제출됨
- 이와 함께,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은 2016년부터 실시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하며, 이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방법임

○ 두 번째 단계는 규제검토(관계기관 협의) 단계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건의의 논리를 보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건의 과제를 취합 및 검토하여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송함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건의의 논리를 보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건의 과제를 취합 및 검토하여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이송함
- 행정안전부로 이송된 규제개선 과제는 곧바로 소관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아닌 행정안전부 및 전문가 등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규제 개선의 타당성,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별함
- 또한, 선별된 규제개선 과제 중 지역의 핵심 현안과 관련되거나, 대외적으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핵심과제로 별도로 선정함
- 이러한 규제검토 단계에서의 소관 부처 협의과제 선별, 핵심과제 선별 등의 과정은 단순한 규제개선 과제의 분류가 아닌 규제개선이 필요한 실질적인 규제 과제를 선별하고 핵심적인

65) 자료: 정기용 외(202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연구. pp. 32-34.
전대욱 외(2024). 지방규제혁신 전략방안 마련 연구. pp. 32-35.

규제 관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함임

○ 세 번째 단계는 규제해소 단계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중 선별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 등과 협의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실제 법령 등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임

- 소관 부처 협의 과제 및 핵심과제로 선정되면 해당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 중 하나로 결정되며,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필요시 규제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협의회 방법을 통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규제해소 단계에서 소관 부처는 규제개선 과제를 불수용 결정을 하였으나, 해당 규제의 개선 필요성 및 효과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안전으로 상정되어 해당 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조정을 수행함
- 2023년 5월 출범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관으로 중앙부처 규제에 대한 전문적 검토 및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여 규제개선을 권고함

○ 네 번째 단계는 규제개선 및 환류 단계로 개선이 수용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된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 사례 평가 등의 성과 확산을 실시하여 규제개선의 동력을 지속하는 단계임

- 규제개선이 수용된 과제라도 실제 법령의 개정 등 후속 조치까지는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해당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는 현상이 발생함
- 따라서, 수용된 규제개선 과제의 실제 법령의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었는지 이행 실태를 점검함
- 이와 함께, 지방규제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 노력을 평가하여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처리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통해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총 9,144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되었으며, 2019년 1,981건에서 2020년 2,309건, 2021년 2,445건, 2022년 2,409건으로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발굴된 과제가 매년 2,300건 이상으로 나타남(정기용 외, 2023: 34-35)
- 2025년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2,525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가 건의됨(상반기 1,119건, 하반기 1,406건)(정기용 외, 2025)

〈표 5-1〉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처리 현황

연도	발굴 건수	협의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불수용 건수	불수용률
2019	1,981	1,127	435	38.6%	692	61.4%
2020	2,309	1,270	386	30.4%	884	69.6%
2021	2,445	1,170	317	27.1%	853	72.9%
2022	2,409	888	276	31.1%	612	68.9%
합계	9,144	4,455	1,414	31.7%	3,041	68.3%

자료: 정기용 외, 2023, p.35

○ 총 9,144건의 중앙규제 개선 과제 중 규제검토 단계에서 해당 과제의 사실관계 및 법령 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소관 부처와의 협의 과제는 4,455건으로 나타나 전체 규제개선건의 과제 중 48.7%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총 1,981건의 발굴 과제 중 1,127건의 과제(56.9%)가 협의 과제로 선정되었으나, 2020년에는 1,270건(55.0%), 2021년에는 1,170건(47.9%), 2022년에는 888건(36.9%)이 협의 과제로 선정되는 등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관 부처 협의 과제는 감소하고 있음

- 소관 부처 협의 과제의 감소는 발굴된 규제개선건의 과제가 사실관계 및 법령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 불분명, 법령 검토 부실, 단순 민원 제기 등 소관 부처와의 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함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수는 증가하는 반면, 소관 부처와의 협의 과제가 감소한다는 점은 규제개선 과제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 해당 규제개선 과제의 질적 수준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함

2) 중앙규제 개선건의 체계 문제점⁶⁶⁾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수용률 및 수용 과제 현황

○ 지방규제혁신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인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률은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 소관 부처 협의 과제 중 개선이 수용된 과제의 비율(수용률)은 2019년 38.6%에서 2020년 30.4%, 2021년 27.1%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022년 31.1%로 소폭 반등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소관 부처 협의 과제 중 31.7%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협의 과제 중 30% 초반 수용률의 의미는 나머지 약 70%의 소관 부처 협의 과제가 불수용되어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규제로 남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임

66) 자료: 전대욱 외(2024). 지방규제혁신 전략방안 마련 연구. pp. 36-44.

정기용 외(202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연구. pp. 133-147.

- 특히, 수용된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수를 살펴보면 2019년 435건에서 2020년 386건, 2021년 317건, 2022년에는 276건으로 감소함
 - 2023년에는 163건의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가 수용됨⁶⁷⁾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의 수용률은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 과제 건수 자체가 감소하여 수용률이 3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며, 실제로는 수용된 과제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의 수용률 및 수용된 과제 수의 감소는 규제개선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규제개선 분석서의 품질 문제와 관련됨
 - 현재 지자체가 작성하는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현황, 문제점, 관련 법령, 개선 방안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의 체계성 및 전문성이 미흡함
 - 특히,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전문성이 부족함
 - 또한, 규제개선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등 해당 중앙규제 개선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여 전문적 규제개선건의가 아닌 단순한 문제점 제시 등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정기용 외, 2023: 133-135)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용률 및 수용되는 과제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지자체의 행정력 투입 대비 성과 효율성이 낮은 것을 의미함
 - 수용률 저조 및 수용 과제 수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규제 개선 추진체계의 첫 번째 단계인 규제발굴 단계에서부터 규제검토 및 규제개선 및 환류 단계까지 내재되어 있음

□ 규제발굴 단계 구조적 문제점 검토

- 규제발굴 단계에서의 중앙규제 개선건의 수용률 저조 및 수용되는 과제 수가 감소하는 원인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채널의 부족 및 편중,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에 따른 중복 및 유사 개선 과제의 반복 건의, 건의서 작성의 미흡에 따른 설득력 부재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음
- 첫 번째 문제점은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채널의 부족 및 편중으로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경로가 관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발굴되고 있으며, 국민이 쉽게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미흡함
 - 현재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는 지자체 주도로 반기별로 정형화된 방식으로 진행됨
 - 이러한 지자체의 관 중심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방식은 실제 주민, 소상공인 및 기업 등이 현장에서 인식하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특히,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지자체의 담당자는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67)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4.2.7.).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성과평가, 실적을 위한 건의가 이어짐

- 또한, 주민 등이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대국민 공모전’은 홍보 부족 및 낮은 접근성으로 활용도가 부족하며,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지자체 내 홈페이지 등에 규제개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이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데 혼란을 가중시킴

○ 두 번째 문제점은 정보 공유 시스템 부재에 따른 중복 및 유사 중앙규제 개선 과제의 반복 건의로 지자체 간 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의 이력과 수용 및 불수용 등 처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이 부재함

-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검토하여 건의할 뿐, 동일한 불합리한 규제 요소를 타 지자체에서 건의를 진행한 여부, 결과, 결과의 의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유사 규제개선건의 과제가 빈번하게 건의됨
-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불수용 결정된 유사 규제 사례에 대해 새로운 규제개선 사례인 것처럼 발굴 및 검토를 실시한 뒤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동일 및 유사한 규제개선건의 과제가 반복 접수됨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며, 실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신규 규제개선 과제 및 복잡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낭비하게 됨
-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부재는 규제개선건의 전체에 대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 피로도를 제고시켜 전반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저하 및 규제개선건의 분석서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짐

○ 세 번째 문제점은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품질 저하로 중앙규제 개선의 논리 전문성 및 객관적 입증 자료 증빙이 부족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적 분석인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도입된 이후 규제의 목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점을 보임
- 따라서, OECD 주요국 및 국내에서도 규제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규제사후영향평가를 도입 및 실시함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개선을 건의하는 중앙규제는 개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한 건의 분석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므로 순환보직 및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규제의 법적 쟁점,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지 못하고 단순 대안만 제시하는 수준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되어 규제개선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부족하므로 규제개선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완결성이 결여됨

□ 규제검토 단계 구조적 문제점 검토

- 첫 번째 문제점은 건의된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검토 및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이 부족함
 - 중앙규제 개선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지만, 지자체 검토 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함
 - 특히, 지역 주민의 민원과 사업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개선건의에 대해서도 지자체 차원의 공청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갈등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 없이 도출된 내용을 건의하여 실제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함
 -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은 실제 소관 부처 핵심과제로 선별되어 규제개선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두 번째 문제점은 규제 전문가, 해당 산업 전문가 및 기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전문가 의견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거나 타 지자체 간 규제 사례가 상충되는 과제가 발굴되어 건의됨
 - 해당 규제개선 과제는 규제검토 및 소관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등으로 결정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함

□ 규제개선 및 환류 단계 구조적 문제점 검토

- 첫 번째 문제점은 수용된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실제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되기까지의 이행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소관 부처가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를 수용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 이러한 현상은 기술·시장 등의 환경은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나 규제는 개선건의부터, 검토, 해소 및 이행까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적기에 규제가 해소되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이 심화되어 규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는 등 규제 정비 지연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
- 현 행정안전부 중앙규제 개선 추진체계에서는 건의 과제에 대해 ‘수용, 장기검토, 불수용’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용된 규제개선이 실제 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검토하는 이행관리 체계가 부족함
 - 행정안전부가 이행관리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나 개정 지연 및 중단 등에 대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촉구제도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 특히, 규제개선이 수용된 과제 중 입법 과정에서 내용이 축소되거나 폐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행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됨

- 두 번째 문제점은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의 기능 부족으로 중앙규제 개선의 성과를 측정하고 정책에 환류하는 시스템의 기능 부족으로 신속한 규제개선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함
- 매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제개선 노력에 투입되는 행정력에 비해 인센티브 규모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부족함

〈표 5-2〉 중앙규제 개선건의 체계 문제점

구분	문제점	주요 내용
규제발굴 단계	규제개선 과제 발굴채널 부족 및 편중	- 관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주민, 기업 등 현장에서 인식하는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	- 중복 및 유사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반복 건의 - 규제개선 과제 결과 정보 공유 부족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 피로도 증가
	규제개선건의 분석서 품질 저하	- 중앙규제 개선의 논리 전문성 및 객관적 입증 자료 증빙 부족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단순 대안 제시하는 수준 등으로 규제개선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완결성 결여
규제검토 단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 중앙규제 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조정 노력 부족 - 규제개선건의 과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 협의 없이 도출된 내용을 건의
	전문가 의견 검토 부족	- 규제 전문가, 해당 산업 전문가 및 기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 검토 절차의 부재 - 상위 법령 입법 취지 위배 및 타 지자체 간 규제 상충 등 문제 발생
규제개선 및 환류 단계	규제개선 과제 이행관리 시스템 부재	- 수용된 소관 부처의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에 대한 개정 이행관리 시스템 부족 - 기술·시장등 환경 발전속도 대비 규제 정비 지연으로 규제 자체 현상 심화로 규제 형평성 논란
	성과평가 및 환류 기능 부족	중앙규제 개선 성과 측정 및 정책 환류 시스템 기능 부족

3) 제도 개선방안

□ 제도 개선방안 개요

-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선건의가 소관 부처에서 불수용 결정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수용률 제고 및 수용 건수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관 주도의 획일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 채널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및 기업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채널의 다각화, 중복 및 유사 규제개선건의 과제의 반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통합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규제개선 과제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개선건의 분석서 품질 제고 등을 제도화하여 규제개선 추진 체계인 발굴-검토-해소-환류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채널의 다각화

- 관 중심의 획일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소상공인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
 - 현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체계는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적을 위한 발굴이 중심이므로 실제 주민 및 기업 등이 겪는 문제점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지역 주민,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상공회의소 등 지역 내 규제개선 수요자와 지자체가 정례적인 운영 협의회를 구축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현재의 주요 규제 발굴 방법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반기별에서 월간 등의 단위 또는 상시 운영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 현 반기별 운영에서 월간 또는 상시 운영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개선건의 과제 수가 현재와 비교하여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실적 중심의 발굴이 아닌 행정 접근성이 낮은 주민 및 기업의 규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는 규제개선 수요에 의한 발굴로 체계 전환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체계 도입이 필요함
 - 언론보도, 소셜미디어, 민원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및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개선을 추진하는 ‘지능형 규제 발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함
 - 이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연관성 및 직관에 의존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이 아닌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우선하여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됨

□ 중앙규제 개선건의 통합 플랫폼 구축

-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규제 개선건의 이력, 중앙부처의 수용 및 불수용 등의 의견, 법령 해석 결과 등을 통합하는 범정부 ‘지방규제개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지자체 담당자는 신규 중앙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기 전 통합 플랫폼 내 검색을 통해 유사 및 중복 사례의 여부, 과거 불수용 사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함(사전 진단 검토 여부 확인)
 - 과거 불수용 사례에 대한 의견을 학습하고 논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보강하여 규제개선을 재건의 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 불수용 확정된 사례를 재건의하는 규제개선 중복 건의를 차단할 수 있음
- 규제개선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개선 활성화가 가능함
 - 수용된 규제개선 사례의 건의 분석서 내용 구성, 타당성 검토, 입증 데이터 등의 논리 체계가

플랫폼에서 공유되면 타 지자체는 해당 사례를 학습 및 벤치마킹하여 유사 사례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활성화가 가능함

□ 규제검토 단계에서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 보완

○ 규제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의 확대가 필요함

- 지자체에서는 중앙규제 개선건의 전 지자체 차원에서 해당 규제개선에 따른 갈등 영향 검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갈등 영향 검토 등을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합의된 규제 대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규제개선건의 분석서에 첨부하여 소관 부처가 이해관계자 반대 등을 이유로 해당 규제개선건의 과제를 불수용 결정하는 사례를 방지함
- 특히, 갈등 영향 검토, 공청회 또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안을 도출한 사례는 지방규제 우수사례 평가 등에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성과평가 체계 개편과의 연계가 필요함

○ 전문가 참여를 통한 규제개선건의의 객관성 및 논리성 검증이 필요함

-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내 규제 전문 검토 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하여 규제개선건의 과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개선 효과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는 지역 연구원(시·도 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단계부터 협업하여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의 관점에서 논리적 허점을 보완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건의 과제의 논리적 완결성 제고가 필요함

□ 실질적 규제개선을 위한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 규제개선의 이행 여부를 검토 및 관리할 수 있는 ‘이행관리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관 부처가 규제개선을 수용 결정한 이후 실제 법령 개정안 발의 등 규제개선 추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규제개선 수용 결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실질적인 규제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규제 혁신위원회가 개선 조치 이행을 권고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단, 조치 이행 권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역할 강화 노력 선행이 필요함
- 소관 부처가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개선 조치 이행 권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개선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이를 통해 규제의 공백 상태인 규제 지체 현상을 해소하여 규제의 형평성 및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중앙규제 개선 활성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개편

- 현재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등 일회성 포상금 지급 방식이 아닌, 규제개선 수용률 및 이에 따른 지역 내 효과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가점을 확대하거나 특별교부금을 확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
 - 규제개선 노력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혁신과 관련된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등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함
- 적극적인 면책 및 성과평가 가점 확대 등의 제도 개편이 필요함
 - 규제개선을 위해 건의 분석서 작성, 타당성 검토, 규제개선 논리 보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규제개선의 수용을 이끌어 낸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는 성과평가 등에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사 제도 개편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절차상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확대·적용하여 법적 보호를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표준 체계 도입 및 전문성 보완⁶⁸⁾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규제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 양식을 활용함
 -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의 작성항목은 크게 필수항목(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관련법 개정안, 개선효과)과 선택항목(추진경과, 기업 현황, 현장사례, 전문가 의견 등)으로 구분됨
 - 다만, 현재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의 작성 필수항목에는 규제개선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작성항목이 부재하여 개선효과 항목에서 개선 필요성을 주장함
 - 분석서 양식은 제공되고 있으나, 각 항목을 어떻게 작성해야 소관 부처 등을 설득하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수 작성 예시’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지 않음
 - 따라서, 유사한 규제개선 건의 사례이지만 개선건의 분석서를 작성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 역량 또는 경험의 정도에 따라 분석서의 논리적 완성도와 품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함
- 지자체 공무원이 정량적 분석을 사용하지 않아도 논리적 흐름과 이해관계자 조정 및 규제개선 효과성 검토에 초점을 맞춰 규제개선 건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현재 양식의 작성항목 개선이 필요함
 - 개선된 규제 개선건의 분석서는 기본 작성항목(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명칭,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공표일 및 시행일)을 제외하고 총 6가지 항목(현황, 문제점 및 규제현황, 규제목적,

68) 자료: 정기용 외(202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연구. p. 135-136, 148-151.

정기용 외(2025).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p. 97-98

- 이해관계자 검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규제개선 효과성 검토)으로 구성됨
- 첫 번째 항목인 현황은 규제와 관련된 해당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부 정책 등을 검토하는 항목으로 규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 두 번째 항목은 문제점 및 규제현황으로 현행 규제 법령 등을 검토하여 규제 내용과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사각지대,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항목임
 - 세 번째 항목은 규제목적으로 해당 규제의 입법 취지와 안전, 경제, 공익 등의 보호 법익을 검토하여 규제의 존속 및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항목임
 - 네 번째 항목은 이해관계자 검토로 규제자,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대상의 입장을 검토하여 규제의 문제점과 갈등 상황 등을 검토함
 - 다섯 번째 항목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로 규제개선을 통한 법령의 개정안과 지침 개선 방안, 신·구 조문 대비표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함
 - 여섯 번째 항목은 효과성 검토로 현행 규제 유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규제개선에 따른 편익을 비교 형량하여 규제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함(정성적 방법, 논리 강조)

〈표 5-3〉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양식 개선방안

작성항목	주요 내용	비고
기본항목	• 규제개선 건의분석서 명칭,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공표일 및 시행일	규제개요
현황	• (산업 현황) 해당 분야의 시장 규모, 운영 실태 등 • (정책 현황) 관련 정부 정책, 지원제도 등	배경 이해
문제점 및 규제현황	• (규제현황) 해당 규제의 근거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문제점) 법령과 현실의 괴리, 형평성 문제, 과도한 규제, 규제 사각지대 등	규제 진단
규제목적	• 해당 규제가 도입된 입법 취지 및 보호 법익 • 규제 존속의 필요성	규제 가치 검토
이해관계자 검토	• (피규제자) 규제로 인하여 권리를 제한받는 대상의 의견 • (규제자) 규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입장 • (기타 이해관계자) 긍정적 및 부정적 이해관계자, 소비자, 지역 주민, 경쟁 업종 등 제3의 이해관계자	갈등 검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규제 개선방안,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등 • (기대효과) 규제 개선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 등	대안 제시
규제개선 효과성 검토	• 규제 유지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규제 개선 시 발생하는 편익 비교 형량(정성적) • 규제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적 검토	타당성 확보

자료: 정기용 외, 2025, p. 98. 재구성

○ 제시한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양식 개선방안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성항목을 간소화 및 체계화하였으나, 해당 분석서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규제개선 분석 컨설팅 지원단’ 운영이 필요함

- 지자체 공무원이 1차로 작성한 건의서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인 시·도 연구원 등이 논리적 보강 및 법적 검토를 지원하는 규제개선 분석 컨설팅 지원단의 상설 운영이 필요함

- 지원단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6가지 항목에 대한 정합성을 검토하고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 등을 보완하는 심층 컨설팅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전문적인 논리 완성도는 전문 연구기관이 뒷받침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규제 개선건의 과제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표 5-4〉 중앙규제 개선건의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요약

개선방안	주요 내용
중앙규제 개선 과제 발굴 채널 다각화	• 주민, 소상공인 및 기업 등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민간의 참여 확대 • 규제개선 수요자와 지자체가 정례적인 운영 협의회를 구축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 • 데이터 기반 과학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 체계인 '지능형 규제발굴 시스템 도입'
중앙규제 개선건의 통합 플랫폼 구축	• 중앙규제 개선건의 이력, 수용 및 불수용 등 의견, 법령 해석 결과 등 정보가 포함된 범정부 '지방규제개선 통합 플랫폼' 구축 • 중앙규제 개선 과제 건의 시 통합 플랫폼 내 유사 및 중복 사례 검토 등 '자가 진단 기능' 강화 필요
규제검토 단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중앙규제 개선건의 전 지자체 차원의 갈등 영향 검토 실시 •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상생협의체 등 운영(우수사례 평가 시 가점) • 전문가 참여를 통한 규제개선건의 객관성 및 논리성 검증
이행관리 시스템 구축	• 규제개선 이행 여부를 검토 및 관리할 수 있는 '이행관리 추적 시스템' 도입 • 수용된 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소관 부처가 미조치시 개선 권고 또는 강제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체계 개편	• 규제개선 수용률 및 지역 내 효과 평가를 통한 특별교부금 확대 등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 •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의 성과평가 시 가점 확대 등 인사 제도 개편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표준 체계 도입 및 전문성 보완	•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 양식 개선 • 6가지 항목(현황, 문제점 및 규제현황, 규제목적, 이해관계자 검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규제개선 효과성 검토) • 중앙규제 개선건의 분석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규제개선 분석 컨설팅 지원단' 운영

3. 지방참여 및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⁶⁹⁾

- 민선 지방자치 30년에 걸맞은 지방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권한을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이후 부분에서는 규제권한의 효과적 이양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지방협의체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 개선,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개선을 제안함

69) 이 부분은 외부 필진인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함

1) 지방협의회체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 개선

- ‘지방협의회체’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회장의 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의 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회장의 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이들 지방협의회체를 ‘지방 4대 협의회’라 통칭하며,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2항에서 이들 ‘지방 4대 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설립되지 않은 상황임
- 지방협의회체의 설립 목적·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회장 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문제 해결 등에 있으며, 그 수단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기능을 법적으로 확보 및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협의회체의 ‘대정부 정책건의’에 대한 중앙부처 및 국회의 수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바, 타 지방협의회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정부 정책건의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 현황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지방협의회체 대정부·국회 건의제도에 관한 법적 현황 및 절차

-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4항~제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협의회체의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각 지방협의회체별로 지방자치에 관한 각종 행·재정적 개선 요구·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는 이를 관계 중앙부처(장관)에게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부처(장관)는 2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는 관계 중앙부처(장관)에게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협의회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표 5-5〉 지방협의회체 설립 및 대정부 정책건의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5항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회장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회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회장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회장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회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회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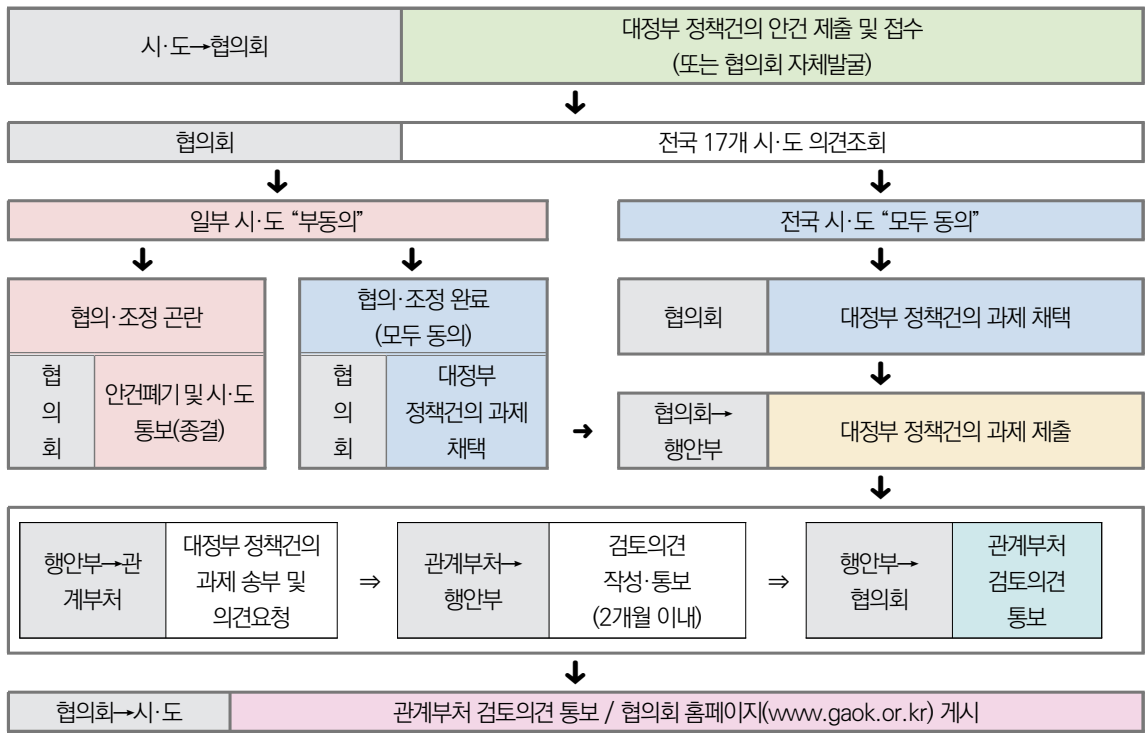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⑥~⑦ <생략>

□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책건의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처리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과 실제 운영·관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의사결정 방식이 ‘합의제’에 의하고 있음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의 “모두 동의”를 전제로 개별 시·도로부터 각종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 안전을 접수 받아 ‘시·도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협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이상의 절차를 따름
- 둘째, ‘시·도 의견조회’ 결과, “모두 동의”로 확인된 안전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확정하고, 그렇지 못한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을 제안한 시·도로 하여금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시·도와 (재)협의하도록 하여 “모두 동의”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최종 확정함.⁷⁰⁾
- 셋째, 최종적으로 조정·확정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행정안전부로 공식 제출하면, 이를 접수받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2개월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관계부처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는 즉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함
- 넷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해당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의 결과(관계부처 검토 의견)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시·도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종료함.⁷¹⁾

70) 시·도 간에 최종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을 제안한 시·도에 그 결과와 함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을 통보하고 종료한다.

7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가운데 관계부처로부터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화신’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과제를 엄선하여, 내용의 적정성·시의성 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 의견수렴 등과 같은 일련의 절차를 다시 거쳐 대정부 정책건의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윤태웅, 2024b).



[그림 5-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절차

자료: 윤태웅, 2024b, p.4.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사무처를 설립·개소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639건의 대정부 정책건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수용(일부수용 포함)’은 250건(약 39.1%), ‘수용곤란’은 217건(약 34.0%), ‘장기검토’는 165건(약 25.8%)이고, ‘미회신’은 7건(약 1.1%)인 것으로 분석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gaok.or.kr>)
- 최근 3년(2023년~2025년) 동안의 대정부 정책건의 실태를 살펴보면, 총 87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수용(일부수용 포함)’된 사항은 18건으로서 전체의 약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년 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체 대정부 정책건의(639건)에 대한 수용률(약 39.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며, ‘수용곤란(약 40.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 5-6〉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 현황 : 2023년~2025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수용 (일부수용 포함)	6건	8건	4건	18건 (20.7%)
수용곤란	14건	12건	9건	35건 (40.2%)
장기검토	13건	12건	7건	32건 (36.8%)
미회신	-	-	2건	2건 (2.3%)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 최근 3년 동안의 대정부 정책건의 결과를 ‘수용(일부수용 포함)’,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회신’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정부 정책건의 결과에 따라 ‘수용(일부수용 포함)’된 18개 과제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용’된 과제가 10건(약 55.6%)이고, ‘일부수용’된 과제가 8건(약 44.4%)인 것으로 분석됨

〈표 5-7〉 ‘수용(일부수용 포함)’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현황 : 2023년~2025년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2023년 (6건)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특단지조치 이행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역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용
	전국체육대회 국비 지원 상향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부	일부수용
	원료제조물 적용범위 관련 중대재해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부	수용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방범초소 등 지원 건의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수용
	시민안전보험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
2024년 (8건)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경상남도	환경부	일부수용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수용
	쌀값 정상화를 위한 민간물량 추가 시장격리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일부수용
	2025년 RISE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개선 건의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교육부	일부수용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전국 확산	경상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사회복무요원 보수 국고 부담 일원화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일부수용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어촌·어항법 개정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수용
2025년 (4건)	정부의 지방세 감면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수용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 수행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채용 합격자 성범죄 경력 조회	경상남도	여성가족부	수용
	외국인 유학생 정책수립을 위한 취업률 및 진학률 공시 건의	부산광역시	교육부	수용
	국가·지역전략 성장사업 산업입지 수급 예외 인정 건의	울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일부수용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 대정부 정책건의의 결과에 따라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35개 과제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8>과 같음

<표 5-8> ‘수용곤란’ 대정부 정책건의의 과제 현황 : 2023년~2025년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2023년 (14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경기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수용곤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국가 주도 추진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전문공사 등록업무를 소관 협회에 위탁	강원도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지방자치단체의 댐 운영 관리권한 확대	경상남도	환경부	수용곤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 허용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제도 개선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요건 확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근속승진 확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지원(보조금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2024년 (12건)	개정)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 위임사무 개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수용곤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율 상향	경상남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지방관리항만(무역항·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경상남도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수용곤란
	조선업·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경상남도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직원 종합건강검진의 일반건강진단 항목 결과표 사업주 송부 강화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경상남도	금융위원회	수용곤란
	지방공기업 별도정원 인정범위 확대	경기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2025년 (9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지원 확대	경상남도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수용곤란
	도로편인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 감면 특례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상수도용 전력요금제 신설	서울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겨울철 신속한 보도제설을 위한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경찰청	수용곤란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 개선	울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채 발행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정비사업 국비 상향	대전광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용곤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심의권한 지방이양	울산광역시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 대정부 정책건의의 결과에 따라 ‘장기검토’로 회신된 32개 과제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9>과 같음

〈표 5-9〉 ‘장기검토’ 대정부 정책건의의 과제 현황 : 2023년~2025년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2023년 (13건)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 폐지에 따른 조경수 가격조사 및 가격고시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도서관법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사업 재정 지원	경기도	교육부	장기검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장기검토
	단기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적용	강원도	고용노동부	장기검토
	항만시설사용료 세입기관 변경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제 법적기반 강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수도법 개정	서울특별시	환경부	장기검토
	임차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중대시민재해 세부지침 등 기준 마련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장기검토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 지속지원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방세제 합리화를 위한 자동차세 주행분 개선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2024년 (12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목욕탕 노후 위험굴뚝 정비사업 국비지원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국비지원	경상남도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수소전기버스 공차운행연료비 국비 지원사업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부	장기검토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국고환원	경상남도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및 일원화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장기미개발 온천의 장기간 방치시 취소규정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식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부	장기검토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2025년 (7건)	기반시설 성능개선 총당금 관련 제도 개선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 수당 산성 시 군경력 반영을 위한 청원경찰 관계법령 개정	서울특별시	경찰청	장기검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	경상남도	해양수산부	장기검토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 개정	부산광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기검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수계관리기금 실태점검 관련 건의	부산광역시	국무조정실	장기검토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연령기준 완화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지방채 발행기준 완화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충청남도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신속한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처리 요청	부산광역시	법무부, 외교부,	장기검토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 한편, 현재 관계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는 2건으로 파악됨

〈표 5-10〉 ‘미회신’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현황 : 2025년

구분	건의과제	제안 시·도	관계부처	검토결과
2025년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 확대	울산광역시	국토교통부	미회신 (검토 중)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기준 현실화	서울특별시	인사혁신처	미회신 (검토 중)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gaok.or.kr>).

○ 이상의 분석 결과를 관계 중앙부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3개의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수용’하였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병무청 등이 각각 2개씩의 과제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분석됨

○ ‘수용곤란(불수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교통부(9건), 기획재정부(5건), 고용노동부(3건) 등의 순서로 많게 분석됨

○ ‘장기검토’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6건),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각 4건), 해양수산부(3건) 등의 순서로 많게 분석됨

〈표 5-11〉 중앙부처별 대정부 정책건의 회신 현황 : 2023년~2025년

구분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검토 결과				
	수용	일부수용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회신
국무조정실	-	-	-	1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1건	-
금융위원회	-	-	1건	-	-
기획재정부	1건	1건	5건	2건	-
교육부	1건	1건	1건	2건	-
외교부	-	-	-	1건	-
법무부	-	-	-	1건	-
행정안전부	3건	2건	10건	6건	-
문화체육관광부	-	1건	1건	3건	-
농림축산식품부	1건	2건	-	-	-
보건복지부	-	2건	2건	4건	-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1건	1건	2건	4건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	-	1건	-	-
고용노동부	1건	-	3건	1건	-
국토교통부	-	1건	9건	8건	1건
해양수산부	1건	-	1건	3건	-
중소벤처기업부	1건	-	2건	-	-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1건	-	-	-	-
인사혁신처	-	-	-	-	1건
경찰청	1건	-	1건	1건	-
병무청	-	2건	-	1건	-
합 계	12건	13건	39건	39건	2건

주: 1개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에 복수의 중앙부처가 관련(검토)된 경우, 해당 부처별로 각각 1건으로 집계함.

(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 대정부 정책건의의 과제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의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함(윤태웅, 2024a)

○ 첫째,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에 대해 대정부 정책건의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및 범위가 추상적·제한적임

- 즉, ‘직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며, 이로 인해 해당 중앙부처의 검토·판단 등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여지가 상존함

○ 둘째, 대정부 정책건의의 과제의 수용 여부가 전적으로 관계 중앙부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5항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과제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종결되는 방식임

- 다시 말해, 중앙행정기관(장)에서 검토·판단 과정에 건의기관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제안 시·도의 참여(대면회의 등을 통한 상세설명, 추가·보완자료 제출 등)가 불가능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고(再考)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실임

○ 셋째, 대정부 정책건의의 과제의 처리가 불명확·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건의 과제의 수용·불수용·장기검토 등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절차 및 보고·결정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등에서 해당 세부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대정부 정책건의의를 실시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결정·통보 받은 사항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임

- 이는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은 제외)에 제안하는 의견에 관해서는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5811호)」에서 접수, 심사, 공개 및 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접수·처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임(김미경·김수연, 2021)

○ 넷째, 장기검토 회신 사유에 대한 기준 역시 부재한 실정으로서 건의 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장기검토’로 회신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준·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불수용(수용곤란)’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로 인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장기검토’로 결과를 통보받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지방협의체에서는 관계 중앙부처가 언젠가는 반영(처리)해 주기만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의 대상 및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을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 둘째, 건의기관인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로 하여금 해당 건의 과제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와 대면회의(상세설명, 추가·보완자료 제출, 업무협의 등)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관계 중앙부처의 검토결과에 대한 이의 및 재고(再考)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 셋째,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의 접수·처리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의 처리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관리하는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임

〈표 5-12〉 대정부 정책건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

구 분	현 행	개 선
건의대상	•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검토절차	-	• 검토 기준 및 과정 등 신설
협의 및 이의조정	-	• 건의기관-중앙부처 대면회의 개최 가능 • 이의 신청·접수 및 처리, 재협의, 협의기구 설치·운영 등 신설
정보공개	-	• 검토 결과 및 각종 처리·관리과정 공개 등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행정안전부)

자료: 윤태웅, 2024a, p.15.

-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의 대정부 정책건의 개선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3〉과 같음

〈표 5-13〉 대정부 정책건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 「지방자치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 및 구청장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는 그들 모두가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그 협의체·연합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2조의2(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 제출 등) ① 제182조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정책 및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협의체등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의 의견 제출, 접수, 검토, 통보, 조정 및 결과 등의 처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생 략)

자료: 윤태웅, 2025, pp.11-13.

-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14>와 같음

<표 5-14> 대정부 정책건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연합체(이하 이 항에서 “협의체·연합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03조(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연합체(이하 “협의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3조의2(협의체등의 이의 조정 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한 협의체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등은 해당 자료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의를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해당 협의체등 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협의체등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책 및 관계 법령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 윤태웅, 2025, pp.13-14.

-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 차원에서도 대정부 정책건의 수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구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우, ‘수용’된 과제를 제외하고 ‘일부수용’, ‘수용곤란(불수용)’, ‘장기검토’ 등으로 회신된 과제에 대해서도 ‘종결’ 처리한 과제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장기검토’로 회신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사후·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수용곤란(불수용)’ 과제를 포함하여 ‘재건의 과제’를 선정·발굴하여 재건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홈페이지에서 ‘미회신’ 과제에 대해 ‘진행 중’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회신 과제에 대해서는 ‘재건의’ 또는 ‘지속관리’ 등으로 표시하여 회신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2)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

-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함(보통지방행정기관)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국가사무·정책을 집행하는 역할(특별지방행정기관)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가발전 및 국민행복 등을 위하여 지방정부를 매개로 하는 각종 정책의 수립·결정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그 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실현·성공 가능성과 국민의 만족도를 동시에 제고해 나가야 함
- 이와 같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이나 지방의견은 국정반영 보장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 개별법에

서도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공동책무나 협력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18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42)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지방)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협의회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5)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1)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총 571개의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 포함)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협의체를 통해 위원을 위촉(당연직 포함) 또는 추천 중인 위원회는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14개이며,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위원으로 참여 중인 위원회는 전체의 약 8.8%에 해당하는 50개에 불과한 실정임
- 지방협의체의 참여·추천 중인 14개 정부위원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등이며, 지방협의체별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는 1개(지방시대위원회), 지방협의체별 추천자(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포함)를 위원으로 의무 위촉하는 정부위원회는 7개(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등), 지방협의체가 위원을 단순 추천(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포함)하는 정부위원회(실질적인 위원 임명·위촉은 해당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소관부처의 장이 전담) 6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5-15〉 지방협의체 참여 또는 추천 정부위원회(14개) 현황

연번	명칭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1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대통령	행정안전부, 산업통상 자원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로 한다.
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의무위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번	명칭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명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시장·군수·구청장 2명
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무위촉)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제13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의무위촉)	감사원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각 1명
5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무위촉)	통일부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무위촉)	통일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7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의무위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3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8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의무위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연번	명칭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9	고용정책 심의회 (단순추천)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감염병관리 위원회 (단순추천)	질병 관리청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시·도지사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1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 (단순추천)	고용 노동부	고용노동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2	지방교부세 위원회 (단순추천)	행정 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교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각 1명
13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 (단순추천)	행정 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의 구성·기능) ①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번	명칭	소속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4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단순추천)	행정 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조(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또한, 개별 지방정부별로 참여 중인 50개 정부위원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위원회 등과 같이 특정 지역적 범위에 한정된 정책과 관련된 정부위원회와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됨

〈표 5-16〉 개별 지방자치단체 참여 정부위원회(50개) 현황

소속기관(명)	정부위원회(명)	참여 대상	구분	연번
국무총리 (16)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의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의무	2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인천광역시청	의무	3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부서의 장으로 3급 이상의 공무원	의무	4
	새만금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의무	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대전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의무	6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무	7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청	의무	8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유치지역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무 (당연직)	9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경상북도지사	의무	10
	10·290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추모사업 해당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유가족 추천자, 유가족 가운데 국무총리가 임명·위촉	단순 추천	11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	충청북도지사	의무	12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부산광역시청,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의무	13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전라남도지사	의무	14

소속기관(명)	정부위원회(명)	참여 대상	구분	연번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의무	15
	행정협의를조정위원회	안전과 관련된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	의무	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과기부 고위공무원(일반직), 산업부·국토부 고위공무원 중 지명자,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중 시·도지사 지명자, 전문가 등 가운데 과기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17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자체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가운데 과기부장관이 위촉	단순 추천	18
교육부 (3)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전문가, 학부모 등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19
	교육시설정책위원회	부교수 이상,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교원단체, 교육감협의회, 학교협의회 추천자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2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위원장(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무	21
교육부 및 문화체육 관광부 (1)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체육단체 추천자, 교육·체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시·도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전문가 가운데 교육부장관·문체부장관 공동 임명·위촉	단순 추천	22
국가유산청 (2)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명 고위공무원, 고도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지명 2급·3급 상당 공무원, 전문가 2명 이상, 국토부장관 추천자 2명 이상 가운데 국가유산청장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23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명 고위공무원,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지명 2급·3급 상당 공무원 가운데 국가유산청장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24
국방부 (1)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기재부·국토부장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 관할 시·도지사	의무 (당연직)	25
국토교통부 (5)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국토부·산업부 고위공무원(일반직), 시·도 3급 이상 공무원, 사업자단체 임원, 전문가 가운데 국토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26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의무	27

소속기관(명)	정부위원회(명)	참여 대상	구분	연번
		부서장(고위공무원/일반직) 및 해당 주택지구 또는 공공주택이 속한 시·도 소속 관계 부서장(3급 이상)과 국토부 고위공무원, 전문가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설계전문가·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 추천자 등	의무	28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시·도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으로서 위원장(국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등	의무	29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시·도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지사) 등	의무	30
농촌진흥청 (1)	지역특화작목위원회	시·도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또는 농업기술원장 등 가운데 위원장(농진청장) 임명·위촉	단순 추천	31
문화체육 관광부(1)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의무	32
법무부 (1)	주택임대차위원회	시·도 주택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 실·국장 등 가운데 위원장(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 하되, 일정비용 반영	의무	33
보건복지부 (4)	고독사예방협의회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 등 가운데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34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보건의료 업무담당 지방공무원 중 특·광역시 대표 1명, 도(특자도 포함) 대표 1명 등	의무	35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전라남도의 3급 이상 공무원 중 전남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등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36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등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37
원자력안전위원회 (1)	방사능재난조사위원회	관련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의무	38
해양수산부 (4)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손실보상 담당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가운데 위원장(해수부장관)이 위촉·임명	단순 추천	39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위원회	특구 관할 도(道)와 시의 3급 공무원 중 해당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등	의무	40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어업인 가운데 시·도지사가 시·도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11명 이내 등	의무	41

소속기관(명)	정부위원회(명)	참여 대상	구분	연번
행정안전부 (3)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해수부장관이 심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도 국장급 공무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등	의무	42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일반직)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 가운데 행안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43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 가운데 행안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44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	의무	45
기후에너지환경부 (5)	(담)사전검토협의회	시·도의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등 가운데 행안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46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습지 관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등 가운데 환경부장관 임명·위촉	단순 추천	47
	국립공원위원회	(특별위원) 해당 공원구역 관할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등 ※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그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함	의무 (특별위원)	48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임명·위촉	단순 추천	49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 가운데 환경부장관이 위촉	단순 추천	50

(2)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방안 :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발굴·제안

□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 확대의 필요성

- 첫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 인해 지방재정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불만 가중에 따른 정책수용도 저하 등으로 해당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둘째, 국가정책의 실질적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의 범위가 매우 협소함에 따라, 해당 정책에 대한 목적·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한 정보·이해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지방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집행과 그에 따른 정책의 질적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⁷²⁾ 등을 통해 상호 대등·협력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최근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관계(IGR)를 고려하여, 지방정부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발전적 시각을 제도적으로 공고화 할 필요가 있음

☐ 발굴기준의 설정

-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를 발굴하기 위하여 ① 자치사무와의 연관성, ②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 ③ 해당 관계 법률상 중앙-지방의 공동책무 또는 협력의무 규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함
- ① 자치사무와의 연관성: 해당 정부위원회의 소관 정책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사무 (§13②)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로 판단함

〈표 5-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13②)

구 분	내 용
1. 지방자치단체 구역·조직·행정관리 등 (11)	•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조례·규칙의 제·개정·폐지 및 운영·관리
	•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 지도·감독
	• 소속 공무원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징수
	•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공유재산 관리
2. 주민의 복지증진 (10)	• 주민등록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통계 작성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 생활이 어려운 사람 보호·지원
	•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 예방·방역
	• 묘지·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관리
3. 농림·수산·상공업 등	• 공공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못·늪지·보(沔)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72)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부회장, 관계부처 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 등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서

구 분	내 용
산업진흥 (14)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농업자재의 관리
	•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공유림 관리
	•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가축전염병 예방
	•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② 중앙-지방 협력체제 강화의 필요성: 해당 정부위원회의 소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협의체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대한 국정반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로 판단함
- ③ 해당·관계 법률상 중앙-지방의 공동책무 또는 협력의무 규정 여부: 해당 정부위원회의 근거법을 상 중앙-지방 공동책무 또는 협력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로 발굴함

□ 발굴결과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행정학·정치학 및 법학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총 571개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약 17.9%에 해당하는 102개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를 발굴하였음
-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 정부위원회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위원회 및 교육부 소속 정부위원회의가 각각 9개씩, 대통령소속 정부위원회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정부위원회의가 각각 8개씩, 산업통상부 소속 정부위원회 7개, 국토교통부 소속 정부위원회 6개, 해양수산부 소속 정부위원회 5개 등의 순서로 파악됨

〈표 5-1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발굴 결과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대통령(8)	규제개혁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시도協회장 및 시군구協회장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시도協 추천 시·도지사, 시도의장協 추천 시·도의장, 시군구協 추천 시장·군수·구청장,	5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시군구의장協 추천 시·군·구의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장	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
	국민통합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장	8
국무총리(12)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 및 시군구協 추천자	9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 추천자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1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2
	국토정책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13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5
	외국인정책위원회	시도協 추천 시·도지사 및 시군구協 추천 시장·군수·구청장	16
	사회보장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20
고용노동부(4)	고용정책심의회	시도協 추천자(의무위촉)	21
	노사관계발전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2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23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의무위촉)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25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26
	디지털서비스심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27
	국가지식정보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28
교육부(9)	교육시설정책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 추천자	29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교육감協 추천자	30
	중앙유아교육위원회	교육감協 추천자	3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감協 추천자	32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교육감協 추천자	33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시군구協 추천자	34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교육감協 추천자	35
	기초학력보장위원회	교육감協 추천자	36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37
국토교통부(6)	국가교통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38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39
	도로정책심의회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0
	도시개발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1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2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3
기획재정부(9)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4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5
	배출권할당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6
	보조금관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7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48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49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0
	중장기전략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1
	국가통계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2
농림축산 식품부(4)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3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4
	동물복지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5
	농지관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6
농촌진흥청(1)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57
국가유산청(2)	무형유산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58
	문화유산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59
문화체육 관광부(4)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60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 추천자	61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별 추천자	62
	문화다양성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63
방송통신위원회(1)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별 추천자	64
법무부(1)	법교육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 추천자	65
법제처(1)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66
보건복지부(3)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67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6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69
산림청(2)	산림교육심의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70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71
산업통상부(7)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3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4
	에너지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5
	전력정책심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6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7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78
소방청(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79
식품의약품안전처(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0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성평등가족부(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81
	청소년보호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2
	청소년정책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3
	학교밖청소년 지원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4
중소벤처기업부(3)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5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6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7
해양수산부(5)	어업재해대책심의회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8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8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시도協 추천자	90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9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92
행정안전부(2)	국가경찰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93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94
기후에너지환경부(8)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95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96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97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98
	(온실가스배출권)할당결정심의회위원회	시도協·시군구協 추천자	99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100
	환경교육위원회	시도協·교육감協 추천자	101
	환경보건위원회	시도協 추천자	102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부자료, 2025.

○ 이상 발굴된 102개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별 ‘지방참여 필요성’ 판단 결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9〉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별 ‘지방참여 필요성’ 판단 결과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대통령(8)	규제개혁위원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규칙에 따른 규제를 할 수 있고, 각종 규제정책은 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바, - 전국 시·군·구 등의 지역이나 시·도 및 권역별로 발생하는 다양한 건의·요구의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 시·도별 추진계획 및 지역별 시책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지방 간 협력·조정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2
	2050	시도지사협의회회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의 회장(문재인정부) 또는	3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사무총장(윤석열정부)이 위원으로 참여한 적 있으나, •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공동 의장의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등 환경정책에 대한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력·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의 참여가 필요함	
	국가건축 정책위원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의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기초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4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필수적이고, • 「지방자치법」상 '농림·수산·상공업 진흥'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 협력·조정이 요구되며,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현실적 문제를 전달·논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참여가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추천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추천 시·군·구의회의장 각 1명의 참여가 필요함	5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종합계획 및 부처별 시행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소멸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책 과정에서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력·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한 바, • 지방 4대 협의체장 참여가 필요함	6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요 창출을 위한 조치(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의료원 포함), 특화단지 지정 협의 및 입주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7
	국민통합 위원회	• 실질적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 수도권-비수도권 간 문제,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력·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긴요하며, • 지역현장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대면·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국민통합 시책에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바, • 지방 4대 협의체의 참여가 필요함	8
국무총리 (12)	유아교육· 보육위원회	• 법률상 보호자 및 유아의 건전한 교육에 관한 국가-지방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교육감의 다양한 역할·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각종 역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유아교육·보육을 위해서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9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 법률상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10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시·도지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운영·활동에 관한 교육감과 협의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계획·전략 및 정책 등을 심사·의결하나, 「지방자치법」상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자치사무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11
	식품안전 정책위원회	- 법률상 식품안전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5년 단위 『식품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연단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인력·재원 우선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12
	국토정책 위원회	-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조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로부터 반영되어야 할 정책·사업에 관한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실질적인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13
	기반시설 관리위원회	- 법률상 ‘기반시설’에 도로·항만·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공원 등의 공간시설, 학교·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관리주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유지·관리·성능개선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과 더불어, -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정책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가의 계획·정책 등에 대한 지방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 법률상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 국가 5년 단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 의시·도계획(5년 단위)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계획(5년 단위)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15
	외국인정책 위원회	- 법률상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법무부장관의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 등 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사무 등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 외국인정책 전반에 대한 지방 입장·의견 제시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16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시장·군수·구청장의 참여가 필요함	
	사회보장위원회	• 법률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계획·정책 등에 대한 긴밀한 연계·협력 등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 현재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위원(하위 실무협의회·전문위원회 포함) 추천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위원위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17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의 안전·건강·복지증진 및 그 보호자·가정 지원 정책 수립·시행 등을 국가-지방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 국가의 5년 단위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시·도 및 시·군·구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운영, 아동보호조치, 양육환경 점검, 사각지대 발굴 및 실체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1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영위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책임 등에 관한 제도·여건 조성과 시책 수립·시행 등을 국가-지방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행증진, 정보제공 및 교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등을 시·군·구가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19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법률상 각종 사고로부터의 안전, 예방, 피해 최소화 노력 및 대응·복구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시·도 차원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 차원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적절히 초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20
고용노동부 (4)	고용정책심의회	• 법률상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현재 추천 중), 고용노동부장관 선택적 재량사항임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자를 “의무위촉”하도록 개정해야 함	21
	노사관계발전위원회	• 법률상 국가시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관할 지역 내 노사협력 활성화 노력·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노사관계발전은 근로감독 등 중앙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아닌 협력·지원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지방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2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대책 수립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대책 수립, 국가-지방 협력,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23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		-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24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 법률상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있으나(현재 추천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선택적 재량사항임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의 각 추천자를 “의무위촉”하도록 개정해야 함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위원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협조 의무, 지역 간 협력기반 마련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실질적 주체로서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25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 법률상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및 시책의 수립·추진 등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다수 조항에서 시·도지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특구 지정·변경·해제 및 지역 특구계획 수립 요청 등과 같은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바, 국가계획-지역시책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26
교육부(9)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해당 서비스의 실질적 이용 대상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27
	국가지식 정보위원회	• 법률상 국가지식정보의 효율적 연계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 국가의 3년 단위 기본계획 상 지역의 향토 지식·정보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28
	교육시설 정책위원회	• 법률상 교육시설 안전관리·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재원 마련·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립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포함)의 공동책무로 규정되고, • 교육감의 기금 설치 및 교육부 사무위임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지방 협의·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의무위촉)	29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 법률상 국가시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영재교육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각종 지원 시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 시·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국가-지방간 협력·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30
	중앙유아교육 위원회	•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유아교육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중앙-지방 간 긴밀한 연계·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31
	중앙특수교육 운영위원회	• 종합계획 수립 등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각종 교육 제공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실질적 교육을 위한 교육청의 많은 역할(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	32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연계·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특수목적 고등학교등 지정위원회	• 「교육자치법」 상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고시(국립은 교 육부장관)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33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 평생교육진흥 및 사업 수립·추진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에게 연도별 평생교육 시행계획(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의 수립·시행(교육감과 협의 필요)하도록 하며,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 소속 시·도 평생교육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물론, • 교육감의 다양한 역할·사무(시·군·구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노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 영, 평생교육시설의 지도·감독 등)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긴밀한 연계·협 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34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	• 법률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공동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 교육감으로 하여금 국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35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 법률상 기초학력 보장 및 재원 마련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 교육감의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간 협력·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36
	중앙보육 정책위원회	• 법률상 보호자 및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 및 필요한 자원 확보·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법률 전반적 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보육에 관한 다양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간 협의·조정 및 긴밀한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37
국토 교통부 (6)	국가교통 위원회	• 시·도 소속의 지방교통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교통과 관련된 지방의 책무성 및 국가정책과 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할 때,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38
	국가물류 정책위원회	• 시·도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물류산업·정책과 관련된 지방의 책 무성 및 국가정책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할 때,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39
	도로정책 심의위원회	• 도로 간 연계 등 종합적인 도로정책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국가-지방 간 협조·협력이 긴요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0
	도시개발 위원회	• 기업도시·혁신도시 개발은 지역의 발전과 직결되며, 국가-지방 간 이해 조정이 필요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1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산업입지 정책심의회	- 시·도와 시·군·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으나, - 지역계획·정책과 국가계획·정책 간 이해조정·협력의 필요성 및 자치사무와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2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 관계법령 또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관계부처별 고위공무원 1명) 및 중앙행정기관 추천 전문가 등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지방의 참여·추천 규정은 부재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3
기획 재정부 (9)	경제교육 관리위원회	- 경제교육은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시·도별로 지정하고, 센터의 사업 수행에 있어 시·도의 지원·협력 등이 요구됨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44
	민간투자 사업심의 위원회	- 민간투자사업은 지역경제·자치사무와 밀접히 연관되고, - 국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본계획, 대상사업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지방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5
	배출권할당 위원회	- 배출권할당계획 등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각 시·도별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바, - 배출권할당계획 등과 관련하여 중앙-지방 간 협력·조정인 창구로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함	46
	보조금관리 위원회	- 보조사업은 지방비를 매칭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사업·보조금의 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7
	부담금운용 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도 부담금을 부여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48
	재정운용 전략위원회	-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책집행을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에도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49
	조달정책심의 위원회	- 조달의 수요기관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기관 등이 포함됨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력 및 조정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50
	중장기전략 위원회	-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전략은 지방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51
	국가통계 위원회	- 국가통계의 정책목표·방향 등에 관한 사안은 지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52
농림축산 식품부 (4)	국가식생활 교육위원회	- 법률상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전통식생활 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5년 단위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기관	53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양성·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지방 간 협력·조정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54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 법률상 재해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의무, 재해대책의 비용 보조나 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응급조치,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 응급대책 지원 등에 관한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모두 재해대책 및 국가보조·지원,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견금 등의 사용, 재해로 인한 피해 조사, 군장비 및 병력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동물복지 위원회	• 법률상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 보호·관리, 인력·예산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며, 3년 단위 『시·도 동물복지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력·조정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농지관리 위원회	• 법률상 농지의 기본이념 구현과 농지 관련 시책 수립·시행, 농지 보전 및 합리적 이용, 농업 육성 및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 이바지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전용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농촌진흥청 (1)	농촌진흥 사업심의 위원회	• 법률상 농촌진흥사업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으며, • 국가의 5년 단위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57
국가유산청 (2)	무형유산 위원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무형유산 보전·진흥 시책의 수립·추진 및 예산의 확보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무형유산기본계획』 상 시·도지사의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별 무형유산위원회를 두어 시·도무형유산을 지정·해제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력·조정 등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58
	문화유산 위원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시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 수립·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고, • 시·도별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법률 전반에 걸쳐 시·도지사의 다양한 권한·역할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력·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시행령에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위원을 (국가)문화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시·도의 입장반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	59
문화체육	지역문화	• 법률상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	60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관광부 (4)	협력위원회	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 산업 등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관한 공동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보 (관련조례 제정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의 5년 단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 또한,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법률 전반에서 전문인력 양성, 고유원형 보존 지원, 지역 간 및 지역-기업 간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인의 온라인 활동 지원, 문화지구 지정·관리 등에 관한 중앙-지방의 공동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문화예술 교육지원 위원회	- 법률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수립·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와 국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도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제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상 시·도지사의 5년 단위 『지역문화예술 교육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61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 법률상 ‘지역신문’을 “일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고,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시책의 마련 및 법제상·재정상·금융상 조치 등에 관한 국가-지방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의 3년 단위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 지방 의견·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며, - 특히, 지역신문은 지방의회와도 직접적·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4대 협의체별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의 인사가 위원으로 의무위촉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62
	문화다양성 위원회	- 법률상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시책 강구,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활동 권장·보호·육성, 필요한 재원의 마련 등에 관한 국가-지방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역할·노력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63
방송통신 위원회 (1)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은 지역 특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의 가능성·필요성 등이 크고, - 특히, 지역방송은 지방의회와도 직접적·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방4대 협의체별 추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함 ※ 현재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의 인사가 위원으로 의무위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	64
법무부 (1)	법교육 위원회	- 법률상 국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교육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진흥법」 등에서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기	65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관의 '법교육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법제처 (1)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사항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한 고려·판단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66
	국가환자 안전위원회	• 각종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등은 지역 현장에서의 대응이 중요함에 따라, 안전계획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하며, •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환자안전활동 추진 등은 지역현장 일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능동 대응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67
보건 복지부 (3)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 위원회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지원,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68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복지증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 등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69
산림청 (2)	산림교육 심의위원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5년 단위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림교육지역계획(5년 단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70
	산림복지 심의위원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복지전문가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자에 대한 비용 등 지원,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의견반영 등이 중요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71
산업 통상부 (7)	국내복귀 기업지원 위원회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 등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등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72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 산업융합과 관련된 계획 수립, 각종 지원 등은 지역의 의견·상황을 반영하여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73
	신·재생 에너지정책 심의회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관련 계획 수립 등은 지역의 의견·상황 및 협력 등을 고려해야 함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74
	에너지	•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지역의 의견·상황 및 협력 등을 고려해야	75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위원회	함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76
	전력정책 심의회	• 전력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성을 가지는 바, 지역의 의견과 상황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산업위기 대응심의 위원회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은 지역의 발전과 밀접한 사안이 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77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사업지구 지정 등은 지역경제·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78
소방청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심의회	•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대하여 시·도가 이를 구체화하는 업무의 책임성과 협력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수렴 및 입장반영 등이 필요한바,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79
식품 의약품 안전처 (1)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위원회	•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시행 시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 성, 사전예방' 등의 원칙 유지를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운영비용 지원,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한 사 업 위탁, 국가의 3년 단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며, • 법률 전반적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다양한 역할(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 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영 양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0
성평등 가족부 (4)	여성폭력 방지위원회	• 법률상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에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국가계획·시행계획 간 연계성 확립·강화가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81
	청소년보호 위원회	• 지역 청소년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보호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에게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행금 지·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 므로,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2
	청소년정책 위원회	• 법률상 청소년 육성 관련 법·제도적 장치 마련·시행 등에 관한 국가-지방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시장·도지 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단 체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3
	학교밖	• 법률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84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청소년 지원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며,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 법률상 지역특화발전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5
중소벤처 기업부 (3)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 정부의 기본적·종합적 중소기업 시책 수립·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중소기업 시책 수립·시행, 중앙-지방 협력·연계 및 공동 노력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종 계획·시책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과 심의회에서 기본·육성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육성 관련 제도·법령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신설·변경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사항 중 중소기업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함에 따라, 지방 의견·입장 등에 관한 국가정책 반영이 필요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6
	소상공인 정책심의회	- 법률상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 육성을 위한 정부(종합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지역시책)의 시책 수립·시행, 자원 확보·지원 등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국가의 3년 단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연단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며, - 특히, 지역별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장환경 개선, 복지 향상 시책, 공정경쟁·상생협력 촉진, 재난피해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시책이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7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 법률상 재해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의무, 재해대책의 비용 보조사 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응급조치,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 응급대책 지원 등에 관한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규정하며, -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모두 재해대책 및 국가보조·지원,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 재해로 인한 피해 조사, 군장비 및 병력 지원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88
해양 수산부 (5)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회	-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시·군·구위원회 등 역할·기능을 구분하여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참여의 필요성이 다소 낮을 수 있겠으나, 수산업·어촌 관련 정책이 지역의 환경·특수성에 따라 마련·시행되어야 하고 주민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바, - 중앙-지방의 공동 책무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89
	중앙연안 관리심의회	국가의 10년 단위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 차원의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심의할 때 지방의 공통된 의견·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실제 연안관리 업무가 지역 단위에서 추진되어 해당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	90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 애로사항 등이 국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사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자치사무와의 상관성, 국가-지방 공동책무성 및 협력 필요성 등이 높으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91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 위원회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중앙부처는 위원으로 참여하나 지방의 참여가 부재하다는 점, 해양폐기물은 중앙-지방 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92
행정안전부 (2)	국가경찰위원회	- 법률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국가-지방체의 공동책무를 규정하고, -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계약체결 조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 관련 주요 법령·정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93
	위기관리 매뉴얼 협의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전반적인 재난안전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령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검토,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방법 및 운용기준,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지방 간 긴밀한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94
기후에너지 환경부 (8)	국가생물 다양성 위원회	- 법률상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 보전,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등에 관한 국가-지방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 차원에서 각종 시책·사업, 조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95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	- 법률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른 조치, 계획수립·시행, 시책, 분쟁해결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에게 5년 단위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는 바,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96
	중양환경 정책위원회	-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정책(환경종합계획)과 지역정책 간 연계·협력이 중요함에 따라,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97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 친수구역 조성은 도시교통, 하천관리, 도시계획,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검토 및 논의·협의를 거쳐야 하며, - 이들 분야 모두 지역의 현저성 및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98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상 국가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책에 대한 지방의 수용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99

소속기관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참여 대상	연번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추천 전문가 참여 필요함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 법률상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파악, 국민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각종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학사고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나, 국가-지방 간 협의·조정 및 협력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100
	환경교육 위원회	• 법률상 환경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시·도지사로 하여금 5년 단위 『시·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차원 환경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101
	환경보건 위원회	• 법률상 환경보건 시책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계획-지역계획 간 연계성 확립·강화 등이 요구되므로, •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102

○ 이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25년 7월~8월 동안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지방협의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상 102개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를 확정하였음

○ 이 기간 동안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각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별 관계법령 개정안(초안)을 마련하였고, 2025년 9월~10월 동안에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관계 중앙부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 총 55개의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참여가 최종적으로 협의 및 확정되었음⁷³⁾

○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법제처·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25년 11월 12일 개최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총 55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원안 가결되었음

- 관계 중앙부처의 의견 수렴·반영 과정에서 미합의된 47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향후 부처별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7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법제처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의 개수가 당초 102개에서 55개로 47개(약 46.1%) 감소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존재하나, ①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47개 정부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를 보다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 등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5-20〉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원회’ 발굴 결과(최종)

연번	소관 부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 원회	관계법령		참여대상	소속
			법령명	구분		
1	국무 조정실 (1)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대통령
2	고용 노동부 (1)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고용노동부
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		연구개발특구 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 추천 전문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6	교육부 (10)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국무총리
7		교육시설정책 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8		중앙영재교육 진흥위원회	영재교육 진흥법	법률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9		중앙유아교육 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0		중앙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1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령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2		평생교육진흥 위원회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3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4		기초학력보장 위원회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5		중앙보육정책 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교육부
16	국토 교통부 (6)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건축기본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대통령
17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국무총리
18		기반시설관리 위원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국무총리
19		국가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	법률	시도協	국토교통부

연번	소관 부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 원회	관계법령		참여대상	소속
			법령명	구분		
			효율화법		추천 전문가	
20		국가물류정책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국토교통부
21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국토교통부
22	기획 재정부 (1)	부담금운용심의 위원회	부담금관리 기본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기획재정부
23	국가 데이터처 (1)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시도協 추천 전문가	기획재정부
24	농림 축산 식품부 (4)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시도協 추천 시·도지사, 시도의장協 추천 시·도의회의장, 시군구協 추천 시장·군수·구청장, 시군자치구의장協 추천 시·군·구의회 의장 각 1명	대통령
2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국무총리
26		국가식생활교육 위원회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농림축산 식품부
27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농림축산 식품부
28	농촌 진흥청 (1)	농촌진흥사업 심의위원회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농촌진흥청
29	문화 체육 관광부 (4)	문화예술교육 지원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시도協·교육감協 추천 전문가	문화체육 관광부
30		문화다양성 위원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문화체육 관광부
31	법무부 (1)	외국인정책 위원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시·도지사, 시군구協 추천 시장·군수·구청장	국무총리
32	법제처 (1)	중앙-지방 자치입법 조정협의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법제처
33	보건 복지부 (2)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법률	지방 4대 협의체별 추천 구성원 또는 전문가	대통령
34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국무총리

연번	소관 부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 원회	관계법령		참여대상	소속
			법령명	구분		
					추천 전문가	
35	산림청 (2)	산림교육심의 위원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 추천 전문가	산림청
36		산림복지심의 위원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산림청
37	산업 통상부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위원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대통령
38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산업통상부
39		산업융합규제 특례심의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산업통상부
40	소방청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 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소방청
41	성평등 가족부 (3)	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국무총리
42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성평등 가족부
43		청소년정책 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성평등 가족부
44	해양 수산부 (2)	중앙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해양수산부
45		해양폐기물관리 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해양수산부
46	행정안전부 (1)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지방 4대 협의체장	대통령
47	기후 에너지 환경부 (9)	국가생물다양성 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48		국가수자원관리 위원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49		신·재생에너지정책 심의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50		에너지위원회	에너지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51		중앙환경정책 위원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52		친수구역조성 위원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도協·시군구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53		화학물질관리 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시도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54		환경교육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통령령	시도協·교육감協	기후에너지

연번	소관 부처	지방참여 필요 정부위 원회	관계법령		참여대상	소속
			법령명	구분		
55			관한 법률 시행령		추천 전문가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법	법률	시도協 추천 전문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부자료, 2025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개선

(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요

-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21.7.13 제정 및 ’22.1.13 시행)」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의 대표와 지방의 대표가 모여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제고방안 등을 논의·협약하는 회의체임
- 이에 따라,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며, 재정경제부장관·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중앙정부 위원과 전국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의 지방정부 위원으로 구성됨
- 협력회의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심의 결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존중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원활한 협력회의의 운영을 위해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협력회의의 중앙정부 위원에 해당하는 관계부처 차관·차장과 지방정부 위원에 해당하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각 1명씩의 시·도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됨
- 이러한 실무협의회는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상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 업무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원단’을 두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표 5-21〉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협력적인 관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제고	
구 성	의장단	의 장	대통령
		부의장	(공동) 국무총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위 원	중앙정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정부	전국 시·도지사,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운 영		정례회의	분기별 1회 개최
		임시회의	부의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개최
심 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 및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 •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결과 활용 (국가·지방 공통)		• 심의결과 존중 및 성실 이행 의무 • 심의결과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협력회의 보고 의무 • 심의결과 이행 곤란 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협력회의 보고 의무	
실무협의회		위원장	(공동)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명 시·도지사
		중앙정부	재정경제부차관(장관지명),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실장지명), 법제처차장,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정부	전국 시·도 부단체장, 지방 협의체별 협의회장이 구성원 중 지명하는 1명
		기 능	관계기관 의견수렴 → 협력회의 보고안건·의결안건 구분·상정
중앙·지방지원단		중앙지원단	행정안전부 내 설치·운영
		지방지원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내 설치·운영(지방 4대 협의체 협의)

(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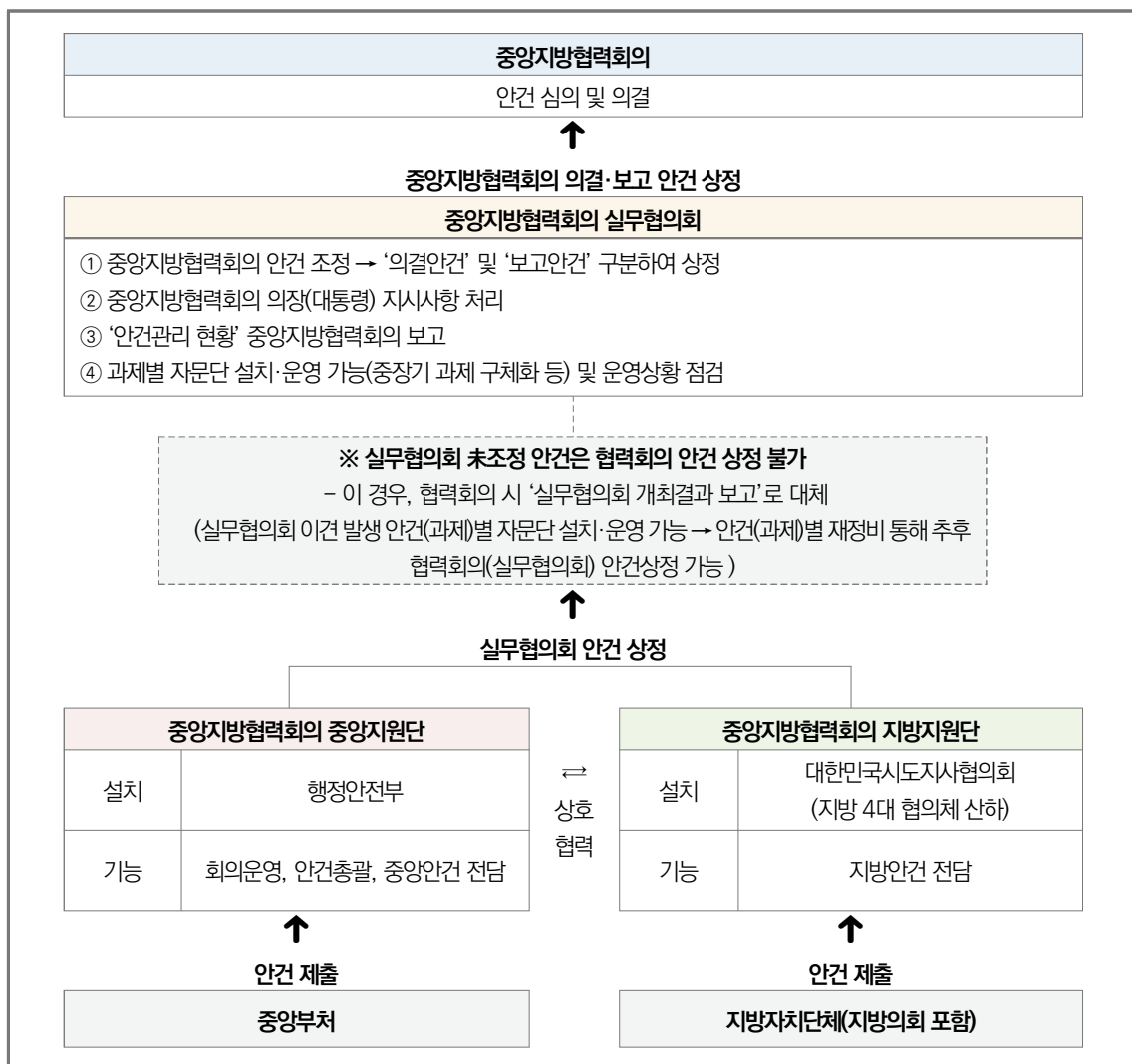
- ☐ 2023년 5월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 차원의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중앙지원단에서 제출 받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차원의 안건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지방 4대 협의체)의 지방지원단에서 제출받아 처리함⁷⁴⁾
- ☐ 이후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은 상호 협력 하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결정하여 상정하며, 실무협의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보고 안건 및 의결 안건을 결정함
- ☐ 실무협의회는 경우, 구성원 간 협의에 기반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안건을 확정하는데, 회의에서 구성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회의의 정식 보고·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이 경우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통해 주요 내용에 대한 단순 보고로 대체하

74) 행정안전부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원단’은 중앙부처의 안건을 제출받는 기능 외에,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과 상정 안건 등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는 것이 일반적임

○ 다만, 실무협의회에서 구성원 간 이견이 발생되어 협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전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과제)별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전을 당장 폐기하기 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실무협의회를 통해 보고 안전 및 의결 안전으로 채택된 안전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정식 안전(보고·의결)으로 상정되며, 협력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4조에서는 확정된 안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이행 결과를 협력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림 5-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체계도

(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협력회의의 운영이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서 첫 회의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두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 제안이 이루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마련 및 제안한 안전만 상정되었음

- 두 회의의 의장(대통령)이 각각 임기 마지막(문재인 대통령) 및 임기 직후(윤석열 대통령)였음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양보와 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과제(안전)들이 다양한 관계부처에 걸쳐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의 마지막 협력회의와 현 정부의 첫 협력회의의 모두 지방의 숙원과제나 공동 요구사항이 최소한으로나마 포함되어 실질적인 논의의 연결(시사점) 및 시작(정책화)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음

○ 둘째, 대통령의 ‘지방 주도 - 국가 지원’ 방식으로의 국가 통치·경영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의 강력한 의지⁷⁵⁾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의의 안전상정 절차의 한계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주지하듯 협력회의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가대표(대통령)-지역 대표(시·도지사) 공동의 최고 심의기구이나, 지방안전의 특성상 중앙정부로부터의 강력한 지원 및 기능·인력·조직·재원 등의 포괄이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그러나 현재 협력회의의 안전을 최종 결정하는 기능을 실무협의회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 협력회의의 직전에 개최되는 실무협의회회의의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특히 중앙부처)의 반대나 이견이 존재하는 안전은 당회(當回) 협력회의의 안전(보고안전 또는 의결안전)으로 상정이 어려운 실정임
- 다만, 이 경우 관계부처·지방정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TF)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정비 및 재상정 추진 등이 가능하나, 자문단 역시 관계기관·전문가의 이견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어려우며, 논의·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안전의 적시성이 결여되어, 해당 안전의 의미와 긴요성이 크게 퇴색될 우려가 상존함

○ 셋째, 실무협의회 또는 협력회의의 결정 안전에 대한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대표적인 예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를 앞두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이관 방안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방환경청·지방고용노동

75)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23.2.10)에서 대통령(의장)은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해 나가고, 형식적 회의가 되지 않고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도록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듣고 결론을 제시하며, 사후에 후속 조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행정안전부, 2023).

청' 안건은 지방정부와의 사무 유사·중복성, 해당 업무의 현지성, 지방정부 수행 가능성, 지역주민 편의성 등을 중심으로 해당 3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조직·예산(재원) 등의 포괄적·일괄적 지방이관하자는 것이었음

- 그러나 실무협의회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관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포함)의 반대·이견 발생으로 협의회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대신 자문단(TF)을 구성·운영하여 관계부처-민간전문가-시·도(협의회 포함) 간 안건을 정비하여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정비 TF'를 구성·운영하였으나,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현재에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시대위원회 역시 강제력·구속력이 부재한 자문위원회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이상의 문제점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협력회의 본연의 목적·기능인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부의장(국무총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조정·합의'를 통해 협력회의 안건으로 직결 상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따라서 중앙지원단(중앙안건) 및 지방지원단(지방안건)을 통해 제안되는 협력회의 안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긴요성이 높은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동부의장 간 조정·합의를 통해 '협력회의 직결안건(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력회의 개최 전에 의장(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협력회의 직결안건'으로 결정한 후, 협력회의 때 상정 및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앞의 '첫째 개선과제'에 비해 다소 완화된 방안으로, 중앙안건 및 지방안건으로 하여금 실무협의회를 거치도록 하되, '지방분권·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제고'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이견·반대 등으로 협력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부의장 조정·합의'를 통해 협력회의 안건으로 직결 상정하는 절차를 검토 및 마련해야 할 것임
- 셋째, 실무협의회 및 협력회의 결과에 대한 실질적이고 원활한 피드백(후속조치)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초월한 국무조정실 또는 대통령실 등에서 자문단(TF) 운영 및 참여·점검 등을 주도하여 총괄·전담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유사·동일한 지위에 있는 특정 부처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각종 회의(체)를 주도 및 전담해 나가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곤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참고문헌

〈제2장〉

- 국무조정실(2023),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3. 2. 10.
- 김건위·이병기(2019),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박순애·손지은(2015),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 규제체감도를 중심으로, 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3(4), pp.185-211
- 엄영호·손선화(2018), 한국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신설·강화·완화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 행정연구, 28(4), pp.237-259
- 자치분권위원회(2018), 자치분권 종합계획, 자치분권위원회.
- 전대욱·정기용·김필·김해술(2024a), 지방규제 영향분석 방안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전대욱·정기용·김필·양원탁·김해술(2024b), 지방규제혁신 전략 방안 마련 연구,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행정자치부(2007),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 성과정리 보고.
- 주희진·고경훈·전대욱·유수동(2024), 지방이양정책의 진단 및 평가 연구: 사무이양정책 및 지역맞춤형 특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0), 지방이양추진기본계획.
- 지방이양추진위원회(행정자치부)(2007), 지방이양기본계획.
- 지방시대위원회(2023),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2023. 11. 1.
- 하선권·김성준(2020), 우리나라 지방규제의 주요 분야와 특성의 모색-등록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연구, 29(2), pp.61-94
- 하혜영(2015),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국회의 과제, 이슈와 논점, 제1022호, 국회입법조사처.
- 행정안전부(2025),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제245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의결안건(245차-01), 2025. 4. 18.
- 행정안전부(2024), “‘납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4.

5. 12.

행정안전부(2024), 2024년(2023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제236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안건(236차-1), 2024. 4. 24.

행정안전부(2023), 2023년(2022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제22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안건(227차-04), 2023. 4. 27.

행정안전부(2023), “중앙정부 권한 더 내리고 ‘지방시대’ 활짝”,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 7. 13.

행정안전부(2022), 2022년(2021년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제218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보고안건(218차-01), 2022. 4. 15.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원회 합동(2020),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다-참여정부부터 추진 16년만 성과…지방이양일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 1. 9.

홍준현·라휘문·조경훈·박지형·문동진·김미선·최은호(2023), 지방이양 완료사무 현황 및 성과평가체계 연구,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Gerber, B. J., & Teske, P. (2000). Regulatory policymaking in the American states: A review of theories and evid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3(4), 849-886.

Scholz, J. T., & Wang, C. L. (2006). Cooptation or transformation? Local policy networks and federal regulatory enforce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1), pp.81-97.

〈제3장〉

서울특별시

연구 및 보고서

관계부처 합동(2021), K-뷰티 혁신 종합전략.

구균철(2025),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의 개편 방향, 지방행정연구, 39(3), pp.43-62

국가유산청(202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4차).

국회예산정책처(2025),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평가.

박현봉·박환용(2019),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2(3), pp.21-43

- 삼정KPMG, 2025, “다시 불어올 폐기물 열풍,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심으로”, Issue Monitor 제167호. (https://kpmg.com/kr/ko/home/insights/2025/02/issurmonitor_167.html)
- 식품의약품안전처, “'25년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 85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 10. 2.
- 안수지·장채윤·권승은·강민영(202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및 정책 제언, 인구통계 Brief, 25(3), 국회미래연구원.
- 정소양·이진희·유희연·김유란·정유선(2024a),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정책Brief, 965, 국토연구원.
- 정소양·성혜정·윤정재·김태영·박성경(2024b),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정주환경의 지역격차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 피부 기반기술 개발사업단(2024), 2023년 한국 화장품 기업현황 및 생산실적 분석, Trend Report, 24-1호

기사 및 보도자료

- 경향신문, “시민들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삭제 반대’ SNS캠페인을 하는 이유”, 2021. 7. 14.
- 더나은미래, “국내 최초 ‘다중투입방식’ 수거로봇 출시…“올바른 재활용 문화 확산 기대”, 2024. 6. 7.
- 디지털타임스, “초고령화 ‘노품아’ 아파트가 뜬다”, 2025. 4. 13.
- 산업경제뉴스, “세계 최고 분리수거 명성 비웃는 낮은 재활용률, 뭐가 문제?”, 2025. 8. 26.
- 서울경제, “고객사 1만 돌파…K뷰티 ODM '전성시대'”, 2025. 4. 23.
-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버리면 쓰레기, 넣으면 용돈! AI 페트병 수거기 체험기”, 2025. 10. 13.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5762>)
- 한국경제, “‘제조원 표기’ 놓고 갈라선 화장품업계 “제조원 공개 불가” vs “소비자 알권리 침해””, 2020. 11. 1.
- 한국경제,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 규정 놓고 '갑론을박'”, 2019. 4. 17.
- 한국경제, “AI로봇 재활용자원 처리·버스유리창 디지털광고, 규제특례 지정”, 2023. 10. 15.
- 한국아파트신문, “‘노품아 정책’ 입주민 반대 난항…‘지역연계 단지 밖 시설’ 제언”, 2025. 8. 20.
- 한국일보, “‘하루 727톤 묻는다’… 내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앞두고 ‘쓰레기 대란’ 우려”, 2025. 4. 15.
- MBN, “요양시설 혐오에 떠나는 노인들…서울 노인 10명 중 4명은 강제 지방행”, 2025. 9. 20.

부산광역시

- 김수정(2020), 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 의료법학, (21):2, 3-33.
- 남도일보, “정광영 광양만권경제청장 후보자 검증 탈락”, 2018. 2. 8.
- 뉴스1, “프랑스는 '월소득 300만원 이하' 퇴직 고령층만 무료승차 지원”, 2022. 12. 29
- 보건복지부,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 117만 명,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2024. 4. 3.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 부산광역시, “지난해 부산 외국인 의료관광객 3만 명 돌파, 역대 최다…비수도권 1위”, 2025. 4. 7.
- 부산일보, “지난해 부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1090억 원…적자의 56%”, 2022. 9. 7.
- 손종필(2022), 2021년 도시철도 관련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분석, 나라살림브리핑, 258호.
- 신성일·이진학(2021),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속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손실 정부지원·운영기준 변경 검토 필요, 서울: 서울연구원.
- 안종석(2015),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세 정책-평가와 발전방향. 조세재정브리프, 10,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재원(2019), 지방재정론. 서울: 윤성사.
- 정지선(2021), 탄력세율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세연구원.
- 철도경제, “도시철도 무임손실 비용 지난해만 7228억...“국비지원 해달라””, 2025. 5. 8.
- 한국경제, “서울시 “노인 무임승차는 국가 책임”...기재부와 대립각”, 2023. 2. 5.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https://www.bjfez.go.kr/>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https://www.lofin365.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Korean Free Economic Zones. <https://www.fez.go.kr/>

인천광역시

- 기윤환(202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과와 발전방향, 인천연구원.
- 김동근 외(2023),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인천연구원.
- 이종현(2017), 농림지역 지정해제권한 확대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 이종현(2022), 인천지역 수도권규제의 역사적 흐름과 대응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2023),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자료집.
 임상수·채은경·안지선(2022),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2025), 에너지산업 현장 실태조사.
 경찰청(2025), 전국 실종 및 대처현황 보고서.
 김민주(2024), 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경제효과 분석.
 대한노인요양협회(2025),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사례분석.
 대한캠핑협회(2025), 야영장 규제 민원분석.
 문화체육관광부(2025), 전국 야영장·관광시설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5), 실종가족 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5), 전국 요양복지 인력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2025),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 평가.
 산업통상자원부(2025), 전기설비 안전관리 개선방향.
 유가족 협회(2024), DNA등록 정책건의 자료.
 이정화(2024), 고령사회와 복지인력 정책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주민 손으로 그린다”, 2025.4.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으로 그리는 농촌의 미래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5. 2. 9.
 대전일보,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반쪽’ 혜택”, 2025. 5. 25.
 산림청(2024), 2023년 기준 목재이용실태조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권순원·정동일·박지순(2016), 공유경제 허용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농민신문, “[인터뷰] 의료 불모지 농촌…‘시니어 의사’ 유입으로 답 찾아야”, 2025. 4. 17.
 박상곤(2023), 공유숙박 제도화를 위한 현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의협신문, “지방의료원 무분별 신·증축보다 기존 기관 효율화가 먼저” 2025. 7. 4.

KBS. "공중보건의 5년간 27% 줄었다...심화되는 '취약지 의료 공백", 2025. 4. 9.

〈제4장〉

강원일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발의", 2024. 11. 26.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112614313819798>)

건축사신문, "BF 인증 받는 데만 1년...전국 BF 인증기관 9곳뿐, 인증 신청 물리는데 관리 감독 없어 '인증 지연 무방비'", 2024. 6. 28. (<http://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406>)

관계 부처·지자체 합동(2025),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

굿모닝충청, "최원철 공주시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신속 처리해야"", 2025. 3. 11.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71>)

남도일보, "고흥군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촉구", 2025. 11. 26. (<https://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506>)

뉴스핌, "최익순 강릉시의장 '장애물 없는 BF 인증 제도 개선' 건의", 2025. 9. 16.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16001050>)

뉴시스, "'예비 댄 적합, 본인증선 부적합'...BF인증 제도, 수도권 편중·일관성 논란", 2025. 7. 16.

동양일보, "공주시 'BF인증' 지연 피해... 충남도는 뭐하나?", 2025. 4. 9.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6856>)

매일신문, "대구 남구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BF 인증으로 설계용역 중단", 2025. 12. 3.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20215394383196>)

메트로신문, "기장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25개 안건 심사", 2025. 10. 18.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51017500313>)

배선헤·김용국·이주경(2024),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의 운영실태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브레이크뉴스, "시장·군수·구청장협, BF인증 연석 간담회 개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도 개선 필요"", 2025. 7. 9. (<https://www.breaknews.com/1131517>)

서울건축사신문, "BF인증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 사례 및 개선점", 2024. 7. 26. (<http://www.sir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3>)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공공건축물 "BF인증"을 위한 업무 개선검토", 2024. 11. 문서번호 건축부-17865.

시민일보, "안산시의회, 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2025. 7. 1. (<https://www.>)

- 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78405651954)
-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②”, 2023. 8. 11.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230>)
- 울산일보, “BF(무장애)인증 하세월…지자체 공기지연 잇따라”, 2024. 6. 18. (<http://www.ulsa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952>)
- 전민일보, “정읍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촉구””, 2022. 11. 9.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144>)
- 전북일보, “남원시의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건의안 2건 채택”, 2025. 4. 17. (<https://www.jjan.kr/article/20250417580078>)
- 전북일보, “순창군의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최”, 2025. 3. 26. (<https://www.jjan.kr/article/20250326580105>)
- 제주매일, “BF인증 지연에 내년 전국체전 설비 공사 ‘우려’” 2025. 12. 17.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451>)
- 중부일보, “인천 지자체·행정기관 BF 인증 하세월… 사업 지연에 공무원들 '진땀'”, 2024. 5. 26.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54083>)
- 충청일보, “김기홍 의원 “BF 인증 절차 늦어 주민 불편…제도 전면 손질해야””, 2025. 6. 2.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709>)
- 한국장애인신문, “[성명]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위협하는 건축전문가집단의 BF 인증 기관 지정, 즉각 중단하라!”, 2025. 6. 17. (<http://www.koreadisable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40>)
- kbc광주방송, “BF인증이 뭐길래..길어진 심사에 사업 지연”, 2024. 7. 19. (https://youtu.be/dsLUxZxI_jA?si=NSIQF7x4sYgJtpY)
- KBS뉴스, “‘BF 인증’ 늦어 공공시설 차질…“제도 개선 시급”“, 2024. 12. 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579>)

〈제5장〉

- 전대욱 외(2024), 지방규제혁신 전략방안 마련 연구.
- 정기용 외(202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건의과제 분석 매뉴얼 개발연구.
- 정기용 외(2025),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 “지난해 163건 규제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하고 국민편의 높였다.”, 2024. 2. 7.